

2018
통일

제37회 대학(원)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입선작

논문집



통일부 통일교육원

이 책자는 「제37회 대학(원)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입선작
모음집으로, 논문의 내용이 통일부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목 차

최우수

- * 남·북 저작권 상호 보호 하의 교류를 위한 플랫폼 도입과 구축에 관한 연구…… 5
김혜연 | 송실대 국제법무학과
정혜인 | 송실대 국제법무학과

우수

- * 교육대학의 통일교육 현황 분석과 발전방안…… 39
이슬기 | 한국교원대 교육학과

장려

- *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형성에 관한 연구…… 77
-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남북 주도 해결방안 모색 및 남북관계 접근법 제언 -
문예찬 |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 * 비핵화에 따른 남북 경제협력 이슈 분석…… 125
- 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
손은영 | 한라대 경영학과
황태준 | 한라대 경영학과
- * 남북경제협력에서 정치적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중단 시 손해배상 모델 제안…… 161
- 배상합의기구 설립 및 상설중재재판소(PCA) 의뢰를 중심으로 -
조정민 |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입 선

- * 통일교육 품질요인이 통일교육 효과에 미치는 영향..... 201
 - 대학생의 인식을 중심으로 -
 - 구민금 | 안양대 공공행정학과
 - 이예진 | 안양대 공공행정학과

- * 남북동질성 회복을 위한 문화교류 방안에 관한 연구..... 241
 - 4대 핵심 문화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
 - 안한나 |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 전현재 |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 * 개성공단 생산품 수출 극대화를 위한 제언..... 283
 - FTA 역외가공 활용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
 - 김주혜 | 송실대 정치외교학과
 - 이상윤 | 송실대 정치외교학과

- * 북한 민생 에너지 자립을 위한 바이오 에너지 방안 323
 - 강다혜 | 송실대 정치외교학과

- * 우리 같이 '팀플' 할까요?..... 367
 - 북한 이탈 대학생의 자기 표출과 말투가 남한 출신 대학생의 협력 의도에 미치는 영향 -
 - 육성빈 | 고려대 대학원 미디어학과
 - 한준형 | 고려대 미디어학부

최우수

남·북 저작권 상호 보호 하의 교류를 위한 플랫폼 도입과 구축에 관한 연구

승실대 국제법무학과 김혜연·정혜인

《 목 차 》

【요약문】

【본 문】

- I. 서론
- II. 남·북 저작권 규범 체계 및 상호 보호 현황
- III. 분단국가 저작권 공동 시스템 구축 사례 및 시사점
- IV. 저작권 상호 보호를 위한 플랫폼 구축
- V. 결론

【참고문헌】

【요약문】

남·북 저작권 상호 보호 하의 교류를 위한 플랫폼 도입과 구축에 관한 연구

최근 남한과 북한의 사이는 평화적 관계에 들어서고 있다. 남한과 북한의 관계 회복에 따른 최종 결과는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남·북 서로간의 정체성 회복 및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내적 통합을 통하여 남·북한 사회에 형성된 이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사상적 이질감은 사회문화 교류를 통하여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함에 따라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남·북의 문화 교류나 저작물 교류 등은 증가하고 있는데 비하여, 그에 따른 저작권 관리 보호 체계나 교류 관련 제도가 남·북 간에 확실하게 구현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 관계에서 저작물 교류를 통한 사회문화협력을 진행하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작권 교류 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호 보호를 중심으로 남·북 관계와 상당한 유사성이 있는 과거 서독과 동독, 중국과 대만의 저작권 보호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 관계에서는 지속가능한 ‘저작물 교류 시스템의 미비’가 가장 큰 문제로 도출되었다. 현재 남·북의 저작물 교류는 시대에 불과하므로 공정거래에 입각하여 모든 남·북 구성원들이 긍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는 남·북 관계의 발전에 따라 저작물 교류가 증가할 것임을 기대하여 저작물 교류의 환경, 즉 ‘플랫폼’을 중심으로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I. 서론

2018년 4월27일 판문점 평화의 집,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 각 방명록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라는 글을 남겼으며, 양 정상은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¹⁾ 2008년부터 남·북 경협 축소에 이은 대북정책의 대전환에 따라 회복되지 않았던 남·북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남·북 관계는 우선적으로 남·북간의 정체성 회복과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내적 통합을 이루어 우리 사회에 형성된 이질감을 해소하여야 한다.

남·북 관계에서 형성된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문화 교류, 구체적으로는 영화, 음악, 그림 등 저작물 교류가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남·북 간의 저작물 교류에는 제도적 및 실무적으로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화 교류 및 저작물 교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관리 보호 체계나 교류 관련 제도가 남·북 관계에서 가시적으로 들어나지 않고 있다. 또한, 남·북 관계에서 저작권 보호가 불균형적인 관계에 있다. 가령, 남한은 북한 저작물에 대해 제도적으로 적절한 보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한 저작물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으며, 설사 교류가 되더라도 강력한 사상 통제를 하는 북한의 정책상 남한 저작물은 북한 지역에서 활발하게 유통되지 않고 있다.²⁾ 남·북 당국은 서로의 법령에 따라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남·북이 체결한 합의서 내용 역시 이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 저작물 교류

1) 이재진 기자,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미디어오늘, 2018.04.27., 2018.09.25.,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2455>>

2) 박도윤, “저작권 단일시장을 대비한 북한에서의 효과적인 남한 저작권 보호방안 연구”, 통일논문집, 2016, 1면

는 상호주의, 현실 가능성,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 저작권이 상호주의에 따라 보호되고,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이라는 특수 관계 속에서 제3국의 개입 없이 직접적으로 저작물을 교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저작물 교류 체계와 남·북 저작권이 상호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합의 방안과 저작물 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 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II. 남·북 저작권 규범 체계 및 상호 보호 현황

1. 남·북 저작권 규범 체계

(1) 남한 내 북한 저작물의 이용 현황 및 규범 체계

과거 남한은 북한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 1988년 7월 29일 남북 또는 월북 작가들의 작품들에 대한 해금(解禁)조치가 발표된 이후 출판권 보호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해당 작품들은 1990년대까지 무단으로 유통되었다.³⁾ 이에 남·북 당국은 합의서 등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1991년 제5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고, 남·북 저작물 교류가 공식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하였다.⁴⁾ 이후에도 남·북고위급 본회담에서는 남·북 교류와 협력을 규정한 「남·북 기본합의서」 제3장을 이행하고 준수하기 위한 부속 합의서⁵⁾를 채택하여 남·북 간의 저작물 교류를 법적으로 인정되었고,

3) 전영선, “남북 문화교류와 저작권 문제”,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지적재산권 연구논단, 제26호, 2008, 22면.

4) 신현욱, “북한의 저작권 전담 행정기구 설립에 따른 남북 저작권 교류의 환경 변화 연구”, 현대북한연구, 12권 3호, 2009, 127면.

5) 동 합의서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를 말한다.

본격적인 저작권에 대한 보호 논의가 이루어 졌다.⁶⁾ 2000년대 들어서 남·북 당국은 남·북 교류 및 협력과 같은 기본적인 합의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진전적인 합의를 도출하였다. 예를 들면, 2005년에 북한 저작권사 무국이 설립을 통한 남·북 간 정상적인 저작물 유통의 방법이 생겼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는 통일부를 통해 「북한 저작권 관리에 대한 안내문」을 발표하였고, 북한 저작물의 이용 절차 및 방법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조치에 합의하였다.⁷⁾ 비록 남·북 당국 사이의 직접적인 합의가 아니고 남한의 민간단체를 통한 합의이며 그 수준도 낮으나 남·북 저작물 교류에 대해 남·북 당국이 처음으로 합의하여 북한의 저작권이 남한 내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규범 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⁸⁾

해당 합의서뿐만 아니라 남한은 북한 저작권을 헌법에 기초하여 보호할 수 있다. 영토조항인 헌법 제3조⁹⁾와 평화통일조항인 제4조¹⁰⁾에 따라 남한의 주권은 북한 지역을 포함하여 한반도 전체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남한의 규범 체계의 효력 또한 한반도 전체에 미친다고 볼 수 있다.¹¹⁾ 이에 대하여 우리 사법부는 북한의 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 내의 북한 저작권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¹²⁾ 또한 사

6) 박지숙, “남북 저작물 교류에 대한 협력방안 연구 -저작권 집중관리기구 설립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108호(27권 4호), 2014, 137면.

7) 이재웅, “북한 저작물 이용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 고려대학교 법학석사 학위논문, 2015, 77면.

8) 김기현·이정철, “남북 교류의 제도화와 저작권 협력의 역할”, 현대북한연구 21권 1호, 2018, 189면.

9) 대한민국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10) 대한민국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11)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관계에 대하여 영토조항의 현실적 규범력 인정여부와 정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설과 이론이 제기되고 있다. 제3조의 영토조항에 따라 남한의 주권은 북한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미치고, 남한만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정통성이 있는 국가이며 북한은 반국가단체에 불과하다는 견해와 제4조 평화통일조항에 따라 분단 상태가 지속되어 남한의 주권이 현실적으로 북한 지역에 미치지 않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이효원, “특별기고(特別寄稿) : 북한법률(北韓法律)의 국내법적(國內法的) 효력(效力) -개성공단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범위, 한계를 중심으로-”, 법조협회, 2005.04, 27면; 이재웅, 전제논문, 4면.

12)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451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604 판결; 임예준, 국제법상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 안암 법학과, 2015.01, 317-318면.

법부는 ‘북한의 법적 지위 부정설’에 따라 헌법 제3조에 근거하여 북한에서 창작된 저작물은 우리 저작권법이 바로 적용되므로 남한에서도 보호가 가능함을 일관된 태도로 유지하고 있다.¹³⁾ 그리고 설사 북한이 세계 저작권협약(UCC)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남한의 주권은 북한 지역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북한 저작권은 상호주의와 관계없이 우리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 것을 판시하였다.¹⁴⁾

(2) 북한 내 남한 저작물의 이용 현황 및 규범 체계

북한은 남한의 영상저작물 및 도서 등을 반입한 공식적 기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¹⁵⁾ 남·북 간의 저작권 보호 문제는 주로 남한에서 사용되는 북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현재 북한 당국의 엄격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남한 저작물의 무단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90년대부터 장마당의 활성화에 따라 남한 드라마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북한에 유통되고 있으며 평양 등 남한과 근접한 지역이나 중국과 인접한 국경 지역에서는 TV 전파를 통해 북한 주민들은 남한 드라마를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다.¹⁶⁾ 통계에 따르면 새터민 약 85%와 일반 주민 약 56%가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를 접한 것으로 추산될 만큼 남한 저작물이 북한에서 무단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⁷⁾ 또한 최근 북한에서 전자 기기의 사용이 증가하고, 관

13) “우리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지역은 한반도의 일부이므로 이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에 해당되고, 따라서 이 지역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주권범위 내에 있으며, 따라서 우리 헌법에 의거하여 제정 시행된 저작권법이나 민법 등 모든 법령의 효력은 당연히 북한지역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한 사례,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7. 26. 선고 89카13692 결정; 이주형, "미 승인국의 영화 저작물과 베른협약의 보호 의무", 통일부, 2013, 2면.

14)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결 1994.2.14, 93가합2009 참고.

15) 최경수, “북한 저작권법 및 남북 간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 5면.

16) 현주, “남한 드라마 시청이 북한 주민들의 정치의식 등에 미치는 영향”, 통일부, 2016, 29-35면.

17) 오해정, "남한 드라마 인기에 北 '비상'...단속도 무용지물". 뉴스플러스, 2015.03.31.,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desk/article/3674997_17821.html> 검색일 : 2018.09.20

런 통신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남한의 영상저작물, 음악저작물 등 다양한 저작물은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¹⁸⁾ 이처럼 북한 내에서 남한 저작물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 이용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전자 기기의 발달, 남한 저작물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남한 저작권의 침해가 증가될 것임이 예상되며 북한에서도 남한 저작권 보호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남한 저작권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베른협약과 북한 저작권법이 있다. 북한은 2003년에 베른협약에 가입함으로써 남한 저작권을 보호할 근거가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남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외국인들에게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해야 한다는 ‘내국민 대우의 원칙’과 협약에 규정된 최소한의 권리를 다른 가입국에게 보장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권리보장 원칙’을 북한에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¹⁹⁾ 그리고 북한 저작권법 제5조는 외국인 저작권보호에 관한 조항으로써 외국 법인과 개인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 제5조는 “우리나라(북한)가 체결한 조약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의 저작권은 그 조약에 따라 보호한다. 그러나 체결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저작물을 발표하였을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외국인의 저작권에 대해 해당 국가가 북한이 체결한 조약에 가입한 경우 해당 조약에 따라 외국인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남한과 북한이 베른협약의 당사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 저작권법 제5조에 따라 남한의 법인 또는 개인의 저작권은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 민족적 정통성

18) 정영, “북한 핵심층 군인들도 왜곡된 가요 불리”, 자유아시아 방송, 2018.09.05.,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bd81d55cc740-c5b4b514b85c/fe-jy-09042018155954.html> 검색일: 2018.09.17.

19) 김영기, “실무연구(實務研究) : 북한저작물 보호를 위한 준거법 결정을 둘러싼 우리나라 판례의비판적 고찰 -북한의 베른협약 가입에 따른 논의를 포함하여-”, 법조협회, 2012, 266면.

을 가진 국가임을 포기하지 않으므로²⁰⁾ 북한 규범체계는 남한 및 남한 주민을 외국 및 외국인에 포함하지 않아 남한 저작권은 북한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²¹⁾

2. 남·북 저작권 상호 보호 방안과 한계

분단 이후에 남·북 당국은 지속적으로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고 있다. 특히, 1990년 8월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서 남한의 규범 체계 안에서 남·북 교류협력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²²⁾ 해당 법률에 따라 북한 저작물의 합법적인 국내 반입이 가능해졌으나, 남·북 간의 저작물 교류 장치가 미비하였기 때문에 북한 저작권은 실질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웠다.²³⁾ 남·북 당국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서를 통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남·북 당국은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와 이에 대한 부속합의서인 1992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등을 체결하여 상대의 저작권을 보호하려 했으나, 후속 실천 조치가 부재하면서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또한 2005년 북한 저작권사무국과 남한의 민간단체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중개로 남한에서 북한 저작물의 이용 절차 및 방법을 합의의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 저작물에 대한 계약이 증가하였으나, 남·북 당국 사이에 직접적인 협의 채널이 없고 저작권자의 권리 구제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안정적인 남·북 저작권 보호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²⁴⁾

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조, 제9조 참고.

21) 박영정, “저작권 분야 남북 교류·협력 현황 및 발전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10면.

22) 김기현·이정철, 전계논문, 2018, 177-178면.

23) 김기현·이정철, 상계논문, 2018, 177-178면.

24)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남한에서 사용된 북한 저작물의 계약 현황은 어문저작물이 685건, 사진저작물이 43건, 음악저작물이 2건, 영상저작물이 130건 등 총 860건에 달한다. 김상훈, “북한 작가 백석의 저작권자는 누구일까?” 남북 저작권 교류의 역사 살펴본 ‘과주북시터

남·북 간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북 당국은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상대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다. 남한 저작권법 제3조 제1항은 “외국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을 규정하고, 동법 제2항은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을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된다고 명시하여 상호주의를 지지하고 있다. 북한 저작권법 역시 제5조에 따라 북한이 체결한 조약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의 저작권은 그 조약에 따라 보호하도록 하고, 제7조에 따라 국가는 저작권 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고 규정하여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남·북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남·북 관계가 특수 관계라는 점을 생각할 때 이러한 규정들도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그러나 상호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규정들은 남·북의 저작권에 대한 상호 보호 의지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북한 저작권은 남한 내에서 보호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남한 저작권에 대한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이 아직 규정되지 않으므로 남한 저작권은 북한 내에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²⁵⁾

3. 시사점

기대되는 바로는 현재 남·북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됨에 따라 남·북 교류가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작물이 남·북 교류의 통로를 통해 교류의 대상과 내용이 다양해지고 깊어질 것으로 생각된다.²⁶⁾ 이에 따라 향후 남·북 교류의 활성화에 맞추어 남·북 저작권의 보호에 대한 이

국제출판포럼”, 뉴스페이퍼, 2018.09.19.,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60>> 검색일 : 2018.09.27; 김기현· 이정철, 상계논문, 2018, 187-188면.

25) 한국저작권위원회(편), “남북 간 저작물 교류의 활성화를 모색 한다”. 계간 저작권, 50호(13권 2호), 2007, 11-18면.

26) 전영선, “남북 저작권 교류의 현황과 전망: 출판물을 중심으로”, 아태쟁점과 연구, 2006, 121-122면.

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남·북 저작권의 보호는 아직 보완되어야 할 여러 문제점들이 남아있다.

첫째, 순수하게 남·북만이 공동으로 주최된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은 비교적 적다.²⁷⁾ 현실적으로 남·북 간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이 충분한 합의 하에 양 당국의 의사를 조율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3국에 의해 주최된 사업이거나 남·북 한 중 한 개의 국가에 의하여 일방적인 시점으로 개최된 사업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상이다.²⁸⁾ 이러한 이유로, 남·북 당국 사이에 저작물 교류에 대한 직접적인 협의 채널이 아직 구축되지 못하였다.

둘째, 저작물 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았다. 남·북 간의 저작물 교류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저작물을 유통하기 때문에 남한의 저작물 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이는 북한이 적극적인 통제와 제한으로 다양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남한 저작물을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유통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양 당국의 협의에 따라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해결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저작권의 복잡하고 광의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불명확하고 경계가 모호한 저작권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문제 해결에 다소 진전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저작권은 다양한 지분권들을 포함한 점,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 등 다양한 저작물의 유형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저작물의 범위나 지분권 등을 특정하는 구체적인 규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7) 남·북 문화교류협력의 사업주체 현황을 보면, 남한 단체가 주최한 사업이 180건(전체의 53.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남·북한 단체가 공동주최한 사업이 77건(전체의 22.7%), 국제단체가 주최한 사업이 33건(전체의 9.7%), 남·북한 및 국제단체가 공동주최한 사업이 28건(전체의 8.3%), 북한이 주최한 행사는 21건(전체의 6.2%)로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주최한 사업은 전체의 22.7%로 나타난다. 박영정,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3, 65면.

28)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남한이 북한과 협력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설립한 것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세운 기구는 아니며, 남·북이 협의를 거쳐 설립한 것 또한 아니므로 본 연구에서 다루는 남북 저작물 교류 시스템과는 다른 의미로 보아야한다.

셋째, 남·북 저작물 교류의 주체는 남·북 주민들이라는 점이다. 현재, 남·북 교류의 주체는 민간 및 사회단체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남·북 교류 협력은 남·북이 상호 접촉과 대화를 통해 남·북 간의 화해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²⁹⁾ 즉, 남·북 교류는 주로 남·북의 주민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북 주민들의 접촉과 대화를 거쳐야함은 분명하다. 하지만, 남한 주민들이 북한 주민을 만나기 위한 절차는 굉장히 복잡하여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남·북 주민들이 접촉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긴 시간이 소요된다. 이를 위하여, 저작물을 교류하고자 하는자들 사이의 접촉 절차 등도 별도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남·북 주민들의 가치통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통일에 접근할 때는 법적 제도적 통합도 중요하지만, 남·북 당국과 민간 영역이 서로 교류하여 분단을 통해 발생한 이질화 극복과 화해를 통한 문화적 통합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³⁰⁾ 저작물 교류는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아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에 따른 이익을 얻는 일임을 감안할 때 남·북 저작물 교류는 일방적인 인도적 지원 사업이 아닌 남·북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교류 사업이라 할 수 있다.³¹⁾ 문화 교류의 기본은 저작물의 교류이기 때문에 위의 점들을 통합하여 남·북의 저작권을 상호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남·북 저작물 교류는 시작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서 제시된 한계점들을 보완하여 저작물 교류의 기본이 되는 남·북의 저작권 공동 시스템³²⁾을 먼저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과거 서독과 동독

29) 오건호, “탈냉전기 남북 민간교류협력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사회·문화 교류협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논문, 2015, 9면

30) 이서행 외 3인, 『남북 정치경제와 사회문화교류 전망』, 백산서당, 2005, 219-221면

31) 신현옥, “북한의 저작권 전담 행정기관 설립에 따른 남·북 저작권 교류의 환경 변화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12권 제3호, 2009, 122-124면

32) 여기서 시스템이란 여러 정의 중 경영학에서 쓰이는 시스템의 정의로서 '사전에 결정된 공통적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가 상호 기능적으로 관련된 요소들과 결합한 유기체'를 의미한다. 유필화·황규대·강금식·정홍주·장시영, 『글로벌 시대의 경영학 개론』, 오래(2018.01), 5면, 즉 남·북 사이의 저작권 상호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저작물 교류를 위하여 구성된 규정들과 체계들이 결합하여 상호간의 논리적 연관성을 가지고 목적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의 사례와 중국과 대만의 사례를 저작권 보호 관점에서 검토하고, 해당 사례를 통해 남·북 저작권 공동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모델³³⁾ 선정에 있어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Ⅲ. 분단국가 저작권 공동 시스템 사례 분석 및 시사점

1. 서독과 동독

서독과 동독의 저작권 보호는 법령³⁴⁾과 협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여기서 주목해볼 것은 문화협정이다. 1972년 서독과 동독의 기본조약 체결 이후 매년 600여 건의 문화교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986년 문화협정 체결 이후에는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563건의 문화교류가 이루어질 만큼 확대되었다.³⁵⁾ 더 나아가, 서독과 동독이 체결한 문화협정에 따라 저작권의 상호보호를 더욱 발전시켰다.³⁶⁾ 문화협정의 목표는 문화협정을 통해 상대편 체제의 사회·문화생활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시켜 서로 상이한 정치 경제적인 구조 아래에 살고 있는 양 독 주민 간에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시키자는 것이다.³⁷⁾ 문화협정의 목표처럼 협정 체결 이후에 문화교류가 대폭 확대되어 연극·연주회·전시회의 교환개최, 학생·

33) 위 논문에서는 경영학의 시스템 정의를 사용함으로써, 남·북 저작권 공동 시스템의 모델은 경영학의 모델을 따라간다.

34) 서독의 동독 저작권 보호의 법적 근거는 서독 기본법 제116조 제1항(국민의 범위)과 서독 저작권법 제120조 제1항(적용범위)이다. 서독은 기본법 제 116조 제1항(국민의 범위)에서 독일인의 범주에 서독인 뿐만 아니라 동독인도 포함시키고, 저작권법 제 120조 제 1항(적용범위)에서는 앞 조항을 근거로 동독인에 대해서도 저작권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동독의 서독저작권에 관한 법적 보호기초는 동독헌법(1968.4.6.) 제 11조 2항과 3항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동독은 서독을 1967년 이후부터 법적으로 외국으로 보기 때문에 베른협약의 상호주의를 근거로 하여 서독인의 저작권도 외국인의 저작권으로 보아 서독 저작권을 보호했다.

35) 박영정 외 4인,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119면.

36) 이우영,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 통일연구원, 2001, 13면.

37) 이장희, “통독정책으로서 동·서독간 문화협정”, 국제법학회논총 33권 2호, 1988, 91-98면.

학자·예술인의 교환방문, 문학과 서적의 교류,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교환, 자료의 대출 등의 시민문화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³⁸⁾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두 나라 간의 적극적인 문화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서동독이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³⁹⁾

서 동독은 문화 협정 체결 시 ‘문화’(Kultur)의 개념⁴⁰⁾을 넓게 해석하였으며, 2년간 양 독은 다양한 문화의 범위에서 각각 50개씩의 사업을 선정하여 총 100개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다.⁴¹⁾ 이에 따라 1986~1987년도 첫 서 동독 공동 협력 사업으로 22개의 프로젝트가 합의되었다.⁴²⁾ 초기임을 감안하여 상호 부담이 적은 전시회나 방문 공연이 프로젝트의 주류를 이루었고, 1988~89년도의 두 번째 협력 사업 계획에는 서동독 양측의 학술분야에서 광범위한 교류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⁴³⁾ 또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까지 62개 도시 간에 자매결연이 성사된 점 등을 통하여, 양 독은 양 독의 주민들이 직접 만나 소통과 대화를 거쳐 양 독 주민의 교류를 활성화시켜 내독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다.⁴⁴⁾

그러나 해당 문화협정은 상대 체계의 약점으로 부각되거나 명분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민감한 분야의 교류는 뒤로 미루고,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교류하였다.⁴⁵⁾ 이에 따라 모든 저작물이 다방면으로 교류되지는 못하였으며, 통합 이후의 여러 문제 중 양

38) “독일 통일의 밑거름 된 동·서독 교류·협력”, DailyNK, 2014.04.23.,
<<https://www.dailynk.com/%EB%8F%85%EC%9D%BC-%ED%86%B5%EC%9D%BC%EC%9D%98-%EB%B0%91%EA%B1%B0%EB%A6%84-%EB%90%9C-%EB%8F%99%EC%84%9C%EB%8F%85-%EA%B5%90%EB%A5%98/>> 검색일: 2018.09.15.

39) 최재승, 『문화를 읽는다 미래를 본다』, 나무와 숲, 2001, 243-244면.

40) 연극, 문학, 음악, 미술 분야를 포함하여 교육, 학문, 출판, 도서관, 역사적인 문서, 대중매체, 체육, 청소년 분야에까지 확대하여 교류 협력의 대상으로 취급하였다. 이우영, 전계논문, 2001, 22면.

41)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Das Kulturabkommen (Bonn, 1990), pp. 35-40 참조.

42) 이해정,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교류 필요하다”, 한국경제연구소, 2013, 8면.

43) 이우영, 전계논문, 2001, 23면.

44) 한부영, “지방 자치단체간 교류협력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11, 4-7면.

45) 김중희, “남북한 문화이질화 현상과 문화통합의 실천적 과제”, 한국문화논총 제 36 집, 2004, 13면.

독 주민들의 해소되지 못한 이질감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서 동독 사이의 문화 협정이 체결될 당시 서독과 동독의 태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서독은 양 독 간의 문화적 동질성을 강조한 반면, 동독에서는 문화의 공통성을 부인하며 사회주의 문화의 독창성을 내세웠다. 동독은 서독문화의 동독 침투가 체제 유지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했었기 때문에, 협정의 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⁴⁶⁾ 서 동독이 다른 분야의 협정 체결에 비해 문화 협정 체결이 늦어진 이유도 이와 같다. 그러나 문화협정을 통하여 그들의 문화교류의 기초인 저작권의 상호 보호를 더욱 심화시켰으며,⁴⁷⁾ 저작권의 상호 보호를 바탕으로 서 동독 간의 교류협력은 안정적으로 확대 및 발전될 수 있었다.

2. 중국과 대만

양안관계인 중국과 대만에서는 저작권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으며,⁴⁸⁾ 협정 체결을 통해 저작권의 상호 보호가 심화되었다. 1992년 11월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와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각자의 해석에 따른 명칭을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⁴⁹⁾ 이를 시작으로 교류의 물결이

46) 박영정, 전계논문, 2015, 53면.

47) 이장조, 전계논문, 1994, 37면.

48)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 2조 제 2항에서 “외국인의 작품은 중국내에서 처음으로 발표된 것이라면, 중국의 작자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며 동조 제 3항에서 “그 소속국과 중국이 체결한 협의 혹은 공동으로 참가한 국제협약에 의해 저작권을 가지며 본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의 저작권법은 국적주의를 적용하고 있으며, 국적주의에 따라 저작물의 최초 발행지가 국내인지 외국인인지와는 관계없이 중국 국민의 저작물은 자동으로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해운, “남·북한 저작권 분쟁사례와 보호방안 연구”, 2014, 9-10면; 대만은 영토주의에 의해 자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저작물도 대만영토 내에서 최초로 발행한 경우 대만의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하고 있다. 대만 헌법 제 4조는 “중화민국의 영토는 그 고유의 영토로 하며, 국민대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중국을 대만의 일부로 보고 있는 만큼 중국 영토 내에서 발행된 중국 저작물도 대만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를 받게 된다. 전은정, “남·북한 저작권 상호 보호 제도 연구”, 2006, 65면; 이해운, 전계논문, 2014, 10면.

49) 오광진, “중국·대만 분단 66년 역사 일지... 양안 정상회담은 대3通 시대 7년의 성과”, 조선일보, 기사작성일 2015.11.07.,

속도를 내기 시작했으며, 많은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중국-대만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가 정식으로 발효되었고,⁵⁰⁾ 중국과 대만의 공동위원회가 출범되었다. 중국과 대만은 2010년 6월 29일에 해협양안 지적재산권보호 협력협정을 체결하면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ECFA도 발효되었다.⁵¹⁾ 이는 중국과 대만 사이의 지식재산권 관련 교류를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체결된 것이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 간의 저작권 인증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저작권 보호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관련 정보를 제때에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⁵²⁾ 많은 차이가 있었던 양안의 지식 재산권 보호 제도의 차이를 극복하며 지식 재산을 상호 보호하기 위해서는 양안 사이의 많은 교류와 협상이 필요했으며, 이를 제공할 수 있는 해협 양안 지적 재산권 보호 협력 협정 체결이 이루어졌다.⁵³⁾ 해협 양안 지적 재산권 보호 협력 협정 본문에 따르면 이 협정의 목표는 특허, 상표, 저작권 및 식물 품종권 등의 양안 지식 재산권 보호의 면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고, 관련 문제를 협상에 의해 해결하고 양안 지식 재산권의 발전, 관리와 보호를 높이는 것에 있다.⁵⁴⁾

해협 양안 지적 재산권 보호 협력 협정의 내용을 보면 양안의 지식 재산권 협력 방향성의 틀만 제시되고 있으며, 주어진 방향성의 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양안의 지식 재산권 협력의 운영을 어떻게 실시하느냐가 중요한 점이었다.⁵⁵⁾ 협정의 내용 중 주목해서 보아야 할 점은 협정 내용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07/2015110701905.html>,

검색일 2018.08.30.

50) ECFA는 경기침체를 탈출하려는 대만의 실리적 목적과 중국의 정치적 고려가 결합되어 타결된 FTA 협정이다. 무역 및 투자, 경제협력, 조기자유회의 내용이 담긴 기본협정문이 체결되었다. 권혁재, “중국-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주요 내용과 대응방향”, SERI, 2010, 1면; 지만수 외 2인, “중국·대만 ECF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2010, 3면.

51) 지만수 외 2인, 상계논문, 2010, 3면.

52) 김호, “대만의 저작권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9권1호, 2015, 4면.

53) 公益財団法人 交流協會, “知的財産分野における兩岸協力の現状とその活用について”, 2016, 100-104면.

54) 公益財団法人 交流協會, 상계논문, 2016, 104면.

55) 公益財団法人 交流協會, 상계논문, 2016, 123면.

제 9조에 근거한 작업 팀이다. 협정 내용의 제 9조는 양안이 각각 특허, 상표, 저작권 및 품종권 등의 작업 팀을 만들어 구체적인 작업 계획 및 사안에 대한 협상을 담당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 규정에 의거하여 양안은 서로 관련 작업 팀을 만들어 교섭 상황을 진행하였다.⁵⁶⁾ 대만에서는 경제부 지적 재산국 및 농업 위원회 아래에 관련 팀이 설치되었으며,⁵⁷⁾ 중국에서는 특허, 상표, 저작 및 식물 품종권이 각각 다른 행정 기관의 관할 속한 것이어서 각각 다른 부서에서 관련 팀이 설치되었다.⁵⁸⁾ 관련 팀이 설치된 후, 양측은 매년 정기적으로 작업 팀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양측의 주무 관청의 관심 사항으로 문제를 논의하고 공통 인식을 요구하며 순조롭게 팀을 운영하고 있다.⁵⁹⁾

해협 양안 지적 재산권 보호 협력 협정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나뉜다. 본 협정이 체결된 후 양안 사이의 지식 재산 활동은 계속해서 활발해지고 있다. 꾸준한 양안간의 협력과 제휴는 양안간의 저작물 심사 시간의 단축, 양안에서 출원하는 지적 재산권 안건의 증가, 쌍방 교류할 기회의 증가 등 긍정적인 방향을 가져왔다.⁶⁰⁾ 또한 본 협정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도 양측이 계속해서 협조와 협상에 의해 문제를 개선하고 있어 양안의 지식 재산권 체계가 더 완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안간의 문화 교류는 중국과 대만의 비대칭적 불균형 구조가 반영되어 있다. 중국과 대만은 제도 및 체제적 상이성이 엄연히 존재하고, 자국의 국제적 위상이나 영향력 역시 비대칭적인 불균형 구조이다.⁶¹⁾ 불균형 구조는 교류 속에서 꾸준히 발견되고 있으며, 국력의 차이가 있는

56) 公益財団法人 交流協會, 상계논문, 2016, 104면.

57) 公益財団法人 交流協會, 상계논문, 2016, 104-105면.

58) 賴文平, 『兩岸智慧財產權協議與其他類似協議之比較(兩岸知的財產權協定とその他の類似する協定との比較)』, 兩岸經貿月刊(2011年11月號)

59) 公益財団法人 交流協會, 상계논문, 2016, 122면.

60) 公益財団法人 交流協會, 상계논문, 2016, 138면.

61)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대만의 현격한 국력차이 확대 등으로 인해 중국은 정치교류와 경제·사회·문화교류를 분리하는 정책을 통해 강한 자신감을 표출한다. 대만은 정치교류의 한계를 명백하게 인식하고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교류협력의 핵심으로 인식한다. 신중호, “양안 교류협력의 특징과 남북한 관계에 대한 시사점”, JPI 정책포럼, 2011, 10면 ; 박영정 외 2인, “문화 분야 통일준비를 위한 ‘남·북문화합의서’ 체결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5, 61면.

중국과 대만은 각각 다른 분야의 교류를 교류협력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다.

3. 시사점

서독과 동독, 중국과 대만은 각각의 법적 근거를 통해 상대국의 저작권을 보호해주었으며, 협정 체결로 저작권의 보호를 심화하였다. 두 가지 사례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협정을 체결하여 저작권 보호를 심화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문화 교류를 이루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남한과 북한은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앞의 두 사례를 직접적으로 남·북 공동 저작권 시스템에 적용시키기에는 문제가 있다. 사례의 적용을 위해서는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남한과 북한의 불균형문제이다. 남·북 관계에도 제도 및 체제적 상이성이 존재하여, 남·북 주민들의 사상적 이질감이 깊게 존재한다. 이로 인하여, 남한의 저작물은 제한적 범위 내에서 북한 정부의 허락 하에 교류된다. 이에 따라 저작권 상호보호에 앞서 그동안 교류된 저작물과 저작권의 침해현황 등을 파악하기에 어려운 실상이다. 그러나 추후에 발생할 문제를 해결하는데 교류 현황을 파악하는 것⁶²⁾이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교류되는 저작물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남·북의 민간단체간의 교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과 대만, 서독과 동독은 민간단체간의 교류를 통해서 문화 교류를 완성시킨 사례이다. 즉, 문화 교류를 위해서 남·북 당국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해주는 민간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는 점을 알 수 있다. 북한과 남한의 경우 북한 정부와 남한 민간단체간의 교류는 존재하지만⁶³⁾

62) 통계는 오래전부터 정책에 활용된 유용한 도구이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Florence Nightingale)이 전투로 전사한 병사의 수보다 치료 도중 병으로 사망한 수가 훨씬 많음을 파악하고 기록을 통해 병원 위생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42%의 환자 사망률을 2%로 낮춘 역사 사례가 존재한다. 권덕철, “통계는 수치를 넘어서 정책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08, 2면.

63) 남한의 민간단체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북한의 저작권사무국을 대리하여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남, 북의 민간단체들이 독립적으로 교류를 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남·북의 저작물을 평등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서독과 동독, 중국과 대만 사례에서 가장 중요시된 점은 양 국의 저작권 상호 보호이다. 반면에, 지금까지의 남·북 저작권 보호는 양 방향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점이 주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⁶⁴⁾ 이는 북한의 남한 저작물 이용에 비하여 남한의 북한 저작물 이용이 많다는 점도 이유가 된다.⁶⁵⁾ 하지만, 남·북의 추후의 관계가 회복되어 문화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점차 남한과 북한간의 저작물 이용률 균형이 맞춰질 것이기 때문에, 양 국의 상호간의 저작권 보호를 통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적 교류가 없었던 남·북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남·북의 불균형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두 사례는 문화 교류 도중 불균형 문제를 겪은 사례이지만, 동시에 지속적인 문화 교류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현재 남·북이 지속적으로 저작물을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은 존재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시스템에서는 남·북 당국의 역할도 중요시되지만, 민간단체의 역할도 다른 의미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남·북의 상황에서 북한의 민간단체와 접촉하기 힘들 뿐더러, 북한 내부에 민간단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시스템의 한 부분을 차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초기의 남, 북 공동 저작권 시스템은 남·북 당국의 주도로 시작하여 추후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범위를 민간단체로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시스템의 구성원들과 범위를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남, 북 공동 저작권 시스템의 모델로 제시한다.

64) 정재욱 기자, 남한 방송사들 북한에 저작권료 내는 이유는?, 미래한국, 2016.06.13.,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68>> 검색일: 2018.09.18.

65)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교류되는 북한에 비하여 북한 저작물을 사용하는데 큰 제약이 없는 남한을 생각해보았을 때 도출되는 결과이다.

IV. 저작권 상호 보호를 위한 플랫폼 구축

1. 현 상황에 맞는 플랫폼의 설정 연구

가) 저작물이 유통되는 영역의 설정에 대한 고찰

플랫폼⁶⁶⁾의 모델을 바탕으로 한 남, 북 공동 저작권 시스템 구축에 앞서, 현 상황에 맞는 플랫폼의 설정을 분석한다. 플랫폼은 유통되는 영역에 따라 오프라인 플랫폼과 온라인 플랫폼⁶⁷⁾으로 나뉜다. 통계를 통하여 살펴보면, 북한의 경우 남한에 비해 인터넷 보급률이 낮으며, 제한된 환경에서 인터넷에 접근하고 있다.⁶⁸⁾ 이러한 인터넷 환경 속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한다면 실질적으로 인터넷과 같이 그 활용이 낮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이 유통되는 영역을 오프라인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 구조라고 생각한다. 이에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오프라인 플랫폼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과 달리 오프라인 영역에서 저작물을 교류함으로써 특정한 장소를 선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교류라는 특수성에 따라 남한과 북한의 상호 접근성과 교통 편리성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동안의 남·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한과 북한이 합의하여 북한지역에 조성

66) 플랫폼이란, 공급자와 수요자등 복수 그룹이 참여하여 각 그룹이 얻고자 하는 가치를 공정한 거래를 통해 교환할 수 있도록 구축된 환경으로서 플랫폼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제공해줄 수 있는 상생의 생태계이다. 플랫폼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위 논문은 플랫폼의 정의를 '플랫폼의 구성원들 사이의 공정한 가치 거래를 통해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주는 환경'으로 정의한다.

67) 온라인 플랫폼이란, 온라인에서 서로 다른 이용자들이 하나의 장(場)에 모여 가치를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중개매체(intermediary)로서 온라인의 동시성 및 확장성과 매체로서의 플랫폼 기능이 결합된 것이다. 이금노·서종희·정영훈, "온라인플랫폼 기반 소비자거래에서의 소비자문제 연구", 한국소비자원, 2016.12, 3면.

68) 손혜용 기자, "북한의 IT현황...400만명이 스마트폰 쓰고, 내비 앱·온라인쇼핑 이용", 중앙일보, 작성일 2018.5.6., <<https://news.joins.com/article/22599336>>, 검색일 2018.8.26.

한 공단⁶⁹⁾으로 현재 남·북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개성공단⁷⁰⁾이 현실적으로 플랫폼이 구축될 수 있는 장소로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개성공단에서 진행된 사업들은 성공을 거두었고,⁷¹⁾ 이러한 사업들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 확대는 남·북 상호간의 이질감과 적대감 해소와 더불어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 신뢰 형성 등에 기여하였다.⁷²⁾ 이에 따라 새로운 개별구역을 찾기 보다는 지속적인 발전단계에 있는 개성공단 내에 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앞서 여러 번 중단되었던 경험이 있는 개성공단에서의 운영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 동안 경합 정시 사태에도 개성공단이 끝까지 유지된 사례가 존재하지만,⁷³⁾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여러 번 중단되었던 경험이 있다.⁷⁴⁾ 즉, 남·북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함께 개성공단의 가동에도 논란이 제기되는 것이다. 만약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지된다면 추후의 플랫폼의 운영 문제를 포함하여 남·북 저작물 교류 진행 등에도 많은 장애를 초래할 것이다. 개성공단이 폐쇄,

69) 홍양호, “개성공단 현황 및 정책적 함의와 개선과제”, 제 103회 조찬 포럼 발제문, 2015, 2면.

70) 개성공단과 같은 경우에 부지정리와 인프라 시설, 교육훈련시설 등을 정부차원에서 지원, 기업들의 진출을 돕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북한을 상대로 공단 운영과 관련된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상을 추진, 기업의 진출에 있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김영운, “남·북경협 물류분야 협력현황과 물류유통 인프라 구축방안”, 남·북법제자료, 2010, 96-97면.

71) 현대경제연구원, “개성공단 확대, 남·북 모두에게 필요하다! - 남·북경협의 성공모델로 정착해야”, 한국경제연구소, 2012, 4면.

72) 홍순직, “개성공단 사업 10년 평가와 발전 방안”, 현대경제연구원, 2014, 13면.

73) 이상훈,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국정부의 역할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23면.

74) 남·북 관계가 경색 될 때마다 개성 공단의 가동에는 논란이 있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이 폐쇄되었던 적은 3번 있었다. 2009년 키 리졸브 훈련 당시 3번이나 육로통행이 차단되었다. 2013년 3월부터 시작된 키 리졸브 훈련에 북한은 개성공단으로의 입장을 차단하였다. 그 후 재가동되었지만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개성공단은 전면 중단되었다. 이현정, “[개성공단 최대 위기]2009년에도 3차례 육로 차단·직원 억류”, 서울신문, 작성일 2013.4.3., 검색일 2018.09.30.,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404003003>> ; 전효진, “[개성공단 전면중단] “을 것이 왔다” “예상 못 해” 노심조사하는 입주 기업들(종합)”, 조선일보, 작성일 2016.2.11.,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10/2016021001909.html>, 검색일 2018.09.30.

중단되어 생기는 문제점들을 막기 위하여 구체적인 개성공단 폐쇄, 중단 기준을 정해야 한다.

나) 거래를 통한 저작물 교류의 설정에 대한 고찰

남·북 공동 플랫폼은 남·북의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을 원하는 자를 연결하는 경로로서 상호 보호 하의 저작물 교류를 맺게 해주는 거래 관계를 형성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거래의 모습을 띠고 있으므로 남·북 공동 플랫폼을 외부 공급자와 거래 관계를 맺는,⁷⁵⁾ 즉, 거래 플랫폼⁷⁶⁾으로 설정함이 타당하다. 상대국의 저작물 이용을 원하는 자가 플랫폼에 저작물 이용 신청을 하면, 플랫폼은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이용 동의를 구한 후, 저작권자가 저작물 이용에 대한 동의 여부에 따라 저작물 교류가 성립되는 시스템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남·북 주민들의 접촉은 복잡한 과정 속에서 ‘자유’라는 단어보다는 ‘허락’이라는 단어 속에서 제한적으로 성사되고 있다. 남·북 공동 플랫폼은 남·북의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을 원하는 자를 연결하고자 함에 있어 남·북 주민들 간의 접촉을 통해 교류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충분한 합의를 거쳐 개선해야 한다. 또한, 아직 대북제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 북한은 여러 국제 법을 위반하였으며, 가장 문제가 되는 북한의 핵개발문제는 아직 도 해결되지 않는 중이다. 이에 대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중단을 요구하며, 대북제재에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⁷⁷⁾을 몇 차례 채

75) 최병삼, “성장의 화두 플랫폼”, 삼성경제연구소, 2010, 3면.

76) 플랫폼은 플랫폼의 활용 유형에 따라 제품플랫폼, 고객플랫폼, 거래플랫폼으로 나뉜다. 제품플랫폼은 다양한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데 활용하는 공통 부분을 의미하며, 고객 플랫폼은 기업이 목표로 하는 핵심 집단을 의미한다. 최병삼, 상계논문, 2010, 3면.

77) 문제가 되는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2321호이다. 이에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70호)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at its 7638th meeting, on 2 March 2016, Resolution 2270(2016),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결의안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달리화와 물품의 유입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안이다. 2321호)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at its 7821st meeting, on 30 November 2016, Resolution 2321 (2016),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결의안으로, 기존

택하고 있다. 남·북 저작권 공동 플랫폼을 통한 저작물 교류는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에게도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남·북의 관계는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개선되고 있으며, 북한은 계속해서 핵 폐기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추후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끝이 난다면 거래 플랫폼 구축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2. 남·북 공동 저작권 플랫폼의 범위

플랫폼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소유자, 제공업자, 생산자, 소비자로 구성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의 구조는 모든 유형에서 동일하다.⁷⁸⁾ 플랫폼의 목적은 사용자간의 최적 조합을 찾아내고,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화폐 등의 교환을 촉진함으로써 모든 참여자들의 가치를 창조하는 것으로,⁷⁹⁾ 그러한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구성원들의 명확한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가) 남·북 공동 저작권 플랫폼 주체의 범위

남·북의 저작물 교류를 위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플랫폼을 통해 상대국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와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제공하는 저작권자인 생산자는 남·북의 국민으로 한정한다. 플랫폼을 통한 교류의 객체는 남한의 저작물과 북한의 저작물이다. 따라서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보다 더 확대·강화한 결의안이다. 북한의 외화 수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결의안이다. 외교부 홈페이지, “2270호 결의안”, http://www.mofa.go.kr/www/brd/m_3973/view.do?seq=362002, (2018.09.10.); 외교부 홈페이지, “2321호 결의안”, http://www.mofa.go.kr/www/brd/m_3973/view.do?seq=362948&srchFr=&srchTo=&srchWord=2321&srchTp=0&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2018.09.10.)

78) Van Alstyne, M. W., Parker, G. G., & Choudary, S. P., “Pipelines, Platforms, and the New Rules of Strategy”. Harvard business review, 2016, 94p.

79) 제프리 파커 외 2인, 『플랫폼 레볼루션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배할 플랫폼 비즈니스의 모든 것』, 부키주, 2016, 10면.

플랫폼의 이용자와 생산자는 남·북의 국민으로 한정한다. 이 때, 생산자와 소비자의 범위는 남·북의 헌법을 근거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조 제 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동조 제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한다. 이 때, 국민의 요건을 정한 법률로 국적법이 있으며, 국적법이 규정한 요건⁸⁰⁾을 충족하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 5장 제 62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⁸¹⁾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며, 북한 공민의 자격, 즉 북한 국적자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북한 국적법 제 2조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란, “1. 공화국창건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 사람과 그의 자녀로서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 2. 다른 나라 공민 또는 무국적자로 있다가 합법적절차로 공화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⁸²⁾

플랫폼을 통제 및 관리하는 소유자는 남·북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플랫폼의 소유자로서 남한의 직원과 북한의 직원이 함께 상주하며 플랫폼을 통제 및 관리한다. 플랫폼으로서 플랫폼의 사용자에게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제공업자는 남·북 공동 플랫폼이 그 기능을 수행한다.⁸³⁾ 제공업자의 기능을 하는 남·북 공동 플랫폼은 남·북의 저작물 교류라는 기능을 수행하며 남·북의 저작권이 공평하게 보호되며 교류될 수 있도록 플랫폼의 기능을 수행한다.

80) 국적은 보통 선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크게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있다. 국적은 후천적 취득도 가능하며 후천적 취득에는 인지, 귀화, 부모의 귀화, 국적회복허가의 경우가 있다. 헌법재판소 블로그,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 <http://blog.naver.com/ccourtukorea/220011397143>, (2018.09.28.)

81) 공민이 되는 조건은 선천적 취득(출생, 해외공민과 외국인사이에 출생한자의 국적, 해외공민과 외국인사이에 출생한자의 공화국입적신청)과 후천적 취득(청원, 국적입적, 재적청원의 결정기관)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 제 5조, 제 6조, 제 7조, 제 8조, 제 15조

8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 2조 ; 이은영, “통일 대비 남·북한의 국적법 비교 및 개정방향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5), 71-72면

83) Van Alstyne, M. W., Parker, G. G., & Choudary, S. P., idea, 2016, p 51

한편, 외국인이 남·북 공동 플랫폼을 통해 북한의 저작물 교류를 희망할 수 있다. 외국에서 북한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북 공동 플랫폼 구축의 목적은 남·북 간의 저작권 상호 보호 하에 저작물 교류가 이루어지기 위함이며, 플랫폼의 초기 단계에서는 플랫폼 구축의 목적 하에 플랫폼을 운영한다. 따라서 남·북 공동 플랫폼을 통해 저작물을 교류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남·북의 국민으로 한정한다. 추후,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외국인이 남·북 공동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가능성은 열려있다.

나) 남·북 공동 저작권 플랫폼 객체의 범위

남·북 공동 플랫폼을 통해 교류할 수 있는 저작물의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 남한은 저작권법 제 4조, 제 5조, 제 6조, 제 7조에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범위를 규정한다.⁸⁴⁾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 8조, 제 9조, 제 10조, 제 11조, 제 12조에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범위를 규정한다.⁸⁵⁾ 남·북 당국이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보호를 해주는 저작물의 범위와 저작권에 대한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근거한 남·북의 저작물 범위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남·북 당국이 각국의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해주는 저작물의 범위 중 교집합을 플랫폼의 저작물 범위로 설정한다. 즉 남·북 모두의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플랫폼

84)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 4조(저작물의 예시 등) :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무연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영상저작물,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 제 5조(2차적저작물) : 2차적저작물, 제6조(편집저작물) : 편집저작물, 대한민국 저작권법 참조

8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 9조(저작권의 대상) : 과학논문, 소설, 시 같은 저작물, 음악저작물, 가극, 연극, 교예, 무용 같은 무대예술저작물, 영화, 텔레비전 편집물 같은 영상저작물, 회화, 조각, 공예, 서예, 도안 같은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지도, 도표, 도면, 략도, 모형 같은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제 10조(저작된 집권의 대상), 제 11조(편집저작물의 대상), 제 12조(저작권의 제외대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

품의 저작물 범위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다.

남·북 공동 플랫폼은 오프라인 플랫폼으로 시작한다. 오프라인 플랫폼은 말 그대로 오프라인의 영역에서 유통되는 플랫폼이다. 오프라인 플랫폼에서의 유통은 교류를 원하는 당사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직접 만나 교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형적 저작물이 아닌 저작물은 교류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저작물을 유형적 저작물로 한정짓는 것은 교류의 다양성에 한계점으로 제시될 수 있지만, 북한과 남한 사이의 저작물 교류가 정확한 수치로서 제시되지 못한 점에 있어서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추후 북한의 인터넷 보급률이 높아져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게 된다면, 오프라인 플랫폼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장될 것이며 미래에 O2O 플랫폼으로도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플랫폼의 저작물 범위 또한 유형적 저작물을 포함하여 디지털 저작물로 확장될 것이다.

3. 합의서 체결을 통한 플랫폼의 규칙 선정

플랫폼에서의 규칙은 플랫폼이 정한 법이다. 플랫폼 운영을 위해 플랫폼만의 규칙이 필요하며, 플랫폼의 모든 운영은 플랫폼의 규칙을 따른다. 남·북 당국의 저작물 교류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므로 남·북 당국의 합의에 따른 내용을 규칙으로 한다. 그동안 남·북은 남·북의 저작물 교류에 대한 합의를 진행할 때, 합의서 체결⁸⁶⁾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합의서 체결을 통해 플랫폼의 규칙을 정한다.

합의서는 남·북의 저작물이 교류되기 위한 명확한 방법을 규정해야 하며,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규칙들을 규정해야 한다. 또한 남·북의 저작권 상호 보호 하의 교류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상호 보호에 초점을 맞춘 규칙들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

86) 남·북 당국은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규정하였으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 3조에서도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남·북 관계를 국제조약이 아닌 남·북 사이에 체결된 별도의 합의를 통해 규율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김기현·이정철, 전계논문, 2018, 185면

북은 별개의 저작권법을 가지고 있으며, 각국이 저작권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다. 합의서를 체결할 때, 수많은 협의를 통해 남·북의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

한편, 남·북의 합의서 체결이 합의서의 체결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남·북은 저작물 교류를 위해 많은 합의서를 체결했었다. 합의서를 체결했지만 후속 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합의서의 체결이 아무런 효력이 없었던 적이 있다.⁸⁷⁾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합의서의 체결이 합의서의 체결로 끝내지 않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의 이행인 플랫폼 구축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과거 남·북은 저작물 교류를 담당하는 남·북의 공동 기구를 세우자라는 합의서를 먼저 체결하였다. 결론적으로 합의서의 체결만 있었고, 후속 조치가 없어 합의서는 사문화가 되었다. 따라서 플랫폼의 구축⁸⁸⁾을 선행 조치로 하며 그 이후의 합의서 체결을 주장하는 바이다. 초반에는 정부의 주도하에 움직이지만, 추후에는 정경분리 하에 협력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즉, 대북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남·북 공동 플랫폼 자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합의서를 구체적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플랫폼의 구축 후, 남·북의 상황에 맞는 합의서를 체결한다면 플랫폼의 운영이 현실화 될 것이다.

87) 1992년 9월 27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체결, 각자 자기 지역에서 상대방의 저작권을 보호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그 후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 실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서, 이 합의는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김기현·이정철, 전계논문, 2018, 179면 ; 2003년 제 11차 장관급 회담을 통해 남·북 사회문화교류 협력에 필요한 합의를 하였지만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전영선, 전계논문, 121면

88) 여기서 말하는 플랫폼의 구축은 플랫폼의 내부적인 구축과, 개성공단 내의 오프라인 플랫폼 건물 구축 모두를 의미한다.

V 결론

통일에 이르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일 중 하나는 남북 국민들의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다. 문화의 다양성은 이념과 분단으로 인해 야기된 이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요소가 된다. 저작물의 교류는 남·북의 문화적 다양성을 높이는데 있어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현재 남·북의 저작권 보호에는 차이가 있으며, 북한에 남한의 저작물을 교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과거 남·북이 함께 저작권 상호 보호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시도했던 노력들은 합의서의 체결에서 끝나거나 제도적 마련의 단계에서 끝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남·북의 저작권 상호보호 방안들과 이를 통한 한계점 분석, 분단 국가의 저작권 상호보호 공동 시스템 사례 분석을 통해 남·북의 저작권 상호 보호를 위한 공동 시스템 구축의 모델을 모색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의 저작권이 상호 보호 하에 교류될 수 있도록 저작물 교류의 방법을 구체화하고 남·북의 상호 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남·북 공동 저작권 플랫폼 구축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남·북 공동 저작권 플랫폼 구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남·북을 둘러싼 주변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구축의 계획을 세워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본 연구에서의 논의를 시작으로 많은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 박영정·오양열·김성수·신준영·정희섭,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 박영정, 『저작권 분야 남·북 교류·협력 현황 및 발전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 유필화·황규대·강금식·정홍주·장시영, 『글로벌 시대의 경영학 개론』, 오래, 2018
- 이서행·강석승·양동안·조영기, 『남·북 정치경제와 사회문화교류 전망』, 서울 : 백산서당, 2005
- 정재호, 『중국정치연구론: 영역, 쟁점, 방법 및 교류』, 서울: 나남출판, 2000
- 최경수, 『북한 저작권법 및 남·북 간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
- 최재승, 『문화를 읽는다 미래를 본다』, 나무와 숲, 2001
-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Das Kulturabkommen, Bonn, 1990.
- 賴文平, 兩岸智慧財產權協議與其他類似協議之比較(兩岸知的財產權協定とその他の類似する協定との比較), 兩岸經貿月刊(2011年11月號)
- 상지트 폴 초더리·제프리 파커·마샬 반 알스타인, 『플랫폼 레볼루션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배할 플랫폼 비즈니스의 모든 것』, 이현경, 부키 주, 2016

〈학술논문〉

- 권덕철, “통계는 수치를 넘어서 정책이다”, 보건복지포럼(2017)
- 권혁재, “중국-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주요 내용과 대응방향”, SERI(2010)
- 김기현·이정철, “남·북 교류의 제도화와 저작권 협력의 역할”, 현대북한연구, 제21권 1호(2018)

- 김영기, “실무연구(實務研究) : 북한저작권 보호를 위한 준거법 결정을 둘러싼 우리나라 판례의비판적 고찰 -북한의 베른협약 가입에 따른 논의를 포함하여-”, 법조, 제61권 4호 (2012)
- 김영운, “남·북경협 물류분야 협력현황과 물류유통 인프라 구축방안”, 남·북법제 자료(2010)
- 김종희, “남·북한 문화이질화 현상과 문화통합의 실천적 과제”, 한국문학논총 제36집(2004)
- 김호, “대만의 저작권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문화 산업과 법), 제9권 제1호(2015)
- 박도윤, “저작권 단일시장을 대비한 북한에서의 효과적인 남한 저작권 보호 방안 연구”, 통일논문집(2016)
- 박영정, “문화분야 통일준비를 위한 ‘남·북문화합의서’ 체결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2015)
- 박지숙, “남·북 저작물 교류에 대한 협력방안 연구 -저작권 집중관리기구 설립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제27권 4호(2014)
- 신종호, “양안 교류협력의 특징과 남·북한 관계에 대한 시사점”, JPI 정책포럼, 제91호(2011)
- 신현욱, “북한의 저작권 전담 행정기구 설립에 따른 남·북 저작권 교류의 환경 변화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12권 제3호(2009)
- 오건호, “탈냉전기 남·북 민간교류협력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사회·문화 교류협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5),
- 이금노·서종화·정영훈, “온라인플랫폼 기반 소비자거래에서의 소비자문제 연구”, 정책연구보고서(2016)
- 이상훈,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국정부의 역할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6)
- 이장희, “통독정책으로서 서동독간 문화협정”, 국제법학회논총 33권 2호(1988)
- 이재웅, “북한 저작물 이용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5)
- 이주형, “미 승인국의 영화 저작물과 베른협약의 보호 의무”, 통일부 (2013)

- 이우영,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 통일연구원 협동연구총서(2001)
- 이은영, “통일 대비 남·북한의 국적법 비교 및 개정방향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5)
- 이해정,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교류 필요하다”, 이슈리포트, 제2013권 31호(2013)
- 이해운, “남·북한 저작권 분쟁사례와 보호방안 연구”, 북한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4)
- 이효원, “특별기고(特別寄稿) : 북한법률(北韓法律)의 국내법적(國內法的) 효력(效力) -개성공단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범위, 한계를 중심으로-”, 법조, 제54권 제4호(2005)
- 임예준, “국제법상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 안암 법학, 제46권(2015)
- 전영선, “남·북 저작권 교류의 현황과 전망 - 출판물을 중심으로”, 아태지역 연구센터, 제1권 제1호(2006)
- 전영선, “남·북 문화교류와 저작권 문제”,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지적재산권 연구논단, 제26호(2008)
- 전은정, “남·북한 저작권 상호 보호 제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6)
- 지만수·이승신·여지나, “중국·대만 ECF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2010)
- 최병삼, “성장의 화두 플랫폼”, 삼성경제연구소, 제80호(2010)
- 한국저작권위원회(편), “남·북 간 저작물 교류의 활성화를 모색 한다”. 계간 저작권, 제13권 2호(2007)
- 한부영, “남·북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 확대방안 :독일사례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제14권 제2호(2000)
- 현대경제연구원, “개성공단 확대, 남·북 모두에게 필요하다! - 남·북경협 성공모델로 정착해야”, 이슈리포트(2012)
- 현주, “남한 드라마 시청이 북한 주민들의 정치의식 등에 미치는 영향”, 통일부(2016)
- 홍순직, “개성공단 사업 10년 평가와 발전 방안”, 통일경제, 제 2014권 제2호 (2014)
- 홍양호, “개성공단 현황 및 정책적 함의와 개선과제”, 통일문제연구, 제 27권

제1호(2015)

公益財団法人 交流協會, “知的財産分野における兩岸協力の現状とその活用について”, 2016

Van Alstyne, M. W., Parker, G. G., & Choudary, S. P., “Pipelines, Platforms, and the New Rules of Strategy”, Harvard business review, 2016

〈판례〉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7. 26. 선고 89카13692 결정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451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604 판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민사부 1994. 2. 14. 판결, 93카합2009 가처분이의

〈인터넷 자료〉

김상훈 기자, “북한 작가 백석의 저작권자는 누구일까?”, 뉴스페이퍼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60>>

손해용 기자, “북한의 IT현황...400만명이 스마트폰 쓰고, 내비 앱·온라인쇼핑 이용”,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2599336>>

오광진 기자, “중국·대만 분단 66년 역사 일지...양안 정상회담은 대3通 시대 7년의 성과”,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07/2015110701905.html>

오해정 기자, “남한 드라마 인기에 北 '비상'...단속도 무용지물”. 뉴스플러스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desk/article/3674997_17821.html>

이재진 기자,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2455>>

이현정 기자, “개성공단 최대 위기]2009년에도 3차례 육로 차단·직원 억류”,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404003003>>

전효진 기자, "[개성공단 전면중단] "올 것이 왔다" "예상 못 해" 노심초사하는
입주 기업들(종합)", 조선일보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10/2016021001909.html>

정영 기자, "북한 핵심층 군인들도 왜곡된 가요 불러", 자유아시아 방송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bd81d55cc740-c5b4b514b85c/fe-jy-09042018155954.html>

정재욱 기자, "남한 방송사들 북한에 저작권료 내는 이유는?" 미래한국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68>>

DailyNK, "독일 통일의 밑거름 된 서동독 교류·협력", DailyNK,

<<https://www.dailynk.com/%EB%8F%85%EC%9D%BC-%ED%86%B5%EC%9D%BC%EC%9D%98-%EB%B0%91%EA%B1%B0%EB%A6%84-%EB%90%9C-%EB%8F%99%EC%84%9C%EB%8F%85-%EA%B5%90%EB%A5%98/>>

외교부 홈페이지, "2270호 결의안"

<http://www.mofa.go.kr/www/brd/m_3973/view.do?seq=362002>,

외교부 홈페이지, "2321호 결의안"

<http://www.mofa.go.kr/www/brd/m_3973/view.do?seq=362948&srchFr=&srchTo=&srchWord=2321&srchTp=0&multi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 any_cd=&company_nm=&page=1>

헌법재판소 블로그,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

<<http://blog.naver.com/ccourtorea/220011397143>>

우 수

교육대학의 통일교육 현황 분석과 발전방안

한국교원대 교육학과 이슬기

《 목 차 》

【요약문】

【본 문】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교육대학의 통일교육 현황
- IV. 교육대학의 통일교육 발전방안
- V. 결론

【참고문헌】

【요약문】

교육대학의 통일교육 현황 분석과 발전방안

본 연구는 교육대학의 통일교육 현황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육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목적이다. 학교통일교육을 실현하는 교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은 통일교육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교원들이 통일교육에 대한 이해와 역량이 부족하다면 학교통일교육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고, 통일부와 교육부의 정책적 노력도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된다. 물론 일선 학교의 교원들은 현직연수를 통하여 전문성을 쌓을 수 있지만, 교원이 되기 이전의 직전교육(織前教育)을 수행하는 교원양성기관에서의 경험이 통일교육을 하는 데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든 교육대학의 교육과정 문서를 살펴보고, 각 대학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문, 학생 동아리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문헌연구를 수행하였고, 실제적인 운영과 교육대학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교육대학 내 통일교육이 아주 열악한 실정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교육대학 내 통일교육과 관련한 부분들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초등도덕교육·초등윤리교육 세부전공을 택한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경험에 대한 기반이 없으므로 교육대학 학생들 중 특별히 관심이 있는 이들만이 자기계발을 통하여 지식과 역량을 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교육대학의 통일교육을 발전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통일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교육대학과 협력하여 교육대학 교육과정에서 이수할 수 있는 전공·교양과목을 확대하여야 하며, 교육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교과 영역의 활동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기부, 특강, 소모임 지원 등의 방안들을 고려할 수 있다.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통일교육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주제어: 통일교육, 교육대학, 현황, 발전방안, 비교과 영역.

I. 서론

최근 남북정상회담에 기원한 일련의 분위기는 남북통일에 대한 관심을 드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평화적 남북통일을 위한 준비가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반공·안보교육에서 시작된 후 변화를 거듭하여 현재의 통일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1999년 「통일교육지원법」이 제정되었으나, 학교통일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인식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통일교육을 하여야 할 교원들을 양성하는 교원양성기관이 학교 현장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교단에 서려면 교원 자격증을 갖추어야 하고, 이는 교원양성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원양성기관에서 통일교육은 윤리교과의 한 부분으로만 취급되고 있다. 교원양성기관에 재학하는 다수 학생들은 스스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지 않는 한 통일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접하지도 못한 채 교원자격증을 수여받는다라는 것이다.

실제로 「2017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이 선택한 학교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시급한 과제의 2순위가 ‘교사의 전문성 향상 및 통일교육 의지’(37.3%)였다. 또한, 학교에서 통일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 교사의 66.3%가 통일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하였다(통일부, 2017). 따라서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이며, 통일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원이 되기 이전에 교원양성기관에서 이수하는 교육은 직전교육(職前教育)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의 결과는 교원양성과정의 문제점 또한 시사하고 있다.

선행연구인 차우규(2003)와 차승주(2010)의 분석도 교원양성과정상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과정의 개선이 있어야함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은 통일교육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는 데에 가장 주된 방법이지만 유일한 것은 아니다. 대학 내에서는 다양한 비교과 영역의 활동이 존재하며 통일교육의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는 데에는 이들 활동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교육대학의 교육과정과 비교과 영역의 활동 모두를 살펴봄으로써, 통일교육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발전방안을 탐색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통일교육을 행하여야 할 교원들이 양성과정에서부터 통일교육을 접하지 못하고, 교원의 개개인이 자기계발을 통하여 얻은 지식과 역량으로 통일교육을 행한다면 개인의 능력에만 통일교육의 부분을 맡기는 것으로 그 전문성이 심히 의심될 수밖에 없다. 또한, 장기적으로 통일교육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책에도 효과를 반감시키는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원양성기관, 특히 교육대학에서 시행되는 통일교육 현황을 대학교육과정과 비교과영역으로 이분하여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교원양성기관의 통일교육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아래의 연구목표를 수행하였다.

첫째, 교육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자료 및 편람을 분석하여 통일교육과 관련된 교과목이 운영되는지 살펴본다.

둘째, 공개된 자료 중에서 교과목 이외에 비교과영역의 활동, 예컨대 동아리나 대학주관으로 학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인 활동들이 운영되는지 살펴본다.

셋째, 각종 문헌에서 분석된 내용과 실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인터뷰를 시행하고, 이를 보완자료로 사용하며 새로 획득한 정보는 내용으로 추가한다.

넷째, 상기의 연구목표에서 도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교육대학에서의 통일교육 발전방안을 제안한다.

상기의 연구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원양성대학인 교육대학의 교육과정 문서 중 2018학년도 입학생에게 적용되는 가장 최근의 것을 검토하여 전공과정 교과목과 교양교과목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하여 선행연구의 자료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비교과영역인 동아리와 학생이 참여 가능한 대학 주관 통일교육 관련 사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는 문헌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문헌연구로는 밝히기 어려운 운영 실태나 재학생의 인식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부의 교육대학 학생들과 면접법을 통하여 면접을 진행하고, 이들의 반응과 제시하는 정보를 문헌연구 결과에 덧붙여 보완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대학 학생들과 면접하여 얻은 자료를 참고하여 교육대학 통일교육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면접법은 개인단위로 면접을 시행하고, 면접 참여자의 경험이나 의견, 태도, 느낌 등을 깊이 있게 알기 위하여 비지시적(nondirective) 면접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는 크게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다. 대학통일교육을 전반적으로 다룬 연구와 교원양성기관과 관련된 부분을 다룬 연구인데, 전자의 경우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의 전반적인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 후자의 경우 교원양성기관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대학통일교육을 다룬 연구로 김종수(2015)는 대학통일교육의 위상이 미약하고,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를 통하여 「교육기본법」의 개정을 통하여 교육부가 통일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교원양성기관인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통일교육 의무화방안을 제시하였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교원양성기관 또한 하나의 초점으로 다룬 부분이 있다. 조은희(2016)는 현재의 대학생들이 초·중등교육 시기에 통일교육을 받은 경험이 적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전공생 중심의 이론교육이 진행됨을 지적하고 통일교육 기회의 확대, 다양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배영애(2017)의 연구는 대학생의 인식에 대해 분석한 뒤 대학 통일교육이 관련 교과목의 확대, 다양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고 법적·제도적인 지원의 확립과 인센티브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앞선 연구들이 대학의 전반적인 전공 교육과정을 살펴보았으나, 교원양성과정의 전공과정을 초점으로 하여 살펴본 사례는 차우규(2003)와 차승주(2010), 김종수(2015)였다. 차우규(2003)의 연구는 직접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통일교육과 관련한 교과목의 개설이 부족함을 지적하였고, 차승주(2010)의 연구는 통일부의 자료를 토대로 교원양성기관에서의 통일교육이 열악한 상황에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원양성기관의 대학원 과정에 통일교육 전공을 신설하거나 기존 교원양성제도를 활용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김종수(2015)의 연구 또한 국회자료를 바탕으로 통일교육과 관련한 교과목의 개설 정도를 살펴보고 전문성을 함양하는 데에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전공교육과정 및 교양교과목 이외에 비교과영역, 예컨대 동아리나 학생이 참여 가능한 대학 주관의 통일교육 관련 사업을 집중하여 살펴본 연구는 없었고 일부를 언급하는 정도였으며, 최근 8년간 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 자료를 직접 살펴본 연구 또한 없었다. 교원양성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전공과정 외적으로 역량을 함양하는 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로서 비교과영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를 함께 살펴보는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통일교육의 정의와 현황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 통일교육에는 통일을 이루는 데에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 포함되므로, 북한에 대한 이해와 통일 전후에 관한 이해, 평화통일과 자유민주주의, 민족공동체의식, 안보관에 대한 교육이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통일교육은 초·중등학교와 대학 모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초·중학교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통일교육과 관련한 부분을 필요적으로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아래는 초등학교 공통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도덕교과 내용체계이다.

<표 1> 2015 개정 교육과정 공통교육과정 중 도덕교과 내용체계(교육부, 2015)

영역	핵심 가치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3-4학년군	5-6학년군	
자신과의 관계	성실	인간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자신에게 거저 없이 정성을 다하고 인내하며,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다스린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시간에는 무엇을 배울까? (근면, 정직) ○ 왜 아껴 써야 할까? (시간 관리와 절약) ○ 왜 최선을 다해야 할까? (인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떻게 하면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을까? (감정표현과 충동조절) ○ 자주적인 삶이란 무엇일까? (자주, 자율) ○ 정직한 삶은 어떤 삶일까? (정직한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적 자아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인식 및 존중하기 • 자기감정 조절하기 • 자기감정 표현하기 ○ 도덕적 습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계획 수립하기 • 모범사례 반복하기 • 유희 이겨내기
타인과의 관계	배려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서로 존중하고 예절을 지키며 봉사와 협동을 실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효, 우애) ○ 친구와 사이 좋게 지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정) ○ 예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예절) ○ 함께하면 무엇이 좋을까? (협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 (사이버 예절, 준법) ○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공감, 존중) ○ 우리는 남을 왜 도와야 할까? (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적 대인관계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도덕적 대화하기 • 타인 입장 이해·인정하기 • 약속 지키기 • 감사하기 ○ 도덕적 정서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적 민감성 갖기 • 공감 능력 기르기 • 다양성 수용하기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정의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을 지키고 인권을 존중하며, 바람직한 통일관 과 인류애를 지닌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공익, 준법) ○ 나와 다르다고 차별해도 될까? (공정성, 존중) ○ 통일은 왜 필요할까? (통일의지, 애국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서로의 권리를 왜 존중해야 할까? (인권존중) ○ 공정한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공정성) ○ 통일로 가는 바람직한 길은 무엇일까? (통일의지) ○ 전 세계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갈까? (존중, 인류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점 채택하기 • 공익에 기여하기 • 봉사하기 ○ 도덕적 판단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적 가치·덕목 이해하기 • 올바른 의사결정하기 • 행위 결과 도덕적으로 상상하기
자연·초월과의 관계	책임	인간으로서 도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인간의 생명과 자연, 참된 아름다움과 도덕적 삶을 사랑하고,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은 왜 소중할까? (생명 존중, 자연애) ○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까?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움을 겪을 때 긍정적인 태도가 왜 필요할까? (자아 존중, 긍정적 태도) ○ 나는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을까? (윤리적 성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천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천 의지 기르기 •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 ○ 윤리적 성찰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미적 감수성 기르기 • 자연과 유대감 갖기 • 반성과 마음 다스리기

이외에도 통일교육은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에 따라 ‘범교과 주제학습’의 한 주제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본사항에 따라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교육부, 2016). 즉, 교육과정 교과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통일교육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일부의 학교는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통일교육 시범학교」 사업에 참여하여 심화교육을 진행하기도 하고, 2013년부터 매년 5월 넷째 주로 지정된 ‘통일교육주간’을 통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도 한다(통일부, 2018).

교육과정 외적인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통일교육지원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동조제2항¹⁾에 따라 정부의 통일교육 진흥에 대한 노력,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1항의 경우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고, 제2항의 경우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되어 있기에 그 실효성이 담보된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고등교육에 관하여는 헌법상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에 따라 교육의 자율성이 부여된다. 따라서 고등교육에 관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존재할 수 없으나, 법제도적으로 권장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통일교육지원법」 제8조제3항²⁾에 따라 정부가 「고등교육법」 상에 규정된 학교에 대해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하도록 되어 있다.

1)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①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9., 2011. 7. 28., 2013. 3. 23., 2013. 8. 13.>

2) ③ 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

따라서 고등교육의 경우 대학의 교육과정상 통일교육과 관계된 부분을 편성하는 북한학과, 혹은 관련된 내용이 있는 전공, 교양교과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된다. 다만, 북한학과나 관련 전공, 교양교과목이 개설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통일부가 주관하는 대학생 통일한국 모의 국무회의, 대학(원)생 대상 통일논문 공모사업, 통일리더캠프에 참여하는 방법을 통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는 있다(통일부, 2018).

3. 교육대학에서의 통일교육이 갖는 의미

교육대학은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교원양성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대한민국의 교육체제 안에서 공립학교 초등교원의 경우 각 교육청의 초등교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응시하려면 초등학교 정교사 2급 교원자격증을 소지할 예정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자여야 하며, 사립학교 또한 초등교사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만이 교단에 설 수 있다. 별도의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만들지 않는 한, 교육대학이라는 교원양성과정을 통하여 초등교원이 양성되는 것이다.

이는 교육대학에서의 교육은 초등교원이 되기 이전에 받는 직전교육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지식과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준비단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교육부(2017)의 교원양성기관 현황 자료에 따른 기관의 수와 한 학년 기준 양성정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2> 교원양성기관의 수와 한 학년의 양성정원(2018년 기준)

설립	기관의 수	한 학년 기준 양성정원
국립	12	3,808
사립	1	39
합계	13	3,847

이들 교원양성기관은 일반대학과 달리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을 기본으로 하여 「교원자격검정령 시행령」(교

육부령),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부 고시)이 제시하는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이수학점과 교직과목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교원자격검정령」과 관계규정이 제시한 세부기준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한 후 나머지 영역은 「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³⁾에 따라 대학마다 상이하게 운영할 수 있다. 즉,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필요한 교육과정과 그 이외에 대학이 학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존재한다.

「교원자격검정령」과 그 관계규정을 살펴보면 별도로 통일교육과 관련한 교과목을 필요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며, 대학이 학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통일교육에 관한 내용은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등학교 공통교육과정에서는 통일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존재하는데도 교원양성단계에서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는 점은 통일교육을 시행하는 데에 문제를 초래할 여지가 크다.

결국 교육대학에서의 교육이 갖는 의미란 교육대학에서 이수하는 통일교육이 단순한 대학생 인식의 변화와 통일의식 제고가 아니라, 교원이 교육과정에 따른 통일교육을 교수(敎授)하기 위한 전문성과 지식을 함양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학교통일교육, 나아가 대학 통일교육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있으며 통일교육의 효과 차원에서 큰 변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Ⅲ. 교육대학의 통일교육 현황

1. 대학 교육과정 편제

분석 대상은 각 교육대학이 공개한 교육과정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3)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연도별 교육과정 자료 중 가장 최근에 개정한 것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각 교육대학이 공개한 교육과정 자료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표 3> 각 대학별 교육과정 자료연도

공주	광주	부산	경인	전주	진주	청주	춘천	대구	서울	제주	이화	교원
2018	2017	2017	2018	2017	2018	2018	2018	2018	2017	2017	2018	2017

<표 3>의 자료에서 각 학과의 전공을 우선 분류하고, 이후 교양과정을 분류하였다. 전공과정(전공필수·공통 및 심화과정) 중 통일교육과 관련된 교과목을 분류한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각 교육대학의 통일교육 관련 전공필수 및 심화과목 목록

대학명	전공(심화과정)				
	전공	필수 여부	학점	학년	강의명
공주교육대학교	초등윤리교육	필수	3	2학년	통일교육론
광주교육대학교	초등윤리교육	필수	2	4학년	통일론
부산교육대학교	초등윤리교육	필수	2	4학년	북한과 통일론
경인교육대학교	초등윤리교육	선택	3	1학년	통일교육과 인문학
전주교육대학교	-	-	-	-	-
진주교육대학교	초등도덕교육	필수	3	4학년	통일교육론
		선택	3	3학년	북한사회와 교육의 이해
청주교육대학교	초등도덕교육	필수	3	3학년	남북한통합 및 체제비교
춘천교육대학교	초등윤리교육	선택	2	4학년	통일교육
대구교육대학교	-	-	-	-	-
서울교육대학교	초등윤리교육	선택	2	2학년	북한문제의 이해
		선택	2	3학년	통일교육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초등윤리교육	필수	3	4학년	초등통일교육론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	-	-	-	-
한국교원대학교	초등윤리교육	선택	3	3학년	초등통일교육론

모든 전공교과목에 있어 전공은 초등윤리교육·초등도덕교육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다른 전공에서는 통일교육과 관련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선행연구인 차승주(2010)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다만 8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과목명이 바뀐 경우⁴⁾가 있고, 과목이 추가된 경우⁵⁾가 있으나 전체적인 강의의 수로 비교한다면 1과목이 추가되었을 뿐이다.

게다가 초등도덕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통일교육 교과목이 필수과목 없이 모두 선택인 교육대학은 4곳이었고, 교육과정상 통일교육과 관련된 교과목이 확인되지 않는 대학도 3곳이었다. 경인교육대학교의 경우 비판적 사고와 윤리 교과목이나 통일교육과 인문학 중 하나를 택일하여 이수할 수 있고, 춘천교육대학교 또한 통일교육과 전통문화의 이해 과목 중 하나를 택일하여 이수하여도 졸업필수조건을 만족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교과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전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였다.

반면 전국 13개 교육대학에서 통일교육과 관련된 전공 교과목을 필수로 하나 이상 이수하는 곳은 과반이 되지 않는 6곳이었다. 다른 초등교육 전공에서는 통일교육과 관련된 전공 교과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초등교육의 12개 세부전공⁶⁾ 중 초등윤리·초등도덕 전공자 중 통일교육 관련 교과목을 선택한 자만이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인원이 된다. 다른 전공의 학생은 전공 공통과목만 이수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초등윤리교육·초등도덕교육의 심화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이외의 세부전공자는 전공교과목으로써 통일교육을 이수할 기회를 갖기란 어려울 것이다.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하는 과

4) 경인교육대학교의 경우 통일교육론(2학점, 선택)이 통일교육과 인문학(3학점, 선택)으로 변경

5) 서울교육대학교는 북한문제의 이해(2학점, 선택) 뿐이었으나 통일교육연구(2학점, 선택) 과목 개설

6) 초등교육의 세부전공은 윤리,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컴퓨터, 교육학 전공으로 나뉜

정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통일교육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채 교단에 서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통일교육이 초등교육과정에 있으므로, 통일교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채 교육을 하게 되는 입장에 서게 된다.

다음으로 교양과정 중 통일교육과 관련된 교과목을 분류한 결과는 아래 <표 5>과 같다.

<표 5> 각 교육대학의 통일교육 관련 교양과목 목록

대학명	교양		
	필수여부	학점	강의명
공주교육대학교	-	-	-
광주교육대학교	필수	3	현대사회와 윤리 ⁷⁾
부산교육대학교	-	-	-
경인교육대학교	선택	2	통일인문학
전주교육대학교	-	-	-
진주교육대학교	선택	2	북한사회론
	선택	2	한국사회와 통일
	선택	2	학교통일교육론
	선택	2	다문화와 통일교육
청주교육대학교	-	-	-
춘천교육대학교	선택	2	통일문제연구
대구교육대학교	필수	2	현대사회와 윤리인성
	선택	2	통일교육
서울교육대학교	-	-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	-	-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선택	3	북한정치의 이해
	선택	3	북한주민의 문화와 생활
한국교원대학교	선택	3	북한지리

7) 해당 교양강의는 광주교육대학교 교육과정 자료 이외에 광주교육대학교의 「2017년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 연차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분류한 것임

관련된 교양과목이 없는 교육대학은 6곳이었으며, 교양과목의 특성상 대다수가 선택과목이었다. 다만 대구교육대학교의 경우 교양필수로 ‘현대 사회와 윤리인성’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교과목의 개요를 살펴보면 통일교육이 전면적으로 다루어지는 교과목은 아니나 ‘분단과 통일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통일교육 유관 교양과목으로 분류하였다.

전공과목과 마찬가지로, 선행연구인 차승주(2010)의 연구에서 제시된 자료와 비교해보았을 때 5과목이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광주교육대학교의 경우 현대사회와 윤리 과목이 신설되었고, 진주교육대학교는 학교통일교육론과 다문화와 통일교육 교과목이 추가되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북한정치의 이해와 북한주민의 문화와 생활 과목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분류한 바와 다르게 초등교육과 내의 개설과목만을 고려한다면 선행연구와 큰 차이가 없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전공교과목으로 통일교육과 관련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면 교양수준으로 이수함으로써 통일교육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교양과목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이 13곳 중 5곳이었다. 또한, 교양과목은 대학생 스스로가 흥미에 맞는 과목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교과목을 이수한 인원이 많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대다수의 초등교원 양성과정을 거친 교원들이 통일교육에 관한 지식과 전문성을 함양하지 못한 채 현장으로 나가게 됨을 의미한다.

2. 교과목 외 비교과 영역

1) 동아리

비교과영역 활동 중 ‘동아리’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교육대학이 공개하거나 교육대학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가 공개한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자료가 없거나 생성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직접 교육대학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에 연락하여 자료를 획득하였다.

통일교육과 관련된 활동이 주된 목적이거나 통일교육을 연구하는 동아리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6> 교육대학 동아리의 개수와 통일교육 유관 동아리의 수

대학명	소속	개수	관련된 개수
공주교육대학교	중앙동아리	31	0
광주교육대학교	중앙동아리	38	0
부산교육대학교	중앙동아리	36	0
경인교육대학교	중앙동아리(인천)	31	0
	중앙동아리(경기)	28	0
전주교육대학교	중앙동아리	35	0
진주교육대학교	중앙동아리	33	0
청주교육대학교	중앙동아리	27	0
춘천교육대학교	중앙동아리	40	0
대구교육대학교	중앙동아리	39	0
서울교육대학교	중앙동아리	35	0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단대동아리 ⁸⁾	19	0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동아리 ⁹⁾	83	0
	단대동아리	4	
한국교원대학교	중앙동아리	34	0

<표 6>에서 중앙동아리는 소속학과 및 전공과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는 동아리를 의미하며, 동아리연합회 또는 대학당국의 승인을 받은 정식 동아리를 의미한다. 단과대학 동아리(단대동아리)는 해당 단과대학에 소속된 학생들만 가입할 수 있는 동아리로, 단과대학 또는 단과대학 동아리 연합회의 승인을 받은 정식동아리를 의미한다. 승인을 받은 동아리는 대다수 교육대학 학칙에 의하여 지도교수가 배정되고, 일정 활동기준을 만족하여야 그 지위가 유지되므로 동아리의 존재는 활동의 지속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속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가승인 동아리¹⁰⁾는

8)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은 구 제주교육대학교인 사라캠퍼스에 위치해 있으므로, 본캠퍼스인 아라캠퍼스와 별도 분리되어 있어 중앙동아리를 기재하지 않음

9)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학생은 종합대학인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동아리에도 소속될 수 있음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단, 대구교육대학교의 경우 가승인 동아리를 제외한 자료를 얻지 못한 관계로 가승인 동아리까지 포함하였다.

중앙동아리와 단대동아리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통일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동아리는 한 곳도 없었다. 통일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인원이 작을뿐더러, 이들이 조직화된 경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앙 동아리 또는 단대동아리가 아닌 소모임의 경우에는 자료수집이 어려웠으나, 일부 대학의 경우 학생들이 소모임 형태로 ‘대학생겨레하나’에서 활동하며 통일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동아리의 조직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일정 수준이 있어야 형성될 수 있다는 점, 통일교육에 관한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채 관심만으로 통일교육에 관한 활동을 지속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 동아리가 없다는 부분은, 경험이 있는데도 학생들의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통일교육에 대하여 알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통일교육 관련 동아리가 전무하다는 점은 교육대학 내에서 통일교육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주된 관심을 가진 학생의 수가 동아리를 조직하기에 적은 수였음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 교육대학 내에서 그러한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여건이 형성되지 못했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2) 대학 주관의 비교과 영역

대학 주관으로 학생이 참여 가능한 비교과 영역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대학 누리집에 공개된 일반·학사공지사항을 2012년 게시 글부터 분석하였고, 그 이전의 게시글이 있는 경우 2009년까지 대상으로 삼았다. 연차별로 계속성 있게 진행된 사업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시행된 연도의 사업만 표기하였으며,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함께 표기하였다. 또한, 통일부가 운영하는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 중 교육대학을 지원한 경우가 있어 당해 사업의 연차보고서 또한 분석에 참고하였고 통일부의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와 관련한 선정결과 자

10) 일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여 정식동아리로 승인받지 못한 동아리를 의미하며 가동아리, 준동아리 등의 표현이 혼용되고 있다.

료도 포함하였다. 옴니버스 특강사업의 경우는 선정 빈도를 참고하기 위하여 선정된 모든 연도를 표기하였다. 다만, 통일부에서 주최하는 대학생 통일한국 모의 국무회의, 대학(원)생 대상 통일논문 공모사업, 통일리더 캠프는 개별 교육대학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하의 비교과 영역 표에서는 제외하였다.

상술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학 주관의 통일교육 관련 비교과 영역 사업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 7>과 같다.

<표 7> 대학 주관의 통일교육 관련 비교과영역 사업목록

대학명	사업명	내용
공주교육대학교	옴니버스 특강(2018-2)	4개 특강 진행
	탈북학생 멘토링(2018)	탈북학생 멘토링(장학재단)
광주교육대학교	통일교육 수업실습(2017)	통일수업 지도안 작성 및 수업실연
	통일관련 현장답사(2017)	DMZ, 북한 인접지역 등 답사
	통일교육 토론회(2017)	통일정책 및 교육방법 토론
	통일교육 밤샘독서(2017)	통일관련 1박 2일 도서읽기, 퀴즈대회
	통일교육 아이디어 공모전(2017)	통일교육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통일 예술축전(2017)	대학 축제와 통일교육 연계
	통일교육 포럼 및 세미나(2018)	통일교육 관련 세미나 진행
	통일교육 멘토링제(2018)	교수-학생간 통일교육 멘토링 운영
	탈북학생 멘토링(2018)	탈북학생 멘토링(장학재단)
부산교육대학교	탈북자 학력신장 및 체험활동(2009)	탈북자 학력신장
	탈북학생 멘토링(2018)	탈북학생 멘토링(장학재단)
경인교육대학교	탈북학생 멘토링(2018)	탈북학생 멘토링(장학재단)
전주교육대학교	탈북학생 멘토링(2018)	탈북학생 멘토링(장학재단)
진주교육대학교	탈북학생 멘토링(2018)	탈북학생 멘토링(장학재단)
청주교육대학교	탈북학생 멘토링(2018)	탈북학생 멘토링(장학재단)
춘천교육대학교	통일교육센터 강연(2015)	통일준비 주제 강연
	옴니버스 특강(2017-2)	5개 특강 진행
	옴니버스 특강(2018-1)	다문화주의 특강 진행
	옴니버스 특강(2018-2)	3개 특강 진행
대구교육대학교	탈북학생 멘토링(2018)	탈북학생 멘토링(장학재단)
	학술세미나(2018)	통일교육 관련 주제 진행
	탈북학생 멘토링(2018)	탈북학생 멘토링(장학재단)

서울교육대학교	옴니버스 특강(2017-1)	4개 특강 진행 및 현장학습
	옴니버스 특강(2018-2)	4개 특강 진행
	탈북학생 멘토링(2018)	탈북학생 멘토링(장학재단)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북한 관련 특강(2017)	북한사회의 변화 특강
	탈북학생 멘토링(2018)	탈북학생 멘토링(장학재단)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옴니버스 특강(2018)	통일교육 관련 특강
	탈북학생 멘토링(2018)	탈북학생 멘토링(장학재단)
한국교원대학교	통일교육연구소 학술세미나(2010)	통일교육 학술세미나 진행
	탈북학생 멘토링(2013)	탈북학생 멘토링(장학재단)

교육대학 중 유일하게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에 지정되어 교부금을 지원받는 광주교육대학교의 경우 교육대학 중에서 가장 다양한 비교과 영역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었다. 사업 중 통일교육 멘토링제의 경우 미술교육 전공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통일교육 벽화를 제작하고, 전시회를 통하여 대학 내 구성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통일교육에 대한 지도안을 작성하고 실제 교육실습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통일교육 수업실습, 통일교육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공모전이 있었다.

그 이외의 교육대학은 통일교육이나 통일·북한이해와 관련된 세미나와 포럼을 개최하여 재학생이 참여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대구교육대학교의 경우 ‘통일교육의 변화와 미래’, ‘통일시대 교재 개발의 과제와 지향점’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진행하며, 춘천교육대학교의 경우 ‘탈북민 정착지원과 통일준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은 ‘북한경제와 사회의 변화’, ‘개성공단에서의 남북통합경험과 통일준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거의 모든 교육대학에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탈북학생 멘토링’ 사업이었는데, 이는 2009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이 13개 교육대학·사범대학에서 시작한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으로 2018년에도 참여하여 진행되는 사업이었다. 탈북학생 멘토링은 한국장학재단의 설명에 따르면 ‘다문화·탈북학생 초·중·고등학생 멘티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 학력 향상을 위해 기초학습, 진로상담 및 문화교류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한국

장학재단의 참여대학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시행 이후부터 일부 교육대학은 중간에 참여하지 않기도 하였으나¹¹⁾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교원대학교를 제외한 모든 교육대학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일부 교육대학의 경우 ‘옴니버스 특강’이 있는데, 이는 통일부 주관의 사업인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 사업에 참여하여 진행되는 특강 프로그램이다. 매 학기마다 선정하여 지원하는 이 사업에 광주교육대학교가 2018년 2학기에 ‘통일교육으로 남남갈등 극복하자’ 등 4개 특강을 진행하고, 춘천교육대학교가 2018년 2학기에 ‘통일 이념으로서 다문화주의 이해하기’ 등 3개 특강을 진행한다. 서울교육대학교의 경우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정착과 교육의 역할’ 등 4개 특강을 진행한다.

문제점은 교부금 사업에 참여하는 광주교육대학교를 제외하고 11개 교육대학이 특강과 세미나를 제외한 비교과 영역의 대학주관 사업이 ‘탈북학생 멘토링’밖에 없다는 점이다. 탈북학생 멘토링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여 각 교육대학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특강을 제외한 각 교육대학만의 독자적인 사업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각 교육대학의 사업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교육대학 학생들의 인식

교육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에 관하여 교육대학 재학생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면접을 시행하였다. 면접 참여자는 아래 표와 같으며, 세 면접 참여자는 연구자의 소속대학이 아닌 서로 다른 교육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구성하였다.

순번	성별	세부전공	학년	학교소재지	이니셜
1	남	교육학	4	경상권	D
2	남	교육학	4	전라권	V
3	여	국어교육	3	충청권	J

11) 2013년의 경우 진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제주교육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6개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면접을 시행한 결과는 교육과정의 경우 자료에서 조사한 것과 같았다. 다만 비교과활동의 경우 등 문헌자료에서 찾을 수 없는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1) 통일교육에 대한 교육과정

(통일교육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그 학교에서 예전에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통일 아카데미인가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 이야기 할 때 듣고 학교 내에서 딱히 통일교육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 그 활동에 참가를 했었어요. [C교육대학, J]

통일교육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강의실에서 하는 그런 수업은 아니었고요, 학교에서 특별하게 학생들을 모집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한하였는데 일단 제가 참여했던 거는 백두산 통일연수 해가지고 ... 학생들 모집해서 중국에 백두산 변경하고 압록강 주변 돌아다니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통일교육을 목적으로. [B교육대학, V]

V, J학생의 경우 통일교육에 대해서 들어본 바 있으며, 관련된 활동 또한 있다고 답하였다. D학생도 마찬가지로 답하였다. 다만 이는 교육대학 교육과정 내에서 진행되거나 강의로 진행된 것들은 아니라는 점이다.

저희 학교같은 경우 윤리교육과를 제외한 학과 학생들은 통일교육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고요. 편성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교과과정에... 윤리교육과같은 경우 4학년에 통일론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저는 교육학과이기 때문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A교육대학, D]

저희는 심화전공이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비슷한 강의를 듣는데 1학년 때 도덕과 교육에 근접한 과목이 있는데 통일에 관한 내용을 한 시간 두 시간 다루는 것 외에는 별도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 한 시간도 통일만을 위한 내용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 수업(초등윤리 교육전공 심화강의)은 오로지 전공학생들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딱 한 학기.

[B교육대학, V]

D, V의 응답처럼, 각 교육대학의 교육과정 문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등윤리교육·초등도덕교육 세부전공을 선택한 학생 이외에는 통일교육과 관련한 전공강의를 수강할 수 없다. 따라서 전공강의를 통한 통일교육을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J 또한 마찬가지로 응답하였다. 이는 초등교육의 세부전공이 12개 세부전공으로 나누어지고, 인원을 배분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대다수의 교육대학 학생들이 통일교육과 관련한 전공강의를 수강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교육현장에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다만 V의 응답에서 알 수 있듯이 심화전공 이전의 공통과목(공통전공 과목)에서 통일교육을 다루는 강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통일교육에 관한 부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여 통일교육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실효적인지는 의문이다.

2) 통일교육에 대한 비교과영역

겨레하나 지부가 준동아리 형태로 있지만 현재 정식 동아리 중에는 없습니다.
 ... 다른 교육대학에서 활동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A교육대학, D]

(동아리는) 없습니다. 제가 모든 과의 소모임을 알지는 못하는데 통일교육 관련하여 소모임을 운영할 만한 과가 윤리교육과하고 사회과교육과가 있을텐데 거기에 소모임에는 통일교육을 다루는 곳은 따로 없습니다. 하물며 동아리도 학생들 주도라서 있지 않고 ... 저희 대학교에서 굳이 찾는다면 과별로 교육위원회라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오로지 주도하는건데 학교 지원같은건 없고 아마 거기서 과마다 한 번씩은 통일교육 현황을 스스로 조사해보고 공부하는 정도의 차원이 이루어졌고요. [B교육대학, V]

동아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식 동아리 중에서는 없었다. 그러나 B교육대학의 경우 대학생들이 연합하여 활동하는 ‘겨레하나’ 동아리가 정식 동아리로 승인되기 이전의 형태인 준동아리 형태로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D의 응답에 대하여 다른 교육대학에서 활동한 사례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V의 응답에서도 관련된 동아리는 없다고 답하였으며, 소모임 또한 재학 중인 학교 내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학생들이 주도하는 학과별 교육위원회¹²⁾에서 통일교육과 관련한 주제를 다룬 적이 있었다. J의 응답은 동아리와 소모임 모두가 학교 내에 없다는 것이다.

관련 사업은 제가 그래도 공고를 많이 보는 편이긴 한데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C교육대학, J]

백두산 통일연수는 거의 매년 진행을 하고요, ... 학교에서만 했던건지는 모르겠는데 통일교육 UCC 대회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또 직접 UCC를 찍거나 통일교육 방안을 보고서같은걸로 제출하면 돈을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B교육대학, V]

D가 재학하는 대학의 경우 대학 주관의 비교과활동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학생활동 차원에서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과 겨레하나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어, 통일교육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V가 재학하는 대학의 경우 대학 주관의 비교과활동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그 구체적인 예시로 백두산 통일연수, 통일교육 UCC 대회, 보고서 대회 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J는 대학 주관 비교과영역의 사업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3) 통일교육에 대한 다른 학생들의 인식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다수의 교육대학 학생들이 전공과목, 교양과목, 비교과활동을 통하여 통일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접할 수 없으므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는 가설을 생각해볼 수 있다.

12) 학과 학생회 산하에 학생기구로, 교육현안이나 교육문제 등을 공유하는 기구임.

제 친구들이나 지나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분위기를 보면 통일교육에 대해 관심이 있다 없다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지하고 또 통일교육에 대한 개념도 없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아요. 애초에 경험도해보지도 않았고 보여주지도 않아서 설령 교육과정에 있다고 해도 방법론만 배우지 내용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거의 전무하다? 관심이 있다 없다는 차원이 아니더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애초에 경험이 없다가 맞을 것 같아요. [B교육대학, V]

이게 단적인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통일교육 관련해서 외부에서 그 대회같은 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려고 친구들을 같이 모았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 때도 그렇게 크게 이렇게 대부분 관심을 보이지를 않았고, 그다음에 관련해서도 활동하려고 모았는데 잘 되지 않고, 그래서 통일이나 그 쪽 관련해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제 주변 동기들하고 그렇게 봤을 때는. [C교육대학, J]

J와 V의 응답은 실제로 교육대학 내에서 학생들이 통일교육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초등학교 도덕교육과정에 따라 통일교육을 하여야 할 교원양성단계의 학생들이 지식뿐만 아니라 관심조차 없는 상태로 교원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교육대학에서 교육과정이나 비교과 영역의 사업을 통한 기반이 부족하고, ‘경험 자체의 부재’가 무관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통일교육을 실행하여야 할 초등학교 교원의 직전교육인 교육대학 교육과정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D의 응답은 교육대학 학생들의 완전히 관심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전국교육대학생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통일 부교재 만들기 사업을 하반기 사업으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지금 전국 교대에서 약 300명 정도가 모인걸로 알고 있고, 사실 300명 이상이 신청했는데 너무 많아서 추첨을 통해 선발한 교대도 있고 해서 사실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이 교대 안에도 암묵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A교육대학, D]

D의 응답에 따르면, 전국교육대학생연합에서 추진하는 ‘통일 부교재 만들기’ 사업에 3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관심이 있는 학생 수가 아주 적은 수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교육부(2017)의 교원양성기관 연도별 정원 자료에 따르면, 2018학년도에 경우 3,847명이 양성정원이며 이 수는 2016학년도까지 같으므로 한 해 학년정원의 약 7.8%에 해당하는 수가 통일교육에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4) 통일교육에 대한 요구

통일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어떤 요구가 있는지, 그리고 그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래도 이제 좀 수업같은데서, 특히 사회과 관련 수업을 할 때 통일에 관련된 주제는 이렇게 다루면 좋다, 매뉴얼이나 이런걸 어느정도 제시를 해주거나 ...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통일교육을 주제로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수업하는 경우가 몇 번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럴 때 공개를 해서 학생들이 보고 정말 나가서, 어쨌든 필요한 수업이긴 하니까, 한번쯤 꼭 해봐야 할 수업이니까 좀 이렇게 미리 가르쳐주는 경우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C교육대학, J]

J의 경우 통일교육을 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강의를 통해 통일교육 방법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바라고 있었다. 예를 들어, 매뉴얼을 제시하여 주거나 그와 관련된 강의를 하는 방안,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통일교육과 관련한 교과목을 개설하는 것을 넘어, 내용적인 측면에서 실제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는 요구로 볼 수 있다. 교육대학에서 통일교육과 관련된 교과목을 개설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내용적인 이해에 기반을 두어 초등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통일교육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교수방법론을 알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을 경험해보는 것은 비교과 영역의 사업들과 연계하여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IV. 교육대학의 통일교육 발전방안

1. 교육대학 교육과정의 개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대학의 세부전공 중 초등윤리교육·초등도덕교육 전공에 한하여 통일교육과 관련한 과목들이 개설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이들 전공과목은 심화과목의 하나로써 다른 세부전공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수강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교양과목의 경우에도 없는 교육대학이 반수에 가까운 6곳에 달하여 통일교육 교과목을 수강하지 못한 채 졸업하는 교육대학 학생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대학의 통일교육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교육대학 교육과정에 통일교육과 관련한 교과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면접 참여자인 D의 응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 진행하는 ‘통일 부교재 만들기’ 사업에 300명이 참여하였다는 점은 일부 학생들이 통일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 면접 참여자 J의 응답과 같이 교과목을 개설하되 통일교육 방법에 관한 교수 방법적인 측면을 함께 다루는 것 또한 실용적 차원에서 고려할 만하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교육대학에서 통일교육과 관련한 교과목을 개설하는 것이다. 하지만 차우규(2003)의 연구에서 교과목 개설을 제안한 이후 15년이 지나는 동안 여전히 초등윤리교육·초등도덕교육 전공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8년 전과 비교하여 한 개 과목이 초등윤리교육·초등도덕교육 전공에 추가되었을 뿐이다. 교양과목과 관련하여서는 과목의 총 개수로는 5개 강의가 증가하였다는 점이 개선된 부분으로 볼 수 있으나, 6개 교육대학에서는 교양강의 자체가 교육과정 문서상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부 교육대학의 개선으로 한정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대학이 어떠한 지원이나 인센티브 없이 자발적으로 개설할 것이라고 전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정부가 강제성을 띠는 정책수단을 통하여 과목을 억지로 개설

하게 하는 방법은 지양하여야 한다. 대학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강제성은 과목 운영을 피상적으로 하도록 할 뿐이다. 또한, 과목 개수의 양적인 팽창만 가져올 뿐 질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개설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정부가 교육대학에 대한 지원과 인센티브를 통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교육과정 개선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교원자격검정기준의 개정

이 방법은 차우규(2003)의 연구와 차승주(2010)의 연구에서도 제시하는 방법으로, 초등교사 교원자격증을 취득함에 있어 과목 및 기본 이수학점에 북한이해 또는 통일교육 관련 과목을 포함시키는 방법이다. 즉,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부 고시) 등에서 규정하는 교과목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교육대학 교육과정에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써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현재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기본 6개 교직과목에 더하여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과목 중 6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과목이 2012년에 해당 교육부 고시를 개정하여 추가된 적이 있고, 이는 교원자격검정기준의 개정을 통한 교육대학 교육과정 수정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해당 교육부 고시를 수정하는 것은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을 위한 자격조건을 변경하는 것인데, 단순한 전공교과목의 수정을 넘어 교직과목과 교직소양과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교육대학의 교육과정을 직접적으로 수정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교원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방법은 교육부의 협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교원자격증에 관한 기준 자체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사회적 요구를 고려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혹은 어떤 과목 전체를 통일교육과 관련한 과목으로 하도록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교과목에서 통일교육과 관련한 부분을 반드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2) 임용시험 출제 시 관련소양 문항 반영

임용시험으로 통칭되는 각 교육청의 ‘초등교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교육과정 주관식 서답형, 논술형, 단순형 문항과 교직논술을 1차 시험으로 하고 있다. 통일교육 또한 초등교육 교육과정에 포함되므로, 임용시험을 출제할 때 관련 소양으로서 통일교육과 관련한 문항을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이는 초등교원이 되기 이전에 시험을 통하여 그 소양이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이므로 전문성과 지식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통일교육에 관한 지식을 학습하게 되므로 통일교육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이 방법이 대학 교육과정 개선과 관련되는 이유는 교육대학 입장에서 임용시험과 관계된 교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시험 준비를 위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간접적인 방안이지만 교육대학이 전공이나 교양차원에서 통일교육에 관한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 또한 시험 준비를 위하여 선택적으로 강의를 수강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지식과 전문성을 직전교육에서 함양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3) 통일교육 연계 교과목 및 통일교육 교과목 개설 지원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통일부는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을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숭실대학교, 경남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아주대학교, 충남대학교 6개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중 교육대학은 광주교육대학교 뿐이다.

교육대학 중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에 지정되어 교부금을 지원받는 광주교육대학교의 경우 해당 사업을 통해 필수교양과목인 ‘현대사회와 윤리’ 과목을 개설하고, 강좌 연계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광주교육대학교, 2017). 강좌 연계 통일교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2개 세부 전공에서 기 운영하던 전공과목에 1차시 이상 통일교육과 관련한 강의를 운영한 내용이다.

<표 9> 강좌 연계 통일교육 강의목록(광주교육대학교, 2017)

학과	강좌명	반영요소	과목성격	수강생	학점
윤리	도덕과 교육1	평화감수성 신장	전공필수	123	2
국어	국어과 교육1	남북한초등아동문학비교	전공필수	29	2
사회	초등지리교육론	통일후 소비정책	전공심화	30	2
수학	수학과 교육1	초등수학용어통일	전공심화	84	3
과학	과학과 교육1	남북한초등과학용어비교	전공심화	162	3
체육	체육과 교육2	남북한체육시스템	전공필수	158	2
음악	음악 실기 2	남북초등음악이해	전공필수	180	2
미술	미술과 교육 1	북한의미적요소탐구	전공필수	160	2
실과	정보통신기술활용	과학기술용어차이	전공심화	30	2
교육	교육학개론	남북교육동향이해	전공필수	58	2
영어	초등영어교육방법	초등용어통일교육방안	전공심화	16	2
컴퓨터	교육용프로그래밍용어	사이버언어/통일홍보자료제작	교양선택	28	2
계				1,058	

<표 9>에서 제시된 것처럼, 대학지원을 통하여 기존의 전공강좌 또는 교양강의를 통일교육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의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

광주교육대학교와 전공담당 교수들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결과로 통일교육이 연계된 전공과목이 운영되는 것은 자명하다. 한편으로, 동시에 통일부가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으로 교육대학에 재정지원을 하고, 인센티브를 준다면 통일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관계를 이룰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 있듯이 「통일교육지원법」 제8조제3항은 정부가 「고등교육법」 상에 규정된 학교에 대해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더하여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된다.

따라서 통일부가 예산을 확보하여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

의 지정 대학 수를 늘리고, 특별히 교육대학에 관한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교육부의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 경우와 같이 교육대학에 대한 별도의 사업트랙(Tracks)을 만드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대학에 비하여 각종 정량지표가 낮을 수 있는 교육대학의 참여를 높일 수 있고, 대학 내 교육과정의 변화에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2. 통일교육 관련 비교과 영역의 개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대학의 비교과 영역 중 동아리 영역에서는 모든 교육대학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고, 대학 주관의 비교과 영역에 있어서 특강사업, 학술 세미나 개최, 탈북학생 멘토링 등의 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특강을 제외한 비교과 영역의 사업의 경우 11개 대학에서 탈북학생 멘토링이 최근까지 진행된 사업임을 감안한다면, 통일교육 관련 비교과 영역의 사업 다변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 다변화는 각 대학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운영할 아이디어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각 대학이 용이하게 운영할 수 있을 만한 사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부분이다.

1) 통일교육 시범학교 또는 새터민 교육기관 연계 교육기부

교육대학의 경우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에 따라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중 ‘교육실습’을 학교현장실습과 교육봉사활동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교육대학은 학교현장실습과 교육봉사활동을 병행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30시간당 1학점의 방식으로 최대 60시간, 2학점까지 인정하고 있다.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대학의 학생들은 학기 중 또는 학기 이후에 초·중등 교육기관에서 교육봉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 시범

학교로 지정된 학교와 연계하여 교육기부(Educational donation)¹³⁾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안성 삼죽초등학교처럼 새터민 관련 교육기관 중 초·중등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교육기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덧붙여서 면접 참여자 J의 응답을 반영한다면, 이 방안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고, 실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방안을 위해서는 대학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이 있고, 일부 교육대학의 경우 운영경험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보이나 재정, 학교 발굴, 협의 등의 문제가 수반되므로 교육부와 통일부, 각 시·도교육청, 교육대학이 협업이 필요하다. 유사 사업으로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수업지원단이나 STEAM 교육기부단 운영사례를 참고하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기부는 직접 학생들이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을 살펴 보고, 실천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에 관한 이해가 없는 학생에게는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을 일으킬 수 있고, 통일교육에 관한 이해가 있는 학생에게는 이해를 심화시키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2) 옴니버스 특강 지원의 확대

특강의 개설은 비록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특강을 통하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다. 또한, 지속적으로 특강을 개설하고 기회를 마련하는 경우 기 개설된 전공교과목이나 교양교과목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원의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 지원사업을

13) 한국과학창의재단에 따르면, 교육기부란 기업·대학·공공기관·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대학 학생들의 경우 수업지원·수업기획·창의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행보다 확대하고, 각 교육대학에서는 초등도덕교과와 연계하여 교육대학 학생들의 통일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대학의 경우 4개교에서 참여한 경험이 있는 만큼, 다른 교육대학에서도 확대하여 학생이 관심을 가질 만한 특강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이와 관련하여 통일교육원에서는 사업참여에 있어 교육대학의 참여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교육대학 차원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혹은 통일교육원에서 대학과 협의하여 특강 전문강사를 직접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교육대학에서 통일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수가 없는 경우 대안적인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3) 통일교육 소모임 지원사업의 시행

통일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육대학 학생들이 모여 지원서를 작성하고 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소모임에 대한 일정수준의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그에 대한 집행보고서를 받는 방식이다. 특강이나 강의와 같은 방법은 통일교육에 관한 지식을 함양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만 실천적인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

소모임 지원사업의 경우 직접 통일교육 지도안을 구성하여 보거나, 관련 통일교육 도서를 읽어보거나, 통일교육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영상자료를 구입하여 보는 등 교육대학 학생이 중심이 되어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소모임 지원사업은 통일교육과 관련한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통일교육과 관련한 연구나 수업 등이 지속될 수 있다면 정식동아리의 지위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을 가진 소모임이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정식동아리가 된다면 통일교육과 관련한 전문가인 교수가 지도교수로 배정되어 활동이 더욱 전문성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부분을 고려한다면 소모임 지원사업은 단발성인 지원으로 접근하기보다 장기적인 효과를 위한 씨앗(Seed)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4)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의 확대를 통한 비교과 영역 확대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에 지정되는 경우 교육과정의 변화 외에 대학 주관의 비교과 영역 사업을 다양화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광주교육대학교의 경우 통일교육 선도대학으로, 통일교육 수업실습, 현장답사, 토론대회, 통일교육 밤샘독서대회, 아이디어 공모전, 포럼 및 세미나 등 다양한 비교과영역의 사업들을 진행하여 교육대학 학생들이 통일교육에 대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앞선 교육과정 개선과 관련한 논의와 같이, 통일부가 재정지원을 하고 인센티브를 준다면 통일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통일교육 선도대학의 지정·육성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원 확대는 여러 교육대학의 학생들이 통일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통일교육에 관한 인식과 이해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 교육대학과의 협력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교육대학의 통일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과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데에 있다. 그에 따라 교육대학의 교육과정 문서를 전면적으로 조사했을 때, 8년 전의 상황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여전히 열악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게다가 세부전공인 초등윤리교육·초등도덕교육에서도 통일교육과 관련한 교과목이 없는 교육대학도 존재한다는 점은 교원양성기관, 특히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에서 통일교육이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따로 분석대상으로 다루지 않았던 비교과 영역의 활동들을 살펴보았으나 역시 이 또한 통일교육에 대한 역량을 키워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실제 교육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에서도

학생들의 응답은 교육대학 내 통일교육의 어려운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오히려 교육대학 내에서 제공되는 범위를 넘어 교육대학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통일교육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거나, 학생자치단체를 통하여 활동하는 등으로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교육계에는 아주 진부하면서도 당연한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말이 있다. 차우규(2003)의 연구초록에서도 인용되어 있는데, 바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떤 좋은 교육과정, 교육자료, 교수도구, 교수방법론이 마련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실현하는 교사가 교육으로 나타내지 못하면 그 의미가 없다. 마찬가지로 학교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담겨 있고, 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다면 학교통일교육은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통일교육에 대한 이해가 낮은 상황에서 통일교육과 관련한 정책을 교육 분야에서 시행한다면 그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점이다. 장기적으로 학교통일교육의 발전을 고려한다면 먼저 교원양성기관인 교육대학에서 통일교육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처럼 학생들의 자발적 관심과 활동에 의존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역량을 키우게 하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이해의 편차를 만든다. 이는 의무교육과 교육기회의 평등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민하여야 한다.

또한, 통일교육의 발전은 단순히 통일부와 교육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분명한 점은 교육대학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것, 그리고 비교과 영역의 활동들 중 많은 부분들이 교육대학이라는 공간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는 교육대학의 역할이 상당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당연한 사실을 재차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에 불과하다. 통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대학 또한 관심과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비교과 영역까지 포함하는 다각적인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교육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자료 및 편람을 살펴보았으나 실제적 운영과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강의의 명칭과 강의개요에서 통일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다룬다

고 기술하였음에도 다루지 않거나, 혹은 강의의 명칭과 강의개요와는 다르게 통일교육과 관계된 부분을 다룰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비교과영역의 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음에도 동아리의 실제 운영이나 대학사업의 실제 운영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통일교육과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었음에도 자료를 별도 게시하지 않아 누락된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 향후에는 각 교육대학과 사업을 담당하는 통일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관련된 자료를 받은 뒤 교육과정과 함께 정확성을 갖추어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현실적으로 모든 교육대학마다 각 1인씩 심층적으로 면접하는 것이 여건상 가능하지 않으며, 일부 교육대학의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면접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일부 교육대학의 재학생 인식에 관한 부분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설문지를 설계하여 인식에 관한 양적 연구를 시행하고, 학년, 세부전공과 소속 교육대학을 고려하여 심층적인 면접을 시행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하는 방법이 더 정확한 인식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경인교육대학교(2018). 경인교육대학교 교육과정.
- 공주교육대학교(2018). 교육과정.
- 광주교육대학교(2017). 광주교육대학교 교육과정.
- 광주교육대학교(2018).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 '17년(2차년도) 연차 보고서.
- 교육부(2015). 도덕과 교육과정 [별책 6].
- 교육부(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초등학교-.
- 교육부(2017). 2017년도 교원양성기관 현황.
- 김종수(2015). 대학통일교육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북한학연구, 11(1), 103-130.
- 대구교육대학교(2018). 교육과정 편제표.
- 배영애(2017). 대학 통일교육의 현황과 개선방향 연구. 통일과 평화, 9(1), 317-357.
- 부산교육대학교(2017). 교육과정.
- 이화여자대학교(2018). 교과과정안내.
- 전주교육대학교(2017). 전주교육대학교 교육과정.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2017). 교육과정표.
- 조은희(2016). 대학 통일교육 현황과 사례. 교양교육연구, 10(1), 107-141.
- 진주교육대학교(2018). 진주교육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 차승주(2010).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에서의 통일교육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10년 신진연구 논문집」, p7.
- 차우규(2003). 학교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개선방안 연구. 사회과교육, 42(1), 207-226.
- 청주교육대학교(2018). 2018학년도 입학생 적용 교육과정. 춘천교육대학교 (2018). 교육과정.

통일교육원(2016). 보도자료-대학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사업 지원 대학 선정.

통일교육원(2017). 보도자료-2017년도 1학기 「유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 지원대학 선정.

통일교육원(2017). 보도자료-2017년도 2학기 「유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 지원대학 선정.

통일교육원(2018). 보도자료-2018년 2학기 「유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 지원 대학 선정.

통일교육원(2018). 보도자료-2018학년도 1학기 「유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 지원 대학 선정.

통일부(2017). 보도자료-2017 학교통일교육실태조사 결과.

통일부(2018). 2018 통일백서.

장 려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형성에 관한 연구

-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남북 주도 해결방안 모색 및 남북관계 접근법 제언 -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문예찬

《 목 차 》

【요약문】

【본 문】

I. 서론

II. 남북교류협력 의제와 한반도 문제해결의 주요 행위자

III. 의제개선 필요성 제기 및 한반도 문제해결의 주도권
확보방안 제언

IV. 남북관계 접근법 제시

V. 결론

【참고문헌】

【요약문】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형성에 관한 연구

-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남북 주도 해결방안 모색 및 남북관계 접근법 제언 -

남북관계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이어졌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 의제가 상정되었으며 연구의 질적 제고에 기여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연구와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긴장과 완화를 반복했다.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관된 대북정책이 수립되지 않았다. 남북관계는 일정한 틀과 의제보다는 국제 정세와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매번 다르게 진행되었다. 특히, 핵 관련 의제는 남북관계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대두되었고 최근에는 비핵화 전개 양상에 따라, 남북관계 진전 속도가 결정되고 있다. 즉, 남북관계는 독립변수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핵화 의제에 따라 종속적으로 움직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7월 발표한 코르버 재단 초청 연설, 신(新)베를린 선언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 확립을 강조하며 ‘한반도 운전대론’을 발표했다. 하지만, 주변국 이해관계가 집약된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확실히 쟁취하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 8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계획이 취소되면서 남북관계는 교착되었고 판문점 선언은 원활히 이행되지 못했다. 비핵화를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이어가니, 미국 개입이 심해졌고 남북교류협력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지 못했다.

남북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지만 그에 대한 확실한 주도권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도 국제사회나 미국이 한반도 문제해결의 주요 행위자 역할을 수행했으며 남북관계의 지속가능성과 일관된 정책수립을 방해했다. 본 연구는 과거 대북 정책 사례와 남북교류협력 의제를 살펴봄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 전도(顛倒)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의제를 정치, 인도, 사회문화 분야로 세분화하여 그 실효성을 비교했으며

의제 상정과 주도권 확립의 상관성을 제시한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이어가고 주도권을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의제 개선이 요구된다. 남북 이해관계가 공통으로 결부되어 있고 국제사회 개입이 적은 의제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추상적이고 장기적인 의제보다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의제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본 연구는 남북관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의제로 ‘민족적 의제’를 제안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독도, 일본군 성노예, 문화유산, 독립운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남북 공동 독도 기념일 제정’,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상봉 추진’, ‘남북문화재공동관리기구 신설’, ‘남북공동역사교과서 편찬’ 등을 통해 구체적인 교류협력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의제 개선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위한 접근법을 제안한다. 기존 접근법인 기능주의와 상호주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문화주의’를 강조한다. 특히, ‘문화 접촉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의제 다변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착’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접근법을 설명한다. 남북은 외세 개입이 적은 의제 선정을 통해, 교류협력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하며 특정 변수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성을 갖추어야 한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확립하여 남북 주도로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구축해야 한다.

I. 서론

1. 문제 제기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왔다. 평창올림픽을 통해 전쟁위기설을 일축했고 11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을 열었다.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며 북미 정상회담을 중재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7월에 발표한 코르비 재단 초청 연설, 신(新)베를린 선언은 어느새 현실이 되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 ‘한반도 운전대론’은 국제사회의 지지해 힘입어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방북·방미 특사단의 성과 발표, 정상회담의 의제 설정을 살펴보면 주도권은 아직 미국이 쥐고 있는 듯하다. 방북 특사단은 포괄적인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 논의했지만 비핵화가 가장 큰 이슈였고, 이는 방미 특사단 파견,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두 차례 걸친 남북정상회담에서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비핵화’를 강조하며 핵 문제를 다른 의제보다 우선시했다. 특히, 5.26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간 의견 차이와 비핵화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남북관계에서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상정되고 있다. 남북 차원의 교류협력보다는 남북미 합의를 우선시하며 이는 비핵화 시간표, 로드맵 등을 통해 나타난다. 하지만, 비핵화 문제는 국제사회 협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미국 개입이 심해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이나, 이해관계 문제가 결합되면 한동안 정체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계획이 취소되면서 남북관계가 교착되었고 ‘판문점 선언 이행 미비’로 이어지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목표로 했던 8월 중순에 개소하지 못했다 미국은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데 남북관계만 앞서간다.”¹⁾며 우려를 표했고 남북교류는 미국 입장

1) 연합뉴스, 「3차 정상회담까지 D-12…주춤하던 남북관계 다시 시동 거나」,

을 고려한 채 효과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주도권은 분명 한국이 쥐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미국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북한 당국도 <로동신문> 논평을 통해 “북남사이에 해결하여야 할 중대문제들이 말쑥지만 때늦은채 무기한 표류되고있다.”²⁾며 남북관계 교착에 불만을 드러냈다. 국제사회와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 의제를 우선순위로 설정하니 남북관계는 독립성과 주체성을 잃어버렸다. 지속가능성과 일관성보다는 외세 개입에 휘둘리게 되었고 남북관계는 비핵화 합의, 미국 국내정치 상황의 종속변수가 되었다.

남북관계는 일관된 정책과 독립적인 교류협력 없이는 결코 개선될 수 없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새로운 의제 설정이 시급하다. 남북 공통의 이해관계가 개입된 ‘역사적 의제’는 독립성을 강화하며 독도, 일본군 성노예, 문화유산, 독립운동과 같은 의제는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³⁾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역사로부터 도출되는 민족성을 제고할 수 있고 남북협력 강화 요인으로 작용한다.

2. 연구 동향

지금까지 남북관계 연구는 통일, 경제협력, 의료,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대한 연구는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해결에 대한 주도권 확립’은 연구 대상으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남북관계 주도권과 공고화 방안은 국내연구에서 매우 드문 논문 주제로써, 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한반도 문제해결의 ‘주도권’이라는 용어가 현재 상황에 맞물려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고 지난 10년간 남북관계가 ‘갈등과 대결의 역사’였기 때문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06/0200000000AKR20180906086300014.HTML>
(검색일:2018.9.13)

2) 로동신문, 2018.7.20, 「주체님은 허욕과 편견에 사로잡히면 일을 그르치기마련이다」

3)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대상을 경제 분야로 한정했다.

하지만 현재 남북관계는 지속적인 평화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통령 취임 2년 만에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주도권에 대한 연구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남북관계 사례 분석을 통해, 주도권 형성 원인을 도출해야 한다. 본 연구는 현재 남북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시사점을 제공하며 일관된 대북정책 형성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한다.

3. 연구 설계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관계 강화와 한반도 문제해결에 대한 주도권 공고화에 있다. 남북관계는 외부 요인에 따라 표류되었고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국내 정치, 미국 정치, 비핵화 합의 등과 같은 현상은 남북관계의 장애물로 작용하며 지속가능한 남북교류를 방해했다. 특히, 비핵화는 남북 관계를 관통하는 주요 이슈로 자리 잡았고 그에 따라서는 북미 관계가 더 중요시되며 ‘통미봉남’ 현상을 초래하기도 했다.

본 연구는 과거 남북회담 사례를 통해, 남북교류협력 의제와 한반도 문제해결의 주도권 간 상관성을 연구하고 회담 진행 중 방해요소와 회담 결렬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외세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표로 나타내어 주도권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독도, 일본군 성노예, 문화유산, 독립운동 등 남북이 함께 공유한 의제를 중심으로 공동보조방안을 제안하고, 나아가 남북관계를 접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II. 남북교류협력 의제와 한반도 문제해결의 주요 행위자

분단 이후, 세계 냉전체계가 고착화됐고 남북관계는 큰 진전이 없었다. 그러다 1971년 8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처음 대화했고 남북적십자회담과 <7.4 남북공동성명>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세계정세 흐름을 이기지 못한 채 적대적 대결구도를 극복하지 못했다. 1990년대 초 탈냉

전 시기 전까지 남북관계는 이데올로기 갈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남북 접촉과 몇 차례 회담이 있었지만 한반도 주도권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양극 체제에 달려있었다.

1990년대 초 탈냉전 흐름이 전개되면서 남북관계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양극 체제가 해소되어 한국도 한반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한반도 주도권은 남북관계 개선 흐름과 함께 강화됐고 주변국의 동의도 잇따랐다. 관계개선은 노태우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비교적 잘 이루어졌으며 통일로 가는 중요한 과정을 합의했다. 그러나 회담 도중 발생한 국내정치 상황, 미국의 국내정치, 비핵화 합의 등은 주도권 전도(顛倒)를 초래했다. 특히, 외세 개입은 남북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판을 완전히 바꾸어놓기도 했다. 한반도 주도권은 남북관계가 아닌 국제사회 흐름에 따라 결정됐고 남북은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다. 남북교류협력 의제는 한반도 주도권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간 상관성을 보여준다.

1. 노태우 정부 시기 남북교류협력 의제와 한반도 문제해결의 주요 행위자

1) 남북교류협력 의제 분석 - 정치 분야

1988년 11월, 북한의 이근모 총리는 부총리급을 단장으로 하는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제의했다. 같은 해 12월, 강영훈 국무총리는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의했고 1989년, <남북고위급회담 제1차 예비회담>을 가졌다. 남북 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시를 위한 논의가 있었고 8차 예비회담에서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했다. 8차 예비회담에서 채택한 합의서를 토대로 1990년 9월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이 열렸다. 분단 45년만의 남북 총리가 처음 만났고 상호 이해와 교류·협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특히, 남북고위급회담은 추가적인 의제 선정에 기여하며 연쇄적인 남북대화를 이끌어냈다. UN 가입, 핵문제 협의,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정치·군사·교류협력 분과위원회 등을 논의했고 이를 위한 회담이 개최되었다. 남

북고위급회담은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 사회문화 분야에도 영향을 끼쳤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 발효시키며 남북관계 개선에 앞장섰다. 특히, 7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는 광복절을 계기로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을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2) 남북교류협력 의제 분석 - 사회문화 분야

노태우 정부는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첫 남북대화를 가졌다. 국회는 「서울올림픽대회에의 북한참가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고 국회회담⁴⁾을 위한 접촉이 재개되었다. 남북은 1년 1개월 만에⁵⁾ 다시 만나며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을 개최했다. 서울올림픽 문제, 남북 교류협력, 남북불가침 문제,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포괄적인 의제가 논의되었다.

1989년에는 ‘1990년 북경 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단일팀 구성·참가 관련 남북체육회담 본회담>이 열렸다. 여섯 차례 실무접촉과 아홉 차례 남북체육회담 본회담이 개최되었고 단일팀 호칭, 단기, 단가, 선수선발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남북은 공동응원 하기로 합의하며 응원가는 ‘아리랑’, ‘노들강변’, 호칭은 ‘코리아’로 결정했다. 이후 남북은 남북통일축구대회를 열어 체육교류를 지속했고 남북체육회담 개최를 합의했다. <국제경기대회 단일팀 참가 및 남북체육교류를 위한 남북체육회담>에서 국제경기대회의 남북단일팀 구성을 논의했고 시일이 촉박한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를 집중적으로 토의했다. 단일팀 구성을 위한 실무위원회가 발족하여 팀명을 ‘코리아’로 확정했고 두 대회 모두 단일팀으로 참가했다.

노태우 정부의 사회문화 교류는 서울올림픽, 아시안게임, 국제경기대회를 계기로 시작되었다. 체육교류는 향후 논의를 위해 연쇄적인 남북 대화를 이끌어냈고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냈다. 특히, 국제 이벤트와 함께 발

4) 국회회담 예비접촉은 1985년에 개최되었지만 ‘팀스피리트’ 훈련을 이유로 연기, 결국 중단되었다.

5) 1987년 7월 14일 서울올림픽 관련 IOC중재 제4차 남북체육회담 이후 처음

생한 체육회담은 지속적인 대화 분위기를 만들었고 정치, 경제 분야의 회담 제의⁶⁾로 이어지기도 했다.

3) 남북교류협력 의제 분석 - 인도적 분야

노태우 정부 때에 <제 2차 고향방문단 교환을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이 개최되었다. 접촉을 통해 남북은 고향방문과 예술단 교환사업, 제11차 남북적십자 회담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했다. 두 차례의 수석대표단독접촉, 여덟 차례의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 방문단 규모, 방문지 선택, 실황중계, 예술단 공연 내용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4) 한반도 문제해결에 관한 주도권 분석

(1) 한국의 주도권 형성과정

노태우 정부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을 발표하며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정부의 기존 대북정책에서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선회'⁷⁾라고 표현하며 대북정책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했다. 당시 미국은 탈냉전시대를 반영, 새로운 동아시아 전략(주한미군 감축계획 등)을 제시했고 한반도 문제의 보조적 역할을 자처했다. 노태우 정부는 세계정세와 미국의 전략 변화에 힘입어 남북관계에서 독립성을 확보했다.

당시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 원칙'을 내세우며 주도권을 잡았다. 북방정책과 UN 동시가입을 추진했고 적극적인 관계개선 의지를 보였다. 특히, 세 차례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끌어냈다. 이듬해에는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를 발효시키며 남북화해와 협력의 토대를 만들었다.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잡은 뒤, 미국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를 잠시 중단했다.

6) <남북국회회담 제1차 준비접촉>에서 남한은 남북정상회담,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경제회담 개최를 제의했다.

7) 돈 오버도퍼, 『두개의 코리아』, 중앙일보, 1998, p.187

(2) 한계 및 결과

한반도 공존과 평화의 약속은 이어지는 듯 했다. 그러나 북한은 IAEA의 특별사찰을 거부했고 팀스피리트 훈련은 재개되었다. 북미 갈등이 다시 불거졌고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정점을 찍었다. 북핵 문제는 국제사회에 회부되었고 한국은 당사자 원칙을 고수할 수 없었다. 미국은 북한에게 핵무기 포기과 IAEA 사찰을 요구했고 북한은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주한 핵무기 철수를 요구했다. 북한과 미국은 상호 조건을 수용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이끌어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는 북미관계의 종속변수였다. 미국이 한미공동훈련을 중지하고 전술핵을 철수하자 북한은 곧바로 태도 변화를 보였다. 북미 협상이 진행되면서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입했고 남북관계는 교착되었다. NPT 복귀, IAEA의 사찰이 한반도 의제의 중심이 되었고 남북 교류협력은 배제되었다.

노태우 정부 시기 때의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에 의해 좌우됐다. 특히, 북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주도권은 완전히 미국으로 넘어갔다. 남북관계에서도 북핵 문제를 우선과제로 삼으며 다른 분야보다 월등히 많은 접촉을 가졌다. 1992년 한 해만 보더라도 총 88회의 남북 대화(회의, 회담, 접촉 모두 포함) 중 30회가 비핵화공동선언문과 핵통제공동위원회를 위해서였다. 비핵화 문제에 집중한 노태우 정부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크게 강화하지 못했다. 비핵화를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구성하니, 미국 개입이 심화될 때는 남북 접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가 주장한 당사자 주도 원칙은 효력을 잃었고 이는 김영삼 정부의 ‘통미봉남’ 정책으로 이어졌다. 핵문제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의 체계적인 접촉과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공백기를 맞았다.

2. 김대중 정부 시기 남북교류협력 의제와 한반도 문제해결의 주요 행위자

1) 남북교류협력 의제 분석 - 정치 분야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우선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특사의 교환을 제의합니다. 북한이 원한다면 정상회담에도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⁸⁾라고 말하며 남북 간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북한은 부부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대표단을 북경에 파견했고 <남북당국대표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회담에서는 이산가족 문제, 특사 교환,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제가 논의되었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은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연설(베를린 선언)하며 남북 화해와 협력의 뜻을 밝혔다. 특히, 통일에 대한 희망을 드러내며 남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특사가 파견되었고 네 차례의 특사 접촉을 통해 <2000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2000 남북정상회담은 남북대화 분위기를 주도했다.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접촉이 다섯 차례 있었고 판문점에서 대화가 개최된 것은 1994년 이후 6년만 이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를 주요 의제로 설정했고 통신·보도, 경호·의전 실무협의를 위한 접촉이 이루어졌다. 정상회담에서는 남북 간 화해협력을 제도화했고 지속가능한 교류를 위해 여러 합의서⁹⁾를 타결했다. 회담 이후에도, 남북 대화는 꾸준히 이어졌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됐고 남북장관급회담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남북국방장관 회담, 군사실무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렸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15년 만에 남북 경제 교류를 논의했다. 특히, 남북철도·도로 연결, 해운 협력, 개성공단 건설 등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의 회담이 촉진되었다.

8) 대통령 기록관, 「제15대 대통령 취임사」,

<http://15cwnd.pa.go.kr/korean/data/publication/chap/9802-1.php> (검색일:2018.9.25.)

9) 정의선 철도, 개성-문산 간 도로연결 사업, 남북경제협력 관련 합의서

2) 남북교류협력 의제 분석 - 사회문화 분야

김대중 정부는 ‘부산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실무접촉을 진행했다. 두 차례 거친 실무접촉을 통해 선수단 구성, 공동입장, 응원단 등을 논의했다. 3일 동안 회의하면서 북한의 경기 참가를 확정지었고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안게임 공동입장을 합의했다. 남북은 한반도기를 들며 ‘코리아’팀으로 등장하기로 했다. 특히, 부산아시안게임 성화는 백두산과 한라산에서 동시 채화되어 통일의 불로 합쳐졌다.

3) 남북교류협력 의제 분석 - 인도적 분야

북한은 대북구호물자 지원을 위한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을 갖자고 제안했다. 남한은 제의를 받아들였고 구호물자의 규모, 인도시기, 인도지점 등 대북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했다. <제 5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에서 북한은 비료 20만 톤을 지원 요청했고 문제 협의를 위해 “북과 남 사이의 비료 문제 등 서로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우리 측에서 부부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대표단을 4월 11일에 베이징에 내보낼 것입니다.”¹⁰⁾고 제안했다. 이를 토대로 <남북당국대표회담>이 개최되었으며 <북경 남북비공개 접촉>을 이끌어냈다. 세 차례 걸친 접촉 끝에 인도적 지원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남과 북은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1999년 5월 12일부터 6월 3일까지 북경에서 3차례 차관급 접촉을 가졌다.”¹¹⁾라고 말하며 남한은 비료 20만톤을 북한에 제공했다. 또한 차관급 당국회담 개최를 합의하며 <남북차관급당국회담>을 이끌어냈다.

차관급당국회담에서는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를 당면문제로 협의했고 이산가족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선정했다. 인도적 지원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적십자 대표 접촉은 두 번의 대표회담으로 발전했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큰 진전을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남북은 지연 없이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고 2000 남북정상회담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10) 신동아 잡지 1999년 9월호, p.128

11) 차관급 접촉 합의서 전문, 조선일보 1999년 6월 3일자

4) 한반도 문제해결에 관한 주도권 분석

(1) 한국의 주도권 형성과정

김대중 정부는 남북관계의 부정적 유산을 물려받았다.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차관급 접촉 회담 2회를 제외하고는 실무 접촉만 있었을 뿐 본회담은 한 번도 없었다. 특히, 남북기본합의서는 사문화되었고 한반도 비핵화 논의도 북미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김대중 정부는 북한이 주도하는 통미 봉남 정책을 마무리 지어야 했다.

장기간의 남북관계 악화로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다. 정부는 ‘대북화해협력정책’(햇볕 정책)을 제시하며 접촉을 통한 변화를 추진했다. 거시적인 목표보다 접촉과 만남을 우선했고 남북 민간교류를 활성화시켰다. 민간인의 북한 방문 승인조건 완화·대북 투자 상한선 철폐를 통해, 남북 접촉을 확대했고 금강산 관광을 이끌어냈다.

햇볕정책은 선이후난(先易後難), 선민후관(先民後官), 선경후정(先經後政), 선공후득(先供後得)¹²⁾을 골자로 한다. 쉬운 것부터, 민간 접촉부터, 경제적 접근부터 남북관계를 실행하고 ‘먼저 준 다음에 돌려받는다.’ 햇볕 정책은 주변국의 동의와 지지를 받았고 한국이 주도권을 잡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1998년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김 대통령의 비중과 경륜을 볼 때 이제 한반도 문제는 김 대통령이 주도해주시기 바란다.”며 “김 대통령이 핸들을 잡아 운전하고 나는 옆자리로 옮겨 보조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¹³⁾ 김대중 정부는 북핵문제와 같은 국제사회 이슈를 남북관계에 편입시키지 않았고 민간교류를 활성화했다.

외세개입 없는 남북 대화는 큰 성과를 나타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만났고 개성공단 개발,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이산가족 상봉 등 다방면에 걸친 남북교류협력을 확대했다. 특히, 한반도 문제에서의 남북 주도 원칙을 공고히 하며 공동선언문 첫 머리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

12) 임동원, 2015, 『피스메이커』(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5년), 파주: 창비, p.324

13) 임동원, 앞의 책, pp.290~291

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밝혔다.

(2) 한계 및 결과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와 국내 정치 상황은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1999년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꾸며 <포괄적 접근을 통한 대북 관여정책>, ‘페리 프로세스’를 내세웠다.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협상을 감행했으며 북미 베를린 합의, 북미 공동 코뮤니케 등, 한국을 배제한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냈다. 핵과 미사일은 북한과 미국을 연계하는 강한 연결고리로서,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의 하위 변수로 상정했다.

미국 국내 정치상황도 대북정책에 크게 관여했다.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부시 대통령은 ABC(Anything But Clinton) 정책을 펴며 클린턴 전 대통령의 정책과 반대된 행보를 보였다. 특히, 북한을 불량국가로 규정하며 미국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한국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불신을 드러냈다. 북미 제네바합의를 수정하여 북한 경수로 설치 사업에 제동을 걸었고, 결국 미국의 반대로 전력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북이 합의한 전력지원은 무산되었으며 이는 5차 장관급회담을 연기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9·11테러와 부시 독트린도 남북관계에 큰 역풍을 가져다주었다. 미국은 아프간 침공을 이유로 한반도에 군사 전력을 강화했고 전투기 증강 등을 통해 북한을 위협했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었고 남북대화는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6차 장관급 회담>은 장소 문제를 둘러싸고 지연되었으며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지 못했다. 특히, 북한은 대화 도중 9.11테러로 인한 ‘비상경계태세’ 해제를 요구하며 안보에 대한 불안을 드러냈다. 미국의 군사적 압박은 남북교류를 방해했다.

3. 노무현 정부 시기 남북교류협력 의제와 한반도 문제해결의 주요 행위자

1) 남북교류협력 의제 분석 - 정치 분야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시대’¹⁴⁾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국민참여를 제시하며 <평화번영정책>을 천명했다. 지난 정부의 남북 기조를 이어갔고 남북장관급회담, 남북군사실무회담 등을 예정대로 개최했다. 특히, 취임 후 처음 열린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재확인하며 변함없는 준수와 이행을 약속했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지난 정권에 이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다. 10.4 남북공동선언을 확립하여 6.15 공동선언을 적극 구현하고자 했고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경제협력 등 다양한 의제를 상정하며 회담을 진행했다. 회담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문제도 다뤄졌고 정치, 군사, 경제, 인도적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2) 남북교류협력 의제 분석 - 사회문화 분야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계기로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적극 모색했다. 조직위원회는 북한에 공식 초청장을 발송했고 북한이 이를 수락하며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실무접촉>이 개최되었다. 선수단과 응원단 참가에 따른 실무문제를 다뤘고 선수단 구성, 공동입장, 체류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듬해에는 ‘아테네 올림픽’ 남북공동입장을 위한 실무접촉을 추진했다. 2004년 1월, 박명철 북한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에게 올림픽 관련 체육교류 협의를 제안하는 서한을 보냈고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아테네올림픽 남북공동입장을 합의했다. 또한, 실무회담을 개최하

14) 대통령 기록관, 「제16 대 대통령 취임사」

http://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catid=c_pa02062&artid=1309347 (검색일:2018.9.25.)

며 공동입장, 선수단 호칭, 선수단 깃발, 단가를 논의했다. 남북은 이견 없이 합의 했고 아테네올림픽에서 한반도기, 아리랑을 이용해 공동 입장했다.

이후 ‘베이징 올림픽대회’를 계기로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 회담>이 개최되었다. 선수단 명칭, 단기, 단가 등 대부분 사항에 대해 남북은 합의 했으나 ‘선수 선발’ 문제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후 네 차례에 걸친 회담을 통해, 남북은 단일팀 구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고 선수선발을 제외한 여타 문제는 이견이 크게 없었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체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문화교류가 이루어졌다. 특히, 안중근 의사 순국 95주년이 되는 2005년에는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남북은 유해위치 관련자료 조사 및 확인 사업 협력, 전문가 회의 확정, 안중근의사 유해발굴단 구성 등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총 네 차례 진행된 실무 접촉은 남북공동 현지조사를 이끌어냈다.

3) 남북교류협력 의제 분석 - 인도적 분야

남북은 제3차 적십자 실무접촉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을 위한 <금강산면회소건설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 세 차례의 회의와 두 차례의 비공개접촉을 통해 면회소 규모, 설계,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면회소 의제가 적극적으로 다루어졌고 면회소 면적, 건설부지, 운영관리 등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를 이뤘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이산가족 이슈가 자주 다뤄졌다. 2005년 7월에는 광복절을 계기로 이산가족의 화상상봉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실무접촉>이 개최되었다. 상봉의 규모, 순서, 시간, 기술장치 등을 논의했고 이는 <제6차 적십자회담>에서 확대 협의되었다. 6차 회담에서는 8.15 시범화상상봉 이후 2005년 내에 두 차례 더 실시할 것을 제안했고 이산가족 서신교환 등이 새롭게 논의되었다.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재개를 위한 <제6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이 진행됐다. 남북은 면회소 관련 실무적 문제와, 건설 지원문제, 인도적 협력사업 문제를 논의했고 상호 합의하며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활성화 됐다. 2006년 8월 남한은 전화통지문을 통해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했다. 더불어 인도적 차원에서 수해 복구자재 장비, 응급구호품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제안했고 <대북 수해복구지원 관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이 개최되었다. 지원 품목 및 규모, 전달시기 등에 대해 논의했고 10월 9일 북한 핵실험 이전까지 물품을 전달했다.

4) 한반도 문제해결에 관한 주도권 분석

(1) 한국의 주도권 형성과정

부시 정부 취임 이후, 미국은 대북 강경책을 펼쳤고 한국은 이에 편승하여 미국과 함께 6자 회담 복귀와 관계 개선을 요구했다. 6자회담과 남북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졌고 노무현 대통령은 상황 개선을 위해 <6.15 공동선언 5주년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에 특사를 보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북한의 '남북관계 원상복귀 약속'을 받아냈고 광복절 기념 이산가족상봉을 제안했다. 또한, 서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장성급군사회담 재개를 합의했고 한국을 통해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혔다. 한국은 북한의 대화 채널 역할을 하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확립해나갔다. 특히, 특사 파견은 북한을 6자 회담으로 복귀시키며 비핵화에 대한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냈다.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북한과 지속적인 대화를 추진했다. 군사 분야 관련 회담을 총 28회 개최하며 한반도 안정을 꾀했고 그 결과, 남북 군사 충돌은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었다. 10.4 선언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약속했고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를 합의했다. 10.4 선언은 7.1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여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남북 주도 해결'을 강조했다. 또한, 법 제도, 군사적 신뢰, 철도 및 도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2) 한계 및 결과

노무현 정부 시기 대북정책은 북핵 문제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았다. 한반도 이슈는 북핵 문제로 한정되었으며 이는 한반도 문제가 국제사회로 회부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특히, 외세 개입이 심해졌고 주변국 이해관계가 결부된 6자회담이 개최되었다. 핵문제는 남북 주도로 해결할 수 있는 의제가 아니었고 한국의 입지는 줄어들었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 핵과 미사일은 남북관계를 방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었다.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미사일 문제를 회담 의제로 상정하자, 북한은 이에 반발하여 공동보도문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고 결국 회담은 도중에 결렬되었다. 핵·미사일 문제는 한반도 긴장을 유발했으며 미국이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잡았다. 미국 개입으로 남북 신뢰는 훼손되었고 결국 2006년 이산가족상봉이 중단되었다. 게다가, 같은 해 10월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은 한국의 대북제재 강화를 유도하며 포용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켰다. 노무현 정부는 남북관계를 중심을 잡지 못하며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상실했다.

한편,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도 한반도 문제 악화를 초래했다.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명박은 대북정책에 있어서 상호주의 노선을 채택했다. 비핵·개방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남북 대화 재개를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연이은 남북정상회담이 구축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는 또 다시 표류하게 되었다. 또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이 임기 말에 진행된 만큼 남북 합의가 온전히 실행되지 못했으며 남북 신뢰와 관계 발전의 토대는 견고하게 자리 잡지 못했다.

<표 1> 남북교류협력의제와 방해원인 분석

	분야	사건명	주요 의제	방해 원인	비고
노태우 정부	정치 분야	남북고위급회담 제8차 예비회담	남북 간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	팀스피리트 훈련, 문의 환·임수경 석방문제 - 대화 거부	미국 개입, 국내 정치
		제8차 남북 고위급 회담 본회담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및 준수	남한조선노동당 간첩사건, 팀스피리트 훈련 - 9차 회담 무산	미국 개입, 국내 정치
		남북국회회담 제7차 준비접촉	남북국회회담 관련 내용	팀스피리트 훈련 - 8차 접촉 연기, 준비접촉 중단	미국 개입
	사회 문화·인 도적 분야	단일팀 구성· 참가 관련 남북체육회담 본회담	북경아시아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참가	팀스피리트 훈련 - 회담 중단	미국 개입
제2차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 관련 제1차 실무대표접촉		남북적십자 회담 개최, 고향방문단·예술공 연단 교환	문의환·임수경 방북문제, 북한의 혁명기극 공연 제안 - 합의 지연	국내 정치, 북한 제안	
김대중 정부	정치 분야	제5차 남북 장관급회담	6.15 남북공동 선언 이행	부시 대통령의, ABC 정책, 북미 제네바합의 수정 - 회담 연기	미국 개입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금강산관광 활성화	9.11 테러, 부시 독트린 - 합의 도출 실패	미국 개입
노무현 정부	정치 분야	제19차 남북 장관급회담	북한 미사일	미사일 문제를 의제로 상정 - 공도보도문 채택 불발, 회담 결렬	미국 개입
	사회 문화 분야	8.15 남북당국 공동행사(2006)	8.15 남북당국 공동행사	핵·미사일 문제로 인 한 미국 개입 - 행사 취소	미국 개입
	인도적 분야	금강산면회소 건설	면회소 건설	북한 미사일 발사 - 건 설 중단	국내 정치 (안보문제)
		이산가족 상봉(2006)	이산가족 상봉	핵·미사일 문제로 인 한 미국 개입 - 상봉 중단	미국 개입

Ⅲ. 의제개선 필요성 제기 및 한반도 문제해결의 주도권 확보방안 제언

앞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 사회문화, 인도적 분야 모두 지속적인 남북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 또한, 총 11번의 사건 중 9번이 미국 개입으로 인해 방해받았고 남북교류협력은 끊기게 되었다. 한반도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제 개선이 요구되며 과거에 논의되지 않은 의제를 상정해야 한다. 특히 남과 북,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회담 연기와 결렬을 방지하기 위해 둘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개입되어야 한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권은 남북이 동시에 확립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1. 남북회담 의제 개선 필요성

남과 북은 정치, 사회문화, 인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했으나 5.24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 경제협력은 중단되었고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문을 닫으며 ‘남북관계 제로 시대’를 완성했다.¹⁵⁾ 노태우 정부 7·7선언 이후 꾸준히 이어진 남북교류는 완전히 끊어졌다. 북한의 핵 실험, 미사일 도발 등이 남북관계를 교착시킨 주요 원인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남과 북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의제를 가지고 회담을 해본 적이 없다. 핵, 미사일 문제는 남북관계 단절로 이어졌고 긴 교착상태를 초래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이어가고, 주도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먼저 바꾸어야 한다. 남북이 공동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의제를 상정하고 외세 개입이 적은 주제를 선택해야 한다. 비핵화 중심으로 이어온 남북관계는 미국 개입에 흔들렸고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을 만들어내지

15) 김연철, 2018, 『70년의 대화』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파주: 창비, p.288

못했다. 추상적이고 장기적인 의제는 남북관계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반면,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의제는 남북대화와 단결이 비교적 조속하게 이루어졌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줬다. 특히, 남북 당사자 주도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역사적 의제’는 지속가능한 남북교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한반도는 5000년 역사 중에 오직 70년만 분단되어 살았다. 분단 이전 시기를 살펴보면 남북이 의논할 수 있는 의제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게다가, 역사적 의제는 외세 개입이 적어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협력을 만드는 토대가 되어줄 수 있다. 대표적인 의제로는 독도, 일본군 성노예, 문화유산, 독립운동 등이 있다.

2. 남북 공동보조를 통한 한반도 문제해결의 주도권 확보

위에서 언급한 의제들은 남북 공동보조 방안을 용이하게 도출해낼 수 있고 남북교류협력의 지속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다. 특히 남과 북의 입장이 유사한 만큼, 회담 결렬 가능성이 낮고 공통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개입되어 있다. 본 연구는 북한 자료를 통해 그들의 입장을 연구하고 남북 공동보조 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북한의 입장은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과 북한 발행 서적을 통해 분석했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를 통해 1946년(창간호)부터 2015년까지의 로동신문을 조사했고 실물 신문을 통해 2016년, 2017년, 2018년 자료를 분석했다. 북한 발행 서적은 각 의제별로 부합한 서적을 조사했으며 총 32권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파악했다. 때에 따라서는, 북한의 ‘특정 의제 관련 상품¹⁶⁾’을 활용했다.

1) 독도

(1) 북한의 입장

독도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남한과 유사하다. 북한 지리교과서에는 “우리 나라의 신성한 령토인 독도를 <일본령토>라고 파렴치하게 주장하며 독도

16) 특정 의제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기 위해 상품을 제작. 예) 독도 우표 등

를 강탈하려고 하지만 그들의 허황한 망상은 절대로 실현될수 없다.”¹⁷⁾ 라고 쓰여 있다. 북한은 독도를 한반도 고유 영토로 인정하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과렴치한 만행, 우리 민족의 존엄과 주권에 대한 노골적 침해행위’로 여기고 있다. 특히 2013년 교과서 개정을 통해 독도 언급이 증가됐고 지도, 본문 내용, 기타자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독도 관련 정보가 질적으로 향상되었다.

<표 2> 2005년과 2013년 개정 교과서에 수록된 독도 자료

구분	학년	자료 유형	자료 수	합계	비고
2005년 개정 교과서	중학교 1	지도/ 본문 내용	0/0	0	2005년 교과서 독도 관련 언급은 총 20회, 2013년 개정 교과서 언급은 총 53회.
	중학교 2 ¹⁸⁾	지도/ 본문 내용	13/3	16	
	중학교 3	지도/ 본문 내용	1/0	1	
	중학교 4 ¹⁹⁾	지도/ 본문 내용	2/1	3	
	중학교 5	지도/ 본문 내용	0/0	0	
2013년 개정 교과서	초급중학교 1	지도/ 본문 내용/기타 ²⁰⁾	9/1/2	12	교과서가 개정되면서 독도 관련 언급이 33회 증가.
	초급중학교 2	지도/ 본문 내용/기타	7/0/1	8	
	초급중학교 3 ²¹⁾	지도/ 본문 내용/기타	9/0/0	9	
	고급중학교 1	지도/ 본문 내용/기타	1/0/1	2	
	고급중학교 2	지도/ 본문 내용/기타	1/1/0	2	
	고급중학교 3 ²²⁾	지도/ 본문 내용/기타	18/1/1	20	

17) 지국철 외 5인, 2014, 『지리』 (고급중학교 제 2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P.61

18)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 해당 자료가 누락되어 기존 논문 참조 ; 이상균 외 2인, “2013 개정 북한 지리교과서에 제시된 독도 관련 내용 분석”, 『한국지리학회지』 6권 2호 (한국지리학회, 2017)

19) 2005년 개정 중학교 4학년 지리 교과서에는 <제 4장 동남지방 - 제 7절 울릉도와 독도>가 수록되어있음.

20) 사진, 그림, 표지, 표 등

21) 북한자료센터에 해당 자료가 누락되어 기존 논문 참조 ; 이상균 외 2인, 앞의 논문

22) 북한자료센터에 해당 자료가 누락되어 기존 논문 참조 ; 이상균 외 2인, 앞의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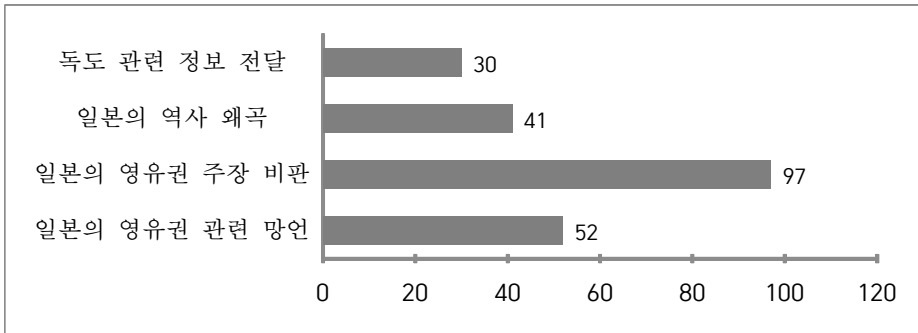
북한은 교과서뿐만 아니라 도서 출판을 통해, 독도 영유권 강화에 힘쓰고 있다. 중편사화 『독도의 파도』를 출판하여 일제강점기와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비판했으며 『독도 이야기』, 『옛 지도로 보는 독도』를 차례로 출간했다. 특히 『옛 지도로 보는 독도』는 우리 민족, 일본, 유럽 및 외국의 옛 지도를 집대성하여 국제사회 속 인정받은 독도의 모습을 기술했다. 이 책은 총 100개의 지도를 나열함으로써, 독도가 한반도 영토라는 정당성과 그 당위를 강조하고 있다.

『독도 이야기』는 신라시대 ‘연오랑과 세오녀’부터, 조선시대 ‘안용복’까지, 시대별 역사사료를 통해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 조작’, ‘독도 채굴권 소송’, ‘국제사법재판소 독도문제 회부’ 등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보여주는 사건을 나열하며 그에 대한 부당성과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다.

북한은 우표, 극영화, 담뱃값, 휴대폰 게임 등 독도관련 상품을 제작하여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도 한다. 독도 관련 우표는 세 차례²³⁾ 발행되었고 영유권 주장을 위한 고지도²⁴⁾를 새겨놓음으로써, 일본의 주장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한 독도를 소재로 한 극영화 ‘피묻은 락패’ 전·후편을 제작했고 북한 담배 ‘하나’에는 동도와 서도를 구분하여 독도를 새겨 넣었다. 특히, 남북이 합작으로 휴대폰 게임을 개발하기도 했는데 ‘독도를 지켜라’는 일본의 독도 망언에 대한 항변을 주제로 설계되었다. 독도에 대한 북한의 관심은 로동신문에서도 드러난다. 1965년부터 2018년 9월까지의 로동신문 기사를 분석한 결과 총 220건이 보도되었다. 그 중,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비판하는 내용이 9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의 망언, 역사 왜곡뿐만 아니라 독도 관련 정보(독도 우표 발행, 남한 독도 행사 등)를 기사화했다.

23) 조선의 섬 독도(2004), 독도의 생태환경, 조선의 섬 독도(2014)

24)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입증하는 18세기 초의 조선 ‘8도 전도’

<표 3> 로동신문에 보도된 독도 관련 기사 (1965~2018.9)

(출처: 로동신문)

(2) 남북 공동보조방안 제언 - 남북 공동 독도 기념일 제정

남북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 왜곡, 영유권 주장에 대해 비판하며 정부·민간 차원의 대응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시네마현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의 정부 기념일 격상을 요구하고 일본 정부가 2013년부터 매년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는 것을 보면, 남과 북의 대응은 모호하다. 언론과 성명을 통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지만 북한은 독도 기념일을 지정하지 않았고 남한의 독도 기념일은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지 않아 결속력이 떨어진다. 남한은 민간단체 주도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날짜인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했지만, 정부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독도는 민족성이 높은 의제인 만큼, 남북 공동보조가 용이하며 남북 대화 분위기 유지도 쉽다.

같은 역사를 공유한 남북은 독도 기념일 공동 제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형성에 기여하며 연쇄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특히, 법정 기념일 제정은 국회의 동기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남북국회회담’을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6·15공동선언, 10·4 공동선언에 대한 남북 공동 기념식같이, 남북 공동 독도 기념일 제정은 교류협력(남북공동기념행사 개최) 정례화에 도움이 된다.

기념일 제정은 교육 분야에서의 남북 회담도 촉진한다. 지난 2010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16개 시·도 교총 등과 함께 독도의 날을 공동 선포했으며 10월 한 주는 독도 특별 교육 주간으로 운영된다. 남북 공동 독도 교육을 추진할 수 있으며 2008년 이후 끊긴 ‘남북교육자 통일대회’를 재개하는 기제로 활용될 수 있다.

독도는 관광 소재로도 사용될 수 있다. 휴전선 이남에 위치한 독도는 북한 주민들의 입도(入島)가 불가능하다. 공동 기념일이 제정되면, 입도 가능성이 제고되며 독도를 가기 위해 울릉도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만큼, 남북 관광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다. 또한, 휴전선 통과 시 발생할 수 있는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남북군사실무회담’이 개최되고 금강산, 개성에 이어 새로운 남북의 접점이 생기게 된다. 독도 기념일 제정은 단순한 민족성 제고뿐만 아니라, 남북회담의 활력을 불어넣으며 교류협력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

2) 일본군 성노예

(1) 북한의 입장

지난 2015년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는 조선 반도의 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에도 있다.”²⁵⁾라고 말하며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다. 북한은 일본의 성노예 범죄를 ‘특대형 인권유린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2권의 단행본과 1권의 소설을 통해, 일본군 성노예 진상을 밝히고 있다. 2004년 발행된 『20세기특대형범죄 일본군성노예제도』에 따르면, <<조선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연행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가 총 38명의 위안부 피해자 증언을 확보했으며 일본군 성노예 연행체계 및 수법을 상세히 기술하여 일본의 책임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다. 2017년에 출판된 『일제의 일본군성노예범죄와 조선인강제연행진상규명 문헌자료집』은 진상조사보고서에 초점을 두어 총 10개의 보고서²⁶⁾를

25) 연합뉴스, 「北 "위안부 피해자 북에도 있다…올바로 배상해야"(종합)」, <http://www.yonhapnews.co.kr/northkorea/2015/11/06/1801000000AKR20151106000551014.HTML> (검색일:2018.9.30.)

26) 청진에서 감행한 일본군의 성노예 범죄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일본군성노예 생존자 박영심의 피해실태와 관련한 진상조사보고서 등

수록했으며 일본의 위안소 설치 경위와 운영관리 상황을 지역에 따라 기술했다. 소설 『네딩이의 얼음』은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문학으로 승화시켰고 일본군 성노예에 대한 북한 사회의 관심과 분노를 방증하고 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북한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다. 『미제와 일제의 조선침략 죄행(1930-1990년대)』(중학교 제 6학년용)에는 “저들의 과거 죄행을 잘못했다고 빌지도 않으며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도 하지 않겠다고 요리조리 구실을 대며 피하는 것이다.”²⁷⁾라고 쓰여 있다. 북한은 일본의 부적절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으며 일본군 성노예에 대한 문제를 사회 전반으로 확장해나가고 있다. 로동신문은 1992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일본군 성노예 관련 기사를 총 247번 보도했으며 일본의 보상과 책임, 청산을 주장하는 ‘문제 해결 촉구’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신문 전면에 진상조사보고서²⁸⁾가 실리기도 하며 남한의 ‘수요집회’, ‘남북해외 여성토론회’, ‘아시아련대회’ 등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움직임을 보도하고 있다.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연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대변인 담화’는 발표될 때마다 신문에 담화 전문이 게재²⁹⁾된다. 주목할 만 한 점은 남한의 정당, 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신문에 게재되었다는 것이다. 「북과 남이 힘을 합쳐 <중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공동투쟁을 벌려나가자」³⁰⁾라는 기사를 통해 남북 공동대응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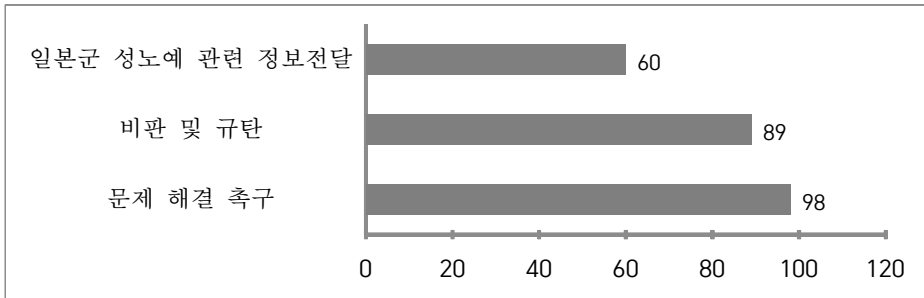
27) 허성철, 2002, 『미제와 일제의 조선침략 죄행(1930-1990년대)』(중학교 제 6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p.7

28) 1999년 <청진에서 감행한 일본군의 성노예범죄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2004년 <이전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박영심의 피해실태와 관련한 조사보고서> 등

29) 2003년, 2017년에 3번, 2012년, 2013년, 2015년, 2016년은 각각 1번, 2014년에 2번 게재되었다.

30) 로동신문 1992년 3월 21일자

<표 4> 로동신문에 보도된 일본군성노예 관련 기사 (1992~2018.9)



(출처: 로동신문)

(2) 남북 공동보조방안 제언 -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상봉 추진

남한은 북한 일본군 성노예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지 못했다. 학위 논문 1개와 단행본 3권만이 북한과 일본군 성노예를 연관 지어 연구했고 그마저도 관련 내용이 잠깐 언급된 정도다. 하지만, 남과 북 모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이며 같은 상처와 비극을 공유한 한민족이다. 게다가, 북한은 일본과 성노예에 대한 합의나 청구권 협상이 없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남북 공동대응 의제로 활용될 수 있으며 민족성과 역사에 기반하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피해자끼리의 교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 당국 차원이 아닌, 피해자 주도의 교류협력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피해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연대 강화를 위해 ‘남북 피해자들 간의 상봉’이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에 있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는 명확히 조사되지 않았다. 1998년 기준으로 북한에 신고된 생존자는 260여명 이었으며 그 이후에는 상세한 정보를 알아내지 못했다.³¹⁾ 『20세기특대형범죄 일본군성노예제도』에 따르면 총 38명의 피해자가 증언을 했고 최연소 피해자는 91세, 최고령 피해자는 102세 (2018년 기준, 만 나이)이다. 지난 이산가족 상봉 당시, 북한 최고령 이산가족이 91세³²⁾인 점을 감안하면, 북한에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

31) BBC 코리아는 북한 일본군 성노예 생존자 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 BBC, 「위안부: 한국 위안부 생존자 27명... 북한에는 몇 명 남았을까?」, <https://www.bbc.com/korean/news-44678403> (검색일:2018.9.28.)

이 높다. 특히, 남한 생존자는 91세 이상은 물론, 102세 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상봉’은 현실화될 수 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대표적인 인도적 교류다. 유엔 안보리 제재에 위반되지 않으며 다른 의제에 비해 남북 상호 협력이 용이하다. 특히, 성노예 문제로 인한 남북 접촉은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수 있고 남북관계에 지속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다. 남북 학자 간 교류, 일본군 성노예 보상 및 청산을 위한 공동보조 등을 통해 교류를 정례화하며 남북 상호협력을 활성화 한다.

<표 5>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생존자 현황

	85~89세	90~95세	96세 이상	계
남한	12	13	3	28
북한 ³³⁾	-	15	22	37

(출처: 화해·치유재단, 20세기특대형범죄 일본군성노예제도)

3) 문화유산

(1) 북한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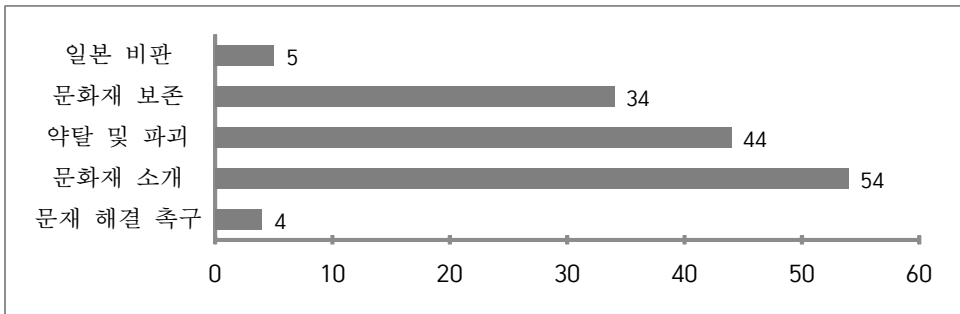
북한은 문화재에 관심이 많다. 특히, 김일성·김정일과 문화유산을 연관하여 서적을 출판했고 민족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족문화유산을 귀중히 여기시며』는 북한 문화유산에 관한 김일성의 일대기를 서술한 책으로, 동명왕릉, 고구려고분벽화, 리조실록(조선왕조실록) 등 김일성이 북한 문화유산에 끼친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민족문화유산보존관리사업에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김정일의 업적을 다룬 책으로, 김일성·김정일 모두 민족문화와 연관 지은 점이 눈에 띈다. 이는 북한 주민이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예상하게 한다.

32) 중앙일보, 「남북 이산가족 상봉 최고령자는 101세」,
<https://news.joins.com/article/22860725> (검색일:2018.9.28.)

33) 북한 생존자는 파악되지 않아 증인자 38명 대상(한 명은 나이를 밝히지 않음)으로 연령만 산출.

로동신문은 1957년부터 2018년 9월 까지 문화재 관련 기사를 총 141건 보도하며 문화재에 대한 포괄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화재 소개’에 대한 언급이 54건으로 가장 많으며, 문화재 청산, 보상 등을 담은 ‘문제해결 촉구’와 ‘문화재 보존’, ‘약탈 및 파괴’도 언급되고 있다. 특히, 지난 1965년에는 남한에 있는 불국사와 석굴암을 언급³⁴⁾하며 보존 필요성을 강조했고 남북 공동대응의 중요성을 암시했다. 1966년에는 「<선조들의 문화유산>을 보호하라³⁵⁾」 라는 기사를 통해, 관동 8경 중 하나인 청간정에 대한 보존을 주장했다.

<표 6> 로동신문에 보도된 문화유산 관련 기사 (1957~2018.9)



(출처: 로동신문)

(2) 남북 공동보조방안 제언 - 남북문화재공동관리기구 신설

1992년 5월 열린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문화재 문제 해결을 위한 학자들 간 접촉이 이루어졌다. 학술회의, 학술대회 등을 통해 상호 교류했고 언론사³⁶⁾의 문화유적 답사 사업이 진행되었다. 개성 영통사 복원을 시작으로, 금강산 신계사, 만월대 까지 북한에 위치한 문화유산을 공동 조사·복원·발굴 하며 민족 동질성을 제고했다.

남북이 함께 완성한 문화재 사업은 연쇄적인 효과를 낳았다. 영통사 낙

34) 로동신문 1965년 11월 14일자

35) 로동신문 1966년 10월 13일자

36) 1997년 중앙일보 북한 문화유적 답사 사업, 1998년 경향신문 북한 문화재자료 정보화 사업.

원식때, 불교신도를 포함한 남한 방문 인원이 300명에 달했고, 총 500명이 참석했다. 또한, 성지순례 장소로 활용되어 2년 후에는 약 4,000명의 남북 불교 신자들이 영통사를 찾았다. 금강산 신계사 또한 인적 교류의 폭을 넓혔다. 2007년 10월 복원된 신계사는 총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낙성식을 가졌고 이후에도, 성지순례, 남북공동법회 장소로 사용됐다. 남북 공동 문화재 보존 사업은 사회문화 교류뿐만 아니라, 거대한 인적 교류의 기회를 마련해주었고 남북관계가 경색된 시기에도 완전히 중단된 적은 없었다.³⁷⁾

그러나, 남북 문화재 사업은 크고 작은 정체기가 여러 차례 있었다. 2006년 4월 ‘북한 고구려 고분군 남북공동 실태조사’ 이후 7월에 예정되어 있던 개성만월대 공동 발굴은 남북관계 경색³⁸⁾으로 무기한 연기, 1년 뒤에 재개하였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에도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공동조사는 연기되었고 2018년 9월까지 아무런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문화유산 보존 사업은 남북관계와 외부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종속변수였다. 남북고위급회담 등의 하위주제로 다루어졌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남북 공동기구가 부재했기 때문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문화재 사업을 연기한 적이 잦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남북의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문화재공동관리기구’가 필요하다. 공동기구는 문화재 관리·보존뿐만 아니라, 해외 문화재 반환 사업도 관리한다. 북한은 약탈 문화재에 관련하여 『일제의 조선문화재 약탈사』라는 책을 쓰기도 했는데, 임진조국전쟁시기(임진왜란)와 조선강점시기(일제강점기) 등 시대별로 나누어 서적, 금속활자, 각종 문화재의 약탈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공동관리기구는 기본적으로 문화유산 관련 남북교류협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기구다. 회담 방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교류협력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37) 대표적인 예로 <만월대 공동발굴>은 개성공단 폐쇄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 상황 속에서도 끊이지 않았고, 지난 9월 3년여 만에 ‘제8차 만월대 공동발굴 재개’를 합의했다.

38) 2006년 7월 5일 북한은 대포동 1기를 포함한 미사일 7기 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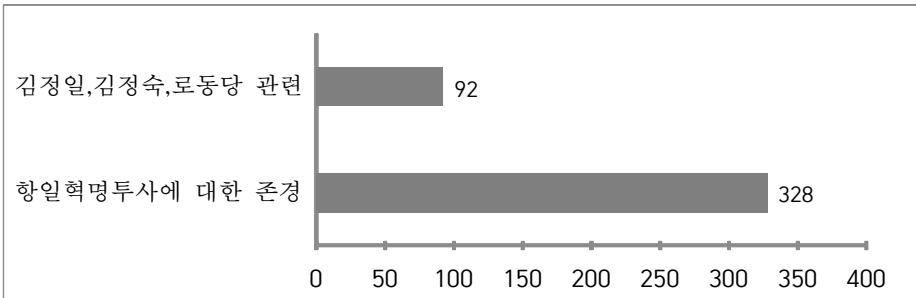
문화유산은 외세 개입이 적은 교류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교체에 따른 영향 차단’이다.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며 독립성과 주체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남북 당국 간 주도 보다, 문화유산 보존·관리·환수를 추진하는 학자들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자 중심 교류협력은 정치적 사안을 배제할 수 있으며 특정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

4) 독립운동

(1) 북한의 입장

북한 계층구조는 핵심계층, 기본(동요)계층, 복잡계층으로 나뉜다. 핵심계층에는 항일투쟁 참가자 및 가족, 즉 독립운동가가 포함되며 이와 상반된 복잡계층에는 친일파 등이 포진되어 있다. 북한은 독립운동을 김일성, 김정숙과 연관지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혁명력사』를 출판했으며 독립운동에 대한 북한 주민의 관심을 높였다.

독립운동은 역사를 공유한 남북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 의제이다. 남북 모두 당사자이며, 대화와 교류협력을 이어가는 데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독립운동은 사적지가 남북에 고루 분포되어 있어 남북교류(학술 및 관광) 강화에 활용될 수 있다. 한편, 로동신문은 1950년부터 2018년 9월까지, 독립운동(항일운동) 관련 기사를 총 339건 보도하였다. 그 중 62건은 항일혁명투사 정보 전달에 관한 내용으로 김일성, 김정숙, 로동당과 관련되어있었고 나머지 277건은 항일혁명투사에 관한 기사였다. 항일혁명투사 서거를 기념하기 위해 독립운동 발자취를 신문에 실고 업적을 나열하며 독립운동가에 대한 존경을 보여주었다. 눈에 띄는 점은 김일성, 김정숙, 로동당과 관련된 기사는 1967년부터 1980년도까지 집중되어 있고 1990년부터는 일반 항일투사들에 대한 언급이 강화되었다. 즉, 수령과 녀성영웅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가 약화되었으며 보편적인 항일운동가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표 7> 로동신문에 보도된 독립운동 관련 기사 (1950~2018.9)

(출처: 로동신문)

(2) 남북 공동보조방안 제언 - 남북공동역사교과서 편찬

한반도는 분단 이전 같은 역사를 공유했다. 그러나 분단 이후 남북은 각자 다른 역사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분단 이전 역사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인식을 형성했다. 특히, 북한은 주체사관의 획일화를 강조하며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체제의 정통성 강화를 위한 역사를 편찬했다. 남북 독립 운동가들이 함께 펼친 항일운동은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역사 인식으로 인해 동일하게 서술되지 않았다.

북한의 역사는 일반 역사와 혁명역사로 구분된다. 일반 역사는 『조선 력사』, 혁명역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력사』,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혁명력사』를 통해 기록된다. 혁명역사가 대부분의 독립운동 역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 력사』는 고등중학교 2학년, 6학년용 교과서를 제외하곤 ‘선사시대부터 일제강점기 전까지’로 내용이 한정되어 있다. 2학년, 6학년 교과서도 일제강점기를 다루긴 하지만 광주학생 항일운동(1929)이 가장 늦은 사건이고 그 이후의 사건은 다루지 않는다.

교과서 마지막 부분에는 김일성에 대한 충성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 2학년용 교과서는 3.1 운동과 6.10 만세운동을 폄하하며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강한 당이 없이는 나라도 독립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³⁹⁾로 끝난다. 6학년용 교과서는 1920년부터 1930년대 초까지 진행된 독립운동이 올바른 지도를 받지 못하여 실패했다고 규

정하고 “이 시기 투쟁은 위대한 수령의 출현을 목마르게 고대하였다.”⁴⁰⁾라고 말하며 마무리된다.

북한 역사의 편찬 목적은 『력사사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력사사전』에 따르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 역사와 그이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깊이 학습하고 연구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⁴¹⁾라고 하였다. 즉, 김일성이 중심이 된 혁명역사와 항일무장투쟁은 북한 사회에서 최고 대우를 받고 있으며 이는 역사적 편향을 초래했다. 북한에게 독립운동은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으로만 비춰지며 남한 독립운동은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는다.⁴²⁾ 북한 독립운동은 김일성과 김정숙에 의해 이루어진 일제 타도 운동이며 다른 항일혁명투사들은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공산주의적 혁명가’⁴³⁾들로 평가된다. 한편, 남북 교과서에는 서로 다른 내용이 존재하며 조선혁명군, 조국광복회, 일본항복과정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남과 북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함께 공유하게 된다면 서로의 마음도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⁴⁴⁾"이라고 말했다. 항일운동을 함께 펼친 남북 독립 운동가들은 서로 다른 역사관을 통해 후손에게 전해지고 있다. 한반도 역사는 두 개로 갈라졌고 남북의 괴리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남북공동역사교과서 편찬이 요구된다.

일제강점기 이후 역사를 제외하곤 남북 교과서 내용은 유사하다. 남북 공동역사교과서 편찬의 중점은 북한의 주체사관 색채를 지우는 데 있으며 이는 독립운동 역사 공유, 나아가 남북 역사를 하나로 통합하는데 기

39) 리태영, 2001, 『조선력사』(고등중학교 제2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p.99

40) 리인형, 2002, 『조선력사』(고등중학교 제6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p.33

41)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력사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1, pp.623-624

42) 남한에서 일컫는 독립운동은 북한에서 ‘독립군운동’으로 불리며 언급정도가 절대적으로 적다.

43)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력사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1, p.989

44) 연합뉴스, 「문대통령 "독립운동 역사 공유하면 남북의 마음도 가까워질 것"」,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03/0200000000AKR20180703097000001.HTML>
(검색일:2018.8.2.)

여한다. 그러나 주체사관은 북한 체제유지의 핵심내용이며 김일성을 우상화하며 국가를 존속시켜왔다. 김일성 없는 공동역사교과서는 북한의 동의를 얻기 힘들며 교과서 편찬을 위한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표기와 점진적 삭제’가 요구된다. 우선, 남북의 역사 사실을 모두 기재하고 북한 주민 스스로 지나친 우상화를 인지해야 한다. 가령, 역사가 상이하게 기록된 사건은 교육 정상화에 활용될 수 있다. 남한은 일본항복과정을 원자 폭탄과 일왕 항복 선언으로, 북한은 김일성의 조국해방작전으로 표현하고 있다. 김일성의 항일운동은 남한 교과서 어디에도 다루어지지 않으며 북한 교과서에만 언급되어 있다. 정보의 공백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주체사관에 대한 의문을 초래한다. 상호 존중을 위한 교과서 공동표기는 ‘역으로’ 편향된 북한의 역사 인식을 바꾸어놓을 수 있다. 공동역사교과서 편찬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념이 배제된 교과서를 완성한다.

<표 8> 남과 북의 서술이 다른 대표적인 역사사건

	사건명	중심내용	비고
남한	조선혁명군	1929년 조직. 이준식, 양세봉, 윤환 등이 주요 인물.	'조선혁명군' 조직 일자, 주요 인물 다름. 북한에만 존재하는 '조국광복회'
	-	-	
	일본항복과정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일왕의 항복 선언	
북한	조선혁명군	1930년 김일성 주도로 조직, 김형권, 차광수, 김혁 등 청년공산주의자 위주.	'일본항복과정' 서술 방식이 다름.
	조국광복회	1936년 김일성 주도로 조직. 조국광복회 10대 강령 정비, 최초의 반일 민족통일전선조직 ⁴⁵⁾	
	일본항복과정	김일성의 조국해방작전 ⁴⁶⁾	

45) 한영찬, 2001, 『조선력사』(고등중학교 제4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pp.51~52

46) “일제는 조국해방작전이 시작된 지 1주일밖에 안되는 1945년 8월 15일에 무조건 항복하였다.”; 한영찬, 앞의 책, p.87

독도, 일본군 성노예, 문화유산, 독립운동과 같은 의제는 남과 북 어느 한 쪽 주도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남북 모두의 이해관계가 결부되어있고 역사성과 민족성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의제들은 한반도 문제해결의 주도권을 남북 중심으로 재편성할 것이며 남북교류협력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킬 것이다. 남북 회담 의제는 역사적·민족적 의제를 중심으로 재편성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새로운 접근법을 정립해야 한다.

IV. 남북관계 접근법 제시

현재까지 논의된 남북관계 접근법은 크게 기능주의와 상호주의로 나뉜다. 박정희 정부의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6.23 선언),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모두 큰 틀에서 기능주의를 따르며 비정치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한 경제·사회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한다. 김대중 정부는 기능주의를 체계화하여 햇볕정책을 설계했고 노무현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을 통해 그 기초를 이어갔다.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보단 지원하고 포용하는 정책이 대체로 기능주의적 특성을 띤다.

상호주의는 이명박 정부를 기점으로 대두되었다. <상생·공영 정책>은 엄격한 상호주의 원칙을 내포하고 있으며 ‘비핵·개방·3000’ 구상을 통해 조건을 걸고 있다. 즉,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국민소득 3000달러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가 유지하던 선(先) 교류협력을 지양하고 ‘선(先) 비핵·개방, 후(後) 교류협력’을 주요 골자로 삼는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 간 상호 거래를 중시하며, 특정한 행위나 요구가 시행되었을 때, 대북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발표하며 상호주의적 접근에 정책 토대를 두었고 신뢰구축을 우선순위로 삼으며 남북관계를 이끌었다.

1. 기존 이론의 한계

남한은 박정희 정권 때부터 대북정책을 전개해나가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추진했다. 하지만, 어느 정권도 한반도 영구 평화를 정착시키지 못했고 임기 내 정착시키더라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기능주의와 상호주의 모두 이론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대북정책 결과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 먼저 기능주의를 대표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살펴보면, 가장 큰 논란은 ‘과도한 자본 제공’에 있다. 물적 공세를 강화한 두 정권은 퍼주기 논란을 야기했고 기능주의를 통한 대북정책의 목표가 실현되지 않았다. 경제협력에 치중한 대북정책은 개성공단, 금강산 산업 등 거대한 자본이 남북교류를 이끌었다, 그러나 북한의 변화와 평화를 위해 지불한 비용에 비해, 정책의 결과는 두드러지지 않았고 기능주의가 목표로 하는 정치 통합은 큰 진전이 없었다.

기능주의적 접근을 실패로 규정한 <상생·공영 정책>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엄격한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대북정책을 실행했다. 국제관계의 기본이론인 ‘Give and Take’와 ‘Tit for Tat’을 남북관계에 적용시키며 북한의 선제 조건 이행이나 변화 없이는 대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부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보다는 방관했고 이는 남북 간 신뢰를 약화시켰다. 특히, 핵·미사일 실험을 통한 안보 위협이 증가할 때에도, 대화를 통한 협상보다는 제재와 갈등으로 문제를 풀었다. 또한, 5.24 조치, 개성공단 폐쇄 등을 통해, 지난 정부가 구축한 남북교류협력을 무력화했다. 상호주의 대북정책은 북한과의 대화를 중단시키며 상호 이해관계 충돌을 빚었다.

2. ‘문화주의’ 제언

남북 대화가 처음 이뤄진 박정희 정부부터 지난 박근혜 정부까지, 대북정책은 다양한 방법으로 실행되었고 정권마다 그 내용은 제각기 달랐다. 모든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했지만,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남북관계는 심하게 요동쳤다. 기능주의와 상호주

의로 대표되는 과거의 대북정책은 모두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정치통합과 생산적·실용적 관계 형성을 목표로 한 두 이론은 큰 성과가 없었고 제자리로 회귀하거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남북관계의 지속가능성 제고시키고 교류협력의 일관된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접근법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기능주의와 상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관된 대북정책 수행을 위한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 앞서 언급한 독도, 일본군 성노예, 문화유산, 독립운동과 같은 민족적 의제들은 다른 의제에 비해 비교적 지속가능성이 높으며 남북교류협력을 제고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남북관계 접근법을 ‘문화주의’로 명명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주의는 남북이 공유하는 문화와 역사를 활용한 접근법으로써, 문화를 통한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한다. 단기적인 목표는 ‘남북관계의 지속가능성 제고’이며 장기적으로는 ‘평화 구축과 통일 담론 형성’을 지향하고 있다. 문화주의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첫째는, ‘문화 접촉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둘째는, ‘의제 다변화’, 마지막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착’이다.

1) 문화 접촉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문화주의의 첫 단계는 ‘문화 접촉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이다. 남북관계 의제를 문화 중심으로 재편성하고 지속적인 남북 교류를 추진한다. 이러한 특징은 기능주의와 유사해보이지만, 제도의 본질은 다르다. 기능주의는 비정치 분야, 그 중에서도 경제 분야 의제를 중요시한다. 경제협력을 통한 정치 통합을 피하며 개성공단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기능주의는 정치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 제약이 따랐다. 개성공단을 건설하여 비정치분야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줬지만 정치적 연결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경제 분야는 상호 이해관계가 강하게 개입되지 않았고 서로를 향한 ‘위협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문화 접촉은 경제 분야의 접촉과 다르다. 우선 남과 북 공통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개입되어 있다. 독도, 일본군 성노예, 문화유산과 같은 의제

는 어느 한 쪽을 위한 선택이 아니다. 서로가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같은 문화를 향유했기 때문에 도출된 민족적 의제다. 경제 분야처럼 어느 한 쪽의 일방적 결렬 혹은 연기 가능성이 희박하다. 남북은 각자의 언론과 단행본을 통해 역사적 의제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남북관계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한다.

경제 분야와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국제 사회의 개입’이다. 경제적 접촉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위반 사항이며 이는 남북관계의 지속성을 훼손한다. 국제 사회의 압박과 개입이 만연해있기 때문에, 의제 선정과 교류 과정에 있어서도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기 힘들다. 남북관계의 경제적 접근은 이미 국제사회 이슈로 자리 잡았으며 그 안에서 남북이 주도성을 확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편, 문화접촉은 의제의 다변화를 추진할 수 있으며 남북교류협력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

2) 의제 다변화

남북교류협력은 연쇄 반응을 통해 다양한 종속 결과를 이끌어낸다. 1990년에 일어난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은 고위급 회담의 정례화는 물론, 남북 UN 가입, 남북핵통제 등을 위한 다양한 분과위원회를 만들었다. 남북교류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성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정치적 의제나 회담은 결렬 가능성이 높으며 국내 정치 상황이나 한미연합훈련 등 미국 관련 상황에 의해 쉽게 연기된다. 반면, 문화적 의제는 남북이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을 만큼, 회담 방해요소가 비교적 적고 결렬 및 연기 가능성도 낮다. 실제로, 4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을 위한 실무접촉>은 공동보도문·합의문을 세 번 채택했고, 합의서 도출하지 못한 3차 접촉에서도 실무접촉의 의의와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4차 접촉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 유해공동발굴 사업은 다른 의제에 비해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남북공동발굴단을 조직하고 남북이 함께 현장을 조사하기도 했다. 양측은 서로의 의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지체 없이 추진해나갈 수 있었다.

문화적 의제는 다양한 연쇄 효과를 가진다. ‘독립운동’을 예로 들자면,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과 같은 ‘독립운동가 유해 공동발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3.1절, 6.10 만세운동 등 특정 사건을 기념하는 행사를 정례화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독립운동은 남북공동역사교과서 편찬을 촉진시키기도 하며 이는 남북 학자 간 교류, 현장 조사 등을 통한 실무 접촉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렇듯, 문화적 의제는 의제 다변화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의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독립운동’의제는 문화뿐만 아니라, 공동행사 정례화, 학자 간 남북 이동·현장 조사 안전성을 위한 군사실무회담 등을 연쇄적으로 만들어내며 군사, 교육 등의 분야로 확장될 수 있다. 의제다변화는 지속적인 남북 대화를 활성화하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3)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착

문화주의의 최종 목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착’에 있다. 문화 접촉을 통해 남북교류에 지속가능성을 부여하고, 의제 다변화를 통해 회담의 정례화를 촉진하다. 종국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남북이 확립하여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구축한다. 문화주의는 단순한 정치 통합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향후 통일을 위한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목표로 한다.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남북교류협력 지속가능성 제고에 의의를 두며 역사적·민족적 의제 상징과 다변화를 추진하여 남북교류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민족적·역사적 의제는 사회문화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 인도적 분야로 확장되며 ‘끊이지 않는 남북회담 회로’를 만들어낸다. 먼저, 독도의제는 남북 공동 독도기념일 제정을 통해, 공동행사 정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남한의 독도 특별 교육주년을 북한에 적용하여 남북 교유자 간 ‘남북교육자통일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남북국회회담’을 이끌어낼 수 있다. 독도는 관광분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군사적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를 촉진한다.

일본군 성노예 의제는 피해자 간 상봉을 추진하여 인도적 교류를 활성화한다. 남과 북은 이미 아시아연대대회 등에서 공동보조를 취한 적이 있으며 공동결의문을 작성하여 대화 지속성을 높였다. 일본군 성노예 의제는 보상 및 청산을 위한 학술 토론회, 피해자 실태 조사를 위한 남북 학자 간 교류·현장 조사를 이끌어낼 수 있다. 특히, 성노예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함께 치유하기 위한 공동행사 정례화를 유도할 수 있다.

문화유산 의제는 단순한 보존·복원 사업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환수 문제도 다룰 수 있으며 문화재에 대해 포괄적인 접근을 취할 수 있다. 보존, 복원, 환수 방안에 대한 남북 학자 간 교류나 학술 토론회를 이끌어낼 수 있고 특정 문화재는 민족성을 고취시키는 기제로 활용될 수 있다. 남과 북에 모두 있는 조선왕조실록(북한은 ‘리조실록’)과 팔만대장경(북한은 ‘해인사 장경의 인쇄본’) 등은 같은 문화유산을 공유하는 ‘민족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

독립운동 의제는 남북공동역사교과서 편찬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남북교류를 제고할 수 있다. 독립운동가 유해 발굴, 남북 공동 기념행사(3.1 운동, 6.10만세운동 등) 등을 유도하며 인적 교류를 활성화 하고 현지 조사, 학술 교류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 특히, 남한 혹은 북한에서 학술 교류나 행사가 열리게 되면, 상호 방문 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실무회담을 이끌어낼 수 있다.

독도, 일본군 성노예, 문화유산, 독립운동은 문화주의를 형성하는 대표적인 의제들이다. 네 가지 의제 모두 의제 다변화를 통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문화 교류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 교육, 인도적, 관광 분야의 남북 교류를 이끌어낸다. 문화적 의제는 다른 의제에 비해 남북 의지가 높고 성과 도출이 용이하다. 문화 접촉을 통한 의제 다변화는 한반도에 남북교류협력을 끊이지 않게 만들어주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구축한다.

〈표 9〉 문화주의에 따른 의제 선정과 연쇄효과

	주요 의제	연쇄 효과	비고
독도	남북 공동 독도 기념일 제정	남북국회회담, 남북군사실무회담 ⁴⁷⁾ , 남북교육자통일대회, 학술교류, 공동기념행사	정치, 군사, 교육, 사회문화 분야로 확장
일본군 성노예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간 상봉 추진	남북군사실무회담, 학술 교류, 공동기념행사, 남북 공동 현장 조사	군사, 교육, 사회문화, 인도적 분야로 확장
문화유산	남북문화재공동 관리기구 신설	남북군사실무회담, 학술 교류, 보존·복원·환수 위한 남북회담	군사, 교육, 사회문화 분야로 확장
독립운동	남북공동역사교과서 편찬	남북군사실무회담, 학술 교류, 공동기념행사, 남북 공동 독립운동가 유해 발굴 및 현장 조사	군사, 교육, 사회문화 분야로 확장

V. 결론

남북관계는 긴장과 완화를 반복하며 이어져왔다. 남북교류협력은 지속 가능성을 확립하지 못했고 대북 정책도 일관되게 수립되지 않았다. 남북관계는 항상 국내외 여론의 이견(異見)이 뒤따랐으며 어느 의제든 포괄적인 지지를 얻지 못했다. 이는 불안정한 남북관계를 초래했으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 확립을 방해했다. 특히, 남북관계는 남북이 당사자인 의제보다, 비핵화와 같은 외세 개입이 심한 의제를 중심 의제로 상정했고 문제 해결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훼손되었다.

갈등과 반목이 오가는 한반도를 극복하기 위해선, 남북의 상호 신뢰와 협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의제를 개선하여 남북주도의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고 교류협력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남북은 분단

47) 남북군사실무회담은 남북 간 이동 및 교류 시 발생하는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의제로부터 연쇄효과가 도출된다.

이전 같은 역사를 공유한 만큼, 민족적·역사적 의제는 비교적 회담 결렬 가능성이 적고 중단되어도 조속히 재개된다.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 문화유산 공동 복원 사업을 통해, 민족이나 역사를 다루는 의제는 남북교류협력의 실현가능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남북의 역사성을 높일 수 있는 의제는 사회 곳곳에서 찾을 수 있고 독도, 일본군 성노예, 문화유산, 독립운동이 대표적인 예다. 남북은 공동보조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광범위한 지지를 통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위와 같은 의제들은 북한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로동신문과 단행본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연구 성과를 홍보하고 있다. 이는 회담 지속 가능성과 정례화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회담 정례화는 접촉 방면 확대로 이어지며 정치, 군사, 사회문화 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남북관계 접근법을 ‘문화주의’로 명명한다. 문화주의는 남북이 공유하는 문화와 역사를 활용하여 관계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 있다. 특히, ‘문화 접촉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의제 다변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착’으로 이어지는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하여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보여준다. 문화주의는 기존 접근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여 남북관계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 확립에 크게 기여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포함할 수 있다. 먼저, 비핵화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비핵화는 한반도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비핵화 의제는 한국을 배제시키며 국제사회나 미국의 영향이 크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핵화 문제를 우선순위로 상정하면, 한국의 입지는 줄어들는다. 일단, 민족적·역사적 의제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남북 간 상호 신뢰를 쌓은 뒤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도 늦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 남북이 함께 주도권을 갖는 것이다.

다음은 민족적 의제에 대한 실효성 여부 문제다. 기능주의에서 봤듯이, 경제 관련 의제는 상호 불신을 쉽게 완화할 수 있으며 정치통합을 위해 가장 많이 쓰인다. 하지만 대북정책에서의 경제적 접근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한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다. 경제적 의제는 오히려 주도권 확립을 방해하며 한반도 문제를 국제사회로 회부 한다. 남북관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민족적 의제가 가장 효율적이며 경제적 의제 이상의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

한편, ‘국민의 지지’는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독일을 통일로 이끈 동방정책이 20년 넘게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이 원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지속가능성 제고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 확립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오래 지속되기 힘들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며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소통을 통해 남북관계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본 연구가 제안한 남북관계 의제와 문화주의는 국민의 지지로 비로소 완성될 수 있으며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국민적 합의는 민족적·역사적 의제에서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남북관계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보장한다.

【참고문헌】

〈서적〉

강홍수 외 2명, 1999,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고등중학교 제4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공명성, 2009, 『일제의 조선문화재 약탈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김도성 외 1인, 2005, 『지리』 (중학교 제 4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김상철 외 1명, 2013,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 (초급중학교 1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김연철, 2018, 『70년의 대화』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파주: 창비

김은택 외 1인, 2010, 『옛 지도로 보는 독도』, 평양: 평양출판사

김정락 외 12명, 1992, 『백두산 총서 - 관광』, 평양: 과학기술출판사.

김현, 2014,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민족문화유산보존관리사업에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돈 오버도퍼, 1998, 『두개의 코리아』, 서울: 중앙일보

리인형, 2001, 『조선력사』 (고등중학교 제1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리인형, 2002, 『조선력사』 (고등중학교 제6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리태영, 2001, 『조선력사』 (고등중학교 제2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박동진, 1991, 『민족문화유산을 귀중히 여기시며』,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박광철 외 4인, 2013, 『조선지리』 (초급중학교 1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박광철 외 4인, 2014, 『조선지리』 (초급중학교 제 2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박광철 외 4인, 2015, 『조선지리』 (초급중학교 제 3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박홍준, 2005, 『지리』 (중학교 제 1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백영희 외 1명, 2014,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혁명력사』 (고급중학교 제2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문영빈 외 2인, 2005, 『지리』 (중학교 제 5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명응범, 2005, 『지리』 (중학교 제 3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71, 『력사사전 1』,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71, 『력사사전 2』,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 오영철, 2001, 『조선력사』 (고등중학교 제3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임동원, 2015, 『피스메이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5년), 파주: 창비
- 장달중 외 2인, 2017, 『북미 대립』 (탈냉전 속의 냉전 대립),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장리준, 1999,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고등중학교 제5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장리준 외 1명, 1999,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고등중학교 제6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정남용, 2004, 『20세기특대형범죄 일본군성노예제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제갈명, 2001, 『조선력사』 (고등중학교 제5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조희승 외 1인, 2007, 『옛 지도로 보는 독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최동철 외 3명, 2013,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고급중학교 1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최현수 외 5인, 2013, 『지리』 (고급중학교 1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최현수 외 5인, 2014, 『지리』 (고급중학교 제 2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최현수 외 5인, 2015, 『지리』 (고급중학교 제 3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평화통일시민행동 외 1인, 2016, 『위기의 남북관계』 (6.15 공동선언에서 개성공단 폐쇄까지), 파주: 역사인
- 하상식, 2016, 『남북한의 통일 딜레마』, 서울: 해남
- 한영찬, 2001, 『조선력사』 (고등중학교 제4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허성철, 2002, 『미제와 일제의 조선침략 죄행(1930-1990년대)』 (중학교 제 6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허태희, 2016, 『해방 이후 남북관계 70년』, 서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황호남 외 2명, 2017 『일제의 일본군성노예범죄와 조선인강제련행진상규명 문헌자료집』,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국내 학술지〉

김근식, “대북포용정책과 기능주의: 이상과 현실”, 『북한연구학회보』 15권 1호 (북한연구학회, 2011)

배진수 외 1인, “북한 노동신문의 독도기사(1948~2008) 현황분석: 북일관계 및 한일관계 상관성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 18권 1호 (통일연구원, 2009)

이상균 외 2인, “2013 개정 북한 지리교과서에 제시된 독도 관련 내용 분석”, 『한국지리학회지』 6권 2호 (한국지리학회, 2017)

장세윤, “남·북한의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역사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7 (한국독립운동가연구소, 2001)

전영선 외 1인, “북한의 문화재정책과 남북 문화유산협력”,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48 (통일교육원, 2016)

최재목 외 1인, “북한 『노동신문』에 나타난 독도기사(2009~2017) 현황분석”, 『일본학연구』 제 52집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7)

〈신문 자료〉

로동신문, 2018.7.20., 「주제넘는 허욕과 편견에 사로잡히면 일을 그르치기마련이다」

연합뉴스, 「문대통령 "독립운동 역사 공유하면 남북의 마음도 가까워질 것"」,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03/0200000000AKR20>

180703097000001.HTML (검색일:2018.8.2.)

연합뉴스, 「北 "위안부 피해자 복에도 있다...올바로 배상해야"(종합)」 ,
<http://www.yonhapnews.co.kr/northkorea/2015/11/06/1801000000AKR20151106000551014.HTML> (검색일:2018.7.30.)

연합뉴스, 「3차 정상회담까지 D-12...주춤하던 남북관계 다시 시동 거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06/0200000000AKR20180906086300014.HTML> (검색일:2018.9.13.)

조선일보, 1999.6.3., 「차관급 접촉 합의서 전문」

중앙일보, 「남북 이산가족 상봉 최고령자는 101세」 ,

<https://news.joins.com/article/22860725> (검색일:2018.9.28.)

BBC, 「위안부: 한국 위안부 생존자 27명... 북한에는 몇 명 남았을까?」 ,
<https://www.bbc.com/korean/news-44678403> (검색일:2018.9.28.)

〈기타 자료〉

남북회담본부 사이트, <http://dialogue.unikorea.go.kr>

대통령 기록관, 「제15대 대통령 취임사」
<http://15cwg.pa.go.kr/korean/data/publication/chap/9802-1.php>
(검색일:2018.9.12.)

대통령 기록관, 「제16 대 대통령 취임사」
http://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catid=c_pa02062&artid=1309347 (검색일:2018.9.12.)

신동아 잡지 1999년 9월호

조선우표사, 2005, 『조선우표 :독도』, 평양: 조선우표사

장 려

비핵화에 따른 남북 경제협력 이슈 분석

- 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

한라대 경영학과 손은영·황태준

《 목 차 》

【요약문】

【본 문】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설계
- IV. 분석결과
-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요약문】

비핵화에 따른 남북 경제협력 이슈 분석

- 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

최근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북한의 비핵화 실현과 남북경협과 관련된 사업의 재개 등 많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세부적인 조사와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 분석을 위한 절차로 ‘빅데이터’라는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소셜네트워크 상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데이터를 뽑아내고 분석해내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이 분석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지 못했던 키워드들을 주제로 심층적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등의 차별성이 존재한다.

조사를 위한 분석 도구는 ‘텍스톰(Textom)’, ‘Ucinet6’, 그리고 ‘NetMiner’을 사용하였다. 텍스톰을 이용하여 네이버, 다음, 구글, 유튜브 등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키워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NetMiner와 Ucinet6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분석, 중심성 분석, CONCOR분석을 실시함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남북경협사업’,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같은 보편적 이슈가 도출되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관련한 이슈와 같이 대중들이 잘 알지 못했던 특이점이 있는 단어도 발견됨에 따라 더 세부적인 분석도 실시하여 비핵화와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의 경제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 비핵화, 경제협력, 빅데이터, 텍스트마이닝, 인도네시아

I. 서론

2018년 들어 한반도 정세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2018년 2월) 참여를 계기로 남북 관계는 ‘대화와 협력’ 국면으로 전환됐으며, 이후 남북 정상회담 3회(4, 5, 9월), 북중 정상회담 3회(3, 5, 6월), 북미 정상회담 1회(6월) 등이 개최되었다. 남북·북미·북중 정상회담의 주요 합의사항은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등 안보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관하여 우리 정부와 미국은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 이후 대북 제재 해제와 경제협력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의 조기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데에 반하여 북한은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관계개선)를 동시·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2018년 4월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핵·경제 병진노선을 중단하고 경제건설총력집중 노선을 국가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채택함에 따라, 국가재원을 경제개발에 집중하는 한편 대외관계정상화를 통한 자원조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정책기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대외무역은 물론 인도적 지원마저 급감하여 경제적 고립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경제개발을 위한 자원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¹⁾

이에 따라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는 비핵화 논의에 따른 진정성의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남북·북미 간 관계정상화 노력과 함께 비핵화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북한의 개방을 위한 수단이자 신뢰구축의 방편으로 남북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 선행연구 김익성(2016)에 따르면 남북경제협력과 교류는 최상의 대화채널이며, 현재 북

1) 이형근·최유정.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와 북일 경제협력 과제." 『KIEP 기초자료』 2018권 21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pp. 5-9.

한도 글로벌 경제로 나아가고 있는 현실 앞에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의존해 무역 의존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결국 남북경제협력방안이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북한의 경제개방을 유도함으로써 비핵화 등 정치·군사적 진전의 완화적 기능으로 작동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비핵화의 실현과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관심 동향분석은 이에 대한 세밀한 연구를 하게 함으로써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한편,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소셜미디어의 활용으로 데이터가 급증하고 있으며, 기존의 방대한 데이터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빅데이터’ 개념이 등장하였다. 이미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SNS를 통해 생산되는 빅데이터의 활용과 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문제의 해결은 물론 새로운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경제적인 성장의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기존에 실시하던 횡단적 조사나 종단적 조사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정해진 변인들에 관한 개인과 집단의 관계를 보는 데에는 유용하나, 빅데이터 분석은 훨씬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참여자의 생각과 의견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의 예측과 현상에 관한 복잡한 연관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소셜 미디어에서 비핵화의 실현과 남북경제협력 이슈 전반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내고 분석해내는 방법으로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보여주었던 제한적이고 수동적인 조사의 미흡함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중들의 의견이 가미될 것이며 이 기술을 토대로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남북경제협력방안에 관한 세부적인 이슈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비핵화의 실현에 있어서 북한의 경제 개방을 도출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이는 빅데이터의 활용가치를 증대시킬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비핵화 논의와 경제적 배경

핵무기가 등장한 지 70년이 넘는 오늘날까지 핵무기를 실제로 확보하거나, 이를 위한 기술적인 역량을 갖춘 국가의 수는 계속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의 무력 분쟁에서 핵무기의 사용은 줄곧 억제되어 왔는데 이러한 경향은 핵무장국 사이에 발생하는 국제분쟁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²⁾

이러한 국제분쟁은 전쟁 위험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에 비해 3.5% 감소하였으며 이는 1997년 -6.5% 이후로 최저치를 보였다. 특히 전년 중 호황을 보이던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등이 감소로 전환하게 되었다. 북한의 국민 총소득(명목GNI)은 36.6조원으로 동년 대비 한국의 약 50분의 1수준이며, 이는 삼성전자의 6개월간의 영업이익과 비슷하다.³⁾ 이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내세우며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는 대북제재를 가하여 북한과의 무역을 차단하며, 이는 날이 갈수록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북한에 원조를 차단하고 석유등의 에너지 공급을 중단하여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에 이르고 있다.⁴⁾

2) 김재엽. “비핵(非核) 전력에 의한 확전우위의 달성 : 주요 사례와 한국 안보에 대한 시사점.”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8). p. 9.

3) 한국은행. '2017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2018).

4) 임소정.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현황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pp. 5-6.

〈표 1〉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목록

대북 수입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연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 금지 - 식물 및 의류 완제품 금지 - 식품, 농산물, 기계류, 전자기기, 토석류, 목재, 선박 금지
대북 수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제유: 매년 50만 배럴로 제한 - 원유 수출 금지 (*민생 목적은 허용)
금융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내 금융서비스 제공 금지 - 다량의 현금(bulk cashs) 유입으로 제재 (단, 회피 여지에 대한 우려 표명)
해피노동자 고용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허가 금지, 기존 노동자 비자 갱신 금지 - 제재안 통과(2017.12) 12개월 내 모든 북한 해피노동자 본국으로 송환
경제협력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과 합작사업 설립·유지·운영 금지 - 어획권 구입 금지

출처: 임소정.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현황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2). 자료 인용

그러나 올해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하여 자신의 핵·경제 병진노선을 여전히 추진하고자 하면서도 북한의 평창올림픽에 대한 참가를 시사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쳤다.⁵⁾ 이는 평창올림픽과, 한·미·중과의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통하여 핵 노선을 포기한 북한의 행보를 보아, 비핵화를 통하여 경제적·정치적 고립에서 벗어나 정상국가로 발돋움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년 7월, 남북 관계를 위한 현 정부의 비전을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연설’이 있었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무력 도발 중지 및 비핵화를 요구하였으며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에서 이미 언급한 경제 분야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협력 사업을 통하여 남북이 공동번영의 길을 나아가자고 약속한 부분을 언급하였다. 또한 2018년 9월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4대 그룹 수뇌부와 동행한 것과 후속으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통해 남북의 경제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의 통일 모델로 항상 언급 되는 독일의 경제협력 사례를 보

5) <https://news.join.com/article/22249279>

면, 서독은 소득수준이 높았지만 성장이 정체되어 있었고, 동독은 높은 실업률에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었다. 1990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독일은 통일을 맞이하며 경제협력을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활력을 보인 것은 철도, 건설 등의 인프라 관련 사업이었다. 이는 1990년 독일 건설업종지수가 2년 전보다 190% 상승하게 되며 이는 주가지수 상승률 108%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기본적인 인프라가 확충이 되며 이후 금융 산업이 발달하여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자본의 순환속도가 빨라져 은행 및 증권 업종이 호황을 맞게 된다. 이를 통해 독일은 현재 전 세계에서 실업률이 가장 낮으며 그 이유는 서독의 자본과 동독의 낮은 인건비가 결합되어 국가경제가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⁶⁾

이를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와 북한 역시 과거 독일과 비슷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고 있으며 북한의 1인당 GDP는 1,700달러로 우리나라의 20분의 1에 불과하다. 이를 통하여 남북의 경제협력은 북한은 물론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며 특히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가 확충되면 사실상 섬나라와 같은 우리나라가 육상 교통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로 연결된다면 물류와 무역, 관광업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비핵화의 외국사례와 대응

우선 비핵화의 외국사례에 논의하기에 앞서 북한이 왜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는지 알 필요가 있다. 80년대 말 북한은 전면적인 위기와 마주하게 된다. 이는 동구권이 대거 자본주의로 체제를 전환하고 이는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가 되어서 원조를 받지 못하며 이는 남한과의 경제력 군사력 격차가 심해지게 되어 비대칭 전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냉전의 종식으로 인해 미국이 초강대국이 되어서 북한을 위협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핵개발을 하게 되었다.

6)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남북 평화무드 속 미리 가본 ‘남북경제협력 산업과 투자.’” 2018년 7월 30일

북한 내부에서는 지금까지 미국이라는 거대 패권 세력으로부터 살아남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끝까지 핵 주권을 붙들어 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주장을 하며 내외에 핵보유국이라고 선전하는 것은 현재의 북한 체제와 정권 유지에 엄청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핵개발을 하는 것이다. 아래에 설명할 나라들도 북한과 비슷한 배경으로 핵개발을 하게 되었는데 이들의 비핵화 사례를 알아보도록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유엔 제재로 인한 경제난으로 핵무기, 핵시설의 자발적 폐기를 결단한 경우이다. 남아공은 비핵화에 대한 경제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핵 물질, 장비, 시설의 수출행위를 금지하였다. 그리고 1996년 남아공은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에 서명했으며, 제재 해제 이후 마이너스 경제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 연 2~4%의 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다.

리비아는 1969년 이후 30년 이상 핵무기 확보를 시도한 결과, 석유수출통제 등 강력한 경제제재에 직면했으며, 2003년에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으로 생존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리비아의 카다피 국가원수는 핵무기 포기를 결단하고 단계별 핵 폐기를 이행하였다. 그 후 미국으로부터 비핵화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음을 확인받았으며, 미국, 프랑스, 영국과의 관계 회복,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 러시아에 대한 45억 달러 상당의 부채를 탕감 받을 수 있었다.

이란은 1969년 이후 30년 이상 핵무기 확보를 시도했으나, 유엔 안보리로부터 7차례 제재결의, 미국 및 EU의 강력한 경제제재에 직면하게 되었다. 1,000억 달러 상당의 자산동결 해제가 시급해지자, 친미 성향의 하산 로우하니 대통령은 핵 협상을 결단(2013. 8)하게 되었고 이후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간의 다자간 합의에 의해 핵개발을 중단했으며, 공동행동계획을 통해 잠정 핵 합의에 도달하였다(2015. 4).⁷⁾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구소련 붕괴에 따라 배치되어 있던 미사일과

7) 김영윤. “북한 비핵화와 '사실상의 통일' 정책.” 『GS&J 인스티튜드』 No.254 (2018). pp. 6-7.

핵탄두를 승계함으로써 핵무기를 소유하게 된 경우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위협을 의식, 의회에서 자발적으로 핵폐기를 의결하여 비핵화 하였다. 그 결과 1994년 11월, 미·러·우 3자 협정이 체결 될 수 있었으며,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영토보전, 정치독립, 안전보장을 담보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14년 러시아의 무력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의 일부인 크림공화국이 병합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위를 종합하여 볼 때, 비핵화 사례에 나온 대다수의 나라는 경제제재에 직면하거나 강대국의 위협으로 인하여 핵을 포기한 경우이다. 그러나 리비아, 우크라이나처럼 핵을 포기한 국가가 비핵화 이후에 전쟁, 내전, 정권 정복, 혼란들을 겪으며 전략하게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는 비핵화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PVID(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대량살상무기 폐기)이다.⁸⁾ 즉, 북한 안에 있는 모든 핵무기의 제거를 말한다. 반대로 북한은 더 이상 핵개발을 하지 않는 것을 대가로 경제제재를 푸는 것을 원한다. 그러나 미국은 PVID, CVID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으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협상할 가치도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는 순간 핵무장을 한 다른 국가들은 부담을 덜게 되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거나 핵 보유로 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핵확산 방지 체제(NPT)의 붕괴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일본의 재무장화, 한국과 대만의 핵보유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동북아 국가들 모두가 핵을 가지게 되어 동북아 정세에도 심각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그렇기에 미국은 핵무장을 더더욱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위와 같은 ‘리비아 모델’이나 ‘이란 모델’ 등을 사용하지 않고 소위 ‘트럼프 모델’로 북한에게 차별화된 비핵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⁹⁾ 그 비핵화를 주도 하는 사람은 김정은

8) <https://news.joins.com/article/22594855>

9) Max Boot, "Kim Jong Un has President Trump right where he wants him"

국무위원장이자이다. 그렇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보이고 있는 변화에 대한 진정성 평가는 결코 쉽지 않다. 중요한 것은 김 위원장이 어떻게 그와 같은 극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지를 아는 것이다. 여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인 구상과 결단,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적 압박,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미국의 대북 군사 행동의 두려움 등 여러 가지를 추측할 수 있다.¹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북한은 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며, 이를 전 세계에 증명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현재 보이고 있는 북한 변화의 궁극적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며, 그 목표가 한국과 국제사회가 원하는 것과 부합할 때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Ⅲ. 연구 설계

본 연구의 목적은 비핵화 실현과 남북경제협력방안에 관한 이슈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경제 개발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각 포털의 웹, 블로그, 뉴스 등에서 관련 있는 텍스트를 수집하여 조사하기로 한다. 조사를 위한 수집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9월 20일까지로 설정하였으며 양적분석을 위한 키워드 추출은 ‘텍스톰(Textom)’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텍스톰’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데이터를 채널별로 자동 수집하여 정제, 매트릭스 생산까지 일괄처리 해주는 데이터 처리 솔루션으로 사용된 빈도 비율이 높을수록 중요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프로그램 빈도 분석에 의하여 추출된 중요한 핵심키워드들은 의미 있는 관계성으로 연결됨으로서 그 가치를 구성할 수 있다.

위를 바탕으로 결정된 검색 키워드는 분석 목적과 데이터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비핵화 경제협력’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키워드를 통해 추출된

10) 김영윤. “북한 비핵화와 '사실상의 통일' 정책.” 『GS&J 인스티튜드』 No.254 (2018). p. 3.

많은 단어들을 모아서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실시하였다. ‘텍스트마이닝’은 구조화되지 않은 비정형의 대규모 텍스트로부터 자연어처리(컴퓨터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분석)기술에 기반 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고 다른 정보와의 연계성을 파악함으로써 의미를 도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텍스트는 소셜미디어에서 나타나는 비정형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 정제 과정을 수행하고 정제된 데이터를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빈도를 계산함으로써 핵심어를 도출한다.

이 핵심어들에 대하여 관계데이터에 대한 탐색적 분석과 시각화 작업을 수행한 프로그램은 ‘Ucinet6’와 ‘NetMiner’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관계데이터의 변환, 분석, 통계, 시각화, 차트에 대한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자동화, 반복화, 고도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한 탐색적 분석과 시각화작업 분석은 ‘네트워크 분석’과 ‘중심성분석’, ‘CONCOR 분석’이다. ‘네트워크 분석’은 개별요소뿐만 아니라 개별요소들 간의 관계 구조를 규명하는 방법으로,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작용(동시빈도)에 기반한다. 또한 위의 키워드 분석을 기반으로 ‘중심성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각 단어들의 연결정도 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위세중심성분석을 파악할 수 있다.

최종적인 분석으로 비슷한 특성을 가진 키워드를 유사한 중심으로 군집화하고, 군집집단 간의 연결구조를 파악하는 ‘CONCOR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종합적인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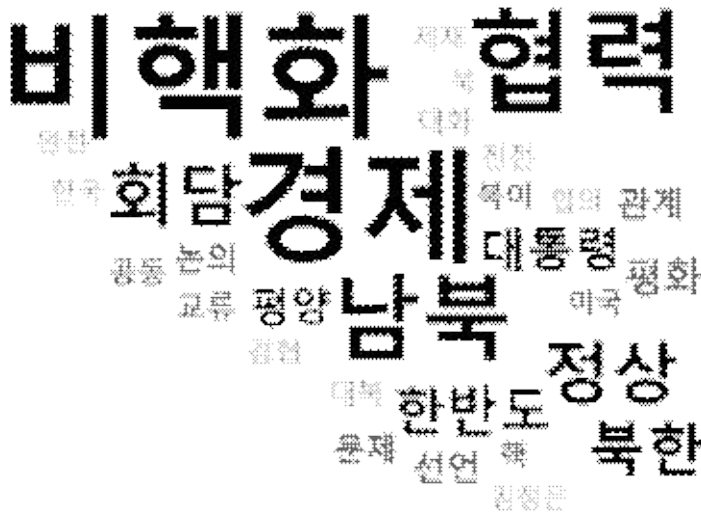
첫째, 텍스트 프로그램에 키워드를 입력하고 수집할 기간을 설정한다. 둘째, 수집할 포털사이트를 체크하여 저장표시를 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셋째, 수집된 키워드의 빈도분석을 실시한다. 수집된 데이터 중에서 불필요한 조사나 키워드 등은 삭제하고, 중복되는 키워드는 통합하며, 주제와 관련이 없거나 적은 데이터와 분석에 사용되지 않는 조사, 형용사, 부사 등을 삭제한다. 넷째, 추출된 키워드로 ‘텍스트마이닝’분석을 실시한다. 다섯째, 표현된 네트워크 내용을 ‘Ucinet6’와 ‘NetMin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분석’과 ‘중심성분석’, ‘CONCOR 분석’과 같은 실질적인 분석을 실시한다.

IV. 분석 결과

1. ‘비핵화 경제 협력’ 키워드에 대한 분석

데이터 수집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9월 20일까지 네이버(블로그, 뉴스, 카페, 지식인), 다음(블로그, 뉴스, 카페), 구글(웹, 뉴스),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서 ‘비핵화 경제협력’이라는 키워드로 단어를 수집하였으며 ‘텍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키워드를 수집한 결과 총 7502개의 단어가 도출되었다. 중심단어는 추출된 단어들의 빈도수에 따라 1위부터 100위까지 총 100개의 단어로 결정하였으며 ‘등’, ‘것’과 같은 의미 없는 단어들과 형용사나 동사와 같은 단어들은 제외하였고 의미가 비슷한 단어들은 명사로 통일되도록 정제하였다.

가. 상위 키워드 빈도분석



<그림 1> 상위 키워드 워드 클라우드

위 그림은 빈도수가 많을수록 키워드의 글자가 커지는 것을 표현한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이다. <그림 1>을 통해, ‘비핵화’, ‘경제’, ‘협

력'와 같은 주제 키워드가 핵심이 되고, 그 외에도 다른 키워드들의 빈도와 관계를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자세한 분석은 아래 <표 1>과 함께 후술한다.

<표 2> 상위 키워드 빈도분석

순위	단어	빈도	%	순위	단어	빈도	%
1	비핵화	8810	4.93%	51	구체	374	0.21%
2	경제	8230	4.61%	52	강화	356	0.20%
3	협력	7255	4.1%	53	목표	348	0.19%
4	남북	5823	3.3%	54	구축	343	0.19%
5	회담	3980	2.2%	55	정책	341	0.19%
6	정상	3964	2.2%	56	폐기	335	0.19%
7	북한	3317	1.9%	57	방북	320	0.18%
8	한반도	2808	1.6%	58	전망	316	0.18%
9	대통령	2308	1.29%	59	관문점	316	0.18%
10	평양	1802	1.01%	60	의제	306	0.17%
11	평화	1737	0.97%	61	변영	304	0.17%
12	선언	1299	0.73%	62	정착	301	0.17%
13	관계	1290	0.72%	63	文	297	0.17%
14	논의	1118	0.63%	64	중국	293	0.16%
15	문제	1093	0.61%	65	지원	291	0.16%
16	교류	1083	0.61%	66	개선	290	0.16%
17	핵	962	0.54%	67	국제	288	0.16%
18	북미	957	0.54%	68	유엔	262	0.15%
19	공동	950	0.53%	69	기술	259	0.15%
20	대화	870	0.49%	70	개성	258	0.14%
21	대북	832	0.47%	71	러시아	258	0.14%
22	미국	818	0.46%	72	달러	253	0.14%
23	경협	818	0.46%	73	기업	252	0.14%
24	진전	788	0.44%	74	교역	242	0.14%
25	합의	777	0.44%	75	공단	240	0.13%
26	제재	735	0.41%	76	美	236	0.13%
27	한국	718	0.40%	77	방산	223	0.12%
28	김정은	701	0.39%	78	인니	222	0.12%
29	북	689	0.39%	79	투자	222	0.12%

30	완전	679	0.38%	80	협약	220	0.12%
31	문제인	610	0.34%	81	전투기	219	0.12%
32	위원장	586	0.33%	82	재개	214	0.12%
33	방안	543	0.30%	83	이행	212	0.12%
34	분야	525	0.29%	84	양국	209	0.12%
35	발전	513	0.29%	85	도로	203	0.11%
36	군사	511	0.29%	86	연결	203	0.11%
37	철도	506	0.28%	87	방문	200	0.11%
38	중전	502	0.28%	88	협정	196	0.11%
39	北	486	0.27%	89	국무	193	0.11%
40	협상	482	0.27%	90	서울	190	0.11%
41	체제	462	0.26%	91	포럼	187	0.10%
42	조치	458	0.26%	92	성공	186	0.10%
43	추진	446	0.25%	93	서해	185	0.10%
44	정부	443	0.25%	94	지속	183	0.10%
45	사업	435	0.24%	95	관광	181	0.10%
46	의지	388	0.22%	96	장관	179	0.10%
47	통일	388	0.22%	97	보장	171	0.10%
48	개발	386	0.22%	98	정치	171	0.10%
49	완화	380	0.21%	99	동북아	160	0.09%
50	트럼프	376	0.21%	100	종식	166	0.09%

* 굵은 선으로 표시된 영역은 (Ⅲ) 클러스터(군집)(p.142)의 핵심단어이며 IV-2. 에서 후술한다.

위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색어의 빈도수가 1위부터 3위까지는 우리가 주제키워드로 넣었던 ‘비핵화’, ‘경제’, ‘협력’이며, 4위부터 ‘남북’, ‘회담’, ‘정상’, ‘북한’, ‘한반도’, ‘대통령’ 등의 단어순으로 우선순위에 표시되어 존재한다. 이것은 비핵화와 경제협력이 세 차례의 남북정상 회담의 주요의제이며 대통령, 한반도, 평양과 같이 그와 연관 있는 단어들이 상위에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남북정상회담이 비핵화 경제협력과 더불어 국민들의 관심사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양’, ‘선언’, ‘관계’, ‘논의’, ‘교류’, ‘공동’, ‘대화’, ‘판문점’, ‘협상’, ‘방북’, ‘방문’ 등과 같은 단어들을 통해서는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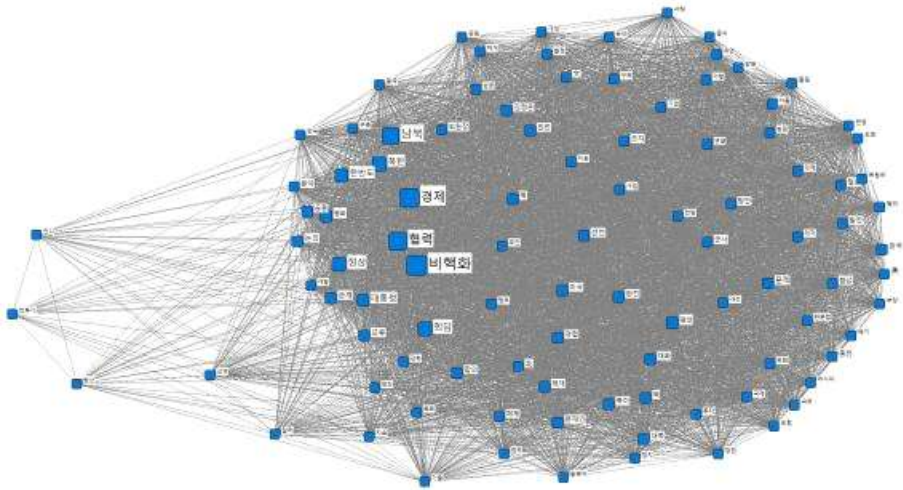
한 ‘관문점 선언’, ‘평양 선언’과 관련되어 남북의 관계가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쑤(耿飚) 외교부 대변인은 “남북이 상호 접촉을 강화하여 한반도의 긴장 완화 흐름을 이어가며 남북정상회담에서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¹¹⁾ 그리고 이를 통하여 회담이후에 남북 간의 교류, 관문점에 세워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비핵화 협상을 위한 방북 등의 여러 가지 이슈에 대중의 관심이 높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경협’, ‘철도’, ‘사업’, ‘중국’, ‘러시아’, ‘공단’, ‘투자’, ‘도로’, ‘관광’, ‘기업’ 등과 같은 단어들은 9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떠오른 ‘남북경제협력사업’과 관련이 있는 단어들이다. ‘남북경제협력사업’이란 남북의 민간이 공동으로 경제적인 교류와 투자를 하는 것인데 남한에서는 북한에 철도와 건설 등 SOC(사회간접자본)과 관련된 사업에 많이 투자한다. 주식투자자들은 남북경협사업과 관련한 기업들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남북경협주’를 매수한다. 특히 남북정상이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비핵화 추가 조치 내용을 채택하였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인한 영향으로 ‘남북경협사업’과 ‘남북경협주’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이 남북경협사업과 연계를 가질 수 있음을 파악한다. 또한 양국에서도 기업의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북한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해결도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빈도분석을 통해서 상위 100개의 단어들의 순으로 대중들이 ‘비핵화경제협력’에 관한 주요 관심사를 알 수 있다. 이는 후술할 네트워크 분석, 중심성 분석, 그리고 CONCOR분석을 통하여 키워드 사이의 관계들을 심화하여 분석한다.

11)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917000619>

나. 상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그림 2> 상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트워크에서 중심이 되는 단어 즉, 가장 많은 도출 빈도수를 갖고 있는 단어들은 연결선들이 많이 나타나며, 가장 많은 연관을 가지는 단어들이 밀집하여 존재한다.¹²⁾ 이 중심 단어들을 이용하면 위의 <표 1>에서 나타나는 빈도분석에서 더 심층적인 차원으로 국민들이 ‘비핵화 경제협력’에 대하여 어떠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통하여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비핵화 경제협력’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네트워크 중심도 위의 [표 1]에 보는 바와 같이 ‘비핵화’, ‘경제’, ‘협력’, ‘남북’ 등의 단어를 큰 축으로 ‘비핵화 경제협력’에 대하여 가장 큰 연관이 있는 단어순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2) <그림 2>를 통하여 연결선의 개수나 단어의 위치, 단어 사이의 거리 등의 특징들은 후술할 중심성 분석 중 일부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 상위 키워드 중심성 분석

주요 단어 100개를 중심으로 연관성을 분석한 연결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위세중심성 (Eigenvector centrality)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상위 키워드 중심성 분석

순위	단어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위세중심성
1	비핵화	1	1	0.003	0.439
2	경계	1	1	0.003	0.425
3	협력	1	1	0.003	0.389
4	남북	0.980	0.980	0.001	0.345
5	회담	0.990	0.990	0.002	0.262
6	정상	1	1	0.003	0.265
7	북한	0.980	0.980	0.001	0.182
8	한반도	1	1	0.003	0.187
9	대통령	1	1	0.003	0.151
10	평양	0.970	0.971	0.000	0.127
11	평화	1	1	0.003	0.109
12	선언	0.970	0.971	0.000	0.080
13	관계	1	1	0.003	0.087
14	논의	1	1	0.003	0.073
15	문제	0.960	0.961	0.000	0.079
16	교류	0.990	0.990	0.002	0.079
17	핵	0.970	0.971	0.000	0.052
18	북미	0.970	0.971	0.000	0.062
19	공동	1	1	0.003	0.064
20	대화	0.970	0.971	0.000	0.065
21	대북	0.970	0.971	0.000	0.047
22	미국	0.970	0.971	0.000	0.046
23	경협	0.970	0.971	0.000	0.054
24	진전	0.949	0.952	0.000	0.050
25	합의	0.980	0.980	0.001	0.048
26	제재	0.970	0.971	0.000	0.043
27	한국	0.960	0.961	0.000	0.039
28	김정은	0.960	0.961	0.000	0.042

29	북	0.970	0.971	0.000	0.041
30	완전	0.970	0.971	0.000	0.041
31	문제인	0.970	0.971	0.000	0.038
32	위원장	0.960	0.961	0.000	0.037
33	방안	0.960	0.961	0.000	0.035
34	분야	1	1.000	0.003	0.037
35	발전	0.949	0.952	0.000	0.035
36	군사	0.960	0.961	0.000	0.033
37	철도	0.949	0.952	0.000	0.030
38	종전	0.949	0.952	0.000	0.032
39	北	0.970	0.971	0.000	0.026
40	협상	0.960	0.961	0.000	0.028
41	체제	0.960	0.961	0.000	0.029
42	조치	0.960	0.961	0.000	0.029
43	추진	0.970	0.971	0.000	0.028
44	정부	0.970	0.971	0.000	0.026
45	사업	0.960	0.961	0.000	0.027
46	의지	0.949	0.952	0.000	0.024
47	통일	0.939	0.943	0.000	0.022
48	개발	1	1	0.003	0.025
49	완화	0.970	0.971	0.000	0.025
50	트럼프	0.939	0.943	0.000	0.020
51	구체	0.949	0.952	0.000	0.025
52	강화	1	1	0.003	0.024
53	목표	0.960	0.961	0.002	0.025
54	구축	0.990	0.990	0.002	0.021
55	정책	0.929	0.934	0.001	0.018
56	폐기	0.929	0.934	0.000	0.018
57	방북	0.919	0.925	0.000	0.020
58	전망	0.960	0.961	0.000	0.020
59	판문점	0.949	0.952	0.000	0.019
60	의제	0.939	0.943	0.000	0.023
61	번영	0.919	0.925	0.000	0.017
62	정착	0.919	0.925	0.000	0.020
63	文	0.949	0.952	0.001	0.019
64	중국	0.909	0.917	0.000	0.015
65	지원	0.960	0.961	0.000	0.017

66	개선	0.960	0.961	0.000	0.020
67	국제	0.939	0.943	0.000	0.017
68	유엔	0.909	0.917	0.000	0.014
69	기술	0.788	0.825	0.002	0.018
70	개성	0.899	0.908	0.000	0.015
71	러시아	0.929	0.934	0.000	0.015
72	달러	0.677	0.756	0.001	0.017
73	기업	0.939	0.943	0.000	0.013
74	교역	0.626	0.728	0.001	0.018
75	공단	0.899	0.908	0.000	0.014
76	美	0.929	0.934	0.000	0.013
77	방산	0.283	0.582	0.000	0.016
78	인니	0.263	0.576	0.000	0.016
79	투자	0.949	0.952	0.000	0.010
80	협외	0.919	0.925	0.000	0.014
81	전투기	0.212	0.559	0.000	0.016
82	재개	0.929	0.934	0.000	0.013
83	이행	0.929	0.934	0.000	0.013
84	양국	0.929	0.934	0.002	0.014
85	도로	0.899	0.908	0.000	0.012
86	연결	0.939	0.943	0.000	0.012
87	방문	0.939	0.943	0.000	0.012
88	협정	0.919	0.925	0.000	0.012
89	국무	0.899	0.908	0.000	0.012
90	서울	0.939	0.943	0.000	0.012
91	포럼	0.889	0.900	0.000	0.010
92	성공	0.949	0.952	0.001	0.014
93	서해	0.808	0.839	0.000	0.011
94	지속	0.859	0.876	0.002	0.016
95	관광	0.899	0.908	0.000	0.011
96	장관	0.889	0.900	0.000	0.009
97	보장	0.919	0.925	0.000	0.010
98	정치	0.949	0.952	0.001	0.011
99	동북아	0.848	0.868	0.000	0.010
100	종식	0.848	0.868	0.000	0.011

* 굵은 선으로 표시된 영역은 (Ⅲ) 클러스터(군집)의 핵심단어이며 IV-2. 에서 후술한다.

연결정도 중심성은 네트워크상에서 한 노드(단어)가 다른 노드들과 얼마나 많은 연결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연결된 노드가 많을수록 연결정도 중심성은 높아지게 된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결정도 중심성이 가장 높은 값은 ‘비핵화’, ‘경제’, ‘협력’ 등으로 나타나 이들 단어들이 다른 주요 단어들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밖에 ‘회담(.990)’, ‘교류(.990)’, ‘남북(.980)’, ‘회담(.980)’, ‘북한(.980)’, ‘평양(.970)’, ‘선언(.970)’ 등의 단어가 연결의 중심에 위치하였다. 또한 <그림 2>에서 보이는 것처럼 각 항목이 고르게 분포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이 결과는 빈도순위와 유사한 행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 경제협력’ 검색에서는 연결정도 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단어가 검색 빈도도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근접 중심성은 주요 단어들의 근접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나타낸다. 근접한 정도가 높을수록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와 더욱더 연관이 있는 단어가 되고, 그 단어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에서는 ‘비핵화’, ‘경제’, ‘협력’을 비롯한 ‘한반도’, ‘대통령’, ‘관계’의 단어 값이 1.000으로 나타나있다. 이것은 비핵화 경제협력에 관하여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알고자 하는 사실을 검색하려 하기 때문에 높은 중심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빈도 순위(또한 ‘회담’과 ‘교류’값이 .990, ‘남북’, ‘북한’, ‘합의’ 등의 값이 .980, ‘평양’, ‘선언’, ‘핵’, ‘북미’, ‘대화’, ‘대북’, ‘미국’ 등의 값이 .970, ‘문제’, ‘한국’, ‘김정은’, ‘위원장’, ‘방안’ 등의 값이 .961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두 개의 중심성을 보았을 때 특이한 점은 ‘개발’은 빈도 순위에서 48위의 중위권이지만 그에 비해 연결정도 중심성과 근접중심성이 1에 근접하여 최상위권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도로, 항만, 공항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전기, 건설, 그리고 석유, 가스등의 자원 개발이 비핵화에 따른 경제협력에 큰 연관성을 보인다. 또한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에 의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개발을 원하며 비핵화에 대한 그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히고,¹³⁾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영국의 통상장관에 “북한의 비핵화 후에 북한의 개발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또 비핵화 이후 제재가 해

제되면 남북경제 협력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북한 개발에 영국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¹⁴⁾ 이를 통하여 개발을 하는 것이 비핵화와 남북의 경제협력을 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 연결이 됨을 알 수 있다.

매개 중심성은 사이 중심성이라고도 불리며 주요 단어들의 매개역할의 중심정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주제와 관련되는 검색을 하는 경우에 <표 2>에서와 같이 '비핵화', '경제', '협력' 3개의 단어들(.03)은 위와 같이 서로 동일하게 깊은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회담(.02)', '교류(.02)', '남북(.01)', '북한(.01)', '합의(.01)' 등의 단어들 순서로 매개 중심성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남북사이의 교류와 회담을 통한 합의가 비핵화 경제협력이 실현되는 데에 있어서 매개체가 되며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임을 알 수 있다. 남북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적극 추진한다는 '10.4 선언'과 이를 다시 계승한 '9월 평양 선언'을 보면 알 수 있듯, 정상회담을 통한 남북의 합의와 교류로 활성화 될 남북경협사업이 비핵화와 경제협력을 하는 데에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위세 중심성은 고유벡터 중심성 또는 연쇄 중심성이라 하며, 네트워크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중심노드를 찾는데 유용한 지표이다. 또한, 단어의 빈도수에 비하여 연결정도 중심성이 높거나 위세중심성이 높은 단어를 찾아 상대적으로 이슈가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이 확인되어진다. <표 2>에서는 '비핵화(.439)', '경제(.425)', '협력(.389)' 등의 값이 나타났다으며 주요 단어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단어들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음으로 '남북(.345)', '정상(.265)', '회담(.262)'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이 단어들은 질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순위는 빈도분석과 연결정도 중심성 순위와 같이 나란히 상위에 있기 때문에 주제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일반적으로 이 단어들을 연관시켜 검색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에

13)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46944&ref=A>

14)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10050006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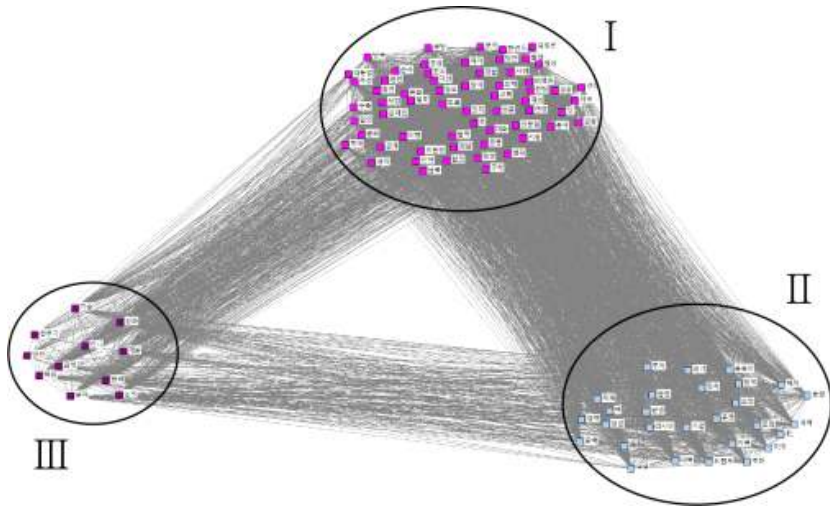
따라 비핵화 경제협력에 대해 성패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회담의 결과가 되는 선언문이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4월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비핵화와 경제에 관한 언급이 있었고, 특히 평양 공동선언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하여 회담이 비핵화와 경제협력을 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는 "솔직히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좀 의외일 정도로 성과가 있었다"면서 "두 정상에 유엔제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경제 협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군사, 안보 등 분야에서 남북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승근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는 구체성이 부족했으나 경제협력과 특히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에서는 디테일하게 잘 진행됐다”고 평했다.¹⁵⁾

라. CONCOR(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 분석

CONCOR 분석은 전체 키워드를 중심으로 유사점을 가진 키워드들이 형성하는 클러스터(군집)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키워드 간의 동시출현을 토대로 노드들의 블록을 형성하여 블록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CONCOR 분석은 한 네트워크의 지위가 구조적으로 한 등위의 위치에 존재해야 동일수준의 군집 간 상관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이 분석을 통하여 서로 연관성이 있는 단어들을 파악함으로써 주제와 관련된 부분들인 비핵화의 주요 당사자, 비핵화가 의미하는 바, 경제협력의 이유 및 목적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의 통일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15) <http://news.imaeil.com/PoliticsAll/2018091918253027097>



<그림 3> 상위 키워드 CONCOR분석

<그림 3>은 CONCOR 분석을 실행한 결과를 나타낸다. 총 3개의 클러스터(군집)를 형성하였다. 첫째, (I) 클러스터(군집)에는 ‘비핵화’, ‘경제’, ‘협력’, ‘남북’, ‘대통령’, ‘한반도’, ‘정상’, ‘회담’, ‘관계’, ‘교류’, ‘발전’,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클러스터(군집)에 속한 키워드들 중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빈도 순위가 상위에 속한 단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이슈와 가장 많이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선언’, ‘판문점’, ‘진전’, ‘재개’, ‘종전’, ‘경협’, ‘연결’, ‘철도’, ‘관광’ 등이 존재하며, 여기에서는 4월 판문점 선언에서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종전에 대한 진전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도 경제협력과 같은 군집을 이루면서 밀접한 연관관계를 이룬다. 또한 관광, 교통 등과 관련된 이슈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관련된 내용과 최근 부상하고 있는 ‘남북경협사업’과 관련된 내용의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담긴 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이는 남북정상회담의 주요의제인 비핵화 못지않게 경제협력이 동반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¹⁶⁾

16)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42687&ref=A>

둘째, (Ⅱ) 클러스터(군집)에는 ‘북한’, ‘미국’, ‘제재’, ‘트럼프’, ‘한국’, ‘대북’, ‘美’, ‘北’, ‘체제’, ‘정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단어들은 비핵화 경제협력과 국제관계를 나타낸다. 국제관계라고 나타내기 하지만 대부분의 단어들이 6자회담 당사국, 특히 미국과 관련한 단어가 상위 단어에 위치하기에 북미관계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실제로 대북제재를 하고 트럼프의 경우, 별도의 양자제재와 행정명령을 하는 것을 보아 북한을 압박할 때의 미국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고, 북한에서는 미국을 적으로 규정하기에 상호간의 연관이 제일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과 미국의 이념이 다르기에 정치 체제의 차이도 국제관계 속에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가장 중요한 클러스터(군집)군 보다는 구체적이고 유형적인 검색들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Ⅲ) 클러스터(군집)에는 ‘인니’, ‘방산’, ‘달러’, ‘교역’, ‘전투기’, ‘기술’, ‘개발’ 등이 있다. 이 단어들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이점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다. 인도네시아와 북한은 전통적인 우호관계국이지만 실질적 협력 관계는 미미한 편이며 더군다나 양국의 교역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¹⁷⁾ 이를 비추어 볼 때 인도네시아와 북한간의 어떠한 이슈로 인해 이러한 단어들이 도출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한다.

2. 특정 이슈와 관련한 세부적 분석

<표 2>과 <표 3>에서 따로 표시한 영역은 본 주제와 관련하여 보편적으로 알지 못하는 키워드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북한의 ‘비핵화경제협력’에 관해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 세부적으로 탐구해야할 필요성을 느낀다.

추가적인 조사는 위와 같은 텍스트를 이용하여 같은 기간 동안 ‘인니’, ‘개발’, ‘달러’, ‘논의’, ‘분야’, ‘교역’, ‘목표’, ‘방산’, ‘전투기’, ‘기술’, ‘강화’의 단어와 ‘인니’라는 단어의 명확성을 도출해내기 위하여 ‘인도네시

17) <http://nktoday.kr/?p=4881>

아'라는 단어를 추가하고 본 주제와의 연관성을 더 높이기 위해 '비핵화', '경제', '협력'이 세 단어를 추가하여 총 15개의 단어를 가지고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총 3207개의 단어 중 빈도수에 따라 선택된 상위 30개의 중심단어로 결정하였으며 '등', '것'과 같은 의미 없는 단어들과 형용사나 동사와 같은 단어들은 제외하였고 의미가 비슷한 단어들은 명사로 통일되도록 정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키워드 분석과 CONCOR분석을 하고자 한다.

<표 4> (Ⅲ)클러스터 관련 키워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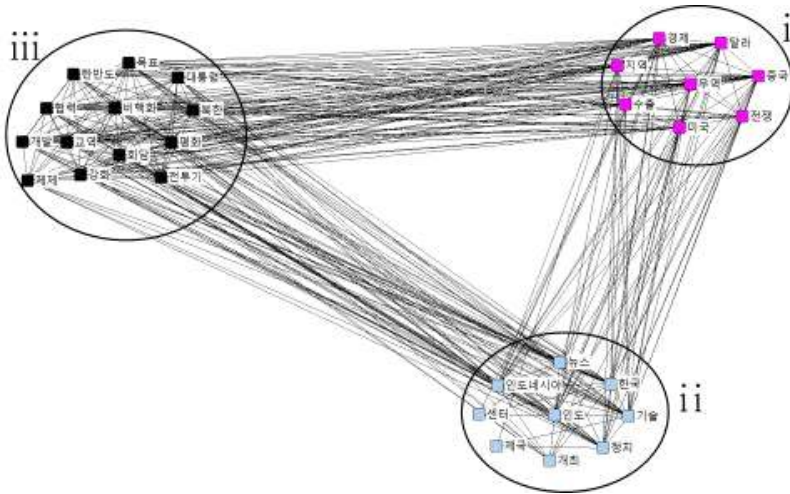
순위	단어	빈도	%	순위	단어	빈도	%
1	경제	222	7.25%	16	미국	82	2.68%
2	달러	218	7.12%	17	평화	79	2.58%
3	개발	187	6.11%	18	무역	72	2.35%
4	기술	182	5.95%	19	정치	69	2.25%
5	협력	182	5.95%	20	교역	69	2.25%
6	강화	146	4.77%	21	뉴스	68	2.22%
7	목표	128	4.18%	22	중국	66	2.16%
8	한국	114	3.73%	23	전쟁	66	2.16%
9	제국	112	3.66%	24	회담	64	2.09%
10	한반도	111	3.63%	25	전투기	60	1.96%
11	비핵화	98	3.20%	26	개최	60	1.96%
12	수출	95	3.10%	27	체제	59	1.93%
13	지역	95	3.10%	28	대통령	58	1.90%
14	인도네시아	95	3.10%	29	북한	58	1.90%
15	인도	88	2.88%	30	센터	57	1.86%

<표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키워드 분석 결과 검색어의 빈도수가 1위부터 '경제', '달러', '개발', '기술', '협력', '강화', '목표', '한국', '제국', '한반도', '비핵화' 등의 단어순으로 표시되어 존재한다. 그 중 '달러'의 단어가 도출된 것은 수출과 관련하여 기축통화인 달러가 많이 사용되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북한에서는 중국 위안화랑 더불어 달러화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외국 통화가 자국 통화 대신 거래를 대체하는 현상을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이라고 한다.

달러라이제이션을 줄이고 북한 원화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외환 보유액이 충분이 있어야 하기에 국가 차원에서도 소위 ‘외화벌이’를 하려고 하며, ‘39호실’을 필두로 총참모부, 호위총국, 경찰총국, 보위사령부, 국가안전보위부, 제2경제위원회, 제2자연과학원, 중앙당 등 거의 모든 국가기구가 외화벌이에 관여한다.

북한 일반 주민도 장마당에서 외화로 물건을 살 수 있을 만큼 현금 거래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외화의 유통 활성화와 축적 현상도 사금융 시장의 발전을 부추기고 있는 요인이다. 이른바 사적 외환시장이 조성되었다는 것이다.¹⁸⁾

다만 과도한 달러라이제이션은 북한 원화의 이자율을 결정하는 재정정책과 인플레이션율을 결정하는 통화정책 등의 경제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 독립성을 가지지를 못한다. 이는 미국의 정책에 완전히 의존하기에 북한 경제의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경제적인 개혁을 통하여 북한 원화를 쓰도록 장려하여 경제적인 독립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림 4> (III)클러스터 관련 CONCOR분석

18) 홍재화, [홍재화의 무역이야기] - 對北사업가가 알아야할 북한 가격제도

<그림 4>는 CONCOR 분석을 실행한 결과를 나타낸다. 이 또한 총 3개의 클러스터(군집)를 형성하였다. 첫째, (i) 클러스터(군집)에는 ‘무역’, ‘달러’, ‘중국’, ‘전쟁’, ‘미국’, ‘수출’, ‘지역’, ‘경제’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이 단어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두 국가 이외에도 주변국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과 관심사가 모여 있는 군집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은 북한의 주변국이자 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룩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어서 무역전쟁의 종식과 무역의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ii) 클러스터(군집)에는 ‘인도’, ‘뉴스’, ‘한국’, ‘기술’, ‘정치’, ‘개최’, ‘제국’, ‘센터’, ‘인도네시아’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상과의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신남방정책’의 핵심파트너”라며 신남방정책의 내실화를 이루었다.¹⁹⁾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포함된 아세안과의 협력 구상의 뼈대를 이루는 정책인데 이는 중국·러시아와 연계된 신북방정책과 짝을 이루며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완성하는 개념으로 이를 성공하기 위하여서는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기술적인 교류와 인적교류가 필요하고, 정치권에서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iii) 클러스터(군집)에는 ‘비핵화’, ‘협력’, ‘한반도’, ‘목표’, ‘대통령’, ‘북한’, ‘평화’, ‘전투기’, ‘회담’, ‘강화’, ‘체제’, ‘개발’, ‘교역’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이 단어들을 토대로 나온 이슈는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9월에 있었던 한국-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통해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및 잠수함의 공동생산 등의 방산협력을 지속한다고 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에서 개최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남북정상을 공동으로 초청하려 했으나 김정은 위원장은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그 자체로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큰 관심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쟁 이후로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

19)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91017187682782>

인도네시아가 이미 구축된 다양한 협력과 교류의 틀로 북한을 포용한다면 한반도 평화는 물론 인도네시아 번영에도 크게 이바지함을 전망할 것이며, 이는 인도네시아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²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을 예측해 볼 필요가 있다. 2015년 북한이 인도네시아와의 경제회담에서 군수품들을 수출하고 소비재 및 원자재를 수입하겠다고 한 바는 있으나 현재 양국의 교역량은 2011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²¹⁾ 이를 바탕으로 비핵화의 실현을 통해 북한의 군수품을 수출하고 인도네시아로부터 소비재 등을 수입함으로써 양국의 경제협력과 외교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촉진하는 데에는 우리나라에서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북한의 정상국가화와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V. 결론 및 시사점

최근 남북·북미 간 관계정상화 노력과 함께 비핵화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북한의 개방을 위한 수단이자 신뢰구축의 방편으로 남북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 이 주제에 관한 기존의 사례연구나 실증분석은 조사대상에 관한 양적인 한계가 존재하였으나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소셜네트워크 상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많은 데이터가 포함되어 일반화에 근접하게 되었으며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지 못했던 키워드들을 주제로 심층적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등의 차별성이 존재하였다.

현대사회에서 인터넷, SNS, 앱 등의 소셜네트워크에 의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은 최근 이슈

20)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35264&ref=A>

21) <http://nktoday.kr/?p=4881>

화되는 분야이다. 빅데이터는 기업 활동에서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국가에게 있어서는 민의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더 나은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하여 빅데이터에 의한 연구는 매우 필요한 연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핵화 실현과 남북경제협력방안에 대한 이슈를 조사하기 위하여 ‘비핵화경제협력’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소셜미디어의 빅데이터 내용을 분석하였다. ‘텍스토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네이버, 다음, 구글, 유튜브 등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실시하였다. ‘Ucinet6’과 ‘NetMiner’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분석,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CONCOR분석’을 실행하여 데이터들을 클러스터(군집)화 함으로서 클러스터(군집)간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분석 하였으며 특이점이 보이는 군집의 단어들을 모아 ‘CONCOR분석’을 한 번 더 실시하여 북한의 비핵화 결단과 경제협력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최근 전 세계는 북한의 비핵화와 70년 전에 일어난 6·25전쟁을 종전하는데 온 관심을 쏟고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중에 경전하사(鯨戰蝦死)의 위치에 있는 주변국들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²²⁾ 미국이 무역안보론을 내세우며 북한의 비핵화를 하나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어 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북한에 대한 태도가 변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시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 선언이 경제 발전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전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분단국가이고 전쟁 중인 국가이므로 그에 따른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불리며 각종 실물자산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남북이 종전 선언을 하고 북한이 개방을 한다면, 우리나라가 떠안고 있는 리스크를 완화시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투

22) Molly Ball, “Peter Navarro Used To Be a Democrat. Now He’s the Mastermind Behind Trump’s Trade War”

자 활성화로 인해 저성장 시대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일으킬 것이다. 이로써 비핵화의 실현은 북한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세계 속에서 한반도가 평화롭고 강한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중재자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남북경제협력 추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과제으로써는 첫째, 남북경협 필요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남북경협을 통해서 침체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체계적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 기업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이 북한과의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남북경협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보장 등과 같은 남북합의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어야 하며, 대북협력정책의 일관성이 보장되고 보협 등의 안전장치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중국과 미국기업이 함께할 수 있는 다국적 경협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개발협력부문에서 국제기구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넷째, 중국의 일대일로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이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경협과 연계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반도문제의 국제화로 국제사회의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도 예전과는 달라진 부분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²³⁾

또한 북한의 과제로는 첫째, 지속적인 경제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가격자유화를 비롯하여 생산수단의 소유주체를 개편하고 기업운영의 자유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물질적 인센티브제를 강화하고 국제금융기구의 가입 등 국제경제에도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23) 임강택.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 경제협력.” (국토연구원 2018). pp. 11-12.

둘째,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북한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확충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제도적인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전기, 통신, 도로, 철도, 항만, 상하수도 등 물리적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 유치가 시급할 것이다.²⁴⁾

한편,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북한의 모습에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2017년 4월 20일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고 혁명 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을 새로운 전략적 노선으로 채택하였으며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짜고 모든 부문과 단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휘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내각중심적인 역할을 주문하였다.²⁵⁾ 남북정상회담에서 보였던 김정은 위원장의 변화는 그의 전략적인 구상과 결단에 대해 높이 사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신뢰를 주기보다는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비핵화의 실현과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이슈들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으며 이 연구의 결과들은 향후 북한의 비핵화를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남북경제협력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까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소셜미디어와 SNS에서 나누어지는 다양한 단어들을 토대로 연령별 혹은 맞춤형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빅데이터로 적용한다면 더욱 성공적인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4) 김영윤. “북한 비핵화와 '사실상의 통일' 정책.” 『GS&J 인스티튜드』 No.254 (2018). pp. 13-15.

25) 입강택.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 경제협력.” (국토연구원 2018). p. 8.

【참고문헌】

〈국내·외 학술지〉

- 유호열. “[특별기획] 한반도 새로운 평화, 이렇게 접근하자 : 북한 비핵화에 맞춰 남북 군축,경제협력 동시 추진.” 『The Unified Korea』 317권 0호 (평=화문제연구소 2010).
- 윤승현. “북한의 개혁,개방 촉진을 위한 중국의 역할.” 『통일경제』 52권 0호 (현 대경제연구원 2012).
- 신승중. “빅데이터를 이용한 SNS 활용방안 연구.”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2012).
- 송태민.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일인식 동향 분석 및 예측.” 『KDI 북한경제리뷰』 (2015).
- 차승주. “남북한 '평화통일' 인식 비교.” 『도덕윤리과교육연구』 (2016).
- 박정원. “핵실험 이후 북한 비핵화의 모색.” 『21세기정치학회보』 (2016).
- 오일환. “제1장 통일문제와 북한 핵문제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통일전략』 (2016).
- 남광규. “평화통일과정에서 헌법적 문제와 과제.” 『한국정치학회보』 (2016).
- 김익성. “통일을 위한 남북한 경제협력전략과 조직화 방안: 독일 통일로부터의 교훈.” 『질서경제저널』 제19집 2호 (2016).
- 정종필. “유엔(UN)안보리 결의와 북한 비핵화 분석.”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7).
- 서보혁. “한반도의 비핵화는 가능한가.” 『기독교사상』 (2017).
- 한인택. “안전보장을 통한 비핵화 한계와 가능성.” (JPI 정책포럼 2017).
- 황옥선. “빅데이터에 의한 해상관광의 관심 트렌드 분석.” 『호텔리조트연구』 (2017).
- 윤지원. “‘한반도의 봄’, 판문점 정상회담과 북핵의 완전한 비핵화 해법.” 『국방과기술』 (2018).
- 이형근·최유정.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와 북일 경제협력 과제.” 『KIEP 기초자료』 2018권 21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 이상국·허운수·이선영. “남북경협에 새로운 전개와 부산의 대응과제.” 『BDI 정책포커스』 제337호 (2018).
- 김재엽. “비핵(非核) 전략에 의한 확전우위의 달성 : 주요 사례와 한국 안보에 대한 시사점.”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8).

- 임소정.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현황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 김영윤. “북한 비핵화와 '사실상의 통일' 정책.” 『GS&J 인스티튜드』 No.254 (2018).
- 임강택.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 경제협력.” (국토연구원 2018).
- 이윤석. “북한의 경제개발과 우리의 대응과제.” 『Weekly Financial Brief』 27집 11호 (한국금융연구원 2018).

<신문기사>

- <http://nktoday.kr/?p=4881> 『북한전문통신 NK투데이』. 2015년 3월 24일.
- <http://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 『서울평양뉴스』. 2017년 5월 13일.
- <https://news.joins.com/article/22249279> 『중앙일보』. 2018년 1월 1일.
-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1281454648625> 『한국일보』. 2018년 1월 28일.
-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4301834499020> 『한국일보』. 2018년 4월 30일.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42687&ref=A> 『KBS』. 2018년 5월 4일
- <https://news.joins.com/article/22594855> 『중앙일보』. 2018년 5월 4일.
- Max Boot, “Kim Jong Un has President Trump right where he wants him” 『워싱턴 포스트』. 2018년 5월 16일.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35264&ref=A> 『KBS』. 2018년 9월 7일.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91017187682782> 『머니투데이』. 2018년 9월 10일.
-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917000619> 『뉴스핌』. 2018년 9월 17일.
- <http://news.imaail.com/PoliticsAll/2018091918253027097> 『매일일보』. 2018년 9월 19일.
- Molly Ball, “Peter Navarro Used To Be a Democrat. Now He’s the Mastermind Behind Trump’s Trade War” 『TIME』 2018.10.3.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1005000674> 『헤럴드경제』. 2018년 10월 5일.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46944&ref=A> 『KBS』. 2018년 10월 6일.

〈인터넷 자료〉

<http://www.koreasummit.kr/KoreanPeninsula/History>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6879&cid=43667&categoryId=43667>
『네이버 지식백과』. 2018년 10월 1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570294&cid=43667&categoryId=43667>
『네이버 지식백과』. 2018년 6월 12일.

홍재화, [홍재화의 무역이야기] - 對北사업가가 알아야할 북한 가격제도

한국은행, '2017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2018).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남북 평화무드 속 미리 가본 ‘남북경제협력 산업과 투자’ .”

〈분석 프로그램〉

<http://www.textom.co.kr/home/main/main.php> 『Textom』

<http://www.textom.co.kr/home/main/main.php> 『UCINET software』

<http://www.netminer.com/main/main-read.do> 『Netminer』

장 려

남북경제협력에서 정치적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중단 시 손해배상 모델 제안

- 배상합의기구 설립 및 상설중재재판소(PCA) 의뢰를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정민

《 목 차 》

【요약문】

【본 문】

- I. 서론
- II. 남북경제협력 30년과 현재
- III. 남북경제협력의 의의와 정치적 불안정성
- IV. 남북경제협력 內 정치적 불안정성 발생의 구조적 이유 분석
- V. 정치적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손해배상 모델 제안
- VI. 결론

【참고문헌】

【요약문】

남북경제협력에서 정치적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중단 시 손해배상 모델 제안

- 배상합의기구 설립 및 상설중재재판소(PCA) 의뢰를 중심으로 -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고 있다. 2018년 9월 19일 남북 정상은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하면서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 위에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올해로 남북경제협력은 30년을 맞는다. 초창기인 도입기(1988~1997년)에서 성장기(1998~2007년)로 넘어가면서, 남북경제협력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필두로 점점 확대되었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관광이 중단되면서 경제협력은 위기를 맞게 되었고, 결국 2018년 현재 남북은 “경협 제로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그렇다면 남북경제협력은 왜 필요한가? 이는 경제협력에 정치적, 경제적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남북경제협력은 정치적으로 ① 남북 군사대립의 완충 역할, ②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선투자 역할, ③ 북한주민에게 시장경제 학습의 실험장 역할을 수행한다. 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2050년까지 남북한 총 평균 5%의 성장과 총 417조 원의 경제효과가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남북경제협력 내 정치적 불안정성이다. 이처럼 남북경제협력에는 여러 의미가 있으나, 지금까지 경제협력은 경제교류를 통한 이익의 창출이라는 논리에서 벗어나 정치적 논리에 따라 위기와 재개가 반복되면서 민간의 손해가 막심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정치적 불안정성이 가져오는 가장 큰 피해는 바로 민간의 대북투자 의욕상실이다. 남북경제협력은 민간을 주체로 하여, 기업이 북한에 들어가 생산 및 투자를 하고 남북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남북한 당국은 민간의 투자를 장려할 뿐 이들에게 실질적 주체로서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당국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도구로써 활용하고 있다. 즉, 현재 남북경제협력은 남북한 당국이 기업경영의 핵심요

소인 토지사용료, 인건비 등을 정하면 민간이 이를 이행하는 구조이다. 그러므로 당국은 경제협력에 있어서 법적·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단순히 정치적 입지만을 고려하여 중단을 결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해결하는 모델로서 남북경제협력에 손해전보·배상체계 도입을 제안한다. 즉, 손해배상의 자기책임원칙과 전보기능 및 예방기능을 활용하여 남북한 당국의 경제협력 중단 결정을 억제하고, 혹은 중단되었더라도 민간이 손해를 배상받게 함으로써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민간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경제협력 중단 시에 민간 및 당국의 손해를 전보·배상하는 수단으로서, ① 남북 간 배상합의기구(남북경제공동위원회) 설립과 ②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에 재판 의뢰를 제안하고자 한다.

남북경제공동위원회 모델은 남북 간의 합의 배상 절차를 구체화하고, 이후 남북경제협력 확대에 몇몇 사업의 자연스러운 중단 시에 남북이 자유롭게 이후 절차를 합의할 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상설중재재판소(PCA) 모델은 남북한 중 일방이 경제협력을 중단하고 이후 손해 배상에 대한 합의 혹은 합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재판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배상 및 이행을 현실화한다.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고 있다. 2018년 9월 19일 남북 정상은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하여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 위에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 방안으로서 앞으로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북경제협력 재개의 순간이 도래한 것이다.

남북경제협력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교두보이며, 남북의 신(新)경제동력이다. 우선 경제협력은 남북한의 전쟁위기 해소 및 특수한 정치·안보적 이해관계 해결뿐만 아니라, 북한경제의 침체 또는 갑작스러운 붕괴로 인한 탈북자 발생,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증대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 등 예기치 못한 부정적 사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경제협력이 남한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상상 그 이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남북한 경제협력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17년부터 2047년까지 30년간 7대 남북경협사업(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 조선협력단지,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한강하구 공동이용, 경수로)을 추진했을 때 남한이 얻을 수 있는 경제성장 효과를 총 169조 4천억 원으로 추산하였다. 이때 북한의 경제성장 효과는 총 248조 9천억 원이다. 즉, 남북경제협력은 남과 북이 함께 성장할 기회라 할 것이다.

문제는 민간의 투자 의지이다. 북한에 들어가 공장을 세우고 자원을 개발하는 일은 민간이 주도할 역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다. 재벌총수들의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동행 그리고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96%가 재입주

의향이 있다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등을 종합하자면, 정부의 태도가 일응 타당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면을 살펴보지 않고, 현행 남북경제협력 체계에서 민간의 투자를 장담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착각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공단 내에 자본을 투하하였으며 이를 회수해야 할 위치에 있기에, 이들의 재입주 의향을 국내기업들의 남북경제협력 투자 의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게다가 재입주 의향 96% 중 69.3%는 정부와 북측의 재개조건 및 상황판단 후 재입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렇다면 민간은 왜 남북경제협력 투자에 두려움과 피로감을 호소하는가? 본 연구자는 이를 남북경제협력에 있어서 정경분리 원칙의 미적용이 그 이유라 본다. 왜냐하면 한반도 정치 상황으로 인한 경제협력 중단 가능성은 투자에 대한 회수를 불확실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 남북경제협력의 확대에 있어 필수불가결요소인 정경분리 원칙의 적용방안으로써,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전제

첫째, 본 연구는 남북경제협력의 재개 방안을 논하거나 그 방향을 예측하지 않는다. 남북경제협력의 재개 및 확대에는 UN 안보리대북제재와 미국의 대북독자제재 해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민간 투자의 활성화 모델 제시에 있기 때문에, 논의에 있어서는 대북제재 해제 이후 남북의 경제협력체계 재정비 합의 시기 도래를 전제로 한다.

둘째, 본 연구는 남북경제협력 내에서 사인 간의 분쟁해결 방안을 논하지 않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 간 정치적 분쟁의 영향력이 경제협력에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에 있다. 즉, 남북의 경제협력 중단 결정에 있어서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경제적 책임 또한 지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남북경제협력에 있어서 사인 간의 분쟁 및 2016년에 발생한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사이와 같이 국내법체계에서 해결 가능한 분쟁은 본 연구의 논의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남북경제협력에 있어서 정치적 불안정성 해소에 관한 선행연구는 정치 외교 및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주로 정치적 위험 관리라는 개념과 분쟁 이후 발생할 문제점을 정치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정치적 불안정성 해소 모델로서 손실보조제도 확충·다자주의적 이익균형 편승 등을 제시하였다(허은숙, 신동호·이재열, 박민정 등).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대부분의 모델은 남한만이 책임지는 사후적 보전수단이거나, 사전적 억제수단이라 하더라도 남북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의 참여를 요구하기에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더 나아가 북한도 동의하고 참여 가능한 모델인지, 실현에 있어서 남북 간의 재정적 부담이 없는지 등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북경제협력에서 정치적 불안정성 해소의 방향과 기초를 설정함에 있어서 실현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고, 경제협력 중단에 있어서 결정자와 피해자 사이의 모순적 관계를 법적 논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세부적으로는 남북한특수관계 아래 손해보전·배상체계 확립, 관련 법제화, 남북 합의의 법적 구속력 확보 방안을 고찰하는 데 있다.

II. 남북경제협력 30년과 현재¹⁾

1988년 시작으로 올해 30년이 된 남북경제협력은 정치·군사적 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변화를 겪었다. 이 장에서는 남북경제협력의 역사를 도입기(1988~1997년), 성장기(1998~2007년), 정체기(2008년~현재)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그 특징과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이해정, “新남북경협의 과제와 시사점- 남북경협 30년 평가”, 현안과 과제, 1호 (2018.01) 참고.

1. 도입기: 1988~1997년

남북경제협력은 1988년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 선언)」 발표를 계기로 시작되었다. 7.7 선언은 남북 주민의 상호 교류를 허용하고 남북 간의 교역을 민족 내부의 교역으로 간주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상호 협조 등을 강조하였다. 동년 10월 「대북 물자교류에 관한 기본 지침」²⁾ 발표를 통하여 남북교역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표 1> 7. 7 선언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선언명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 (노태우 대통령, 1988. 7. 7.)
주요 내용	① 남북 동포 간 상호 교류 추진 ② 이산가족의 생사·주소 확인, 서신 왕래, 상호 방문 적극 지원 ③ 남북 교역을 민족 내부 교역으로 간주 ④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 추구 ⑤ 국제무대에서 민족 공동이익을 위해 협력 ⑥ 북한의 대미·대일 관계 개선 협조 등

출처: 이해정. “신(新)남북경협 의 과제와 시사점- 남북경협 30년 평가” (현대경제연구원, 2018)

1991년에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기본합의서)」가 체결되었으나 1993년 북핵 위기 및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 사망 등으로 남북교역이 위축되었다. 이후에 제네바 합의(1994년 10월)와 1994년 11월 「제1차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³⁾가 발표되면서 위탁가공이 확대되었고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 진전 등으로 남북교역액이 증가하였으나, 1996년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 및 1997년 남한의 외환위

- 2) ① 민간상사의 북한물자 교역 허용, ② 민간상사의 북한물자 증개 허용, ③ 북한물자의 원산지 표시 및 상표 부착 허용, ④ 직·간접 교역물자에 대한 관세 미부과, ⑤ 남북 경제인 상호 접촉 및 방문 허용, ⑥ 북한선적의 상용선박 입항 허용, ⑦ 남북한 경제교류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
- 3) ① 기업 총수를 제외한 기업인 방북 등 남북 경제인사의 상호방문 허용, ② 1회 100만 달러 이하의 위탁가공용 시설제반출 및 기술자 방북 허용, ③ 500만 달러 이하의 시범적인 경제협력사업 실시 등.

기로 다시 위축되었다.

2. 성장기: 1998~2007년

1998년 4월 「제2차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⁴⁾에 의한 기업인의 수시 남북 확대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일행이 북한을 방문하여 금강산 관광 및 개발 사업에 합의하였다. 이어서 동년 11월 금강산관광이 시작 되었으며, 이후 금강산관광사업은 사업자인 현대아산이 금강산특구지역에 주도적으로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정부가 해당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며 이루어졌다.

〈표 2〉 금강산 연도별 관광객 수 및 관광수입

(단위: 만 명, 백만 달러)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관광객 수	21.2	5.9	8.7	7.8	27.3	30.2	23.8	34.8	20.1
관광수입	464.9	41.3	27.4	18.3	34.1	34.4	28.7	44.6	24.7

출처: 최장호·김범환,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이후 대규모 대북 지원이 추진되었으며, 당해 12월 「4개 경협합의서」⁵⁾와 그 이행을 위하여 체결된 9개의 「후속합의서」⁶⁾ 서명 등으로 남북경제협력은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특히 2003년 개성공단 착공은 남북경제협력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개성공단사업은 2000년 8월 22일 현대아산과 북한의 조선아시아

4) ① 기업 총수와 경제단체장 방북 전면 허용, ② 대북 투자규모 제한 완전 폐지, ③ 대북 투자제한업종의 ‘네거티브 리스트’화, ④ 생산설비 대북반출 제한 폐지 등.

5)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 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 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등.

6) 남북 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남북 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남북해운합의서, 남북해운합의서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등.

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개성 지역에 2,000만 평 규모의 공업지구 및 배후도시 건설 등을 목적으로 한 「공업지구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시기 남북은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3대 경제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2005년 남북 교역액이 1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07년에는 17억 9,8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3. 정체기: 2008년~현재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7. 11) 이후 금강산관광이 중단되면서 남북경제협력은 정체기를 맞게 된다. 게다가 2010년 천안함 사건(3. 26)에 대한 남한의 대북 경제제재인 「5. 24 조치」가 발표되면서 남북교역은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전면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남북 당국 간 주요 경제협력 사업을 비롯해 1,200여 개에 달하던 기업들의 사업이 모두 중단되었으며, 그 결과 남북 교역액도 정체를 겪게 되었다. 이러한 남북교역의 위축은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를 높였고, 2016년에는 대중 의존도가 무려 92.7%를 기록하였다.⁷⁾

<표 3> 5. 24 조치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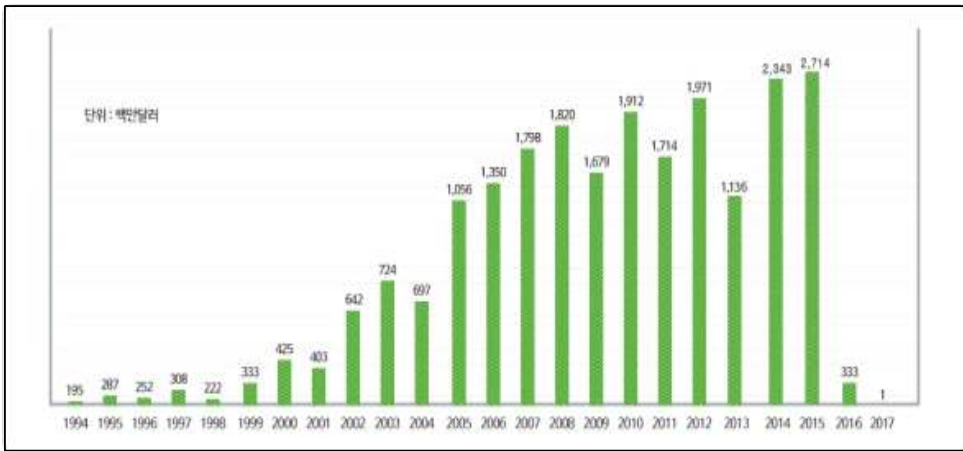
구분	내용
배경	천안함 사건(2010. 3. 26)이 계기
주요 내용	① 북한선박의 운항과 입항 금지 ② 남북 간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입 금지 ③ 북한 지역에 대한 방북 불허 및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제한(개성·금강산 제외) ④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개성공단은 지속하되 체류인원은 축소 ⑤ 대북지원 사업 원칙적 보류. 영유아 등 취약계층 인도적 지원은 유지

출처: 이해정. “신(新)남북경협 의 과제와 시사점- 남북경협 30년 평가” (현대경제연구원, 2018)

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6 북한 대외무역 동향, KOCHI자료 17-011, 2017. p. 14.

이러한 「5. 24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관련 교역액이 증가하여 남북교역 규모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3년 북한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매년 해오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이유로 한반도 정세를 경색 국면으로 몰아가다가 동년 4월 8일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전원 철수 조치를 취하였고, 결국 「5. 24 조치」에도 유지되어오던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되었다. 이후 남북 당국은 협상 끝에 동년 8월 14일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공단을 재가동하였으나, 2016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의 여파로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되었다. 이에 남북은“경협 제로시대”에 봉착하여, 현재까지 남북 사이의 모든 경제교류가 중단된 상태이다.

<표 4> 남북 교역액 현황



출처: 통일부 주요사업통계

위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 교역액은 2016년을 기준으로 급감하여 2017년에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이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경협 제로시대”가 장기화 될 경우에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 초래, 북한의 대중 의존도 심화, 경협기업(현대아산, 개성공단 입주 기업 등)의 경영난 초래, 남북 간 경제력 격차 확대에 의한 향후 통일비용의 증가 등의 문제가 예측된다.

Ⅲ. 남북경제협력의 의의와 정치적 불안정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경제협력은 여러 부침을 겪으면서도 30년간 유지되었다. 이렇게 오랜 기간 교역이 가능했던 이유는, 경제협력이라는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되는 관계 속에서 한반도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평화가 경제협력을 보장하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관계 속에서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남북경제협력의 정치적·경제적 의의와 그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단된 이유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정치적 의의 -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의 교두보

남북경제협력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의 교두보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첫째, 남북관계에서 경제협력은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과 군사적 대립의 완충 및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예컨대, 금강산관광이 시작되면서 장전항에 배치되었던 북한의 동해 함대가 후방으로 약 100km를 철수하여 사실상 군사분계선을 북상시켰다. 개성공단 또한 공단 조성을 계기로 남한의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 부대를 후방으로 약 10km 이동시킴으로써 북방한계선을 북상시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에 남북 사이의 간헐적 교전 등 군사적 충돌이 있었으나, 개성공단이 자리한 서부전선에서는 아무런 충돌이 없었다. 이는 개성공단이 서부전선을 완충지대로 만든 평화사업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⁸⁾ 이외에도 남북경제협력을 통하여 북한경제의 침체 또는 갑작스러운 붕괴로 인한 탈북자의 대량 발생,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증대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 등 예기치 못한 부정적 사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둘째, 남북경제협력은 한반도 평화 통일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한다. 경

8) 이제훈, 「교류협력 '제로시대' ...남북관계 28년 전으로 '후퇴」, 한겨레, 2016. 2. 10.

제협력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선투자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남북경제협력은 통일 이전 북한의 경제 및 인프라시설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통일에 따른 비용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한다.⁹⁾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2017년 통일의식을 조사한 결과,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3.8%이었다. 그러나 20대와 30대에서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1.4%와 39.6%이었는데, 이들은 현재 경제적 불황을 겪고 있어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발현된 것이다. 게다가 절반 이상의 국민들은 통일의 과정과 추진 방식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보다 단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이 되는 통일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통일의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나, 해당 지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¹⁰⁾ 따라서 남북경제협력의 확대는, 통일비용을 감소시키므로써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경제협력은 북한 주민에게 시장경제 학습의 실험장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¹¹⁾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¹²⁾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시행해야 하므로, 평화통일 정착의 성공 여부는 북한 주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정도에서 결정될 것이다. 모든 재화에 소유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고 필요한 재화와 용역은 자신이 알아서 마련하며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등 유상의 원리가 작용하는 남한의 시장경제사회와는 달리, 사회재산이 공동의 것으로 묶여 있는 등 무상의 원리가 작용하는 곳이 북한의 계획경제

9) 김영윤, “남북경협이 도달해야 할 목표는 무엇이며 어떻게 실현해야 하나?”, 김영윤의 통일·북한 아카데미, p. 6.

10) 정근식·김선 외 9인, 2017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p. 36·40-42.

11) 대한민국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12)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

사회이다. 게다가 북한에서 시장경제사회는 노동력을 상품화한 ‘부정적인 사회’로 묘사된다. 따라서 북한 주민에게는 노동력 제공의 반대급부로서 임금이 지급된다는 인식이 없으므로, 자기 노동력의 가치를 높여 더 많은 임금을 받으려는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¹³⁾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북한 이탈주민이 남한의 시장경제에 적응하는 데 7년이 소요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¹⁴⁾하여, 북한 주민이 갑작스럽게 시장경제로 노출될 경우 대부분이 빈민층으로 전락할 확률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 5만 4,763명은 다르다. 이들은 월급 수령 이전에 각 입주기업의 통계원을 통하여 자신들의 근무일수, 잔업, 특근 상황을 일일이 파악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 직접 사인을 한다.¹⁵⁾ 즉,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은 지난 14년 동안 노동력과 임금의 상관성, 사유재산 개념 확립 등 생생한 시장경제의 원리를 습득한 것이다. 따라서 남북경제협력의 확대는 다수의 북한 주민에게 시장경제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반도에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

2. 경제적 의의 - 남북의 新경제성장동력

현재 한국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내수 부진과 중산층 비중 감소, 저출산·고령화 등의 구조적 문제로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70~1980년대 9%에서 90년대는 7%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3%대 중반으로 하락하였으며, 최근에는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마저 밀돌고 있다. 이때 남북경제협력은 남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남한의 자본·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지하자원이 지속적으로 결합한다면 남북의 1·2·3·4차 산업 활성화, 관광사업 활성화, 한반도 경제권 영향력의 확대로 유라시아 경제권 형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

13) 채경희,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 및 방안”, 한국산학기술학회지, 제18권 제10호 (2017.10), p. 528.

14) 김은지, 「'한국 정착 탈북자들, 경제생활 적응에 7년 소요'」, VOA, 2015. 8. 13.

15) 최지용, 「'북 노동자, 자기 월급 철저히 따져.. 개성공단이 핵개발 출처? 난센스'」, 오마이뉴스, 2016. 2. 17.

<표 5> 남북 통합의 경제적 미래

(유라시아 경제권으로 확장될 경우를 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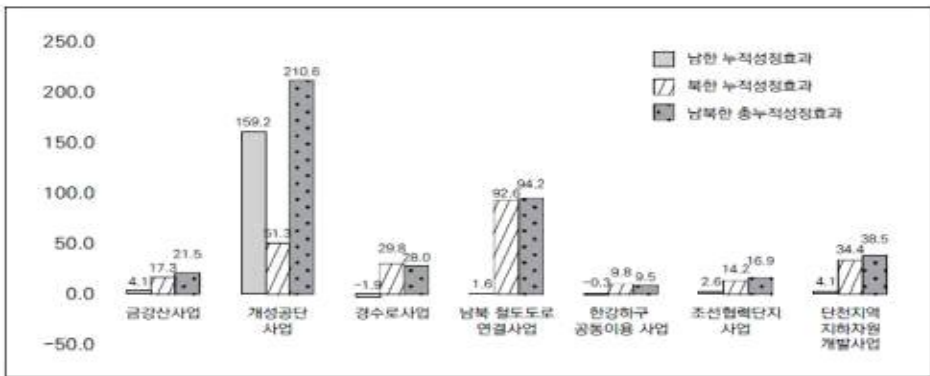
GDP(%)		남한	북한	남북한
성장률	2015~20	3.5	14.8	3.8
	2021~30	5.0	12.1	5.4
	2031~40	4.2	9.8	4.7
	2041~50	3.3	8.2	4.0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2050, 통일한국의 경제적 미래” (통일경제, 20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17년부터 2047년까지 30년간 7대 남북경협사업(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 조선협력단지,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한강하구 공동이용, 경수로)을 추진했을 때, 경제성장 효과로 남한은 총 169조 4천억 원, 북한은 총 248조 9천억 원의 이익을 얻는다고 추산하였다.

<표 6> 7대 남북경제협력별 경제성장효과 분석

(단위: 조 원)



출처: 최장호·김범환.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위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각 남북경제협력별 경제성장효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금강산관광사업은 전반적으로 북한의 경제성장에 기여하나, 2035년 이후로는 북한의 경제성장효과가 정체되는 반면 남

한의 경제성장효과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측된다. 따라서 금강산관광으로 30년 동안 누적될 남북한 누적경제성장효과는 총 21조 5,000억 원이며 남북한 각각은 4조 1,000억 원, 17조 3,000억 원이다. 둘째로 개성공단사업은 금강산관광사업과 달리 남한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다. 그 이유는 사업재개에 따른 생산성의 급격한 증가, 투자 증가, 북한 근로자 33만 명 고용에 따른 남한의 실질노동인구 증가 등에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 가동으로 30년 동안 누적될 남북한 누적경제성장효과는 총 210조 6,000억 원이며 남북한 각각은 159조 2,000억 원, 51조 3,000억 원이다. 이외에 경수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한강하구 공동이용, 조선협력단지 개발,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 등은 수치상 북한 경제에 이득이나, 이는 비핵화와 남북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북한 내 인프라 개발 등 남한의 정치·경제적 목적 아래 이루어지는 사업인 점, 초기 건설 기간 이후로는 투입되는 인력과 자원의 규모가 줄어 남한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점차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 5개 경제협력 또한 남한 경제에 큰 이득이라 할 것이다.¹⁶⁾

3. 남북경제협력 방해요인으로서 정치적 불안정성

이처럼 남북경제협력은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지금까지 경제협력은 경제교류를 통한 이익의 창출이라는 논리에서 벗어나 정치적 논리에 따라 위기와 재개가 반복되면서 협력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확대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여러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남북경제협력이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이기도 하다. 예컨대, 개성공단의 경우 「5. 24 조치」에 따른 남북관계 중단 상황에서도 계속되어 왔으나, 2013년 4월 위기 이후 남북당국이 주도하는 남북공동위원회가 공단운영을 주도함으로써 정경분리의 원칙을 크게 훼손한 바 있다. 기존의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남북공동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공단운영이 남북 간 정치협상의 대상으로

16) 최장호·김범환,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p. 109-120.

변질된 것이다.¹⁷⁾

그렇다면 남북경제협력에 있어서 정치적 불안정성이 가져오는 가장 큰 피해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민간의 대북투자에 대한 의욕상실이다. 남북경제협력은 민간을 주체로 하여, 기업이 북한에 들어가 생산 및 투자를 하고 남북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민간이 대북투자에 두려움과 피로감을 느낀다면 아무리 남북경제협력이 전 국가적인 이익이라 하더라도 이는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향은 남북 상호 간의 불신과 대화단절로 이어져 북한의 대남도발을 용이하게 만든다. 결국, 이 악순환의 피해는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경제협력의 재개 시,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 위에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남북 사이의 모든 경제협력에 정경 분리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한반도 정치 상황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의 중단은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IV. 남북경제협력 內 정치적 불안정성 발생의 구조적 이유 분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남북경제협력은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특유의 정치·경제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중단된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의 “경협 제로시대” 이전에도 남북경제협력에 있어 정경 분리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연구들은 많이 있었다. 이 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북경제협력이 극단의 제로시대에 봉착한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남북경제협력의 구조적 한계 분석

17) 정일영, “개성공단의 재개와 안정적인 발전방안의 모색”, KDB북한개발, 통권 제11호(2017.07), p. 57.

남북경제협력은 구조적으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정부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이러한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민간이 대북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는 상호불신을 전제하고 있다. 다만 남북경제협력이라는 대의를 위하여 상호불신이란 기본값으로부터 신뢰를 조금씩 쌓아 간 것이다. 그러던 것이 경제협력 성장기(1998~2007년)부터는 선후가 전환되어 경제협력이 상호신뢰로 연결되었으나, 남북 간의 부정적 기류 발생 시 빠르게 기본값으로 회귀하는 성질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이후 기본값을 넘어 상호불신의 극한으로 치달은 것이 2016년이며 그 결과가 지금의 “경협 제로시대”이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특징은 경제협력 중단으로 발생한 손해의 무전보·무배상 원칙으로 연결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에 직접 들어가 재화를 생산하고 지역 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민간이기에, 민간의 투자 확대가 있어야 남북경제협력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 당국은 이들에게 적극 투자를 장려할 뿐 실질적인 주체로서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는 남북한의 상호불신이 원인인데 근로자 억류, 투자사기, 교류로 인한 북한 주민의 민주의식 고취 등 경제협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을 정부 주도하에 최소화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금까지 남북경제협력은, 남북한 당국이 기업경영의 핵심요소인 토지사용료, 인건비 등을 정하고 기업이 당국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구조가 되었다. 예컨대 2015년 12월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단의 토지사용료를 1㎡당 0.64달러, 양측이 사용료를 4년마다 조정하기로 합의¹⁸⁾하였다. 즉, 개성공단에 투자 주체는 입주기업이지만, 이들은 투자 규모와 생산량 이외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정부가 결정하고 민간이 이행하는 현재의 모순적 구조가 남북경제협력의 중단에 있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결과를 만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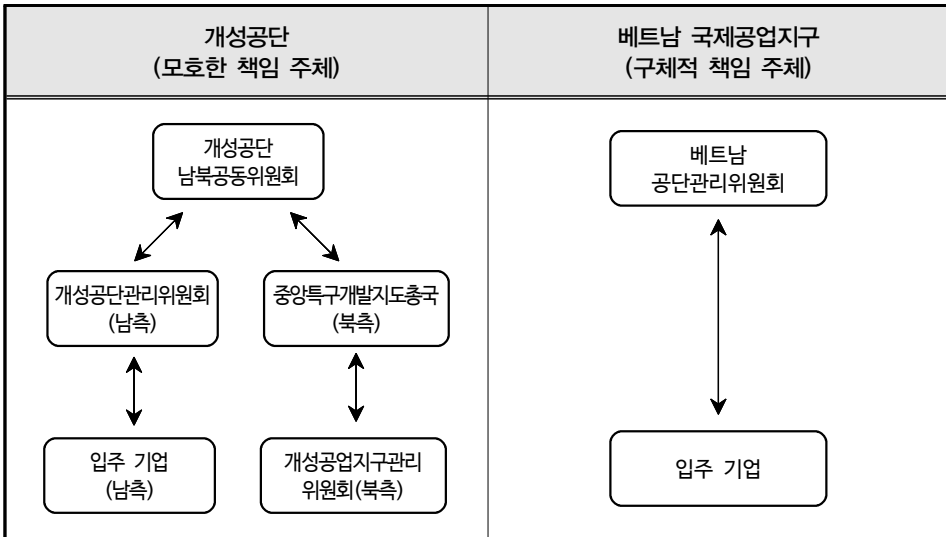
그렇다면 중국·베트남 등 다른 사회주의국가 내 국제공업지구 또한 이

18) 전수진,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합의…협상 과정에서 삼성 베트남 공단 등 참고해」, 중앙일보, 2015. 12. 24.

와 같을까? 아니다. 베트남의 경우 입주기업이 각 성(省, 한국의 시·도)의 공단관리위원회와 직접 협상하여 토지사용료를 결정하고, 급여 또한 베트남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반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각 기업이 자신의 니즈 충족을 위하여 베트남 당국과 직접 협상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간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의 주체가 명확하다.

<그림 1> 개성공단과 베트남 국제공업지구의 비교

(공단 내 네트워크 구조 비교)



출처: 본 연구자 작성

물론 남북 간의 신뢰가 쌓이기 전까지는 남북경제협력의 공공재적 성격을 포기할 수 없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남북경제협력은 남북한 모두에게 정치적·경제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비핵화, 대남도발의 중단 등 한반도 평화 정착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베트남과 같이 민간과 당국이 직접 합의하도록 구조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그 이유로 민간의 손해 발생 시 남북한 당국의 무배상 원칙을 당연시 할 수는 없다.

2. 남북경제협력 내 손해 발생 사례 분석 - 무전보(無填補)·무배상(無賠償) 원칙의 통용

남북경제협력에 있어서 손해의 무전보·무배상 원칙은 구조적인 문제이다. 현재 구조에서는 남북 간에 배상의 주체, 배상 절차, 배상 금액, 수령 방법 등 합의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 남북한 당국의 정치적 결정에 의하여 민간이 손해를 입은 대표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위 원칙의 통용 사실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1)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경수로사업 중단 사건

한국에너지개발기구(KEDO)는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면서 한반도에 위기상황이 고조되자 남한, 미국, 일본, 유럽연합이 참여하여 만든 기구이다. 1994년 미국과 북한은, 북한의 핵동결 대사로 100만 KW 급 경수로 2기를 건설해 경수로가 완성될 때까지 매년 50만 톤을 공급하기로 하는 제네바 합의를 타결하였다. 이에 따라 이듬해 KEDO가 출범하고, 그해 말 북한과 KEDO 간 경수로 공급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2002년 북한의 핵 우라늄 농축이 확인되면서 KEDO는 경수로 사업 재검토 결정을 발표하였고, 이에 북한은 핵동결 해제와 핵확산금지조약탈퇴를 선언하였다. 결국 협정이 파기되면서 KEDO는 대부분 기능을 잃었으며, 마침내 2006년 1월 프로젝트 종료 선언과 모든 인력의 귀국을 발표하였다. 이듬해 KEDO 사무부총장은 언론을 통하여 그동안 경수로 건설에 약 15억 달러가 투입되었으나 북한 측 과실로 프로젝트가 중단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방침이라 밝혔다. 그러나 KEDO는 현재까지 북한으로부터 손해액을 배상받지 못하고 있다.¹⁹⁾

2) 금강산관광사업 중단 사건

2008년 7월 11일 새벽, 금강산관광지구 내 해수욕장 인근 북한의 군사 통제구역에서 우리 측 50대 여성 관광객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19) 정준영, 「우여곡절의 11년 KEDO경수로사업」, 연합뉴스, 2006. 1. 8.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을 두고 남북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였고 북한은 우리 정부가 요구한 공동조사에 응하지 않아, 이후 남측의 잠정중단조치에 의해 금강산관광은 중단되었다. 이후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은 2009년 8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의 면담을 통해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① 금강산관광의 재개, ② 김정일 위원장의 특별조치에 의한 관광객의 안전보장, ③ 다가오는 추석에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등을 합의하였으나, 정부는 이 합의가 어디까지나 민간 차원의 합의이므로 이를 실현하려면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적 입장만 발표하였다. 결국 당국 간 합의는 불발되었고, 이에 북한은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을 통하여 금강산관광지구 내 정부 소유 재산과 현대아산 등 민간 소유 부동산 동결, 현대아산의 독점권 취소 등을 실시하였다.²⁰⁾ 이로 인하여 49개 금강산 입주기업의 손해액은 1조 원 이상에 이르지만,²¹⁾ 현재까지 남북한 당국 어디로부터도 배상받지 못하고 있다.

3) 개성공단사업 중단 사건

2013년 4월 8일 북한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매년 해오던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이유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전원 철수 조치를 취하면서 공단의 가동이 중단되었다. 이후 남북한 당국은 난항을 거듭한 협상 끝에 2013년 8월 14일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재가동을 합의하게 된다. 이렇게 129일의 중단기간 동안 한국전력·우리는행·현대아산 등 공공적 성격의 기관 10곳을 제외한 234개 입주기업이 통일부에 신고한 피해액은 투자액 5,437억 원, 원청업체 납품채무 2,427억 원, 재고자산 1,937억 원 등 1조 566억 원이었다.²²⁾ 그나마 이 사건의 경우는 남북한 당국이 합의하여, 기업들이 입은 피해 보상으로 2013년 세금을 면제하고 2013년 4월부터 발생한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협의하

20) 한명섭, 통일법제 특강, 한울아카데미, 2016, p. 360-363.

21) 노재완, 「“금강산관광 중단 10년 피해 보상하라”」, 자유아시아방송, 2017. 7. 11.

22) 정봉오, 「개성공단 기업 피해 규모 2013년 중단 때와 비교해 보니…」, 동아일보, 2016. 2. 12.

여 처리하기로 하였다. 이는 민간의 손해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나, 앞서 살펴본 남북경제협력의 구조상 입주기업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2016년 2월 10일 우리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등 도발을 이유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하였다. 이미 남북한 당국은 2013년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합의하였음에도, 개성공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²³⁾에 의하여 중단되었다. 이에 입주기업들은 현재까지 1조 5,000억 원 이상의 피해²⁴⁾를 보았으나, 정부는 그중 5,833억 원을 지원한 것 이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4) 소결 : 남북경제협력 중단 손해와 무전보·무배상 원칙의 통용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이는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국제법에서도 통용되는 진리이다. 그러나 남북경제협력에서는 남북한 당국의 무분별한 중단에 대하여 민간이 합당하게 배상받은 역사가 없음을 앞서 확인하였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본 결과, 현재 남북경제협력에서 손해의 무전보·무배상 원칙이 통용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당국의 법적 책임 부존재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양 당국은 협력 중단의 법적·금전적 책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정치적 입지를 이유로 남북경제협력을 중단한다. 특히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정치적 책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둘째, 손해배상제도의 부존재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남북경제협력의 중단은 책임소재 규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남북 간에 합의된 규명·배상절차도 없다. 따라서 남북경제협

23)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통일부 정책혁신 의견서, 2017, p. 11-13.

24) 고석용, 「개성공단 기업 “기다리다 지쳤다”...피해보상 요구로 선회」, 머니투데이, 2018. 8. 3.

력 내 정치적 불안정성과 손해배상 절차의 미비는 남북한 당국이 풀어야 할 숙제이다.

V. 정치적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손해배상 모델 제안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민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경분리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핵심은 어떻게 남북경제협력에서 정치적 불안정성을 해소할 것인가에 있다. 지금까지 남북경제협력을 다룬 모든 연구는 정경분리 원칙에 동의했으나, 정치적 합의 이상의 모델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경제협력 중단 시 민간 및 당국의 손해를 전보·배상하는 수단으로서, 남북 간 배상합의기구 설립 및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중재재판 의뢰의 합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1. 남북경제협력에서 손해전보·배상체계 확립의 중요성

모든 법인격체는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다른 법인격체에 귀속시키거나 전가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기 책임의 원칙은 모든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기본원리이다. 따라서 자신의 귀책사유로 타인에게 해를 가한 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은 정의의 기본적 요청(elementary justice)인 것이다. 손해배상이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여 불법행위가 없었던 상태로 가능한 회복하는 것이며, 이러한 전보 기능은 배상의 일차적 기능이다. 이와 더불어 예방기능이란 사전에 손해발생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기능을 말한다. 즉,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하는 기능을 수행하나,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예방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²⁵⁾

본 연구에서 남북경제협력 내 피해 배상 모델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자기책임원칙의 필요성이다. 정부는 공법인이다. 따라서 남북한 당국이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 아래 남북경제협력을 중단하기로 했다면, 그 책임은 이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협력은 중단된 책임을 민간이 감수하는 체계이다. 따라서 남북경제협력에서도 중단 결정의 책임을 남북한 당국으로 전환하는 모델이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전보 기능의 필요성이다. 어느 국책사업이라도 그 중단으로 인한 민간의 피해가 1조 원 이상이라면, 정부는 이를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사업 중간에 갈등 및 사건이 발생한 경우,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도롱뇽 사건)처럼 봉합 및 해결 이후 재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책사업의 메커니즘이다. 그러나 남북경제협력은 여타 국책사업과 달리 남북 간의 갈등 및 사건 발생 시, 이를 중단할 뿐 적극적인 재개의 노력이 부족하다. 물론 경제협력에는 UN 안보리대북제재와 미국의 대북독자제재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나, 이로써 남북한 당국이 경제협력을 대하는 미지근한 태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결국, 양 사업의 차이는 손해의 전보 가능성에 있다. 한정된 예산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로서는 1조 원이 넘는 피해를 배상하기 어렵기에 손해의 전보보다 문제의 해결을 우선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경제협력에서도 중단 시 민간의 피해를 당국에 전보하는 모델이 도입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방 기능의 필요성이다. 일반적인 손해배상에서는 피해 금액을 전보와 함께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하다. 이처럼 배상금액의 증가는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앞서 전보 기능에서 살펴본 바와 연결되는데, 일반적으로 법인격체가 계약으로부터 파생된 책임을 이행하는 이유는 손해의 전보와 위자료 등으로 인한 금전적 배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경제협력 내에 피해 배상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당국의 중단 결정을 억제하고 예방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에 있다. 남북경제협력은 남북한 당국과 민간이 협력하는 민족 통합

25) 이창현,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몇 가지 단상”, 서강법률논총, 통권 제6권 제1호 (2017.02), p. 163-194.

프로젝트이다. 그 거대함으로 인하여 협력이 중단될 경우 양 당국뿐만 아니라 민간의 피해가 특히 막심하다. 따라서 남북경제협력에서 정치적 불안정성 해소 모델의 핵심은 사전예방기능의 존재 여부가 되어야 한다. 사전예방기능이 활성화되어야, 남북한 당국은 지금과 같은 무조건적 중단보다 남북경제협력을 유지하며 문제를 해결할 다른 수단을 찾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손해배상 체계를 곧바로 남북경제협력에 적용하기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양 당국 사이에는 책임의 규명과 손해의 배상, 배상의 이행을 주도할 법원 같은 기구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북경제협력 내 피해 배상 모델로서, ① 남북경제협력 중단 시 남북 간 배상합의기구(남북경제공동위원회) 설립을 통한 민간에 손해배상 현실화, ② 합의 불발 시 피해 당국과 민간이 공동으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재판을 의뢰하여 협력 중단의 책임규명, 손해 금액 산정 그리고 배상 이행 감독의 현실화를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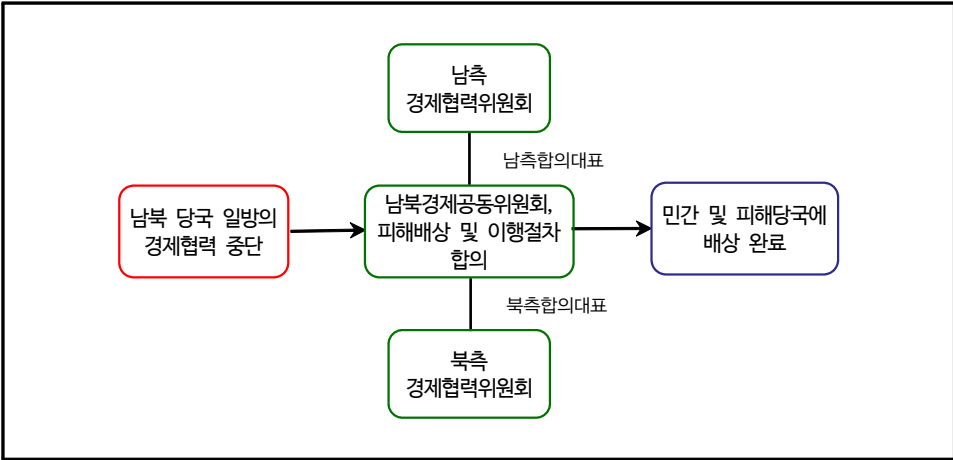
2. 남북경제공동위원회 설립 및 상설중재재판소(PCA) 의뢰를 통한 손해전보·배상모델의 합의

1)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통한 손해전보·배상 모델

(1) 남북경제공동위원회 모델의 개요

남북경제공동위원회는 이후 진행될 남북경제협력의 총감독기관이다. 따라서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에 관련된 모든 기관(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 등)은 남북경제공동위원회 산하 단체로 둔다. 남북경제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남북이 각 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하여 참여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 이유는 남북경제협력의 중단으로 민간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당국이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통하여 배상 합의를 진행하는바, 이때 각 경제협력위원회가 남북의 대표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2013년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 시처럼 남북 대표로 행정관료 및 정치인이 나와 민간의 피해 배상 범위를 결정한 잘

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 남북경제협력 전반에 대하여 심도 깊게 이해하고 있는 각 경제협력위원회가 피해배상 합의를 대표하는 것이 옳다.



출처: 본 연구자 작성

<그림 2>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통한 피해 배상 모델

(2) 남북경제공동위원회 모델의 유용성

남북경제공동위원회 모델의 유용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합의 절차의 구체화이다. 현재 남북은 경제협력 관련 대화 시마다 대표, 장소, 절차 등을 정하고 있어, 경제협력 합의와 피해 배상에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남북경제공동위원회의 존재는 경제협력 재개 및 중단 후 배상 합의의 시에 각 측의 대표, 장소, 절차, 이행수단 등을 사전에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유용성을 가진다.

둘째, 이 모델의 가장 큰 유용성은 자연스러운 협력 중단 시에 드러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예측대로 남북경제협력이 확대된다면, 경제협력사업 또한 7개가 아니라 더욱 다양해질 것이고 그중에 몇몇 사업은 자연스럽게 중단될 것이다. 만일 그때마다 중단을 이유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재판을 의뢰한다면 이는 배상비용보다 재판비용이 더 높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양측의 경제협력사업 필요성 감소로

인한 중단 시에는 민간의 피해를 배상하는 데 있어서 남북이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는 남북경제공동위원회에서 각 경제협력 위원회가 대표하여 그 범위와 금액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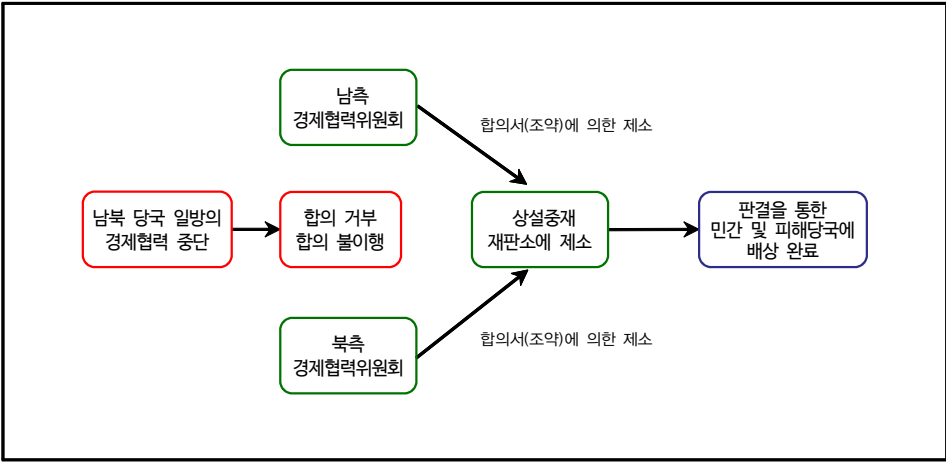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남북한 당국 중 일방이 경제협력을 중단하더라도, 남북 간 합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배상이 도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당국이 중단 결정에 대하여 책임 규명 의지가 있고 객관적인 규명을 통하여 합리적인 배상 범위와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통하여 배상 및 이행을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을 통한 손해전보·배상모델

(1) 상설중재재판소 모델의 개요

상설중재재판소에서 재판(Award)이란 분쟁 당사국 스스로 선정한 재판관에 의해 법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분쟁을 구속력 있는 판정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는 그 결과가 분쟁 당사국에 대해 구속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분쟁 당사국이 재판관과 재판의 준칙을 직접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도가 사전에 마련되어 있는 사법재판과 구별된다. 재판부의 구성은 대개 3명 또는 5명이 기준이 되나, 단독 재판관이 선임되는 경우도 있다. 재판 대상은 당사국의 합의만 성립되면 어떠한 분쟁도 재판에 회부될 수 있으며, 회부 방식은 분쟁 발생 후 특별협정을 통하거나 재판 회부를 사전에 조약으로 합의해 둘 수도 있다. 본 모델은 후자의 방식을 따른다. 재판의 준칙은 당사국 합의로 결정하며, 필요하다면 국내법도 준칙으로 합의될 수 있다. 이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재판부가 준칙을 결정하며, 통상 국제법에 의한 판정을 내린다. 재판 절차는 통상 서면제출단계와 구두변론단계로 구분되고, 이는 1심으로 종결된다.²⁶⁾

26) 정인섭. 新국제법입문, 박영사, 2017, p. 362.



출처: 본 연구자 작성

<그림 3> 상설중재재판소(PCA)를 통한 피해 배상 모델

남북한 중 일방이 경제협력을 중단하고 이후 손해 배상에 대한 합의 혹은 합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재판을 제소(의뢰)하는 방법으로 배상을 현실화한다. 이 경우 남북은 사전에 재판 의뢰에 대한 합의를 조약으로써 공포하고, 제소는 각 측의 경제협력위원회에 위임한다. 그 이유는 남북경제협력의 공공재적 특성에 대한 고려 및 각 민간에게 제소권을 부여할 경우 기관력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진행되는 서면절차와 구두변론절차에는 각 측의 대표가 참석하며, 판결 시 그에 해당하는 구속력을 바탕으로 배상을 이행한다.

(2)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의뢰 이유

여러 재판소 중에 남북경제협력 중단 시에 책임규명, 배상 범위산정 및 이행 명령을 상설중재재판소에 의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판 의뢰가 유용하다. 상설중재재판소(PCA)는 국가 간의 분쟁을 넘어서 국가, 국가실체, 정부 간 기구 및 사인 등의 다양한 조합을 포함하는 분쟁 뿐만 아니라 양자·다자조약 하의 분쟁을 비롯한 투자 분쟁과 국가 간의 영토·조약·인권 분쟁 또한 심리한다. 따라서 남북경제협력 중단에 배상 관정을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의뢰하면, ① 기관인 ‘경제협력위원회’가

남북한 당국을 제소할 수 있으며, ② 이때 북한에 대한 국가 승인 문제가 제기될 리 없고, ③ 오히려 ‘민족 내부의 특수 관계’를 국제적으로 인종 받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재판 절차가 유용하다. 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은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모델이다. ① 남한보다 국제적 영향력이 부족한 북한의 입장에서는, 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은 절차 진행에 있어서 분쟁당사자가 재판규범 및 재판관을 직접 정하므로 다른 재판소에 비해 패소 우려가 적고, ② 오래전부터 국제중재를 연구해온 북한이기에 중재재판 절차에 거부감이 없으며²⁷⁾, ③ 상설중재재판소(PCA)는 개발도상국의 재판비용을 지원하는 재정지원기금(Financial Assistance Fund)을 운용하므로 북한으로서는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판 결과가 유용하다. 지금까지 남북경제협력의 중단은 국내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 당국이 민간 피해에 대한 고려 없이 경제협력의 중단과 재개를 결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배상 범위 및 이행이 결정된다면, 그때부터 이는 국제문제가 된다. 판결 이후로는 남북한 당국이 정치적 입지에 의하여 피해배상을 합의할 수 없으며, 혹여나 이행을 거부할 경우에는 국제적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 즉, 국제적 영향력을 고려하는 남한과 국제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을 이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상설중재재판소 모델의 유용성

상설중재재판소 모델은 책임규명의 구체화에 의미가 있다.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서는 남북경제협력의 중단과 그로 인한 피해의 책임자가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한다. 과거 금강산관광사업 중단과 같이, 그 책임자가 명확하지 않으면 배상 청구의 상대방 선정부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설중재재판소 모델을 활용하면, 피해의 책임이 재판 절차 중 서면과 구두변론을 통해 구체화 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배상을 현실화할 수 있게 된다.

27) 이규창, 북한의 국제법관, 한국학술정보(주), 2008, p. 297-305.

3. 합의의 법적 구속력 확보 방안

본 연구의 손해배상 모델은 남북한 당국의 합의가 있어야 이행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중단 결정의 당국을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배상 모델의 현실화를 위하여 본 연구자가 제안하는 남북 간의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남북사이의 경제협력중단에 따른 피해배상 절차 합의서

(본 연구자 작성 가안)

남과 북은 2018년 9월 19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평양공동선언」²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임을 확인²⁹⁾하고 일방의 경제협력중단에 있어서 손해배상과 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손해배상절차의 원칙

남북 사이의 경제협력중단으로 생기는 손해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합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가해측이 배상을 이행치 않는 경우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에 중재재판 회부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합의서는 남과 북 일방이 경제협력을 중단할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 남북경제공동위원회의 설립

남과 북은 경제협력중단으로 생기는 손해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자 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위원회에 참여한다.

제4조 경제협력위원회 및 남북경제공동위원회의 구성

1. 남과 북은 각자 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2. 남과 북은 경제협력의 중단과정에서 생기는 손해전보·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경제공동위원회에 참여하며, 남북경제공동위원회의 구성원으로는 각 측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1명을 필수로 하되 나머지는 남과 북의 경제협력위원회 위원 총 8명 중 5명을 매년 무작위 추천으로 선임한다.³⁰⁾

제5조 남북경제공동위원회의 기능

남북경제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는 합의서 제3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한 사업 및 역할을 책임지고 주관한다.
2. 위원회는 남북 경제협력과 교류의 발전에 관련된 법안을 남과 북에 제안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3. 위원회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 및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 등 남북경제협력에 관련된 모든 협의체의 상부기관으로서 이를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4. 위원회는 남북경제협력의 중단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남과 북이 그 범위와 이행 및 집행 방법에 대하여 합의하고자 하는 경우에 장소 제공, 절차 감독 등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5. 남북장관급회담 또는 그가 정하는 기관을 통해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추가할 수 있다.

제6조 남북 사이의 손해배상 합의 절차

1. 남과 북의 경제협력위원회는 피해기업 및 사인을 대표하여 가해측 당국과 손해배상 금액과 방법에 대하여 협의한다. 다만 남과 북 당국이 입은 직접적인 손해는 해당 당국이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은 손해배상 합의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가해측이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상대측은 집행을 위하여 상설중재재판소에 중재재판을 회부할 수 있다³¹⁾. 이 경우 재판비용은 가해측이 부담한다.

제7조 상설중재재판소 중재재판 회부 절차

1. 남측 혹은 북측의 경제협력위원회는 남과 북 일방이 경제협력 중단 이후 배상협의를 거부하거나 배상을 이행치 않는 경우에는 피해법인 및 사인을 대

표하여 상설중재재판소에 중재재판을 회부하여야 한다.³²⁾

2. 다음 각 호중 어느 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남과 북 해당 당국은 상설중재재판소에 중재재판을 회부할 권한을 가진다.³³⁾

가. 일방의 경제협력 중단조치로 인하여 상대 당국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

나. 상대방의 위협적인 언동으로 인하여 경제협력 중단결정을 한 경우

다. 남북장관급회담 또는 그가 정하는 기관을 통해 합의한 기타의 경우

3. 남과 북은 상설중재재판소 판결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의 이행 및 집행

1. 남과 북은 합의된 손해배상을 양측이 정한 방법으로 이행 및 집행 한다.

2. 남과 북은 상설중재재판소 판결에서 정해진 손해배상을 재판소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행 및 집행한다.

제9조 남측 국회 및 북측 최고인민회의에 대한 보고³⁴⁾

남과 북의 경제협력위원회는 상설중재재판소에 중재재판이 회부된 경우에는 재판의 진행 과정 및 이 합의서에 따라 취한 위원회와 당국의 조치를 지체 없이 남측 국회 및 북측 최고인민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의 및 수정·보충

1. 남과 북은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생기는 문제를 남북장관급회담 또는 그가 정하는 기관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2. 남과 북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의 효력은 제11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발생한다.

제11조 효력발생

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남과 북은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남북경제공동위원회의 구성을 위하여 각각 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이 합의서는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8) 2018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 이전에 발생한 일방의 경제협력 중단행위는 본 합의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의미한다.

1) 합의의 법적 구속력 필요 이유

「남북사이의 경제협력중단에 따른 피해배상 절차 합의서」는 남북 간 합의이다. 따라서 본 합의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히 신사협정에 불과하므로 남한 정권의 교체나 북한 지도자의 변심 등으로 언제든지 폐기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미 1991년에 체결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기본합의서)」에 관하여 ...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간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기는 하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³⁵⁾한 바 있다. 게다가 2013년 남북한 당국은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통하여 경

29) 본 합의는 국회 비준뿐만 아니라 UN헌장 제102조를 근거로 UN사무국에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남북의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임을 국제법적으로 확인받음으로써 차후에 통일이나 경제교류 및 협력에 있어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30) 이는 남북경제공동위원회의 활동이 남과 북 중 한 쪽이 유리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함에 목적이 있다. 만일 위원회의 구성을 남북 동수로 할 경우, 북한의 구성원들은 의사가 일심동체일 확률이 높으나 남한의 구성원들은 민주주의 체제의 특성상 의사의 일심동체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원회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남북 경제협력위원회 위원 총 8명 중 매년 무작위 추첨으로 5명을 선임하는 것이 옳다.

31) 이를 임의법규로 규정한 이유는, 남북이 손해배상 합의 이후에 상설중재재판소로 집행을 회부할지 여부는 남북 당국의 통치행위 영역으로써 선택할 자유를 주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32) 국회에서 비준한 합의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법률위임으로써 대통령령으로 피해기업이나 사인이 남측경제협력위원회에 중재재판 회부의 신청방법을 정하는 것이 옳다. 혹여 기업 및 사인의 중재재판회부권을 인정할 경우, 상설중재재판소의 재판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 및 사인에게 기판력 발생의 문제 또한 발생하기 때문이다.

33) 남북 당국이 입은 직접적인 손해는 각자의 경제협력위원회가 아니라 당국이 직접 상설중재재판소에 중재재판을 회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다만 그 범위는 제한되어야 한다.

34) 남북의 경제협력위원회는 피해기업 및 사인을 대리하여 상설중재재판소의 중재재판에 참여하므로, 재판의 진행 과정 및 소송전략 등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필수이다. 따라서 본 조항은 국회 및 최고인민회의에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소송과정의 긴장감을 높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5)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4525 판결.

제협력 내 정경분리 원칙 적용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바, 이들은 법적 구속력 없는 합의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2) 피해배상 합의서의 국내법적 효력부여 방안

본 합의서에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남측의 국회와 북측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비준³⁶⁾을 동의하여야 한다. 비준 동의를 거친 합의서는 조약이기에 ‘법령등 공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공포하면 그 효력이 남북한 사이에 미치게 된다. 이렇게 구속력이 확보된 합의서는 ① 개별 법률로 규정되므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는 점, ② 시행 과정에서 하위법규로 세부규정을 마련할 수 있어서 원활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 ③ 국내입법조치 과정에서 합의서가 왜곡·변경될 우려가 적다는 점, ④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관행에 부합되고 국가승인의 논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³⁷⁾의 효과가 있어서, 당국이 합의를 더욱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미 남북은 경제협력 내 절차에 관하여 「4개 경험합의서」와 「9개 후속합의서」를 비준한 경험이 있으므로, 본 합의서 역시 앞서 13개 합의서와 같은 ‘남북경제협력 내 절차’에 관한 합의이기에 국회 비준 과정에서 발생할 정치적 부담으로부터 자유롭다 할 것이다.

이때 본 합의서 체결과 관련하여, 국회가 조약으로써 비준하는 것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는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³⁸⁾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승인은 기본적으로 당사국의 의사 문제로서,

36)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제21조(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①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며, 통일부장관은 이와 관련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한다. ②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④대통령이 이미 체결·비준한 남북합의서의 이행에 관하여 단순한 기술적·절차적 사항만을 정하는 남북합의서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서명만으로 발효시킬 수 있다.

37) 이장희·유하영 외 1인, 남북 합의문서의 법적 쟁점과 정책과제,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2007, p. 208-209.

38) 대한민국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남북한이 서로 합의하더라도 이것이 국가승인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유보 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국가승인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남북은 본 합의서에서 서로 국가승인을 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선언하였으므로, 이를 체결하더라도 북한에 대하여 국가승인을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피해배상 합의서의 국제법적 효력 부여 방안

북한의 법적 지위는 국내법적 관점과 국제법적 관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즉 우리 헌법에서 북한의 영토는 우리 영토에 해당하므로(대한민국헌법 제3조), 북한은 국가라기보다는 사실상 지방 정부와 같은 하나의 실체이다. 반면에 국제법상 북한은 명실상부한 국가이다. 여기서 문제는 국제법상 남북 간의 관계는 국가와 국가 관계로 보기 때문에, 제3국은 남북 간의 관계를 민족 내부로써 특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해 주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한 당국은 본 합의서의 국제법적 효력을 위하여 국회의 비준 동의 이후 이를 UN에 기탁하여 등록해야 한다.³⁹⁾

UN 헌장 제102조는 “헌장 발효 후 UN 회원국이 체결하는 모든 조약과 모든 국제협정은 가능하면 신속하게 사무국에 등록되고 또한 사무국에 의하여 공표되어야 한다. 이처럼 등록되지 않은 조약 또는 국제협정의 당사국은 UN의 그 어떤 기관에 대해서도 당해 조약 또는 국제협정을 원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합의서를 등록하는 것은 UN 회원국들에 부과된 의무이긴 하지만, 그 등록이 UN 부속기관들에 대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으므로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합의서를 UN에 기탁함으로써 ① 본 합의서를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항할 수 있는 법적 문서로 승격할 수 있으며, ② 차후에 남북 간의 경제교류협력 문서로 원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국제사회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를 민족 내부의 특수 관계로 인정받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39) 이장희·유하영 외 1인, 전거서, p. 220-221.

VI. 결론

2018년 10월 2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는 대북 제재의 완화가 아니라 대북제재의 면제를 요구했으며, 미국이 북미 정상 회담의 첫 실천 조치의 하나로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제재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듯 남북경제협력의 재개는 갑작스럽게 시작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미리 준비해야 한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기회일지도 모른다. 경제협력을 재개하면서 사전에 그 구조를 개혁할 기회를 분명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남북경제협력의 구조를 주체에게는 권리를, 당국에는 책임을 부여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 남북경제협력의 주체는 민간이다. 민간의 대북투자 및 북한 내 생산 없이는 남북경제협력이 유지될 수도, 더욱이 확대될 수도 없다. 그러나 30년 동안 협력의 역사에서 민간은 정부 대신 경제협력 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책임졌으며, 이들은 현재 대북투자에 대한 피로와 두려움에 갇혀있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협력 내 모순적인 구조를 인정하더라도, 민간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자세가 정부에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고민 아래 민간의 신뢰 회복 방법으로 남북경제협력 내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손해배상 모델의 의미는 경제협력에서 책임의 소재를 구체화·객관화하고, 흑여 협력이 중단되더라도 배상을 현실화함으로써 민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있다. 남북경제협력이 시작된 지 30년 동안 남북 모두는 민간의 우려를 도외시하고 오로지 정치적 관점에서 경제협력에 접근해왔고, 이에 대부분의 선행연구 또한 정경분리 원칙을 주장하면서 정치적 합의 이상의 것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제는 남북경제협력을 장기적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이다. 즉, 재개를 앞둔 지금이, 남북경제협력 내 경제적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민간의 투자 유치를 고민해야 할 적기인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당국은 합리적인 제도를 통하여, 민간이 가진 협력 중단의 두

려움을 해소해주어야 한다.

툽니바퀴의 톽니가 연결되어 하나의 정합을 이루듯, 본 연구가 제안한 모델이 남북경제협력의 태생적 모순과 정치적 불안정성을 치유하여 경제 협력이라는 하나의 아름다운 순환을 만들 것이다. 이로 인해 남북의 경제가 하나가 되고 민족이 하나가 되어, 남북경제협력이 통일의 마중물이었음을 확인할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길 소망한다.

【참고문헌】

〈국내 단행본〉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6 북한 대외무역 동향, 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7.
- 법무부, 2017 통일법무 기본자료, 과천: 법무부, 2017.
-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알기 쉬운 국제법률기구, 서울: 외교통상부, 2011.
- 이규창, 북한의 국제법관,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08.
- 이장희·유하영 외 1인, 남북 합의문서의 법적 쟁점과 정책과제, 서울: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2007.
- 이효원, 남북교류협력의 규범체계, 서울: 경인문화사, 2006.
- _____, 통일법의 이해, 개정판, 서울: 박영사, 2018.
- 정근식·김선 외 9인, 2017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2017.
- 정인섭, 新국제법입문, 제2판, 서울: 박영사, 2017.
- 최장호·김범환,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통일부 정책혁신 의견서, 서울: 통일부, 2017.
- 한명섭, 통일법제 특강,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6.

〈해외 단행본〉

- Daly, Brooks W. & Goriatcheva, Evgeniya. & Meighen, Hugh A., *A guide to the PCA arbitration rules*, United Kingdom :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국내 학술지〉

- 김영윤, “남북경협이 도달해야 할 목표는 무엇이며 어떻게 실현해야 하나?”, 김영윤의통일·북한아카데미, 제6호(2012.05).
- 이창현,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몇 가지 단상”, 서강법률논총, 제6권 제1호 (2017.02).
- 이해정, “新남북경협의 과제와 시사점- 남북경협 30년 평가”, 현안과과제, 제1호 (2018.01).
- 정일영, “개성공단의 재개와 안정적인 발전방안의 모색”, KDB북한개발, 제11호 (2017.07).
- 채경희,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 및 방안”, 한국산학기술학회지, 제18권 제10호 (2017.10).

〈신문 기사〉

- 고석용, 「개성공단 기업 “기다리다 지쳤다” …피해보상 요구로 선회」, 머니투데이, 2018. 8. 3.
- 김은지, 「‘한국 정착 탈북자들, 경제생활 적응에 7년 소요’」, VOA, 2015. 8. 13.
- 노재완, 「“금강산관광 중단 10년 피해 보상하라”」, 자유아시아방송, 2017. 7. 11.
- 이제훈, 「교류협력 ‘제로시대’ …남북관계 28년 전을 ‘후퇴’」, 한겨레, 2016. 2. 10.
- 전수진,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합의…협상 과정에서 삼성 베트남 공단 등 참고해」, 중앙일보, 2015. 12. 24.
- 정봉오, 「개성공단 기업 피해 규모 2013년 중단 때와 비교해 보니」, 동아일보, 2016. 2. 12.
- 정준영, 「우여곡절의 11년 KEDO경수로사업」, 연합뉴스, 2006. 1. 8.
- 최지용, 「“북 노동자, 자기 월급 철저히 따져.. 개성공단이 핵개발 출처? 난센스”」, 오마이뉴스, 2016. 2. 17.

〈기타〉

대한민국헌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 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 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 PCA Arbitration Rules 2012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4525 판결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

입 선

통일교육 품질요인이 통일교육 효과에 미치는 영향

- 대학생의 인식을 중심으로 -

안양대 공공행정학과 구민금·이예진

《 목 차 》

【요약문】

【본 문】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설계
- IV. 분석결과
-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 부록 1 : 통일교육 품질 요인과 통일교육 효과 요인
항목별 기술통계량
- 부록 2 : 설문지

【요약문】

통일교육 품질요인이 통일교육 효과에 미치는 영향

- 대학생의 인식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통일 교육의 통일교육 품질요인과 통일 교육의 효과 간에 관계를 분석하고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통일교육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Kirkpatrick 모형에 기반하여 통일교육 효과 요인은 반응, 학습, 행동으로 세분화하고 통일교육 품질요인은 통일교육 환경, 교육내용, 교육방법, 강사전문성으로 구성하였다. 통일교육 품질요인이 통일교육 효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통일교육 품질요인과 반응, 학습, 행동 그리고 교육환경과 교육내용, 강사전문성과 반응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통일교육 효과에 관한 선행요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통일교육 효과개선을 위한 적실성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통일 교육, 통일 교육 품질요인, 교육 효과 평가

I. 서론

통일을 위해서는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사회구성원들의 통일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 인식, 태도 등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하지만 향후 통일시대 주체가 되어야 하는 20대 젊은 계층의 통일의식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다. 통일의식조사(2017)에 따르면 전 연령층 중 20대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특히 통일추진 방식에 대한 문항에서 ‘통일엔 관심 없다’라는 20대 응답자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향후 통일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20대의 통일인식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되는 내용이다.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인식, 그리고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올바른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통일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교육의 목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데 있다(「통일교육 지원법」). 구체적으로 통일교육은 남북한 관계 및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의식 형성을 위해, 통일문제에 대한 시각 차이를 최소화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 및 남북의 화해 및 협력, 평화 통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해 통일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학교 및 사회교육을 통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젊은 계층의 통일의식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에서 설명한 통일의식조사(2017) 결과는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논의들이 다양하게 시도되어왔다. 하지만 이들 연구들은 통일교육의 실태를 조사하거나 통일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논의에 그치고 있다. 구

체적으로 통일교육 효과를 다면적으로 검토하고 통일교육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통일교육 품질요인이 무엇인지, 통일교육의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통일교육의 어떠한 분야가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교육의 품질요인이 통일교육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통일교육 품질요인인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환경, 강사전문성이 통일교육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통일교육 품질요인 중 반응, 학습, 행동에 각각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등은 본 연구의 핵심 연구문제이다.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활용한다. 첫째, 문헌연구이다. 문헌연구의 목적은 통일 교육 요인과 통일 교육 효과의 개념적 관계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기 위함이다. 문헌연구를 위해 통일교육과 관련된 정부 보고서, 학술 논문, 연구보고서 등을 활용한다. 둘째, 실증연구이다. 실증연구의 목적은 이론적 논의를 통해서 설정된 통일 교육 품질요인과 통일 교육 효과요인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가설을 검증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통일교육

통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분야에 걸친 통합을 의미한다. 통일이란 분단된 국토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 대립되었던 체제를 하나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통일부, 2016). 이외에도 통일은 경제적으로 서로 다른 제도를 하나로 거듭나게 하고, 남북 주민 사이

에 내면화된 이질적인 문화를 하나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포함한다(통일부, 2016).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두 개의 남북한 체제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뿐만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이 민족적 일체감을 가지고 하나의 국가 테두리 안에서 소속감을 공유하는 상태를 달성할 수 있다(최정란, 2017).

성공적인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물론 정치·경제, 사회·문화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남북한 관계 및 통일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수단은 통일교육이다. 통일교육이란 통일을 앞당기거나 통일 후를 대비하기 위한 국민의 의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모든 교육 활동을 말한다(이영혜, 2010).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르면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 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동법 제2조 1항).

통일교육은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 있는 북한관의 정립을 통해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바람직한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송한, 2016). 구체적으로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신념체제를 바탕으로 북한이라는 실질적 민족 공동체로 인식하는 균형 잡힌 북한관을 함양하여 남북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통일관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통일교육원, 2018).

통일교육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통일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통일교육은 사회에 존재하는 통일문제에 대한 시각의 차이를 조정하고 적절한 합의점을 도출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하다(조형국, 2015). 둘째, 통일교육은 남북관계와 통일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통일교육은 국민들이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내외적 통일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통일 환경에 적응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이원규, 2009). 셋째, 통일교육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이송한, 2016).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통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적지 않다. 통일로 인해 발생가능한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비하는 선행작업으로서 통일교

육은 필요하다. 또한 통일교육은 통일 과정에 대한 이해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족의 이질성 극복과 같은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다(유주한, 2012). 넷째, 통일교육은 남북의 화해 및 협력과 평화 통일의 중요성 인식을 위해서 필요하다. 통일교육을 통해 통일에 대비한 민족역량 결집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유주한, 2012).

2. 통일교육 품질요인

교육품질이란 교육의 우수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만족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교육만족 또는 교육의 우수성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교육만족도는 학업성취, 학습개발 등의 다양한 변수와 연관되어 나타난다. Astin(1993)은 교육만족을 ‘학생의 교육훈련 경험에 대한 주관적 반응을 확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양기훈, 2009). 양기훈(2009)은 교육만족도를 결정하는 교육 요인으로 교수와의 관계, 교육의 과정 및 수업, 교육환경, 학생의 학교에서의 생활을 제시하고 있다. 김지현(2011)은 기존의 교육내용 및 방법 중심의 교육만족 평가에서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내용 및 방법은 물론 첨단교육 기자재, 고품질의 직원 서비스, 쾌적하고 편의성 높은 교육시설, 양질의 강사 자질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교육활동이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변주성(2010)은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강사, 교육효과, 시설 만족, 학습구성원 만족 등으로 학습만족의 교육 요인을 분류하였으며, 이동숙(2017)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내용, 교육의 커리큘럼, 강사 능력, 교육환경 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들 교육서비스 구성요인이 상호작용할 때, 교육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한편 민형원(2006)은 대학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을 투입, 과정, 산출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투입요인은 학생특성, 교수특성, 재정력과 경영,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되고, 과정요인으로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학습수준, 교수의 자질, 산출요인으로는 교육과정 이후의 학생특성과 연구 및 수상실적 등에 따른 교수특성으로 구분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품질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요인은 교육환경, 교육내용, 교육방법, 강사전문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통일교육 품질은 무엇이고, 이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통일교육의 품질은 앞에서 살펴본 교육품질과 동일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통일교육의 품질은 통일교육의 우수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일교육 환경, 교육내용 및 방법, 강사의 전문성 등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교육 품질요인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교육 환경은 교육 만족도 및 통일교육의 품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예를 들어 통일교육이 진행될 경우 교육생 수의 적절성, 강의실 내 기자재의 적절성, 교육공간의 쾌적성 및 청결성 등은 교육의 품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교육환경은 교육의 내용 및 목적과 적합해야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오순환, 2015). 통일교육이 시행되는 공간이 너무 협소해 조별로 토론을 하거나 활동하기 어려울 경우, 기자재가 교육을 듣기에 너무 열악하거나 교육장이 청결하지 못할 경우 효과적인 교육을 저해할 수 있다.

둘째, 통일교육 내용은 교육 참가자가 해당 교육을 통해 실제로 얻은 지식에 대해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의 내용이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통일과 관련성이 높아야 하며, 교육자들의 부족한 지식이 충분히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통일교육원, 2018). 통일교육 커리큘럼의 구성, 통일교육에 맞는 목표 제시, 통일교육에 대한 추가 보조자료 제공, 통일교육 내용에 새로운 사실 포함 유무 등은 통일교육의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셋째, 통일교육 방법이 적절하지 못하면 교육의 효과는 기대하기가 어렵다(유문, 2012). 통일교육 과정에서 다양한 수업방법을 활용하고 있는지,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는데 효과적인 수업방식을 활용하고 있는지(통일교육원, 2018), 통일교육 내용에 적합한 교육방법을 적용하고 있는지는 통일교육의 품질은 물론 교육효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넷째, 강사 전문성 역시 교육품질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강사 전문성의 구성요소로는 강사의 강의 스킬 및 동작과 화법의

적절성, 수업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성, 수업에 대한 성실성, 교육 내용에 대한 준비성, 강사의 내용 전달성, 강사의 커리어 등이 포함된다(유문, 2012).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강사가 교육내용을 교육자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있는지, 강사의 강의 스킬 및 동작과 화법은 적절한지, 통일교육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지, 성실한 교육준비 및 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등은 통일교육의 품질은 물론 교육효과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3. 통일교육의 효과 모형

일반적으로 교육의 효과란 교육 기관인 조직이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일정 기간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 결과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교육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모형이 개발되었다. 교육효과 평가모형 중 다양한 영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모형은 Kirkpatrick 모형이다.

Kirkpatrick 모형에서는 교육의 효과를 ‘반응-학습-행동-결과’등 4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각 단계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태형, 2012; 문은정, 2018; 박효정, 2010; 설현수 외, 2009; 이홍재·이현철·차용진, 2015; 주영주·김소나, 2008).

반응(reaction)은 교육 참가자들이 느끼는 만족도를 의미한다. 반응평가 구성요소로는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시간, 강사의 전문성, 교육시설 및 환경 등이 포함된다. 반응평가는 교육훈련의 내용과 방법 및 프로그램의 운영과 개선을 위한 피드백(feedback)을 제공하고, 향후 프로그램을 위한 수행 준거를 수립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박효정, 2010: 20). 이러한 맥락에서 반응은 통일교육에 대해 수강자들이 느끼는 주관적 만족도를 의미한다. 통일교육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이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시간, 강사의 전문성, 교육시설 및 환경 등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가 반응에 포함되며, 이를 평가함으로써 통일교육의 1차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학습(learning)은 교육 참가자들의 교육목표 달성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해당 교육을 통해 획득한 지식 및 기술의 향상이나 태도의 변화를 의미한다. 학습평가 요소로는 통일 교육을 통한 수강자의 인식 및 태도의 변화, 획득한 지식의 기억 여부, 중요성 인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학습평가의 시기는 교육 직후 또는 일정 기간이 경과 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습효과는 설문지나 관찰방법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학습평가는 교수자에게는 교육에 대한 피드백 제공과 교육과정 설계 및 내용 개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교육 참가자에게는 학습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성을 지닌다(전주성·김소영, 2011: 130). 이에 통일교육의 학습효과는 통일교육의 2차 효과로 교육을 통해 새롭게 습득한 지식 및 기술의 향상이나 인지수준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행동(behaviour)은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 기술, 태도를 참가자들의 실제 현장에서 적용·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동효과는 교육을 통해 학습한 내용이 개개인의 삶에서 실현 또는 전이되고 있는지를 강조한다(설현수 외, 2009; 주영주·김소나, 2008). 행동평가는 설문조사, 관찰, 인터뷰, 직장동료를 조사하는 방법이 있다(고태형, 2012; 문은정, 2018: 50).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교육의 행동효과는 통일 관련 새로운 지식, 중요성 인지, 인식의 변화가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알고 있는 것’(knowing)을 현장에서 ‘실천’(doing)하는 것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점을 감안할 때 통일교육을 통해 학습한 내용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실천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result)는 교육이 조직의 성과에 기여한 정도를 의미한다. 결과평가란 교육을 통해 학습한 것을 적용해 조직에 어떠한 성과를 가지고 왔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결과평가도 행동평가와 마찬가지로 교육 후 충분한 기간을 가진 후에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관련 데이터를 통한 계량적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Kirkpatrick, 2008; 문은정, 2018: 50).

Kirkpatrick 모형은 교육효과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각 단계들

이 논리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적용방식이 간단하고 결과 또한 실용적이다. 또한 Kirkpatrick 모형은 간단하고 명료한 체계성에 기반하여 교육의 효과를 다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통일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모형으로 Kirkpatrick 모형을 활용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반응-학습-행동’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홍재 외(2015: 6)에 따르면 ‘반응-학습-행동’은 개인 차원의 효과평가에 해당되며, ‘결과’는 조직 차원의 교육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통일교육의 품질요인이 통일교육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대학생 개인을 분석단위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직적 차원의 교육 효과요인은 결과를 제외하고 개인차원의 효과요인인 반응, 학습, 행동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의 효과를 살펴본다.

4.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는 통일교육 품질요인과 통일교육 효과 요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통일교육 및 통일교육 효과와 관련된 연구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통일교육 효과요인에 대한 대표적 연구로는 길은배 외(2003), 신의기(2010), 이정경(2012), 최영표(2004), 한민길 외(2003) 등이 있다. 길은배 외(2003)는 학교 통일 교육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통일교육 내용이 학교 교육에서도 잘 반영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교육이 통일교육지침을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거나 교육 방법을 다양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사 스스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어 교사 연수 기회가 질적, 양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의기(2010)는 통일교육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찾고 사회·문화적인 접근방법 중심의 통일 교육 개선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통일인식을 제고하여, 교과과정에서 실효성 있게 행해지기 위한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통일교육에 대한 지나친 당위성 주장, 통일 교육에 대한 무관심과 언론매체의 영향이 더

크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통일교육의 효과를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정경(2012)은 미디어를 활용한 문제기반 학습이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와 통일 교육에 관련된 학습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통일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환경 설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도덕과 통일교육에서 미디어 활용 문제기반학습은 학습자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효과적이며, 미디어 활용 문제기반학습은 학습자의 통일교육 관련 학습 동기 변화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하였다.

최영표(2004)는 통일교육의 방향과 목표, 내용, 방법, 그리고 지원체제 별로 준거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통일교육의 방향에 있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 확립이 미흡함을 보고하였다. 교육방법에서는 능동적이고 다양한 체험활동이 미흡하여 관심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원체제는 최근 개선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상존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한민길 외(2003)는 통일교육의 성과 분석을 부문별, 영역별, 쟁점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통일교육의 목표 부문에서 현행 통일교육이 북한사회의 객관적 이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에 대한 기여에는 절반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교육방법에 있어서 개방적 토론의 활성화, 다양한 정보자료의 활용, 다양한 체험활동 참여 등이 대체로 미흡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영역별 분석결과에서 사회통일교육에 있어서는 과거에 비해 객관적 교육기회가 보다 많이 제공되고 있으며, 정형화된 프로그램의 미비, 균형 잡힌 통일관 형성 미흡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마지막 쟁점별 분석결과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 대해 대체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한반도 평화정책을 우선적인 과제로 인식하면서도 현존하는 난관이 많아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일교육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들은 통일교육의 환경, 내용, 방법, 강사전문성이라는 교육 품질요인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통일교육

실태를 조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통일교육 품질요인이 통일교육 효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통일교육 품질요인인 교육환경, 교육내용 및 방법, 강사전문성이 통일교육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통일교육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이를 통해 포괄적인 관점에서 통일교육 효과에 관한 선행요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통일교육 효과 개선을 위한 적실성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선행연구 검토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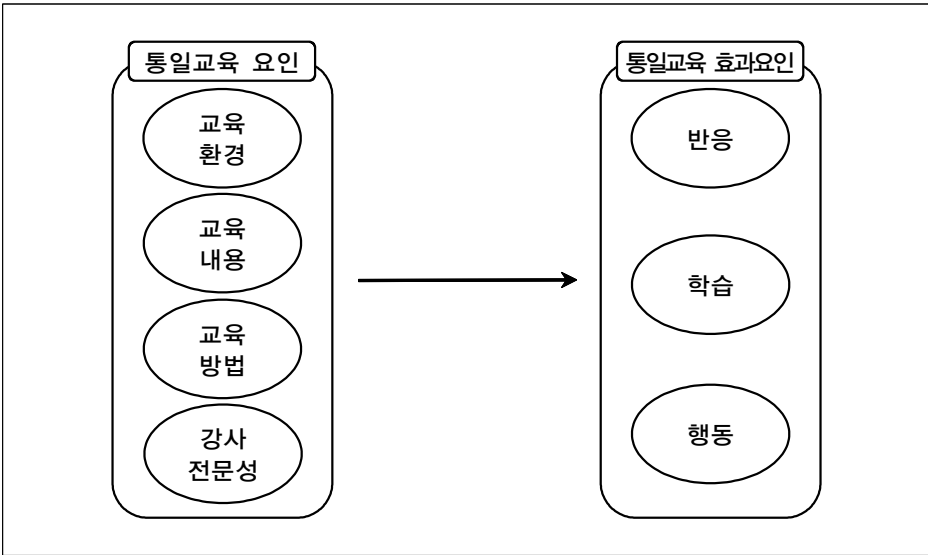
연구자	분석요인	연구대상	분석방법
길은배 외 (2003)	영역별요인 (학교통일교육, 사회통일교육)	학교통일교육 담당지도 선생님	설문조사
신의기(2010)	학습내용, 학습방법	청소년	설문조사
이정경(2012)	학습동기, 학습성취도	초등학생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최영표(2004)	통일교육 목표, 내용 교육방법, 지원체제	통일교육전문가	통일교육 전문가와의 면담 조사
한민길 외 (2003)	부문별, 영역별, 쟁점별	초·중·고 학생 및 선생님	설문조사 및 의견조사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통일교육 요인과 통일교육 효과 간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내용을 토대로 <그림 1>의 연구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 아래의 연구모형은 통일교육 품질요인과 통일교육 효과요인으로 구성된다. 독립변수인 통일교육 품질요인은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일교육 환경, 교육내용, 교육방법, 강사전문성으로 구성된다. 종속변수인 통일교육 효과요인은 Kirkpatrick의 모형에 기반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반

응, 학습, 행동으로 세분화된다. 연구모형에 따르면 통일교육 품질(교육환경, 교육내용, 교육방법, 강사 전문성)이 우수할수록 통일교육 효과(반응, 학습, 행동)는 개선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림 1> 연구모형

2. 가설설정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품질요인이 통일교육 효과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내용을 토대로 설정된 연구모형에서 가정하고 있는 통일교육 품질요인과 통일교육 효과 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통일교육 환경은 통일교육 효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통일교육 환경은 반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통일교육 환경은 학습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통일교육 환경은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통일교육 내용은 통일교육 효과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통일교육 내용은 반응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통일교육 내용은 학습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통일교육 내용은 행동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통일교육 방법은 통일교육 효과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통일교육 방법은 반응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통일교육 방법은 학습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통일교육 방법은 행동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강사 전문성은 통일교육 효과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 강사 전문성은 반응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 강사 전문성은 학습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3> 강사 전문성은 행동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통일교육 품질요인이 통일교육 효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학생을 연구모집단으로 설정한 이유는 첫째, 대학생은 향후 통일준비 및 실현 단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주체이고, 둘째,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20대의 통일의식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셋째, 대학생의 경우 통일교육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기에 가장 대표적인 세대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설문조사를 위한 표본선정은 총 2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1단계에서는 지역(수도권, 비수도권)을 우선적으로 구분하고, 2단계에서는 대학에서 통일교육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약 40일(2018년 8월 6일~9월 16일) 동안 온라인 조사와 현장 조사를 통해 시행되었다. 온라인 조사는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해 SNS(카카오톡)으로 조사하였고, 현장조사는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하고 있는 통일교육 강의에 사전협조를 구하여 연구팀원의 직접 방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총500부(수도권: 300부, 비수도권: 200부)를 배포하였으며, 총 415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83%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중 불성실한 응답하였거나 통일교육 수강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설문 65부를 제외한 350부(유효 회수율: 70%)만이 실제 분석에 활용되었다.

<표 2>는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여준다. 첫째, 응답자의 성별 분포의 경우 여학생(58.0%)이 남학생(42.0%)보다 많았다. 둘째, 학년별 분포의 경우 2학년(45.1%)이 가장 많고, 4학년(21.2%), 1학년(17.7%), 3학년(16.0%)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유형의 경우 4년제 대학(63.7%)이 2년제 대학(36.3%)보다 많았다. 넷째, 병역여부는 미필(71.1%)이 군필(28.9%)보다 많고, 거주지의 경우 경기(46.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21.7%), 인천(18.9%), 경상(4.6%), 전라와 충청(3.1%), 강원(1.7%), 제주(0.9%)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공분야는 이공계열(46.3%)이 가장 많고, 사회계열(26.0%), 인문계열(21.7%), 예체능계열(6.0%) 등으로 분포되었다.

회수된 원자료는 SPSS를 통해 분석되었다.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과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초통계분석과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위해 각각 내적 일관성 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설검증을 위해서는 단순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표본의 특성

구분	내용	빈도(명)	비율(%)	구분	내용	빈도(명)	비율(%)	
성별	여성	203	58.0	거주 지역	서울	76	21.7	
	남성	147	42.0		인천	66	18.9	
	계	350	100.0		경기	161	46.0	
대학	2년제	127	36.3		전라/제주	14	4.0	
	4년제	153	63.3		경상	16	4.6	
	계	350	100.0		강원/충청	17	4.8	
병역	미필	249	71.1		계	350	100.0	
	군필	101	28.9		전공	1학년	62	17.7
	계	350	100.0			2학년	158	45.1
전공	인문계열	76	21.7			3학년	46	16.0
	사회계열	91	26.0	4학년		74	21.2	
	이공계열	162	46.3	계		350	100.0	
	예체능계열	21	6.0					
	계	350	100.0					

4. 측정도구

<표 3>은 변수별 설문항목을 보여준다. 통일교육 품질요인과 통일교육 효과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문항은 선행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문항들을 중심으로 활용하였다. 일부 문항들의 경우 본 연구의 주제인 통일교육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설문문항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6개 문항을 포함해 총 3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변수들은 서열척도인 리커트(Likert) 5점 척도(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다)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표 3> 설문문항

요인	변수	설문문항	선행연구
통일 교육 품질	교육 환경	1. 교육생의 수	권준이(2015) 김영희(2015) 김용진(2016) 문은정(2018) 송진희(2015) 안소민(2017) 이정경(2012)
		2. 강의 교재 및 교구의 적절	
		3. 다양한 형태의 학습자료	
	교육 내용	1. 통일 교육에 대한 추가 보좌자료 제공	
		2. 통일 교육내용의 새로운 사실 포함 유무	
		3. 통일 교육의 토론형 수업 진행 방식	
		4. 통일 후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교육	
		5. 여러 영역에 대한 통일 교육 실시	
	교육 방법	1. 교육방법은 편견을 바꿀 수 있는 수업인가	
		2. 실제 북한민과 함께 참여한 활동의 유무	
		3. 토론 및 의사소통을 하는 수업	
	강사 전문 성	1. 강사의 강의 스킬 및 동작, 화법의 적절성	
		2. 수업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성	
		3. 수업에 대한 성실성	
		4. 교육내용에 대한 준비성	
5. 강사의 내용 전달성			
6. 강사의 커리어			
통일 교육 효과	반응	1. 통일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	김용진(2016) 김주현(2012) 문은정(2018) 민경석 외(2015) 박동주(2005) 안소민(2017) 이영혜(2010) 임유신 외(2013) 최정란(2017)
		2. 통일 교육방법에 대한 만족도	
		3. 통일 교육 강사에 대한 만족도	
		4. 통일 교육시간에 대한 만족도	
		5. 통일 교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학습	1. 통일에 대한 이해 증진	
		2. 통일 과정에 대한 이해 증진	
		3. 통일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 이해 증진	
		4. 통일문제에 대한 인지 정도	
		5.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 정도	
		6.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관계에 대한 이해 정도	
		7. 통일 의식을 향상	
		8. 통일 교육에 대한 추천 의향 정도	
	행동	1. 통일 관련 기사 및 방송 찾아보는 빈도	
		2. 통일 관련 여러 활동(동아리, 봉사활동) 증가	
		3. 통일과 관련된 과목(특강) 수강의향	
		4. 통일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인정	
		5.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 바라보는가	
		6. 통일 관련 행사에 적극적 참여 의사	
		7. 북한을 통일의 상대방으로 인정하는가	

IV. 분석결과

1.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일관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였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α 계수가 0.6 이상이면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남궁근, 2003). 신뢰도 분석결과 모든 변수의 cronbach's α 계수가 0.69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구성개념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을 결정하기 위해 관측된 요인의 선형결합인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의미있는 요인추출을 위해 베리맥스(varimax) 회전법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인 통일교육 품질요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4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표 4> 참조).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첫 번째 요인은 강사전문성, 두 번째 요인은 교육내용, 세 번째 요인은 교육환경, 네 번째 요인은 교육방법으로 명명하였다.

<표 4> 통일교육 품질요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성분				신뢰도계수 (cronbach's α)
	강사전문성	교육내용	교육환경	교육방법	
교육환경1	0.230	0.195	0.757	-0.025	0.807
교육환경2	0.291	0.070	0.841	0.092	
교육환경3	0.207	0.280	0.746	0.171	
교육내용1	0.388	0.637	0.337	0.035	0.827
교육내용2	0.339	0.709	0.147	0.005	
교육내용3	0.094	0.620	0.148	0.414	
교육내용4	0.308	0.653	0.000	0.143	
교육내용5	0.282	0.722	0.320	0.160	
교육방법1	0.411	0.235	0.034	0.593	0.692
교육방법2	0.064	0.060	0.034	0.906	
교육방법3	0.102	0.530	0.339	0.557	

강사전문성1	0.697	0.204	0.172	0.294	0.907
강사전문성2	0.764	0.270	0.234	0.098	
강사전문성3	0.774	0.216	0.191	-0.037	
강사전문성4	0.761	0.324	0.201	0.057	
강사전문성5	0.731	0.292	0.239	0.132	
강사전문성6	0.768	0.144	0.190	0.192	
고유값	4,184	3,073	2,468	1,894	
분산비율(%)	24.611	18.079	14.518	11.143	
누적분산비율(%)	24.611	42.690	57.208	68.351	

종속변수인 통일교육 효과요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3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표 5> 참조).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첫 번째 요인은 학습, 두 번째 요인은 행동, 세 번째 요인은 반응으로 명명하였다.

<표 5> 통일교육 효과요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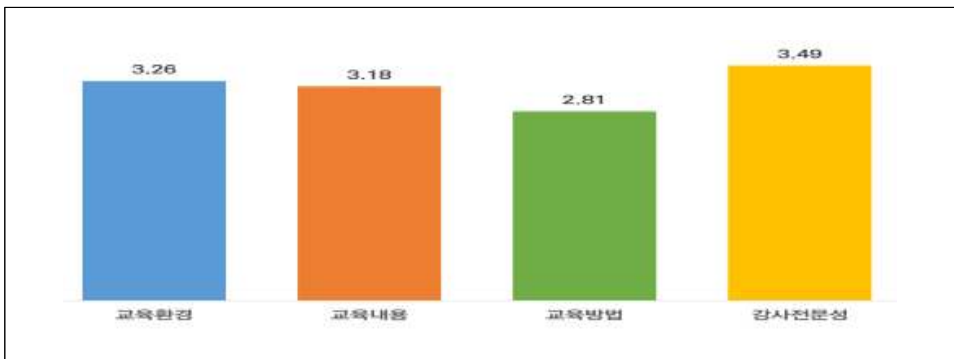
	성분			신뢰도계수 (cronbach' s α)
	학습	행동	반응	
반응1	0.283	0.178	0.746	0.850
반응2	0.219	0.111	0.839	
반응3	0.292	0.150	0.700	
반응4	0.181	0.069	0.791	
반응5	0.236	0.123	0.593	
학습1	0.797	0.216	0.159	0.932
학습2	0.781	0.117	0.188	
학습3	0.725	0.189	0.343	
학습4	0.771	0.164	0.303	
학습5	0.803	0.135	0.247	
학습6	0.763	0.151	0.260	
학습7	0.768	0.282	0.296	
학습8	0.614	0.222	0.320	
행동1	0.176	0.740	0.153	0.855
행동2	-0.089	0.720	0.161	
행동3	0.428	0.596	0.129	
행동4	0.387	0.574	0.385	

행동5	0.425	0.569	-0.074	
행동6	0.351	0.717	0.018	
행동7	0.098	0.787	0.184	
고유값	5,543	27,717	27,717	
분산비율(%)	3,589	17,944	45,661	
누적분산비율(%)	3,571	17,853	63,514	

2. 기술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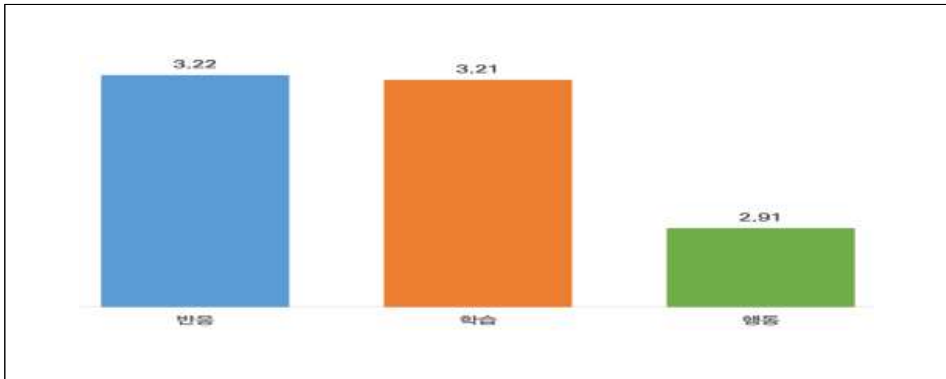
<그림 2> 및 <그림 3>은 통일교육 품질요인과 통일교육 효과요인에 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를 나타낸다. 첫째, 통일교육 품질요인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 강사전문성이 평균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환경(평균: 3.26), 교육내용(평균: 3.18), 교육방법(평균: 2.81)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방법을 제외한 강사전문성, 교육환경, 교육내용은 보통(평균 3.00)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2> 통일교육 품질요인에 관한 기술통계 분석



둘째, 통일교육 효과요인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반응이 평균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학습이 평균 3.21, 행동이 평균 2.91 순으로 나타났다. 행동의 평균이 2점대 후반으로 나타나 통일교육을 통해 대학생들의 행동변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3〉 통일교육 효과요인에 관한 기술통계 분석



3. 상관관계분석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각 요인들 간의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피어슨(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첫째, 통일교육 품질요인과 반응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강사전문성과 반응 간의 상관계수($r=0.70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내용과 반응 간의 상관계수($r=0.645$), 교육환경과 반응 간의 상관계수($r=0.518$), 교육방법과 반응 간의 상관계수($r=0.390$)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통일교육 품질요인과 학습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강사전문성과 학습 간의 상관계수($r=0.632$)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내용과 학습($r=0.606$), 교육환경과 학습($r=0.504$), 교육방법과 학습($r=0.328$)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통일교육 품질요인과 행동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교육내용과 행동 간의 상관계수가 0.4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강사전문성과 행동($r=0.340$), 교육환경과 행동($r=0.316$), 교육방법과 행동($r=0.304$)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상관관계 분석

	교육환경	교육내용	교육방법	강사전문성	반응	학습	행동
교육환경	1.000						
교육내용	0.541***	1.000					
교육방법	0.355***	0.564***	1.000				
강사전문성	0.555***	0.668***	0.449***	1.000			
반응	0.518***	0.645***	0.390***	0.703***	1.000		
학습	0.504***	0.606***	0.328***	0.632***	0.598***	1.000	
행동	0.316***	0.459***	0.304***	0.340***	0.428***	0.571***	1.000

*p<0.1, **p<0.05, ***p<0.01

4. 가설검증

1) 통일교육 품질이 반응에 미치는 영향

통일교육 품질 요인이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7> 참조). 모형 적합도를 의미하는 F값은 108.571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2 값은 0.558로 나타나 이는 독립변수인 통일교육 품질요인이 종속변수인 반응을 55.8%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첫째, 반응에 대한 교육환경의 영향력을 의미하는 B값은 0.102($t=2.618$)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0.009로 나타나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따라서 교육환경은 반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둘째, 반응에 대한 통일교육 내용의 영향력을 의미하는 B값은 0.275($t=5.325$)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나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따라서 교육내용은 반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1>은 채택되었다.

셋째, 반응에 대한 교육방법의 영향력을 의미하는 B값은 -

0.013($t=-0.386$)로 나타나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교육방법은 반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1>은 기각되었다.}

넷째, 반응에 대한 강사전문성의 영향력을 의미하는 B값은 0.424($t=8.887$)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나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강사전문성은 반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1>은 채택되었다.}

종속변수인 반응에 대한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강사전문성($\beta=0.45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내용($\beta=0.288$), 교육환경($\beta=0.117$)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반응에 대한 회귀분석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β		
(상수)	0.570	0.131		4.344***	0.000
교육환경	0.102	0.039	0.117	2.618***	0.009
교육내용	0.275	0.052	0.288	5.325***	0.000
교육방법	-0.013	0.034	-0.017	-0.386	0.700
강사전문성	0.424	0.048	0.453	8.887***	0.000
F=108.571 R2=0.558 수정된R2=0.553					

* $p<0.1$, ** $p<0.05$, *** $p<0.01$

2) 통일교육 품질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

통일교육 품질요인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8>는 분석결과를 나타낸다.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의미하는 F값은 78.884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2 값은 0.478로 나타나는 통일교육 품질요인이 종속변수인 학습을 47.8%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첫째, 학습에 대한 교육환경의 영향력을 의미하는 B값은 0.161($t=3.173$)

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0.002로 나타나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따라서 교육환경은 학습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2>는 채택되었다.

둘째, 학습에 대한 통일교육 내용의 영향력을 의미하는 B값은 0.362($t=5.395$)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따라서 교육내용은 학습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2>는 채택되었다.

셋째, 학습에 대한 교육방법의 영향력을 의미하는 B값은 -0.067($t=-1.487$)로 나타나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교육방법은 학습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2>는 기각되었다.

넷째, 학습에 대한 강사전문성의 영향력을 의미하는 B값은 0.411($t=6.620$)로 나타났으며, 이는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강사전문성은 학습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2>는 채택되었다.

종속변수인 학습에 대한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강사전문성($\beta=0.36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내용($\beta=0.317$), 교육환경($\beta=0.155$)순으로 나타났다.

<표 8> 학습에 대한 회귀분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β		
(상수)	0.289	0.171		1.688*	0.092
교육환경	0.161	0.051	0.155	3.173***	0.002
교육내용	0.362	0.067	0.317	5.395***	0.000
교육방법	-0.067	0.045	-0.071	-1.487	0.138
강사전문성	0.411	0.062	0.366	6.620***	0.000
F=78.884 R2=0.478 수정된R2=0.472					

* $p < 0.1$, ** $p < 0.05$, *** $p < 0.01$

3) 통일교육 품질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

통일교육 품질요인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9>는 분석결과를 나타낸다.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의미하는 F값은 24.246으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2 값은 0.220로 나타나는 통일교육 품질요인이 종속변수인 행동을 22.0%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첫째, 행동에 대한 교육환경의 영향력을 의미하는 B값은 0.081($t=1.439$)로 나타났으나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따라서 교육환경은 행동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3>은 기각되었다.

둘째, 행동에 대한 통일교육 내용의 영향력을 의미하는 B값은 0.379($t=5.086$)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따라서 교육내용은 행동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3>은 채택되었다.

셋째, 행동에 대한 교육방법의 영향력을 의미하는 B값은 0.048($t=0.972$)로 나타나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방법은 행동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3>은 기각되었다.

넷째, 행동에 대한 강사전문성의 영향력을 의미하는 B값은 0.023($t=0.3389$)로 나타나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강사전문성은 행동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3>은 기각되었다.

<표 9> 행동에 대한 회귀분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β		
(상수)	1.228	0.190		6.477***	0.000
교육환경	0.081	0.056	0.086	1.439	0.151
교육내용	0.379	0.074	0.366	5.086***	0.000
교육방법	0.048	0.050	0.056	0.972	0.332
강사전문성	0.023	0.069	0.023	0.338	0.735
F=24.246 R2=0.220 수정된R2=0.211					

*p<0.1, **p<0.05, ***p<0.01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는 통일교육 품질요인이 통일교육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통일교육 품질요인을 교육환경, 교육내용, 교육방법, 강사전문성 등 4개 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통일교육 효과는 Kirkpatrick 모형을 활용하여 반응, 학습, 행동 등 3개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일 교육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수도권 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교육 품질요인과 반응에 대한 분석결과, 교육환경과 교육내용, 강사전문성이 반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환경은 반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1>, 교육내용은 반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1>, 강사전문성은 반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1>은 채택되었다. 반면 교육방법은 반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방법은 반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1>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교육환경과 내용, 그리고 강사전문성은 통일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통일교육 품질요인과 학습에 대한 분석결과, 교육환경과 교육내용, 강사전문성이 학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환경은 학습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2>, 교육내용은 학습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2>, 강사전문성은 학습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2>는 채택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반응에 대한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교육방법은 학습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방법은 학습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2>는 기각되었다. 이는 통일교육을 통해 통일문제 및 통일정책 이해 등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의 환경과 내용, 그리고 강사의 전문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통일교육 품질요인과 행동에 대한 분석결과, 교육내용만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내용이 행동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3>만 채택되었다. 이는 통일교육 이후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일교육의 내용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가설검증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통일교육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교육 방향이 **시민참여형 통일교육**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통일교육은 통일에 대한 이해, 북한에 대한 이해 등 통일교육에 대한 콘텐츠를 강사를 통해 일방향적으로 전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통일교육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일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다양한 시민들이 통일교육 콘텐츠를 개발 및 참여하여 학습할 경우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하는 통일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세대 맞춤형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통일에 대한 인식 및 반응은 세대별로 상이하다.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 통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

육의 목표는 통일에 대한 이해 및 통일 관심도를 향상시키는데 있다. 이에 대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 일상적인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통일 구현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킨다면 통일교육의 효과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기존의 통일교육은 통일의 필요성 및 북한의 이해 등 통일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경제적, 문화적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예를 들어 일부 대학생들의 경우 통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를 우려하여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다. 이에 통일의 당위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및 해결방안 등을 포함시켜 통일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대학생들의 미래지향적인 통일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대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중 **통일 캠퍼스**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일부 대학생의 경우 통일교육에 접근하는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대학교에 통일교육 강좌가 개설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 방학기간 통일 캠퍼스를 운영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할 경우 보다 많은 학생들이 통일교육을 수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방학 중 통일 캠퍼스를 통해 교육을 수강할 경우 학점으로 인정될 경우 학생들의 참여도는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통일부에서 주최하는 **대학(원)생 통일 논문 및 통일 홍보 영상 공모전 수상작 자료를 통일교육 콘텐츠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현재 통일부에서는 대학사회 내 평화통일과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통일 논문 및 통일 홍보 영상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통일부 공모전의 경우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생의 시각에서 통일에 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통일 논문 및 통일 홍보 영상 공모전 수상작 자료를 통일교육 콘텐츠로 활용하여 대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통일교육을 실시할 경우 통일교육 효과는 증대될 것으로 판단

된다.

여섯째, **통일교육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보다 내실화**하여 강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강사전문성은 통일교육 효과(반응과 학습)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강사의 전문성은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통일교육 강사 양성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통일교육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구성한다면 통일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매년마다 대학 자체 내에서 **통일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를 대상으로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학 현장에서 교수들이 필요한 강의 스킬 및 동작, 화법, 자세, 표정 등을 포함하여 컨설팅을 해주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통일교육의 강사전문성은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직무연수 프로그램은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통일교육 강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질 높은 콘텐츠도 중요하다. 이에 대학에서 통일교육을 강의하는 강사들에게 주기적으로 최신자료를 제공해준다면 통일교육의 질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덟째, 통일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일교육 전용강의실 등 교육환경 개선**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교육환경은 교육의 내용 및 목적과 적합해야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오순환(2015)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 있는 지적이라 할 것이다. 정부는 통일교육 품질 및 통일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학 내 통일교육에 최적화된 통일교육 환경 구축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통일교육 환경 구축과정에서 통일교육 내용 및 교육방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용강의실을 구축할 경우 통일교육의 효과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준이,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교육 평가 연구 : Kirkpatrick 모형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전공, 2015.
- 길은배·한만길·최영표·강영혜·오해섭·김학성, 통일연구원, 2003 -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 김지현, “교육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 및 재구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경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전공, 2011.
- 김영희, “재난안전 전문교육의 효과성 연구 : 민간 전문가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공공정책학 전공, 2015.
- 김용진, “A기업 교육 프로그램에서 반응평가, 학습평가, 행동평가간의 관계 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기업교육 전공, 2016.
- 김주현,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학과 초등통일교육 전공, 2012.
- 민경석·최대현, “경찰대학 직무과정 현업적용도 측정시스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15-04.
- 민형원, “대학교육품질이 지식충족과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반도체 교과를 중심으로”, 남서울대학교 디지털정보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 전공, 2005.
- 문은정, “ARCS 학습동기 요인과 NCS 기반 교육 평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과 관계 연구 : 항공객실서비스 교육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관광학과, 2018.
- 박동주, “고등학교 통일교육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시범/비시범 학교간의 비료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 전공, 2005.
- 변주성, 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 2010 - 평생교육기관 도자교육 프로그램의 학습성과 영향요인 구조분석.
- 송진희,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아동보육행정 전공, 2015.
- 안영미, “비판적 다문화교육에 기초한 통일교육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윤리교육 전공, 2013.

- 안소민, “방문요양보호사의 직무교육 효과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 전공, 2017.
- 양기훈,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학교 재학생의 학습동기와 교육만족도 간의 관계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전공, 2009.
- 오기성, 서울 옛그퍼트월드, 2000 -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이해하는 통일교육.
- 이동숙, “조리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품질이 교육만족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 물리적 교육환경을 조절효과로”, 한성대학교 경영대학원,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 외식경영전공, 2018.
- 이미숙,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중·고등학교 사회과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 전공, 2006.
- 이송한, “사회과 통일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2016.
- 이정경, “미디어 활용 통일교육의 문제기반학습 효과 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공학 전공, 2012.
- 이원규, “초등 도덕과 통일교육 내용의 변화에 관한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도덕교육학 전공, 2009.
- 이영혜, “ICT를 활용한 통일교육이 아동의 통일의식 함양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학과 초등통일교육 전공, 2010.
- 이홍재·이현철·차용진,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보호 교육 성과에 관한 연구 : Kirkpatrick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4(1), 2015.
- 오순환, “조리직업훈련기관의 교육환경이 교육훈련성가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경영대학원,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 외식경영 전공, 2015.
- 유주한, “통일한국의 통일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 민주시민성 함양을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학과 초등통일교육 전공, 2012.
- 유문, “호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구성요소가 직원의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호텔관광학과, 2012.

- 전주성·김소영,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평가모델의 타당성 검증 : Kirkpatrick의 교육훈련 평가모델의 응용.”, *교육과학연구*, 42(1) : 125-150
- 조형국, “초등학교 교과서의 통일교육 관련 지도내용 분석 연구 : 도덕과·국어과·사회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초등교육학과 초등통일교육 전공, 2015.
- 주영주·김소나, “기업 사이버교육생의 학습전이 영향변인 측정도구 개발 및 양호성 검증”, *직업능력개발연구*, 11(2) : 121-141(2008).
- 최영표, 통일교육연구원, 2004 - 통일교육의 성과 분석.
-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원, 2018 -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원, 2018 - 2018년 통일교육 기본계획.

[부록 1] 통일교육 품질 요인과 통일교육 효과 요인 항목별 기술통계량

<표 1> 통일교육 환경 기술통계량

설문문항	Mean	Std,D
1. 교육생의 수	3.22	0.830
2. 강의 교재 및 교구의 적절	3.29	0.798
3. 다양한 형태의 학습자료	3.27	0.811

<표 2> 통일교육 내용 기술통계량

설문문항	Mean	Std,D
1. 통일 교육에 대한 추가 보조자료 제공	3.25	0.741
2. 통일 교육내용의 새로운 사실 포함 유무	3.19	0.799
3. 통일 교육의 토론형 수업 진행 방식	3.06	0.872
4. 통일 후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교육	3.24	0.775
5. 여러 영역에 대한 통일 교육 실시	3.19	0.905

<표 3> 통일교육 방법 기술통계량

설문문항	Mean	Std,D
1. 교육방법은 편견을 바꿀 수 있는 수업인가	3.14	0.757
2. 실제 북한민과 함께 참여한 활동의 유무	2.48	1.198
3. 토론 및 의사소통을 하는 수업	2.83	0.911

<표 4> 강사전문성 기술통계량

설문문항	Mean	Std,D
1. 강사의 강의 스킬 및 동작, 화법의 적절성	3.38	0.780
2. 수업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성	3.42	0.794
3. 수업에 대한 성실성	3.69	0.778
4. 교육내용에 대한 준비성	3.58	0.779
5. 강사의 내용 전달성	3.46	0.740
6. 강사의 커리어	3.44	0.791

<표 5> 통일교육 반응(만족도) 기술통계량

설문문항	Mean	Std.D
1. 통일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	3.29	0.765
2. 통일 교육방법에 대한 만족도	3.14	0.741
3. 통일 교육 강사에 대한 만족도	3.38	0.723
4. 통일 교육시간에 대한 만족도	3.23	0.741
5. 통일 교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3.07	0.826

<표 6> 통일교육 학습효과 기술통계량

설문문항	Mean	Std.D
1. 통일에 대한 이해 증진	3.27	0.835
2. 통일 과정에 대한 이해 증진	3.26	0.851
3. 통일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 이해 증진	3.18	0.844
4. 통일문제에 대한 인지 정도	3.31	0.889
5.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 정도	3.26	0.855
6.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관계에 대한 이해 정도	3.16	0.942
7. 통일 의식을 향상	3.23	0.886
8. 통일 교육에 대한 추천 의향 정도	3.07	0.889

<표 7> 통일교육 행동변화 기술통계량

설문문항	Mean	Std.D
1. 통일 관련 기사 및 방송 찾아보는 빈도	2.89	0.876
2. 통일 관련 여러 활동(동아리, 봉사활동) 증가	2.46	0.972
3. 통일과 관련된 과목(특강) 수강의향	3.07	0.868
4. 통일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인정	2.89	0.943
5.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 바라보는가	3.16	0.849
6. 통일 관련 행사에 적극적 참여 의사	3.06	0.828
7. 북한을 통일의 상대방으로 인정하는가	2.88	0.913

[부록 2]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통일부에서 주최하는 통일학술논문공모전을 준비하는 안양대학교 공공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구민금, 이에진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설문지 응답에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통일 교육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통일교육에 대해 평소 가지고 계신 생각을 솔직하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 8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이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연구자 : 구민금, 이에진(안양대학교 공공행정학과)

1. 통일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매체의 종류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대학강의 ② 내/외부 특강 ③ 동영상(유튜브, 테드 등) ④ 언론매체(뉴스, 신문 등)
 ⑤ 민간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 ⑥ 기타()

I. 다음은 지난 1년 동안 귀하께서 참여하신 통일 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대학재학 기간 중 정규수업(전공/교양)을 통해 통일 교육 참여 횟수는?
 (과목 1개당 1회)
 ① 없음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이상
2. 대학재학 기간 중 특강(내부/외부)을 통해 통일 교육 참여 횟수는?
 ① 없음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이상
3. 대학재학 기간 중 통일 교육 1회당 평균 수강 시간은? (정규수업/특강 포함)
 ① 1시간 미만 ② 1-2시간 ③ 3-4시간 ④ 5-6시간 ⑤ 7시간 이상

II. 다음은 통일 교육의 “교육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교육생의 수는 강의 듣기에 적절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강의의 이해를 위한 교재, 교구는 시각적으로 보기 좋고 편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 강의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자료를 제공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 통일 교육에 대한 “교육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통일 교육은 학습에 도움이 되는 추가 보조자료가 제공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통일 교육의 내용은 기존의 사실뿐만 아니라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 통일 교육의 내용이 일방적인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하고 의사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 통일 교육의 내용 중 통일 과정뿐만 아니라 통일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 학습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5. 통일 교육의 내용이 한가지의 영역이 아닌 여러영역을 나누어 교육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Ⅳ. 다음은 통일 교육의 “교육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교육방법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편견을 바꿀 수 있을 만한 방법을 채택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교육방법 중 실제 북한민과 함께 참여한 활동이 있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 통일 교육 강의 및 특강이 토론 및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참여주도적 강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Ⅴ. 다음은 통일 교육에 대한 “강사 전문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강사의 강의 스킬 및 동작, 화법은 교육에 집중하는데 적절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강사는 수업 내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 강사는 강의에 성의있게 임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 강사는 교육 내용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5. 강사는 교육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6. 강사의 커리어가 통일 교육을 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VI. 다음은 통일 교육에 대한 “만족도” 질문입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통일 교육 내용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통일 교육 방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통일 교육 강사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통일 교육시간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5. 통일 교육 시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VII. 다음은 통일 교육 참여 후 “학습효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통일 교육 후 통일의 의미에 대해 이해가 증진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통일 교육 후 통일과정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 통일 교육 후 통일에 관한 새로운 내용 학습 정도가 향상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 통일 교육 후 통일문제에 대한 인지 정도가 향상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5. 통일 교육 후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 정도가 향상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6. 통일 교육 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관계에 대한 이해 정도가 향상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7. 통일 교육 후 통일 의식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8. 통일 교육 후 행동 변화에서 통일 교육을 다른 친구 혹은 선후배들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VIII. 다음은 통일 교육 후 “행동변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통일 교육 후 통일 관련 방송이나 기사를 찾아보는 정도가 증가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통일 교육 후 통일 관련 여러 활동(동아리, 봉사활동 등)을 참여하는 빈도가 증가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 통일 교육 후 북한을 통일의 상대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 통일 교육 후 통일 교육과 관련된 과목(특강)을 수강하실 의향이 증가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5. 통일에 대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덕목이 생겼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6. 통일 교육 후 북한을 배제 대상이 아닌 협력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7. 통일 교육 후 향후 ‘통일’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증가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개인의 특성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학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3. 귀하가 재학 중인 대학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년제 대학(3년제 대학 포함) ② 4년제 대학

4. 귀하의 병역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미필자(여성포함) ② 군필자

5. 귀하의 거주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 ② 인천 ③ 경기 ④ 전라도 ⑤ 경상도 ⑥ 충청도 ⑦ 강원도 ⑧ 제주도

6. 귀하의 전공분야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인문계열 ② 사회계열 ③ 이공계열 ④ 예체능계열

<감사합니다>

입 선

남북동질성 회복을 위한 문화교류 방안에 관한 연구

- 4대 핵심 문화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안한나·전현재

《 목 차 》

【요약문】

【본 문】

- I. 서 론
- II. 상호의존형태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틀
- III. 4가지 문화산업분야의 교류현황
- IV. 분석틀을 통해 바라본 4가지 문화산업분야
- V. 결론

【참고문헌】

【요약문】

남북동질성 회복을 위한 문화교류 방안에 관한 연구

- 4대 핵심 문화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

2018년 4월 ‘봄이 온다.’라는 평양공연은 약 10년간 단절되어 있었던 남북관계에 봄을 선물해주었다. 또한 그 이후 남북은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문화 통합을 위한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자들은 이러한 문화 통합이 상호의존적인 방향이 아닌 지배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면 특정 체제의 다양성이 파괴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상호의존적인 방향으로 문화 통합이 되기 위한 일정한 분석틀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틀은 국가관계적 차원, 국가적 차원, 개별적 차원 나누어진다. 분석틀을 정한 후에는 이러한 분석틀에 어떠한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출판 중 어떠한 문화산업 분야가 가장 적합한지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애니메이션 산업이 상호의존적인 형태로 문화 통합을 이끌어 가기에 가장 적합한 분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애니메이션 산업은 상대적으로 군사·정치적 위협에 대한 민감도가 다른 산업보다 낮고 수인(獸人)만화의 특성과 남과 북이 공유하고 있는 이산가족을 주제를 활용했을 때, 북한 체제에 위협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높은 텔레비전의 보급률과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의지를 비추어봤을 때 파급효과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남북 합작 애니메이션 산업이 추진된다면 가격경쟁력을 잃은 남한의 메인 프로덕션 부분에 북한이 큰 도움이 되어 경제적 이득도 창출 할 수 있으며 개인적 차원에서의 적은 기술력의 차이는 실질적인 문화 통합단계에서 비용과 시간의 절약을 낳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남북 합작 애니메이션 산업도 군사·정치적 위협으로부터 자유롭

지 못한 부분과 개인의 의지만으로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남북 합작 애니메이션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논의한 상호의존적인 문화 통합의 분석의 틀과 이에 부합하는 남북 합작 애니메이션 사업의 활성화 방안은 지배적인 문화 통합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공감대를 증진시키면서도 각자의 다양성을 지켜줄 수 있는 문화 통합의 방법으로 큰 의의를 가진다고 본다. 비록 논문의 연구 대상에 북한의 문화 산업이 포함되면서 북한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았고 앞서 설명한 사업 진행 단계별 방안들이 전제하고 있는 국내·외적 상황도 간단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한계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차가운 얼음처럼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에도 봄이 왔듯이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현안들에 둘러 쌓여있는 한반도라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으면 언젠가는 차가운 눈이 녹고 봄이 온다고 생각한다. 또한 애니메이션은 장르적 특성상 통일을 이끌어 나가야할 남북의 미래 세대들의 마음에 새겨져 2018년 평양공연에서 노래한 봄을 계속 이어나가게 하는 힘을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난 4월 한반도에 ‘봄이 찾아왔다.’ 그 이후 남북은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문화 통합을 위한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통합은 크게 물리적 통합과 화학적 통합으로 나눌 수 있다. 물리적 통합은 체제의 이질성에서 나오는 법 등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통합된 형태를 갖추는 것이다. 이에 반해, 화학적 통합은 이질적인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에서 오는 갈등을 완화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¹⁾

이러한 화학적 통합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며 현재 남북한도 화학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다방면의 교류를 시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9월 23일 방영된 ‘두 도시 이야기’라는 서울과 평양의 음식과 맛을 알려주는 남북공동제작 프로그램은 남북방송교류의 재개를 알렸으며 지난 4월 이루어졌던 ‘봄이 왔다’ 공연에 맞춰 ‘가을이 왔다’도 계획 중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송과 공연교류는 화학적 통합을 통한 동질성 회복에는 여러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방송교류는 사실상 남한 주도 하에 북한지역을 찍는 형태가 많고 공연교류 또한 주기적인 교류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문화산업 분야 중 이러한 화학적 통합을 통한 동질성 회복을 선도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일까?

본 연구자는 이를 분석하고자 문화교류 과정을 설명하는 상호의존 형태의 구체적인 모델을 고안하고 이 모델을 활용해 각 문화산업별 비교분석을 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적합한 문화산업분야를 찾아내고자 한다.

2. 선행연구검토

문화교류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들은 크게 남북문화교류의 현황을 짚고

1) 박명진(1995), 통일 이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문화, 오락의 역할,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엄 및 세미나, 51-68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발전 방향을 전망하는 연구와 각 분야별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제시하는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문화교류의 과정은 상호의존적인 형태로 가야한다는 점이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연구는 이용을(2013)이 있다. 이용을은 문화교류과정은 지배형태와 상호의존형태로 크게 2가지가 있음을 제시한다. 지배적인 형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문화 가운데서 강자의 문화가 약자의 문화를 지배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배적인 형태는 단시간 내에 이질적인 두 문화를 묶어내는 효율성을 가지지만 실질적인 문화적 동질성을 이루지는 못한다. 상호의존적인 형태는 2) 두 개의 서로 다른 문화의 상호관련성과 영향관계에 기초하여 이질감을 최소화하고 동질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류가 이루어져야함을 의미한다. 이 때 통합되는 두 가지의 문화는 서로 비슷해야 한다.

이러한 개념을 전제로 문화교류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두 가지 형태 중 상호의존적으로 가야한다고 말한다. 대표적으로 강석승(2007)은 남북 간의 문화부문의 접촉과 교류, 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질성을 발생시킨 요소들을 되짚어 보면서 남북한 문화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고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김동규(2002)는 실질적 통합단계에의 문화는 남북한의 동질성을 확대하고 이질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인식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상호의존적인 형태를 선도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많다. 안병길과 정현창(2004)은 영화는 동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동시에 대중매체로서 다수 관객이 즐길 수 있는 수준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이질성 극복과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여 사회통합을 이끌 수 있다

2) 지배적인 형태와 상호의존적인 형태는 각각 동조와 규범화라는 개념을 가지는데 동조는 소수파가 다수파의 의견이나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규범화는 두 당사자들의 갈등을 각기 타협점을 모색해서 합의점에 도달함으로써 갈등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리하면 문화 통합을 할 때 지배적인 형태는 동조에 의한 통합이고, 상호의존적인 형태는 규범화에 의한 통합이다. 동독과 서독의 경우에는 문화통합과정은 동독문화가 서독문화로 동조된 형태로 볼 수 있다. - 이용을(2013), 남북한 문화통합을 위한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공공사회연구 3(2), p170~200

고 말한다. 또한 박명진(1995)은 민속문화 및 방송교류를 통해 상호의존적인 형태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 김동규(2002)도 방송 분야의 교류는 남북한 주민들에게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문화교류가 상호의존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상호의존형태를 선도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만큼 이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상호의존형태에 적합한 문화산업분야이다. 하지만 문화산업 분야에 대한 기준은 다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기준을 따르고자 한다.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출판이다.³⁾⁴⁾ 이 논문에서는 4가지 분야 중 어떤 분야가 상호의존적 형태로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하지만 기존연구에서 설명하고 있는 상호의존형태로 분석하기에는 이론적 한계가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들은 상호의존 형태의 문화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분석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분석틀은 국가관계적 차원, 국가적 차원, 개별적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상호의존 형태의 분석 틀 설정이 끝나면 이를 활용해 어떠한 문화산업분야가 상호의존형태를 가장 잘 이행할 수 있는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기본으로 하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현실성을 보완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첫 남북정상회담으로 문화교류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2000년부터 현재까지로 상정하여 분석한다. 먼저 각 시기별 문화산업별 교류 현황을 짚는다. 이 때의 교류는 남북 내에서 실질적인 합작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와 인적교류만 포함한다. 그리고 문화산업교류 현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설정한 상호의존형태의 분석 틀에 부합하는지

3) 문화체육관광부(2013),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p46

4) 본 연구에서 말하는 영화는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를 뜻하고 만화영화는 애니메이션으로 한다

살펴보고 가장 적합한 분야를 찾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결론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당분야가 앞으로 어떻게 교류가 이루어져야할지 제언을 하며 연구를 마무리 할 것이다.

Ⅱ. 상호의존형태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틀

1. 국가관계

1 - (1). 군사·정치적 위협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상호의존적인 형태는 서로 다른 문화의 통합을 설명하는 형태이지만 이는 곧 각각의 문화를 가진 국가와 국가의 통합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의존형태를 적용하고자 할 때 양 국가 간의 관계는 빼놓을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양 국가 간의 물리적 통합과 함께 화학적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즉, 문화통합은 실제 생활을 규정하는 정치, 경제, 사회분야와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아무리 두 국가가 화학적 통합을 지향한다고 할지라도 물리적 통합을 방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문화교류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 이는 남북사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2000년대 들어서 활발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문화통합의 과정을 거쳐 왔지만 2008년 7월 금강산 피격사건, 2009년 북한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2010년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함으로써 남북문화교류는 단절되었다. 2008년 이후 장기적인사업 이외에 더 이상의 문화교류사업은 추진되지 못하였다.

이처럼 물리적 통합 과정의 마찰은 정치체제, 경제, 법과 제도 등의 이질성으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정치적 갈등에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는 문화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 (2).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이질적인 요소보다는 동질적인 요소를 통해 교류가 이루어져야한다.

첫 번째 분석의 틀이 군사·정치적인 위협으로 문화교류의 과정에서 외적인 위협에 해당되었다면 문화교류의 과정 내적인 위협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내적인 위협은 문화교류의 대상이 되는 매개의 내용적 특징에서 비롯되는 위협을 말한다. 상호의존적인 문화교류는 두 문화가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점을 찾아 나가면서 통합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즉, 두 문화의 동질성은 확대하고 이질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동질성의 확대는 각 국가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공유성과 보편성을 합쳐나가는 것에서 시작된다. 공유성은 공동의 경험, 공동의 신념, 유사한 생활습관들이 그 집단 내의 나뉠대로의 일정한 틀로 유형화 되어진 것이다. 보편성은 지역구분 없이 국가 내 어느 곳에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의미한다.

반면에 이질감이 뚜렷이 드러나는 매개로 문화교류를 했을 시에는 정치, 사회, 경제의 충돌로 체제위협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는 동독과 서독의 사례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서독의 신동방 정책의 추진으로 이루어낸 많은 인적, 물적 문화교류가 동독 주민으로 하여금 자유 민주주의와 부유한 서독의 실체를 확인시켜 주는 기회를 안겨줌으로써 민주화와 자유화 의식 제고에 기여하였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동독이 서독으로 흡수통일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처음에는 동독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우려해 1960년대에는 “계급의 적은 지붕에 앉아 있다”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서독방송 수신이 가능한 안테나를 제거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등의 운동을 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동독 정부는 당시 동독 주민들의 여론을 의식해 함부로 서독으로부터의 문화교류를 함부로 막을 수 없었다.⁵⁾ 독일의 사례를 비추어 보면 문화교류가 되는 방송이라는 매개가 정치적, 경제적인 격차를 보여주며 동독의 체제와 이념에 충격을 주었고 흡수통일이 되면서 지배적인 형태로 통합되었다. 즉, 문화교류를 이끄는 방법이 개별 국가의 이질성을 부각시켜 체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매개여서는 안 된다. 또한 통합의 시작과정에서는 동질적 요소를 확대, 발

5) 김누리(2010.11.29), 통일 이후 독일 문화의 변화, KBS 통일방송연구 Retrieved from <http://office.kbs.co.kr/tongil/archives/24926>

전시키고, 이질적인 요소는 원인 진단과 함께 극복해 나가려는 점층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2. 국 가

앞선 분석의 틀은 두 문화의 통합과정에서 국가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면, 각 문화를 가지고 있는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각 국가 내에서는 어떤 분석의 틀이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2 - (1). 대중적 파급효과가 있어야 한다.

동질성을 가질 수 있는 문화부터 우선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질 때 놓쳐서 안 되는 부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질성의 회복에 다가설 수 있느냐이다. 문화교류가 많은 사람들이 접하지 못한다면 소수만의 문화통합이 될 것이다. 문화를 접한 지역과 아닌 지역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고 이는 완벽한 상호의존적인 형태로의 이행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현실적인 방법과 기술은 대중적 파급효과를 갖추어야 한다. 대중적 파급효과라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하게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다.⁶⁾ 이러한 매개의 파급효과는 두 구각 모두 갖추어야한다. 대중적 파급효과를 갖춘 매개는 다수 대중의 욕구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 대중들의 욕구를 반영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과정에서든 통합 이후에서든 이러한 매개는 대중들의 뜻에 따라 통합과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⁷⁾

상호의존적인 형태에서 대중적 파급효과를 가진 매개는 수많은 사람들의 심리적, 정서적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동질성을 가질 수 있는 문화가 이러한 매개로 접근할 수 있다면 상호의존형태의 이행은 한층 더 쉬워질 것이다.

6) 박명진(1995), *통일 이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문화, 오락의 역할*,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엄 및 세미나, 51-68

7) 김동규(2002),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의 남북 문화예술 분야의 통합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 - (2).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한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는 말은 문화가 곧 돈이 되는 사회를 의미한다.⁸⁾ 이런 점에서 문화를 소재로 기업이 생산, 저장, 배포 등의 활동을 하면서 이윤을 창출해내는 문화산업적 인식과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히 교류와 통합이라는 선의의 뜻만 가지고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해야한다. 경제적 이윤의 창출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지속적인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고 둘째, 통합문화의 세계적인 경쟁력 측면에서 중요하다.

문화교류를 통한 심리적, 정서적 공감대 형성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독일의 경우는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이후 베를린 장벽 붕괴까지 약 20년 동안 문화교류를 해왔지만 여전히 문화적 갈등은 존재한다.⁹⁾ 이는 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문화교류를 통해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내야 한다. 비용만 들어가는 문화교류는 문화산업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 따라서 교류를 주도하는 산업은 경제적 이윤을 창출할 수 있어야한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이윤의 창출로 인해 지속가능한 교류가 이어지면 다시 문화산업과 관련된 인프라와 개별행위자들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온다. 또한 개별행위자들이 경쟁력 있는 문화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상대방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면서 상호의존적인 형태로 더 나아갈 수 있다.

이와 같이 경제적 이윤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한 문화산업이 이루어진다면 나아가 통합문화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도 기대해볼 수 있다. 두 문화의 이질성은 다양함과 풍요함으로, 동질성은 단일성이라는 형태로 전환시켜 다양성 속의 단일성이라는 문화적 형태를 갖추으로써 좀 더 질 높은 통합문화를 구상해 볼 수 있다.¹⁰⁾ 경쟁력을 갖춘 통합문화는 해외시

8) 김동규(2002),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의 남북 문화예술 분야의 통합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9) 이영란(2005), *통일 이후 동독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한국사회학, 39(1), 137-165

10) 박명진(1995), *통일 이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문화, 오락의 역할*,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엄 및 세미나, 51-68

장으로부터 오는 많은 경제적 이윤을 만들어 낼 것이고 이는 다시 문화 산업의 지속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통합문화는 자국민들에게 문화적 공동체라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 정리하면, 경제적 이윤의 창출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문화교류가 이어질 수 있고, 지속가능한 문화교류가 이어져야 심리적, 정서적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3. 개별행위자

문화교류과정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합쳐지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문화교류는 하위의 개인 및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행위자가 교류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도 크다고 할 수 있다.

3 - (1). 개별행위자의 능력과 기술에서 차이가 적어야 한다.

교류를 하는 행위자들끼리의 능력과 기술의 차이는 문화교류의 질적인 부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행위자들끼리의 능력과 기술에서 차이가 크다면 이를 맞춰나가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과 시간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의 차이에서 개별행위자들끼리 상대적 박탈감 또는 괴리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이질성이 부각되게 되는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기술과 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문화로 인한 일방향적인 문화교류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의존적인 형태로 나아가는 문화교류를 위해서는 기술과 능력의 차이가 적은 문화산업분야로 교류가 이루어져야한다. 그 외의 분야는 기술교류 등의 인적교류가 먼저 선행이 된 이후에 장기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져야한다.

3 - (2). 개별행위자의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

상호의존적인 방향을 가지는 문화교류에서는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 지속가능한 문화교류는 상대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면서 통합되었을 때의 문화적 적응력을 함양하게 해준다. 문화교류가 지속적이지

않다면 통합은 정체상태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남북문화교류도 10년 동안 단절되면서 그동안 쌓아온 몇 가지 제도적, 기술적 교류통합도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문화교류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의 제도적 장치와 개별행위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국가차원에서는 개별행위자들이 부담 없이 문화교류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환경적 장치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개별행위자들은 이러한 법적 환경적 장치 아래 지속가능한 만남을 추구해야한다. 개별행위자들은 상대주체와의 직접적인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될 것이고 이는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상호의존 형태로서 방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법적, 환경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개별행위자의 만나고자 하는 의지도 중요하다.

Ⅲ. 4가지 문화산업분야의 교류현황

이상 국가관계, 국가, 그리고 개인을 중심으로 상호의존적인 문화교류가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분석 틀을 제시해보았다. 그렇다면 과연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그리고 출판이라는 4가지 문화 산업 분야 중 어떤 분야가 위 세부적 분석 틀에 가장 부합할 것인가? 본 연구자는 이를 분석하기 위해 20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각 분야별 교류 횟수를 정리하는 정량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한 후, 앞서 설정한 개별 분석 틀에 4가지 산업 분야가 어떻게 부합하는지 분석해보겠다.

2000년 이후부터 남북 문화 산업 분야들의 교류 횟수를 정리함에 앞서 4가지 산업 분야의 교류는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남과 북의 합작작품과 각 분야의 인적교류를 남북교류의 기준으로 삼고 연구함을 밝힌다. 또한, 합작작품을 만들기 위한 제작과정 또한 교류 횟수에 포함하며 단순한 물적 교류, 북한 작품이 남한에 상영되거나 판매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영 화

영화교류의 경우 엄밀한 의미에서 남북합작영화는 없었기 때문에 북한 장소를 빌려 찍은 영화는 남북영화교류의 대상에 포함시켰고 남한의 텔레비전이나 영화제에서 일방적으로 북한 영화만 상영되는 건 교류의 목록에서 제외했다. 이러한 부분들을 기준으로 2000년 이후의 남북의 영화 교류 횟수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1] 남북영화교류 횟수

년도	내용	횟수
2000	남한 영화계 인사 방북	1
2001		0
2002		0
2003	남북 영화계 인사들이 북한에서 아리랑 공동시사회	1
2004	간 큰 가족 촬영, 황진이 촬영	2
2005	간 큰 가족 개봉, 황진이 촬영	2
2006	황진이 촬영	1
2007	황진이 촬영, 최승희 프로젝트 기획개발	2
2008		0

2000년 11월, 남한 영화계 인사 10명은 영화 교류 문제를 협의하고 영화 관련 시설을 둘러보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고, 2003년에는 남북영화 교류 추진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북한에서 영화 <아리랑>의 공동시사회를 개최하였다.¹¹⁾ 그리고 2004년과 2005년에는 남한영화 최초로 북한의 장면을 담은 조명한 감독의 <간 큰 가족>과 금강산을 배경으로 하는 장윤현 감독의 <황진이> 촬영이 이루어졌고, 2006년에도 <황진이> 촬영이 북한에서 이어졌다. 또한, 2007년에는 장윤현 감독의 <황진이>의 금강산 촬영이 현대아산의 중간 조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준동 영화진

11) 문화체육관광부(2013),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홍위원회 부위원장은 나우필름 대표 자격으로 지난 2007년 남측 영화인들과 함께 평양을 방문을 하여 <최승희 프로젝트>를 기획 개발하는 등 남북 간의 영화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2008년 이후 2017년까지 남북의 영화 교류는 오랜 시간 단절되었다. 12)

2. 방 송

두 번째로 남북의 방송교류의 경우는 KBS에서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방송교류프로그램 정리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며, 방송3사에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제외하였으며 방송을 통하지 않은 공연교류는 포함하지 않았다.

[표 2] 방송3사별 방송교류

년도	KBS	MBC	SBS	총 프로그램 수
2000	북녘 땅 고향은 지금(3부작) 남북교향악단 합동공연 <한민족특별기획> 백두에서 한라까지 남북 이산가족 상봉 남북정상회담 생중계	통일염원 탁구대회 <극영화> 사랑사랑 내사랑 남북정상회담 생중계 금강산을 달린다-금강산 랠리 남북 이산가족 상봉	<극영화> '홍길동' <영상기행> 평양 2000 남북정상회담 생중계 남북 이산가족 상봉 평양 현지 뉴스 생방송 진행	11 (중복 제외)
2001	여기는 평양입니다 <일요스페셜> 남과 북이 함께 부르는 노래 <보도특집> 은둔의 땅, 관광으로 빛장 연다 <자연 다큐멘터리> 백두고원을 가다 <역사스페셜> “북의 10대 민족문화유산” (8부작)	<MBC 스페셜> 춘향 평양가다 여기자 북한방문기, 평양 10박 11일		7
2002	<드라마> 제국의 아침 1, 2회 남북통일축구 <세계의 문화유산> 한반도의 고인돌 남북교향악단 연주회	<MBC 평양특별 공연> 이 미자 평양공연 우리는 하나 <2002 부산아시아게임 특집> 북한이 온다		6
2003	남북해외학자 평양통일대회 <8.15특집> 평양노래사랑		남북경협현장, 평양, 남포 그리고 개성 <정주영 체육관 개장기념>	7

12) <http://www.hani.co.kr/arti/culture/movie/844823.html> 유선희(2018.05.16), “내년 한국영화 100주년 계기로 남북 영화교류 추진”, 한겨레

			통일음악회 〈정주영 체육관 개장기념〉 통일농구대회 중계 〈특집〉 평화친선음악회 평양에서의 7일 〈특집 다큐〉 북한 농구단 서울체류기	
2004	고구려 역사조명 1편 '고구려 수도 평양' 고구려 역사조명 2편 '고구려 변화 세계와 만나다'	〈MBC 스페셜〉 북녘의 음식 기행(2부) 〈특집 다큐멘터리〉 살아오는 고구려		4
2005	〈드라마〉 사육신 (24부) 제작 금강산 열린음악회	〈MBC뉴스데스크〉 북한의 설 풍경 〈PD수첩〉 개성을 말하다 〈MBC뉴스데스크〉 미리 가 본 백두산 관광코스	조용필 평양 단독 콘서트	6
2006	2006-2007 드라마 '사육신' 제작	〈특집 다큐〉 북한 고려의학의 베일을 벗긴다. 창작동요제 금강산 개최 〈다큐〉 최초공개 금강산의 여름		4
2007	2006-2007 드라마 '사육신' 제작, 방영	〈MBC 스페셜〉 남북 공동 제작 '자라의 생존법칙' 〈드라마〉 '주몽' 출연진 북한 방문 〈MBC 스페셜〉 남북 공동 제작 '개마고원의 불개미'	〈SBS 스페셜〉 신영복 교수의 금강산 사색 기아체험 24시간 대홍단 방문 금강산 에머슨 퍼시픽 오픈 골프대회 생중계 통일 농구대회 중계	8
2008		뉴욕필 평양공연 중계 '우리말나들이' 개성촬영 영변 냉각탑 폭파 화면 중계 〈특집 다큐〉 고려왕궁 만월대 통일탁구대회 위성 생중계		5

출처 : KBS 취재 제작 핸드북, 2018.

이 중, 2007년 남북한이 최초로 제작한 합작드라마 '사육신'은 북한이 제작과 각본을 담당하고, 북한 배우들이 주연을 맡은 작품이었다. 이는 남북한 합작 드라마라는 점 덕분에 초반에는 화제를 얻었지만, 머지않아 남북의 영화 촬영, 연기, 발성 등 문화적 이질감을 이기지 못하고 시청률 부진에 시달렸다.¹³⁾

2008년부터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2009년 2차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점점 악화되고,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5.24조치가 실시되면서 방송교류도 사실상 중단되었다.

3. 출 판

세 번째 남북 출판 산업의 교류 현황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북한 서적의 남한출간은 남북한의 교류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남북 합작 출판 작업을 한 문화 교류의 경우를 기준으로 두었다. 또한 출판을 위한 인적교류도 이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기준으로 교류 횟수를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¹⁴⁾

[표 3] 남북출판교류 횟수

년도	내용	횟수
2000		0
2001	조선향토대백과 제작	1
2002	조선향토대백과 제작	1
2003	조선향토대백과 제작	1
2004	조선향토대백과 제작	1
2005	조선향토대백과 출판, 겨레말큰사전편찬 합의 민족작가대회	3
2006	겨레말큰사전 편찬 남북문인으로 결성된 6.15민족문학인 협회	1
2007	겨레말큰사전 편찬 통일문학 제작	1
2008	겨레말큰사전 편찬 통일문학 1호, 2호 발간	3
2009	겨레말큰사전 편찬 통일문학 3호 발간	2

13) <http://news1.kr/articles/?3384172>, 정유진 (2018.07.29) 北 스타 출연한 南 영화, 가능할까?, news1뉴스

1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50074, 위지혜(2008.03.06) 남북문인 함께 펴낸 <통일문학> 왜 남쪽에선 못 보나?, Ohmynews

2010		0
2011		0
2012		0
2013		0
2014	겨레말큰사전 편찬 재개	1
2015	겨레말큰사전 편찬	1
2016	겨레말큰사전 편찬	1

2001년부터 2005년 동안 추진된 출판 분야 남북협력사업으로 북한 전 지역의 자연 및 인문지리를 상세히 소개한 조선향토대백과가 제작되었다. 또한 2005년에는 6.15공동선언을 실천하고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에 이바지하고자 겨레말큰사전편찬이 시행되었으며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총 20회의 남북공동편찬회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출판의 경우에도 경색된 남북관계의 여파에 2010년과 2013년 사이에 사업이 중단되었다. 겨레말큰사전의 경우에는 사업의 특수성에 의해 2014년부터 2016년 재개되기도 하였다. 15)

4. 애니메이션

2001년 말에 제작이 완료된 <게으른 고양이 덩가>는 남북이 합작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첫 사례로 2001년 2월 하나로텔레콤과 북한의 삼천리총회사가 주최로 제작되었다. 당시 하나로텔레콤은 기획단계인 프리프로덕션(Pre-production)과 음악, 음향, 더빙 등 마무리단계인 포스트프로덕션(Post-production)을 맡았으며, 삼천리총회사는 3D MAX, 소프트웨어 등 그래픽 도구를 이용한 메인 프로덕션(Main-production)을 맡았다. 16) 또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인 <뽀롱뽀롱 뽀로로>의 경우에는 2002년 8월에 제작된 두 번째 남북 합작 애니메이션으로 이 작품 역시 하나로텔레콤과 북한의 삼천리총회사와 합작하여 그해 12월경 제작을 완료했다. 또한 미국의 코아필름사(KOAA Films, Inc. 사장 넬슨 신)는

15) <https://news.joins.com/article/22586817> 이지영(2018.05.02) 겨레말큰사전, 중앙일보

16) 문화체육관광부(2013),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2001년 2월부터 북한의 4.26아동영화촬영소와 함께 극장용 장편애니메이션 '왕후 심청'을 공동 제작했다. 하지만 왕후 심청은 미국의 코아필름사의 주도로 이루어져 북미간의 사업이라는 평가가 존재하지만 당시 제작을 담당하는 회사가 서울에 있었고 황해도 출신인 넬슨 신이 주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남북 합작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표 4] 남북애니메이션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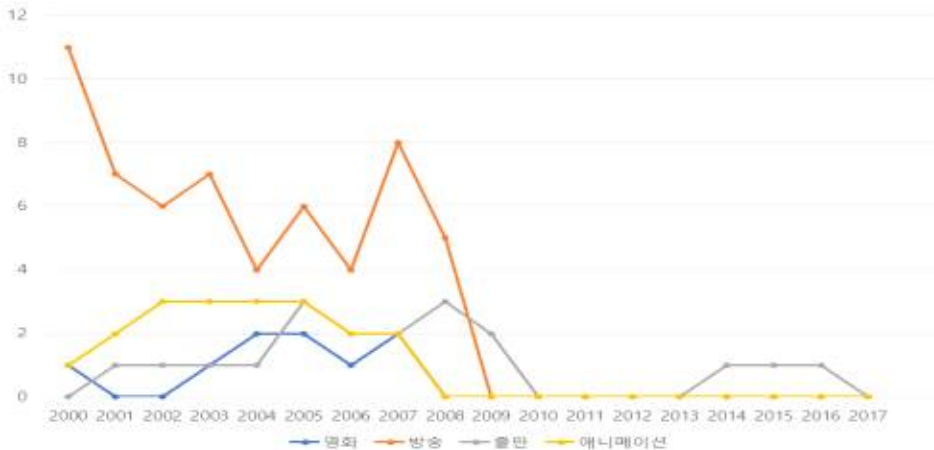
년도	내용	횟수
2000	하나로텔레콤 방북	1
2001	모디스 하청 발주, 게으른 고양이 덩가 제작	2
2002	게으른 고양이 덩가 제작 뽕롱뽕롱 뽕로로 제작 왕후심청 제작	3
2003	게으른 고양이 덩가 제작 뽕롱뽕롱 뽕로로 제작 왕후심청 제작	3
2004	게으른 고양이 덩가 제작 뽕롱뽕롱 뽕로로 제작 왕후심청 제작	3
2005	게으른 고양이 덩가 제작 뽕롱뽕롱 뽕로로 제작 왕후심청 방영	3
2006	뽕롱뽕롱 뽕로로 제작 새 제작	2
2007	아티와 필리 제작 상상아 놀자 제작, 방영	2
2008		0

Ⅲ. 분석틀을 통해 바라본 4가지 문화산업분야

1. 국가관계

1 - (1). 군사·정치적 위협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앞서 분석의 틀 설정 단계에서 이야기했듯이 교류의 대상이 되는 문화산업은 군사·정치적 갈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면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그리고 출판 산업 중에서 군사·정치적 위협이 상대적으로 민감성이 낮은 분야는 무엇일까? 본 연구자는 이를 분석하기 위해 앞서 정리했던 각 분야별 교류 횟수를 바탕으로 작품 횟수를 군사·정치적 사건의 발생시기와 비교해보겠다. 남북 간의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그리고 출판 산업의 연도별 교류 횟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래프 1] 문화산업4가지분야의 연도별 교류 횟수

위 그래프에 나타내는 4가지 산업교류의 양상은 다르기 때문에 분석을 함에 있어서 횟수의 절대값보다는 특정 기간에 얼마만큼의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는지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으로 위 그래프를 분

석한 결과, 이 표는 2010년을 기준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이야기할 수 있다. 먼저 2010년 이후로 모든 문화산업이 중단되었다는 점에서 4가지 산업 분야 모두 군사·정치적 위협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10년 전의 상황의 경우 특정 정치·군사적 위협에 대해 4가지 산업 분야가 각기 다른 양상의 모습을 보인다. 특히 방송의 경우 2004년, 2006년 정치적 굴곡이 있을 때 그래프 폭이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보아 군사·정치적 위협에 민감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¹⁷⁾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우 2004년과 2006년에 그다지 큰 폭의 변화가 없으므로 민감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출판의 경우에는 2010년 전에 특정 정치적 사건에 민감성이 덜할 뿐만 아니라 2010년 이후에도 유일하게 재개되었던 산업이다. 이러한 출판 산업의 예외적인 특징은 출판 산업이 민족언어의 동질성 회복이라는 특수한 당위성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화의 경우에는 민감도를 분석하기에 유의미한 교류 횟수가 아니기 때문에 민감도를 측정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4가지 문화 산업의 외부적 차원의 체제 위협도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5] 각 문화산업별 체제위험성(외부)

			영화	방송	출판	애니메이션
국가관계	체제위험성	외부	-	X	○	△

이 표에서 ○로 표기된 출판의 경우 외부적 체제 위협성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긍정적 의미를 상징하며 △로 표기된 애니메이션은 체제 위협성에 대한 민감도가 보통, X로 표기된 방송은 군사·정치적 위협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외부적 체제 위협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영화의 경우 민감도를 측정할 수 없으므로 -로 표기하였다.

17) 문체부의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2013)년에 따르면 2004년 7월에서부터 2005년 6월 사이에는 남북관계의 악화 등으로 민간교류가 단절되었으며 2006년 7월 3일 북한의 1차 미사일 실험으로 인해 문화교류 산업이 진행되기 어려웠다고 한다.

1 - (2).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이질적인 요소보다는 동질적인 요소를 통해 교류가 이루어져야한다.

다음으로 국가관계와 관련된 두 번째 분석의 틀에서는 문화 통합의 매개가 개별 국가의 체제 위협이 되지 않도록 두 문화의 동질성은 확대하고, 이질감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문화 통합을 시도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문화산업이 남북의 보편적 문화를 담기에 적합한지에 대해 살펴보자.

흔히들 남북한은 한민족으로써 방송 장르 중에서도 역사 다큐멘터리가 보편적 문화를 담기에 적합할 것이라고 쉽게 추론하지만 생각보다 남북한의 역사 인식은 훨씬 이질적이다. 김일성, 김정일의 역사 해석에 따른 적통은 고조선, 고구려, 고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신라의 3국통일과 조선 건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다.¹⁸⁾ 또한, 단적인 예로 북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순신을 모를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김일성 지도자를 영웅시하는 측면을 남한에서 수용하는 건 불가능하다. 방송 산업의 경우 독일의 사례를 비추어보았을 때 상호의존적인 형태의 문화교류보다는 동독에서 서독으로 문화가 흡수되는 통합 형태를 보였다.¹⁹⁾

그리고 영화 제작에 있어서도 이질감의 문제는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18) <https://is.cuni.cz/studium/predmety/index.php?do=download&did=102972&kod=AKO100062> 동아일보(2015.12.02) 민중서관식 서술 극치 국정화 폐해 반면교사, 675호(p136-143)

19) 사실 '독일 통일의 숨은 주역은 방송사'라는 표현이 있을만큼 독일에서는 방송교류가 쉽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서독의 방송이 동독의 방송을 지배한 형태였다. 서독의 정규뉴스 프로그램인 '호이테'의 경우 서독의 시청률보다 동독의 시청률이 높은 기현상도 벌어졌다. 1985년 슈피겔 보도에 따르면 동독 주민의 85%가 규칙적으로 서독 공영방송의 뉴스를 시청했다. 반면 서독 주민들은 동독 뉴스를 거의 시청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동독과 서독의 방송교류가 동독 주민들을 고립시키지 않고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문화적 동질성을 이루었느냐 하는 물음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부분의 구동독 신문사들은 서독의 신문자본에 매각되었고, 구동독의 방송도 서독방송에 편입되거나 재편되었다. 그에 따라 동독은 점차 "정체성의 휴경지", "담론의 부재지대"로 전락했다. 동독 대중들은 서독의 자본주의 문화에 일방적으로 노출되고 그것에 흡수될 것을 강요당하면서 가치관의 혼란과 피해의식 등을 느끼게 됨으로써 서독인과 많은 갈등을 일으켰다. - 금준경(2018.05.24), 독일 통일의 숨은 주역은 방송사, 미디어 오늘, Retrieved from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2828>

예를 들어 남과 북이 함께 영화를 제작한다고 가정해보자. 우선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요구되는 많은 인력문제를 배제하더라도 영화의 배경이나 등장인물의 모습을 설정함에 있어서 남북한의 보편성보다는 특정 나라의 생활양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한 대북 소식통에 의하면 “남조선 영상물이나 노래를 단속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길 가는 행인이나 여행자들의 보따리 검사, 여성들의 복장검사, 남성들의 두 발과 언행에 대한 단속 등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비사회주의 그루빠가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²⁰⁾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비추어 보면 영화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남한 사람들의 생활양식은 북한 주민들을 중요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출판의 경우는 조선로동당이 내세우고 있는 당 출판 선전사업의 강령적 지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북한의 대표적인 출판사는 조선로동당출판사인데, 당의 사상 선전선동을 위한 사상교양자료와 북한에서 이른바 ‘주체의 출판물’로 일컬어지고 있는 지도자에 관한 출판이 대부분이다.²¹⁾ 따라서 출판 산업의 경우 북한산업의 특수성에 의해 이념성이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문화 통합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 중에서 동물을 의인화하여 만든 수인만화인 경우, 가상의 인물을 등장시키기 때문에 특정한 생활양식이 아닌 남북의 공통적인 생활양식을 표현하기에 상대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남북한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산가족에 관련된 감성적인 소재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것도 동질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제로 2006년에 제작된 최초의 남북합작 애니메이션 ‘새’의 경우에는 이산가족이 된 조류학자 부자가 새를 통해 서로의 생사를 알게 되었다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따라서 수인만화의 특성과 남과 북이 공유하고 있는 이산가족을 주제로 하는 애니메이션은 남북한의 공유성과 보편성을 가진 문화 산업으로 적합하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4가지 문화 산업

20)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ch-03232018092943.html 김준호(2018.03.23.), 북주민, 비사회주의 그루빠 단속강화로 공포감. 자유아시아방송

21) 박상미, 남북한 출몰 교류를 한 작권 상호 보호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언론정보학원석사학 논문(2001), 24면

이 남북의 보편적 문화를 표현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해 표로 정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6] 각 문화산업별 체제위험성(내부)

			영화	방송	출판	애니메이션
국가관계	체제위험성	내부	X	X	X	○

여기서 ○로 표현된 애니메이션의 경우 애니메이션이라는 내용적 특성상 체제 위험성이 적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표현한 것이다.

2. 국 가

2 - (1). 대중적 파급효과가 있어야 한다.

각 문화 산업의 대중적 파급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문화 콘텐츠를 유포하는 매체의 보급률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때 남한의 경우는 4가지 분야가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충분한 보급 매체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경우로 한정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영화의 경우에는 영화관, 방송과 애니메이션은 텔레비전 보급률 그리고 출판 사업은 도서관의 보급률을 통해 대중적 파급효과를 분석해볼 수 있다.

첫째로 통일부 북한정보포털의 내용에 따르면 북한의 영화관은 전문영화관, 공연물을 주로 취급하고 있지만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 문화회관을 비롯한 사회문화시설, 생산현장의 영화 상영시설, 이동 영사대, 그리고 특급호텔 등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북한에는 극장, 문화회관을 포함해서 북한전역에 영화상영시설은 약 1천 개가 있으며, 전문영화관은 주요도시에는 3~4개, 지방 소도시에는 1개소 정도가 건립되어 있다. 그리고 한 논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공장이나 기업소, 협동농장 등 직장단위로 매주 수요일이나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지정하여 단체로 영화를 감상한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공장, 기업소 및 협동농장에서는 월 1-2회 의무적으로 영화를 관람시킨다고 한다.²²⁾ 따라서 북한에서의 영화에 대한 대중적 파급효과는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방송과 애니메이션을 보급하는 텔레비전의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이나 체제 유지를 위한 주된 선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텔레비전을 선전에 적극 활용했다는 점은 높은 텔레비전 보급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적어도 평양이나 지방 대도시에는 텔레비전이 꽤 많이 보급됐다는 걸 알 수 있다. 특히 평양의 경우에는, 텔레비전을 두 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가구도 많다고 한다. 또한, 장규수 대경대 교수는 탈북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북한 농촌 지역의 TV 보급률이 100%에 가깝고 평양은 105%라고 전했다.²³⁾ 또한, 통일부의 북한정보포털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매일 저녁 5시 30분 경 한편의 아동영화과 꾸준히 방영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높은 텔레비전 보급률과 북한 주민들이 평소 애니메이션에 노출되는 정도를 고려했을 때, 북한 사회에서의 방송과 애니메이션의 대중적 파급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서의 출판 산업은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선전선동의 중요한 수단으로 구역단위로 서점이 존재하고 경쟁체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또한 북한문화평론가 임채욱 선생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평양에는 외국어 서적만 따로 파는 서점도 존재하지만 개별 사점이 서점에 한권씩만 존재할 정도로 출판 물량이 빈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⁴⁾ 따라서 출판물들의 낙후된 보급 상황을 비추어봤을 때, 남북 합작 출판물의 대중적 파급력은 적을 것이라 예상된다.

[표 7] 각 문화산업별 보급매체의 파급효과

			영화	방송	출판	애니메이션
국가	파급효과	보급매체	○	○	X	○

두 번째로, 북한 사회에서 특정 문화산업의 대중적 파급효과를 파악하

22) 김 승(2018), *북한 영화예술의 세계*, 영화진흥위원회, 8, p6

23) <http://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09> 방장준(2015.10.14), 북한 TV는 채널이 몇 개 나올까, 미디어스

24)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d1b5c77cbb38d654c0b0cc45/fe-hk-02082018153536.html 이경하(2018.02.09), 남북한의 출판문화, 자유아시아 방송

기 위해서는 매체의 보급률과 함께 해당 산업에 대한 북한 최고 지도자의 의지도 살펴봐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 체제는 1인 지도자에게 당내 권력이 집중되는 체제로써 지도자의 의지가 특정 사업의 추진과 대중적 파급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선 영화 산업에 대한 현재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의지는 영화산업에 높은 관심이 있었던 김정일 지도 체제보다는 많이 감소했다고 평가된다.²⁵⁾

하지만 영화산업과는 반대로 방송 산업에 대한 김정은의 의지는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2016년 5월에 열릴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 앞서 모든 인민이 5월 당 대회를 선명한 화질로 볼 수 있게 하자는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 중앙 기관에서 근무하다 탈북한 A씨의 증언에 따른 내용으로 이처럼 북한의 텔레비전 방송은 당 대회를 거치며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²⁶⁾ 따라서 중요한 선전선동의 도구로 사용되는 방송 산업에 대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의지는 앞선 북한의 지도자들과 같이 상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우에도 오래전부터 북한이 기술적 경쟁력을 가진 분야로 외화 벌이의 수단이 되어온 산업으로 이에 대한 북한 지도자의 의지는 김일성 지도 체제에서부터 김정은 지도 체제까지 이어져왔다고 평가된다. 실제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8월, 남한 언론사 사장단이 북한을 방문한 자리에서 방북단으로부터 “만화영화와 컴퓨터 온라인 게임으로 중국에 공동 진출하면 돈을 많이 벌수가 있다”는 권고를 받고 “북남이 함께 영화나 제작물을 만들면 남쪽이 50을 가져가고 북측이 50을 가져가고, 돈이 다 우리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

25) <https://www.msn.com/ko-kr/entertainment/movies/%EB%82%A8%EB%B6%81%EC%98%81%ED%99%94%EA%B5%90%EB%A5%98-%EB%A6%AC%EB%B6%80%ED%8A%B8%E2%91%A3-1%EB%85%84%EC%97%90-%EB%8B%A8-1%ED%8E%B8%E2%80%A6%EA%B9%80%EC%A0%95%EC%9D%80-%EC%8B%9C%E B%8C%80%EC%9D%98-%EB%B6%81%ED%95%9C-%EC%98%81%ED%99%94/ar-BBLbJx7> 정유진(2018.07.29.), [남북영화교류 리부트④] "1년에 단 1편?"...김정은 시대의 북한 영화, news 1

26)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nNewsNumb=20160119278&nidx=19279> 하주희(2016.02.24), 김정은, 태양질 맞춰 전 북한 주민에 TV 나눠줄 예정, 조선뉴스프레스

때문에 다른 나라와 만들어야 합니까?”라고 반문했을 정도였다.²⁷⁾ 또한, 김일성 체제에 이어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2014년 11월 평양의 4.26만화영화 촬영소를 방문하여 “오래전부터 세계만화영화계에 진출한 우리의 창작가들은 우리가 도달한 만화영화제작기술을 남김없이 떨쳤다.”라며 “만만한 야심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만화영화대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²⁸⁾ 법보다 최고지도자의 교시를 더 중시 여기는 경향이 있는 북한 사회에서의 이러한 지도자의 발언은 대중적 파급효과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이해된다.

끝으로 출판 산업에 대한 북한 지도자의 공식적인 언급과 행보는 부재함으로 출판 산업에 대한 북한 지도자의 의지는 미미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4가지 문화 산업에 대한 김정은 국방 위원장의 의지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8] 각 문화산업별 북 지도자의 의지

			영화	방송	출판	애니메이션
국가	파급효과	지도자의 의지	X	○	X	○

2 - (2).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한다.

국가와 관련된 두 번째 분석의 틀은 쉽게 말해 남북 합작 문화산업이 단순한 문화 교류의 수준을 뛰어넘어 경제적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지와 관련되어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문화 산업적 측면에서 한 쪽에서 과다한 비용만이 투입되는 문화 통합은 지속가능하기 힘들다. 따라서 4가지 문화 산업 분야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남북이 합작 사업을 진행했을 때 생산적 측면의 시장개방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먼저 북한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영화제작은 ‘고난의 행군’ 이

27) 1999-2004 남북 애니메이션 교류 백서 영화진흥위원회 2004 11p

28) <http://www.yonhapnews.co.kr/northkorea/2014/11/27/1801000000AKR20141127012400014.HTML>북한 김여정 직책 확인...김정은 만화영화촬영소 방문 동행 연합뉴스 (2014.11.27.)

후 쇠락의 길에 접어들어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한해에 기껏해야 3~4편의 영화를 내놓는 정도이며 야외촬영거리를 이용한 규모가 큰 영화는 거의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선예술영화촬영소는 아직까지 옛 소련과 독일제 필름식 촬영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북한이 1982년 거액의 자금을 들여 건설한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야외촬영거리는 1990년대 후반부터 영화촬영보다는 인민군 제92, 제63 저격여단과 경비병여단, 인민보안성 기동타격대의 시가전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²⁹⁾ 이러한 점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남북이 공동으로 영화를 제작을 하게 된다면 남북한의 기술적 차이를 줄이고 북한에 기술력과 기자재를 보급하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요구될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방송 산업은 남북 문화교류 사업 가운데 교류 횟수 측면에서 보면 가장 많은 사업 실적을 보여 준 분야이다. 하지만 방송 교류 사업은 영화 교류와 마찬가지로 일방향적인 한계를 보인다. 또한 방송분야 교류 중에서 가장 주가 되었던 프로그램은 공연 기획인데 이는 공연단의 이동이라는 대규모 재정수요를 수반한다. 또한 막대한 제작 경비를 필요로 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공연예술 단체로는 엄두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 번째, 출판 산업은 당위성이 수반되는 합작 사업이 주로 이루어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를 매기기 힘들다. 또한 출판 산업이 사향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성장이 감소하는 점도 경제적 가치 창출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이는 종이책의 감소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과 연결된 융·복합형 미디어인 전자책의 등장으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서 한국의 경우에도 출판 산업은 지속적으로 종이책시장의 성장률은 감소하고 전자책의 성장률이 증가하면서 쇠퇴하고 있다. 전자책을 통한 합작교류를 생각해볼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 시장 점유율이 3%에 불과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25%, 영국 15%, 일본 10%에 비해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에도 2014년에서야 비로소 전자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북한 전자책 시장의 규모와 성장률 등

29)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trainingground-02232017081338.html문성휘(2017.02.23),북 영화촬영소, 군부대 훈련장 돼,자유아시아방송

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일부 부유층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 대북소식통은 “돈 있는 집 학생들은 전자교과서의 출시를 반기지만 서민 집안 학생들에게는 아직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말했다.³⁰⁾ 따라서 전자책을 통한 출판사업 또한 관련 산업에 강점이 없는 남한과 북한이 합작 사업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이 합작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면 생산적 측면에서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애니메이션 생산에 대한 남북한의 한계점이 상호 보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남한의 애니메이션 산업은 1990년대 전후 기존의 OEM방식 제조업 기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지속적으로 해외 수주가 감소하는 위기 국면에 당면하여 새로운 산업구조변화를 구축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야 하는 실정이다.³¹⁾ 그러나 남북 합작 애니메이션 산업이 추진된다면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과의 성장으로 가격 경쟁력을 잃은 메인 프로덕션 부분에 북한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북한 애니메이션 업계는 높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저렴한 인건비라는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입장에서도 합작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하청 업체로써 외국에서 일감을 가져와야 한다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궁극적으로 남북 합작 애니메이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북한이 하청 업체로 전략하지 않기 위해 기획 단계에서부터 남북한의 공동 참여를 시작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남한이 메인프로덕션 단계에서 외부 수주가 불가피한 현 시점에서의 북한과의 공동 제작은 생산 측면에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4가지 문화산업이 남북 합작으로 이루어졌을 때의 경제적 가치를 추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30)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hm-09032018104048.html 손혜민(2018.09.03), 북한에도 전자교과서 태블릿 PC 등장, 자유아시아방송

31)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방식의 제작이란 주문자의 의뢰에 따라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할 상품을 제작하는 업체를 뜻하는 용어로써 애니메이션 제작에 있어서는 애니메이션을 기획하는 단계 프리프로덕션(Pre-Production) 단계가 아니라 제작에 해당되는 메인프로덕션(Main Production)과정을 하청받아 위탁생산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9] 각 문화산업별 경제적 가치

		영화	방송	출판	애니메이션
국가	경제적 가치	X	X	X	○

3. 개별행위자

3 - (1). 개별행위자의 능력과 기술에서 차이가 적어야 한다.

앞서 분석의 틀 설정에서 상호의존적인 방향성으로 문화교류가 이루어 지려면 개별 행위자들의 능력과 기술에서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4가지 문화 산업 분야의 남북한의 개별 행위자들의 기술 차이는 어떠한가? 우선 영화의 경우 기술력을 정량화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영화 자체에서 드러나는 객관적인 기술적 특징을 남한과 비교하며 살펴보겠다.



[그림 1] 김동무는 하늘을 난다(2014) CG



[그림 2] 대호(2015) CG

위 북한과 남한의 영화의 한 장면은 비교한 사진을 보면, 동물을 표현한 CG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CG기술은 CG특수효과의 선두라 할 수 있는 미국의 66.7% 수준인데 이는 미국의 천문학적 규모의 역사를 생각하면 그리 큰 차이는 아니다. 남한이 높은 수준의 CG기술을 보이는 반면에 [그림1]³²⁾과 [그림2]³³⁾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남한에 비해 월등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남북 방송 산업의 기술 차이는 남북 방송교류를 전담했던 방송 3사의 담당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가능하다. 실제로 방송 3사의 남북교류협력팀에 종사했던 전문가들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남한이 중계차를 사용하는 모습에 북측 제작진들도 상당히 써보고 싶어 했다. 또한 조선중앙 TV스튜디오는 전등 하나 조명 하나도 제대로 없었던 실정을 보여주지 싫어했다고 한다. 북한 카메라맨은 오래 촬영을 하는 남한 촬영감독에게 '5분 나갈 것은 5분만 찍으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등 소모품인 촬영 테이프를 절약하려고 했다고 한다.³⁴⁾ 이러한 부분들은 그만큼 북한의 음향시스템과 방송장비들이 열악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출판의 경우에는 내용면에서 이념성이 농후할 뿐만 아니라 지질이나 인쇄술 면에서 낙후하여 남북 간의 가장 현격한 기술 차이를 보이는 분야로써 영화와 방송 산업과 마찬가지로 북한과의 기술 교류나 인적 교류를 우선시하여 장기적인 합작 사업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합하다고 여겨진다.³⁵⁾

그렇다면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한 남북한의 개별 행위자들의 능력과 기술의 정도는 어떠할까? 먼저 남한의 애니메이터들은 우수하고 풍부한 제작 경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영아, 유아용 애니메이션의 세계시장에서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3D 애니메이션 제작 기술이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창작제작과 하청제작의 매출이 2013년에는 7대3 비중을 기록하면서 창작제작 기술력의 발전을 보여주었다. ³⁶⁾

북한 애니메이터들이 가지는 객관적인 기술적 특징으로는 1초당 사용

32) 사진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L-epsQIHpUk>

33) 사진출처 : 남은주(2015.12.29),안타깝게도 크게 울지 못한 '대호', 한겨레
Retrievedfrom<http://www.hani.co.kr/arti/culture/movie/723972.html#csidxfb8172bab5424039afbeff9b16e212c>

34) 『2018년도 방통융합정책연구과제』 추진실적보고서 남북 방송통신 교류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201831961193)

35) 문화체육관광부(2013),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36) 문화체육관광부(2015), '문화, 여가, 창조경제의 만남'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 육성 산업 중장기 계획(2015~2019),

하는 프레임 개수를 이야기해볼 수 있다. 북한의 애니메이션은 1초당 24 프레임을 사용하는 풀 애니메이션으로 디즈니사의 제작 기법과 동일하다.³⁷⁾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애니메이션은 1초당 12프레임이나 8프레임을 쓰는 한국이나 일본 작품보다 인물의 움직임이 부드럽게 표현된다.³⁸⁾ 그리고 이러한 북한의 기술력은 외국에서도 인정받아 해외 영화사들의 작업을 함께 진행하기도 했다. 북한의 4·26 아동영화 촬영소는 외국에서는 ‘색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데, 1985년부터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미국 등의 약 70여개의 애니메이션 회사로부터, 극장용 장편에서 텔레비전 시리즈까지 많은 작품의 메인 프로덕션을 제작해 왔다. ³⁹⁾ 북한에서 제작한 작품들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미국 디즈니의 <라이언 킹>, <헤라클레스>, <포카혼타스>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사자왕 실바>와 프랑스의 <고양이 빌 리>, <토르갈> 등 다양한 작품들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 스스로도 노동신문에 프랑스 신문 《몽드》가 《조선 4·26아동영화촬영소》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훌륭한 촬영소라고 소개했다고 할 정도로 애니메이션 산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⁴⁰⁾

남북의 애니메이터들은 풍부한 제작경험을 갖추고 있고, 가지고 있는 기술의 강점은 다르지만 기술력 자체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능력과 기술에서 큰 차이가 없으며 상호의존적인 기술교류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4가지 문화산업 분야의 개별행위자의 능력의 차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으며 개인의 능력 차이가 적으면 긍정적 의미의 ○로 표기했고 많으면 X로 표기했다.

[표 10] 각 문화산업별 개별행위자의 능력 차이

		영화	방송	출판	애니메이션
개인	개별행위자 능력 차이	X	X	X	○

3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06874
홍지연(2007.04.27), 북한애니메이션 “아하,그렇구나~”, ohmynews

38) 이정, 이상구(2004), 《1999-2004 남북 애니메이션 교류 백서》, 서울 : 영화진흥위원회, p40

39) 한상정(2008), 《애니메이션의 남북한 교류, 합작 모델에 대한 소고》 문화예술콘텐츠, 437-460

40) 조민(2014), 《남북 애니메이션 교류와 개성공단 활용》, 북한학연구 10(1), p207-239

3 - (2). 개별행위자의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속가능한 문화교류는 상대편 체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면서 통합되었을 때의 문화적 적응력을 함양하게 해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대로 문화교류의 지속가능성의 부재는 문화교류의 제자리걸음을 하게 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된다. 남북문화교류도 지속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쌓아온 제도적, 기술적 교류통합도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개별행위자의 지속적인 만남에 관해서는 논의의 대상인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그리고 출판 산업 모두 남북관계 경색과 함께 2010년 이후로 단절되는 모습을 보인다. 물론 출판 산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201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중단되었던 ‘올림말집필’이 2014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재개되었지만 개인의 의지로 만남이 재개된 것보다는 출판 산업이 언어 통합이라는 당위성을 가진 산업이기에 우선적으로 재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4가지 문화 산업 분야의 개별 행위자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11] 각 문화산업별 지속적인 만남 가능성

		영화	방송	출판	애니메이션
개인	지속적인 만남	X	X	X	X

4. 소 결

이상으로 상호의존 형태의 분석의 틀을 설정하고 영화, 방송, 출판 그리고 애니메이션이라는 4가지 문화산업분야가 각 분석의 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종합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2] 각 문화산업별 분석의 틀 충족 여부

			영화	방송	출판	애니메이션
국가관계	체제위협성	외부	-	X	○	△
		내부	X	X	X	○
국가	과급효과	보급매체	○	○	X	○
		지도자의 의지	X	○	X	○
	경제적 가치		X	X	X	○
개인	개인의 능력 차이		X	X	X	○
	지속적인 만남		X	X	X	X

앞선 분석 내용에 따르면 상호의존적인 형태로 문화 통합을 이끌어 가기에 가장 적합한 분야는 애니메이션 산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애니메이션 산업은 상대적으로 군사·정치적 위협에 대한 민감도가 다른 산업보다 낮고 수인만화의 특성과 남과 북이 공유하고 있는 이산가족을 주제를 활용했을 때, 북한 체제에 위협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높은 텔레비전의 보급률과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한 긍정성은 국방위원장의 의지를 비추어봤을 때 과급효과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남북 합작 애니메이션 산업이 추진된다면 가격 경쟁력을 잃은 남한의 메인 프로덕션 부분에 북한이 큰 도움이 되어 경제적 이득도 창출할 수 있으며 개인적 차원에서의 적은 기술력의 차이는 실질적인 문화 통합단계에서 비용과 시간의 절약을 낳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 산업은 다른 3가지 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문화 통합의 대상에 적합하지만 몇 가지 한계점을 보인다. 특히 모든 문화 산업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인 군사·정치적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부분과 개인의 의지만으로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은 보완해나가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다음 장인 결론 부분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남북 애니메이션교류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제안해보겠다.

V. 결 론

앞서 이야기 했듯이 아무리 애니메이션 산업이 문화교류에 적합한 상호의존 분석의 틀을 가지고 있더라도 군사·정치적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부분과 개인의 의지만으로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해결되지 못하면 문화교류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동시에 이러한 한계점들은 남북 간의 정치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번에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남북 합작 애니메이션의 활성화 방안을 아래와 같이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제시해 보고자 한다.

[표 13] 남북애니메이션교류 단계별 방안

단계구분	단기	중기	장기
정의	남북경협 활성화 이전단계	남북경협 활성화 및 심화단계	남북경협 고도화 및 통합 직전 단계
정치적 Risk	일부분 해소	상당부분 해소	상당부분 해소
제도적 Risk	일부분 해소	일부분 해소	상당부분 해소
인프라 Risk	위협 존재	일부분 해소	상당부분 해소
설명	대북 제재조치 해제단계, 5.24조치 해제, 북한의 국제사회와의 신뢰 재구축	북한의 국제사회와의 경제협력 활성화 단계, 북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경제적 제약 조건 다수 제거 단계	대규모 투자 및 남북한 산업의 분업구조 구축 단계

출처: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2018). 북한 비즈니스 진출 전략, 서울: 두앤북

1. 단기적 방안

우선, 남북경협 활성화 이전을 의미하는 단기 단계는 정치·제도적 위협이 일부분 해소되었지만 인프라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이 시기는 대북 제재조치와 5.24조치가 해제되고 북한의 국제사회와의 신뢰가 재구축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성급한 경협 추진보다는 남북한의 서로의 산업 현황을 공유함으로써

써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도 2007년 이후 남북 교류가 단절되어 현재 남북 상호간의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 애니메이션 교류의 초기 단계에서는 남북 공동 애니메이션 관련 세미나 개최, 논문 대회 그리고 학생 교류 등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여 애니메이션과 관련한 기술과 문화적 이질감의 간극을 줄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남한이 독자적으로 노력해야하는 부분도 있다. 이는 흔히 남한 애니메이션 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기획력의 부족으로 이러한 부분을 향상시켜 남한 스스로도 기존의 산업적 한계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요구된다. 게다가 남한은 남북 애니메이션 교류가 활성화되었을 때, 그 파급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애니메이션에 대한 투자를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곳곳에도 분배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방에 있는 애니메이션 제작 기업을 지원하거나 애니메이션 캐릭터 관련 박람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2. 중기적 방안

다음으로 중기적 단계는 남북경협이 고도화되고 더 나아가 통합 직전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정치적 위협은 상당 부분 해소되고 제도와 인프라 관련 위협이 남아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국제사회와의 경제협력이 활성화 단계로 접어들 뿐만 아니라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을 하는 등 경제적 제약 조건이 대다수 제거된 상황을 전제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전환점의 시기로 개성애니센터 건립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남북 합작 애니메이션 사업의 물꼬를 대폭적으로 틀 수 있는 조치이다. 그리고 개성 공단에 애니센터가 입주하는 경우에는 다른 산업분야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해온 선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과 제도적인 문제들을 조율하는데 상당한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된다. 또한 개성애니센터가 설립된다면 남한의 파주 출판단지와의 연계도 기대할 수 있고 서울에서의 폭 넓은 후방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이 시기 정치적 위협이 상당부분 해

소된 점을 감안하여 북한과 남한이 합작한 애니메이션을 남북한이 동시에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하는 부분적인 전파교류도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3. 장기적 방안

마지막으로 장기 단계는 정치, 제도, 인프라 관련 위협이 모두 상당부분 해소된 상태로 남북경협이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통합 직전의 단계까지 이르는 상황을 전제한다. 특히 이 시기에는 대규모 투자 유치 가능성이 높고 남북한의 분업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확대된 자금력을 바탕으로 애니메이션 산업과 관련된 문구류나 의류나 잡화를 생산하는 부수적인 산업으로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업의 확장은 개성과 가까운 인천 국제공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수출시장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본 논문에서 논의한 상호의존적인 문화 통합의 분석의 틀과 이에 부합하는 남북 합작 애니메이션 사업의 활성화 방안은 지배적인 문화 통합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공감대를 증진시키면서도 각자의 다양성을 지켜줄 수 있는 문화 통합의 방법으로 큰 의의를 가진다고 본다. 비록 논문의 연구 대상에 북한의 문화 산업이 포함되면서 북한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았고 앞서 설명한 사업 진행 단계별 방안들이 전제하고 있는 국내외적 상황도 간단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한계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차가운 얼음처럼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에도 봄이 왔듯이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현안들에 둘러 쌓여있는 한반도라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으면 언젠가는 차가운 눈이 녹고 봄이 온다고 생각한다. 또한 애니메이션은 장르적 특성상 통일을 이끌어 나가야할 남북의 미래 세대들의 마음에 새겨져 2018년 평양공연에서 노래한 봄을 계속 이어나가게 하는 힘을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수자(2004), 통독 후 동독 미디어의 전환과 수용자의 적응 문제에 관한 연구, 정치정보연구, 7(2), 183-207
- 김동규(2002),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의 남북 문화예술 분야의 통합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 김여라(2018), 남북 방송교류의 현황 및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제1464호
- 김 승(2018), 북한 영화예술의 세계, 영화진흥위원회, 8,
- 문화체육관광부(2013),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2015), ‘문화, 여가, 창조경제의 만남’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 육성 산업 중장기 계획(2015~2019),
- 박기복(2013), 대북정책 기조변화와 남북 애니메이션 협력사업의 상관성 연구,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p87~112
- 박명진(1995), 통일 이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문화, 오락의 역할,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엄 및 세미나, 51-68
- 박종철(2013),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 안민석(2002), 북한주민의 여가생활과 체육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1(2), 119-131
- 윤인진(2001), 남북한 사회통합 모델의 새로운 모색,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p3~32
- 이영란(2005), 통일 이후 동독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한국사회학, 39(1), 137-165
- 이용을(2013), 남북한 문화통합을 위한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공공사회연구 3(2), p170~200
- 이정, 이상구(2004), (1999-2004) 남북 애니메이션 교류 백서, 서울 : 영화진흥위원회
- 이해주, 서리인(2014). 독일 통일 후 동독문화의 변천과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남북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의 방향 고찰, 지속가능연구, 5(1), p1~14

-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2018). 북한 비즈니스 진출 전략, 서울: 두앤북
- 서현진(2017), 청소년기 통일교육과 세대 간 통일인식 차이, 통일문제연구, 29(1) 93-127
- 전영선(2008), 북한 아동영화의 창작적 특성과 남북교류 방향, 문화예술콘텐츠, p343-373
- 조민(2014), 남북 애니메이션 교류와 개성공단 활용, 북한학연구 10(1), p207~239
- 조정아(2017), 북한 주민의 여가생활, KDI 북한경제리뷰, 8
- 조한범(2002),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연구, 서울 : 통일연구원
- 한상정(2008), 애니메이션의 남북한 교류,협작 모델에 대한 소고, 문화예술 콘텐츠, 437-460
- 한상정(2011), 남북한 ‘만화’용법의 차이, 현대북한연구 14(2), p7~34

<신문기사>

- 김준경(2018.05.24), 독일 통일의 숨은 주역은 방송사, 미디어 오늘, Retrievedfrom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2828>
- 김준호(2018.03.23.)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ch-03232018092943.html, 북주민, 비사회주의 그루빠 단속강화로 공포감. 자유아시아방송
- 남은주(2015.12.29),안타깝게도 크게 울지 못한 ‘대호’,한겨레
Retrievedfrom<http://www.hani.co.kr/arti/culture/movie/723972.html#csidxfb8172bab5424039afbeff9b16e212c>
- 동아일보(2015.12.02) 민중서관式 서술 극치 국정화 폐해 반면교사, 675호(p136~143)
Retrievedfrom<https://is.cuni.cz/studium/predmety/index.php?do=download&did=102972&kod=AKO100062>
- 문성희(2017.02.23),북 영화촬영소, 군부대 훈련장 돼, 자유아시아방송

Retrieved from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trainingground-02232017081338.html

방장준(2015.10.14), 북한TV는 채널이 몇 개 나올까, 미디어스

Retrieved from

<http://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09>

손혜민(2018.09.03), 북한에도 전자교과서 태블릿 PC 등장, 자유아시아방송,

Retrieved from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hm-09032018104048.html

연합뉴스(2014.11.27.), 북한김여정직책확인...김정은만화영화촬영소방문동행,

Retrieved from

<http://www.yonhapnews.co.kr/northkorea/2014/11/27/1801000000A KR20141127012400014>

유선희 (2018.05.16), “내년 한국영화 100주년 계기로 남북 영화교류 추진”, 한겨레, Retrieved from

<http://www.hani.co.kr/arti/culture/movie/844823.html#csidx76dacfc ae9ede2d9f14c7dae70356e6>

위지혜(2008.03.06) 남북문인 함께 펴낸 <통일문학> 왜 남쪽에선 못 보나?, Ohmynews Retrieved from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50074

이경하(2018.02.09), 남북한의 출판문화, 자유아시아 방송 Retrieved from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d1b5c77cbb38d654c0b0cc45/fe-hk_02082018153536.html

이지영(2018.05.02.),겨레말큰사전, 중앙일보,

Retrieved from <https://news.joins.com/article/22586817>

정유진(2018.07.29.), [남북영화교류 리부트④] "1년에 단 1편?"...김정은 시대의 북한 영화, news1 Retrieved from

<https://www.msn.com/kokr/entertainment/movies/%EB%82%A8%EB%B6%81%EC%98%81%ED%99%94%EA%B5%90%EB%A5%98-%EB%A6%AC%EB%B6%80%ED%8A%B8%E2%91%A31%EB%85%84%EC%97%90-%EB%8B%A81%ED%8E%B8%E2%80%A6%E>

A%B9%80%EC%A0%95%EC%9D%80-%EC%8B%9C%EB%8C%80%EC%9D%98-%EB%B6%81%ED%95%9C-%EC%98%81%ED%99%94/ar-BBLbJx7

정유진 (2018.07.29) 北 스타 출연한 南 영화, 가능할까?, news1뉴스
Retrieved from <http://news1.kr/articles/?3384172>

하주희(2016.02.24), 김정은, 태양절 맞춰 전 북한 주민에 TV 나눠줄 예정,
조선뉴스프레스, Retrieved from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nNewsNumb=20160119278&nidx=19279>

홍지연(2007.04.27.), 북한애니메이션 “아하, 그렇구나~”, ohmynews, Retrieved from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06874

〈인터뷰〉

『2018년도 방통융합정책연구과제』 추진실적보고서

남북 방송통신 교류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201831961193)

〈기타 참고 자료〉

kbs, KBS 취재 제작 핸드북, 2018.

김누리(2010.11.29), 통일 이후 독일 문화의 변화, KBS 통일방송연구
Retrieved from <http://office.kbs.co.kr/tongil/archives/24926>

입 선

개성공단 생산품 수출 극대화를 위한 제언

- FTA 역외가공 활용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

승실대 정치외교학과 김주혜 · 이상윤

《 목 차 》

【요약문】

【본 문】

- I. 서론
- II. 역외가공 정의 및 개성공단 역외가공 활용현황
- III. 개성공단 역외가공 활용 저조 사례
- IV. 한국의 FTA 역외가공 규정 활용 방안
- V. 결론

【참고문헌】

【요약문】

개성공단 생산품 수출 극대화를 위한 제언

- FTA 역외가공 활용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

기존의 남북간의 극심한 긴장상태가 긴 시간 유지된 가운데 최근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시작으로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2018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 정상회담,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까지 북한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와 현재 함께 남북 관계는 분위기가 매우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남북정상회담의 진척과 함께 금강산 및 개성공단의 재개 의지가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개성공단 재개시 개성공단의 생산품을 역내의 생산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역외가공 규정을 활용하여 한국과 FTA 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들과의 수출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는 더욱 증대될 것이다. 하지만 이전의 개성공단 역외가공 활용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개성공단의 수출조차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역외가공 규정을 활용하여 개성공단 생산품의 수출 극대화 방안을 논하고자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개성공단에서의 역외가공 규정을 이용한 수출의 한계를 한-인도 CEPA, 한-ASEAN FTA, 한-EU FTA 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추후 개성공단 재개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역외가공을 이용한 수출 증대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논의에 있어 본 논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후 역외가공에 대한 이해를 위한 원산지규정에 대한 설명, 역외가공 규정에 대해 설명한 뒤 기존 개성공단 역외가공 활용 현황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앞부분에서는 역외가공 활용의 이유, 역외가공 규정, 개성공단의 현황에

대해 논하였다면, 이후 본문에서는 한-인도 CEPA, 한-ASEAN FTA, 한-EU FTA에서의 역외가공 활용 저조 사례에 대한 분석이 있을 것이다.

결론에서는 위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개성공단 역외가공이 제대로 활용될 수 없었던 한계점을 분석하고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FTA 역외가공을 활용한 개성공단의 수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정치적인 불안으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받았던 기존 개성공단의 불안정성이 정치적인 안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의 신속하고 정확한 협의를 도출해내야 하며 1차 산업 생산품이 주를 이루는 개성공단의 생산품목 다양화와 허용품목 및 한국의 주요 수출품에서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및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있어야만 개성공단이 정치적 의미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더 큰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극한 대립의 위기에 놓여있던 한반도에 올 해부터 본격적으로 협상과 대화의 공간이 열리기 시작했다. 지난 해 2017년 6월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네 차례에 걸쳐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제안해 왔고, 이에 북측의 화답으로 ‘평화올림픽’이 성사되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대북 특별사절단 파견과 국제사회의 전폭적 지지로 성사되었던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난 두 정상은 환한 얼굴로 악수를 나누었고 분단의 선을 손잡고 함께 넘어갔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은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며 평화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5월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협력과 4.27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다. 제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를 약속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갖기로 합의 하는 등 한반도의 평화 조성을 위한 두 정상의 노력이 계속 되어 왔다. 그리고 지난 달 9월 18일부터 20일, 3일간 제 3차 남북정상 회담이 평양에서 진행되었고 ‘9월 평양공동선언’이 공표되었다. 이 날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문 제 2조에 따르면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제 2항에서는 개성공단 재개를 합의하였다. 특히 지난해 2017년 2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교체를 이루면 당초 계획대로 개성공단을 2단계 250만 평을 넘어 3단계 2천만 평까지 확장하겠다”며, “다양한 남북 경험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기업들의 북한 진출을 장려할 것”이라고 SNS에 언급한 바 있으며, 이에 계속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경우, 대북제재의 완화가 이루어지면 개성공단 재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가 기대된다.

개성공단은 2002년 11월 27일 개성공단 지구법을 공포함으로써 구체화 되었다. 남과북은 금강산 교류산업 또한 존재하였지만 남과 북이 함께 협력하여 기술력, 노동력, 토지, 자본을 통해 생산품을 생산해내는 최초의 남북합작 공단으로 남북화해교류협력 특히 남북경제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2016년 2월 기준, 개성공단은 123개의 기업이 입주 가동 중이었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업종은 섬유 및 봉제 기업으로 72개 사가 진출해 있었고 그 외에 기계금속, 전기전자, 화학 분야, 식품, 종이 목재, 비금속광물 기업 등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했다.

<표 1> 개성공단 업종별 생산 현황

구분	가동기업 수	비중(%)	생산액(천 달러)	비중(%)
섬유	72	58.5	225,961	57.4
화학	9	7.3	25,482	6.5
기계금속	23	18.7	55,207	14.0
전기전자	13	10.6	79,959	20.3
식품	2	1.6	3,215	0.8
종이목재	3	2.4	1,589	0.4
비금속 광물	1	0.8	2,243	0.6
합계	123	100.0	393,656	100.0

<출처: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은 2016년 기준 5억 1500만 달러로 2005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약 21배 이상 늘어났다. 2004년을 시작으로 2011년 누계 생산액이 12억 6천만 달러를 돌파하며 2013년까지는 9년간 누계 생산액 22억 달러를 달성한 만큼 개성공단의 성장률은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개성공단 연도별 생산현황

(단위: 만달러, %)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01~06)	계
생산액	1,491	7,373	18,478	25,142	25,648	32,332	40,185	46,950	22,378	22,895	219,977
증감률	-	394.5	150.6	36.1	2.0	26.1	24.3	16.8	△52.3	-	

<출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한편,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은 계속해서 증가해 온 데 반해, 수출액은 연 3천 6백만 달러의 수준으로 정체 되어 있었으며, 생산액 대비 수출비중은 계속해서 감소했다.

<표 3> 개성공단 수출/생산비중

(단위, 천 달러, %)

구 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생 산	184,779	251,422	256,475	323,323	401,848	469,500
수 출	39,669	35,845	28,600	36,677	36,867	36,393
수출/생산	21.4	14.2	11.1	11.3	9.2	7.7

<출처: 경기도선진화위원회 남북분과위원회 12차 회의 자료(2013.04.17.)>

이는 특히 국제사회에 의한 대북제재로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받아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북한 미국에서 인정받지 못하여 수출관리 규정에 있어 특정 품목에 대한 반출제한 대상국가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은 노동집약적 1차 산업의 업종들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 입주기업이 선정되었다.

그렇다면 개성공단의 역외가공 규정은 왜 활용해야 하는가? 개성공단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단순히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서만 사용될 경우, 개성공단 입주로 인해 여러 경제적 혜택을 받고자 하였던 우리 기업들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FTA 역외가공 규정을 통해 보다 다양한 개성공단 생산품을 수출하게 된다면 우리 기업의 이익 증가는 물론이고, 개성공단에서 근무하고 있

는 북한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더불어 정치적으로도 남북경제협력사업을 계속해서 유지 및 추진 확대할 명목이 주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현재 14개의 FTA 협정¹⁾을 발효 중에 있으며, 타결 중인 협정 1개²⁾, 협상 중인 협정 5개³⁾ 등 FTA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발효 중인 국가 중 칠레를 제외하고는 개성공단에 대해 역외가공 원산지 규정을 제정하였거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후 체결할 협정들에 있어서도 역외가공에 대한 규정을 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공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의 제 2조 제 2항에 따라 개성공단의 재가동과 함께 개성공단이 확대될 경우 이러한 FTA별 역외가공 규정을 충분히 활용하여 개성공단 생산품의 수출 극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따라 개성공단 부지가 확대되고 입주 기업이 늘어나게 될 경우, 거대 시장들로 수출되는 주요 품목을 비교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업종의 기업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원산지 기준이 명시된 국가의 혜택품목과 개성공단의 주요 생산품목의 불일치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한 국가들과의 재논의를 유용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현재 FTA 협정을 발효 중인 국가들과의 역외가공 규정에서 개성공단 역외가공 원산지 기준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품목과 개성공단의 주요 생산품목의 불일치 현상으로 인해 그 활용률이 저조함을 살펴 보기 위해 한-인도 CEPA 협정과 한-아세안 FTA 협정을 분석하여 혜택품목에 개성공단의 생산품목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출량이 매우 적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성공단 재개 및 확대 지원 시 전

1)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EFTA · 한-아세안 · 한-인도 · 한-EU · 한-페루 · 한-미 · 한-터키 · 한-호주 · 한-캐나다 · 한-중 · 한-뉴질랜드 · 한-베트남 · 한-콜롬비아 FTA

2) 한-중미 FTA

3) 한-중-일 FTA,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한-에콰도르 SECA, 한-이스라엘 FTA, 한-MERCOSUR FTA

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 등의 부품이나 부분품,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 및 기업들을 유치해야 함을 제언함으로 남북한 경제지구인 개성공단의 역외가공 규정을 활용한 수출 활성화 방안을 통해 남, 북, 입주기업, 개성공단 노동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게끔 하고자 한다.

Ⅱ. 역외가공 정의 및 개성공단 역외가공 활용현황

1. 원산지 정의

원산지란 ‘어떤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으로서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지닌 하나의 국가를 의미한다. 하지만 국가의 국경선 밖에 있는 속령, 또는 보호령과 홍콩 등과 같이 국가가 아닌 특정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다.⁴⁾ 물품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는 수출입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물품의 생산·제조·가공된 국가, 동식물의 경우에는 성장한 국가를 말한다.

또한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은 회원국이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는 법률, 규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 판정이라 할 수 있다. 즉 특정제품의 국적인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를 의미하며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의미한다.⁵⁾

특혜원산지 협정은 상품의 시장 접근 및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무역정책수단으로서 기본 목적은 역외수입 억제를 통해 역내수입을 확대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원산지 규정의 판정기준은 WTO의 통일 원산지 규정에 기초하여 판단한다.⁶⁾

4) 통일부·KOTRA, 개성공단생산제품 수출 관련 주요국의 무역제도, 2005년 9월, P.24

5) 방호경, 『FTA 원산지규정의 주요 특징과 협상에 대한 시사점』(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p. 11

6) 방호경, 위 논문, p.11

(1) 원산지 실질변경 기준의 종류

1) 세 번 변경기준(Tariff Shift Rule)

세 번 변경기준이란 수입이 되는 원료의 세 번(HS 품목번호)과 완제품의 세 번을 비교하여 세 번이 일정단위 이상으로 변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여 원산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⁷⁾ 세 번 변경기준은 객관적인 HS 품목번호를 알면 쉽게 판정이 가능한 기준이다.

HS 품목번호는 수출입 되는 물품에 대한 국제적으로 공통되는 물품분류체계로서 어떠한 품목이라도 반드시 하나의 번호에 분류되어 세율이나 품목별 원산지 기준도 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HS 품목번호는 모두 10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앞에서 두 자리를 류, 4자리를 호, 6자리를 소호라고 부른다. 앞에서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으며 뒷부분 나머지 네 자리는 각국마다 다르기 때문에 원산지 협상에서는 6단위까지 사용하고 있다.⁸⁾

2)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Rule)

부가가치기준이란 특정제품의 전체 가치 중에서 최종공정을 수행한 나라에서 일정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이다. 이 기준은 논리적으로는 타당한 기준이나 세관이나 무역거래자에게 서류제출 등 추가적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한다.⁹⁾ 일반적으로 수입산 재료의 가격에서 완제품의 가격을 나눈 것으로 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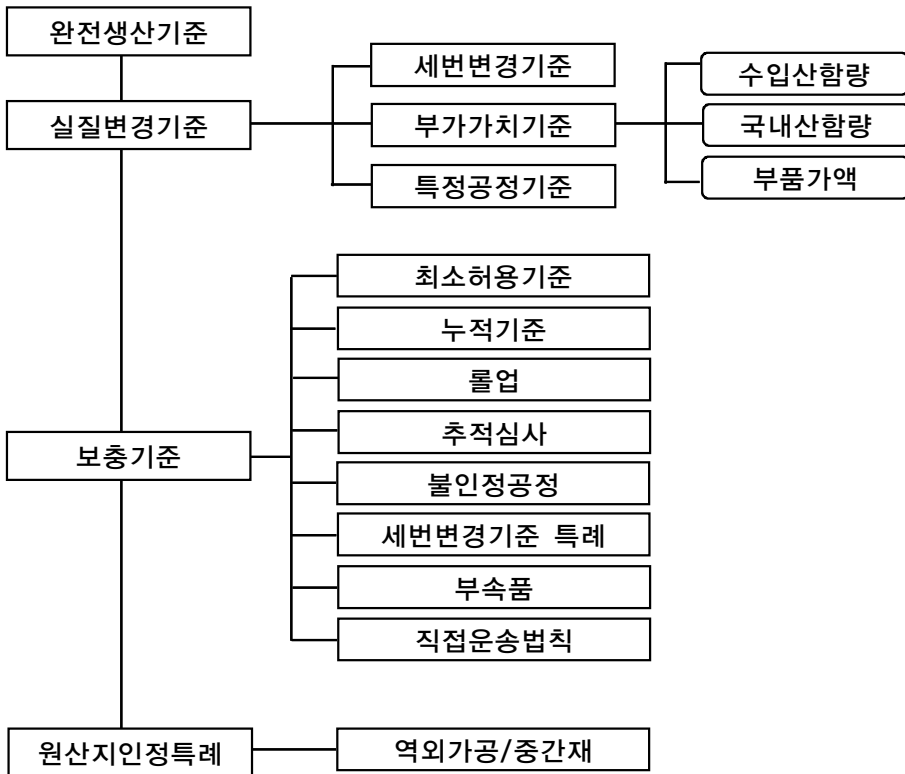
7) 박지연 외, 「한국 자유무역협정의 역외가공 관련 규정과 활용에 관한 연구」, 아태연구, 2015, p.51.

8) 한홍렬, 원산지규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 p.16.

9) 정인교 외, 「Supra note 2」, p.28.

3) 특정가공공정기준(Processing Operation Rule)

특정가공공정기준이란 실질적 변형을 판정하는 또 다른 기준이다. 가공공정기준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가장 객관적인 기준으로 제조공정 중 특정 공정을 수행하거나 특정 부품을 사용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¹⁰⁾ 예를 들어 커피는 볶음 공정을 수행한 나라가 원산지라든지, 의류는 재단, 봉제를 수행한 국가가 원산지라든지, 자동차는 엔진을 생산한 국가가 원산지가 되는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출처: 최낙균, 김영귀(2013,107); 김한성 외(2008,32)>

<그림 1>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 체계도

10) 권민경, 「개성공단산 상품의 원산지결정에 대한 연구 : FTA상의 조문비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2008, p.15.

2. 역외가공 정의

역외가공(Outward processing)이란 특정 물품의 생산 공정 중 일부가 역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두 개의 국가가 FTA를 체결한 경우, 체결당사국 내에서 반제품 생산 이후 이를 제3국에서 가공 한 뒤 다시 역내 재수입을 통해 최종제품 공정을 완료한 뒤 FTA 상대 체결 당사국에 수출하는 것이다. 역외가공의 과정은 당사국 → 제3국 → 당사국 → 수출로 진행된다.¹¹⁾

원산지 인정을 위한 기준은 원칙적으로 최종 생산국에서만 발생한 세 번 변경 또는 부가가치를 기초로 결정된다. 국산재료를 사용했다고 해도 일단 역외 수출 후 다시 역내 재수입 물품은 원산지 인정이 불가하다. 그러나 지역 또는 품목에 따라 역내가공원칙에 예외 조항인 ‘역외가공 원산지 허용’ 특례조항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이 역외가공이다.¹²⁾

(1) 역외가공의 방식

현재 대한민국이 체결하고 있는 역외가공의 경우 크게 OP(Outward Processing) 방식, ISI방식(Integrated Sourcing Initiatives) 방식, OPZ 위원회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OP방식(OP(Outward Processing))이란 FTA체결 당사국 내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제3국에서 가공한 후 다시 반입한 뒤 최종 제품을 상대 당사국에 수출하는 경우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¹³⁾ OP방식은 역내 1차 생산 공정과정을 거친 뒤 역외에서 2차 생산 공정과정이 이뤄진 뒤 반제품으로 역내 재수입하여 3차 공정과정에서 완제품을 생산했을 경우 1,3차 생산 과정을 역내 부가가치로 인정하여 원산지 판정기준에 의해 부가가치 원칙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¹⁴⁾

11) 한국무역협회(KITA), 원산지 규정 무역 용어 설명 <http://www.kita.net/>

12) 조정란, [FTA 원산지론], (법문사, 2016), P.242

13) 관세청, 관세용어사전 <http://www.customs.go.kr>

14) 왕성남, (2017) 각국의 FTA 역외가공지역 비교연구 : 개성공단 사례를 중심으로

2) 또한 ISI방식(ISI (Intergrated Sourcing Initiatives))이란 실제 원산지 여하를 불문하고 당사국에서 선적 된 후 수출되는 특정 상품에 대해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¹⁵⁾ ISI방식은 OP방식에 비해 제품 원산지 지역 위치를 보다 포괄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이다. 실제 제품의 원산지 여하를 불문하고, FTA 체결국가 간 합의에 의해 지정된 일정 품목을 상대국에 수출할 경우 역내산으로 인정되게 된다.¹⁶⁾

3) 마지막으로 OPZ위원회 방식이란 당사국이 OPZ 위원회를 설치하고 동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내용 및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¹⁷⁾ 여기서OPZ란 역외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 (OPZ))를 의미한다. 역외가공지역이란 역외가공이 이루어지는 국경 밖의 특정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국토면적이 좁아 모든 생산시설이 한 국가 안에 존재할 수 없거나, 지리적으로 인접국들이기 때문에 물품의 이동이 자유로운 경우에 인정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한국기업체가 개성에 원자료, 부품 등을 보낸 뒤 개성에서 생산된 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준다면 개성공단이 OPZ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¹⁸⁾

(2) 역외가공의 필요성

기본적으로 국가의 물품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생산이 모두 협정체결국 내에서 이뤄져야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을 역내가공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21세기 오늘날과 같이 국제적 분업생산이 일반화 된 상황에서 역내가공원칙을 고수한다면 해외 위탁가공이 위축될 수 있으며, 내국에서 산업입지 확보가 곤란한 국가들은 물품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FTA 협상 시 개성공단에서의 작업

15) 관세청, 관세용어사전 <http://www.customs.go.kr>

16) 박지연, 이효형. (2015). “한국 자유무역협정(FTA)의 역외가공 관련 규정과 활용에 관한 연구”, 『아태연구』, 제2권제호 35-52.

17) 류건우, 유인혜. (2015). 남북경제협력방안으로서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략적 활용방안. 관세학회지, 16(2), P.152

18) 관세청, 관세용어사전 <http://www.customs.go.kr>

을 역내가공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역외가공 협정을 통해 개성공단의 작업품목을 역내가공으로 인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 예시로 국토 면적이 협소한 싱가포르의 경우 인도네시아와 같이 인근국가에 공장을 설치하고 제품 생산 공정 일부를 수행하기 때문에 지역적 특수성과 수평적 산업구조의 특성을 반영해 역외가공이 인정된 것이다.¹⁹⁾

3. 개성공단 역외가공 활용 현황

개성공단을 포함한 한반도 내 기타 공업지구까지도 한국 FTA의 역외가공지역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2018년 현재까지도 남북한 간 합작된 공단은 개성공단이 유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역외가공규정이 개성공단을 대상으로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²⁰⁾²¹⁾ 따라서 개성공단에 대한 FTA 역외가공 규정 현황을 통해 얼마나 역외가공 활용률이 높은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은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의 하나로 2000년 8월 9일 남쪽의 현대 아산과 북쪽의 (아태, 민경련간)은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²²⁾ 2004년 6월 시범단지 약 2만 8천 평의 부지조성을 완료하였다.²³⁾ 2005년 9월 개성공단 1단계 1차 분양을 통해 24개의 기업이 공단입주를 확정했으며, 동년 12월에 첫 제품을 생산하였다. 이후 업체 수는 2016년 2월 기준을 12개의 기업이 입주 가동 중이었으며, 섬유, 화학, 기계금속, 전기전자, 식품, 종이 목재, 비금

19) 송송이, (2005.6.23), FTA 원산지규정의 역외가공조항. 무역연구소 P.3

20) 박지연·이효영, 「한국 자유무역협정(FTA)의 역외가공 관련 규정과 활용에 관한 연구」, 아태연구, p.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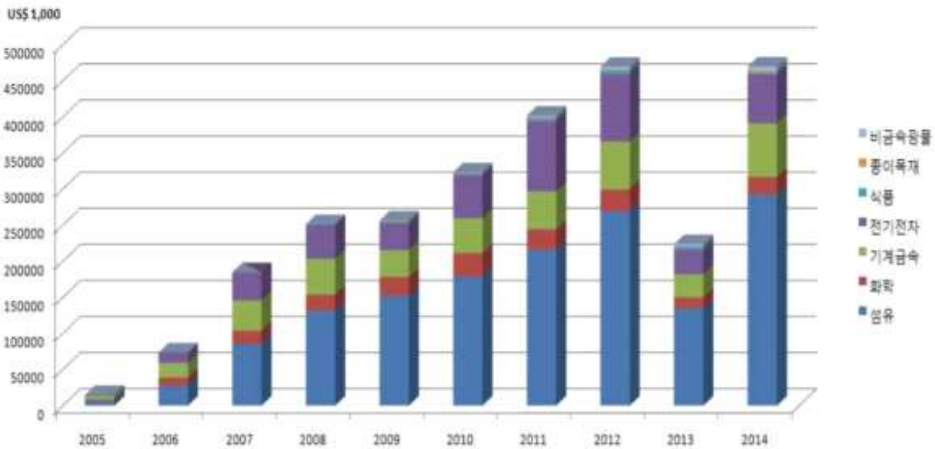
21)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 한반도 내 기타 공업단지도 역외가공지역을 밝히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납축에 의해 역외가공 지역이 제안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역외가공지역은 남북합작 공단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22) 서대훈, 「개성공단 운영현황 및 입주기업 경영성과 분석」, 산업은행경제연구소, 2014, p.65.

23) 손광주 외, 「개성공단 10년 평가와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 모색」, 경기연구원, 2013, p.3.

속광물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입주했다. 생산규모의 경우, 2005년 1,490만 달러에서 2014년 기준 4억 7,000만 달러로 무려 32배 이상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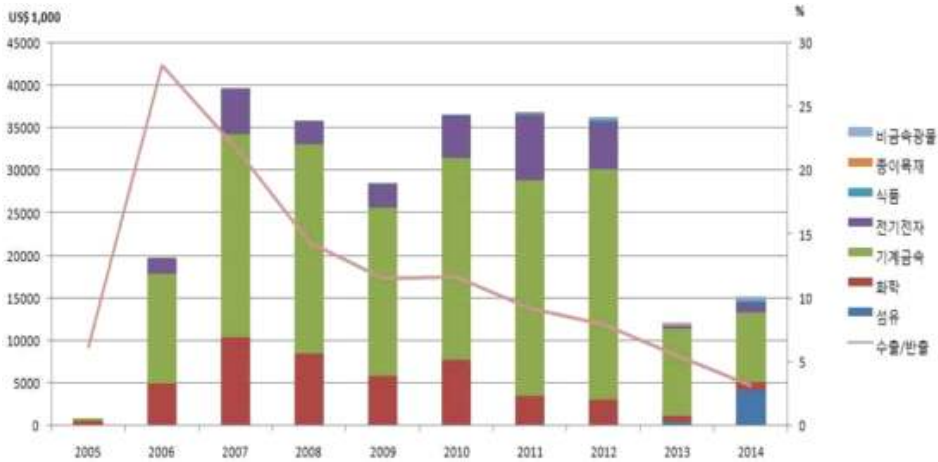
개성공단의 생산품은 대부분 남측의 재료를 사용해 가공 되었으며, 모두 남측으로 반출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남측으로 반출된 물품의 최종 판매지역을 좇을 경우, 역외가공 규정의 활용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2014년 당시 개성공단의 남측 반출 규모는 약 4억 8,000만 달러이며, 2005년 1,387만 달러와 비교해 약 35배가량 증가했다. 반면 반출규모의 증가추세와는 달리 개성공단 제품의 수출은 일정 수준 유지하다가 감소하였는데, 반출규모의 증가를 감안할 경우, 전체 반출규모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폭의 감소추세를 띠고 있다. 이는 역외가공 규정을 활용할 수 있는 수출은 소규모로 예상되며 그 규모 또한 급격히 감소해 왔을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출처: 개성공업지구 통계자료>

<그림 2> 개성공단 생산 규모 변화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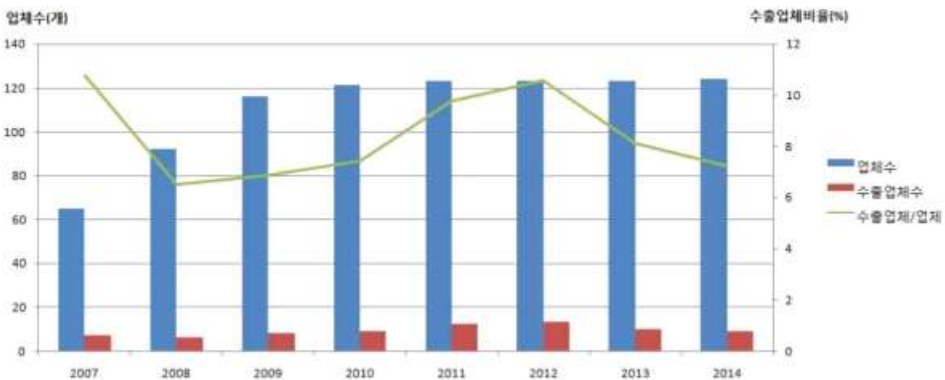
24) 2013년의 생산규모 감소는 가동중단(4월~9월)으로 인한 것임



<출처: 개성공업지구 통계자료>

<그림 3> 개성공단 수출규모 및 반출 대비 비중 변화

개성공단의 수출업체 수는 2007년 이후 일정 수준을 유지했으며, 2009년 이후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전체 업체 수 또한 큰 변화가 없어 총 업체 수 중 수출업체수의 비율은 7-10% 정도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은 업체당 수출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역외가공 규정을 활용한 업체가 있더라도, 업체당 수출규모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개성공업지구 통계자료>

<그림 4> 개성공단 수출업체 수 및 비중 변화

수출대상국은 2006년 중국, 러시아, 호주, 중동, 유럽 등 약 6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었으며, 이후에도 동일한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수출했다. 다만 전체 수출액에 대한 각 수출 대상국의 수출 규모는 연도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대중 수출의 경우 2005년 전체 수출의 약 62%를 차지했었으나, 지속적인 감소로 2013년에는 6%에 불과했다. 반면, 호주에 대한 수출은 2006년 12%에서 2013년 45%까지 증가했다. 러시아와 유럽의 경우에는 15-20% 범위에서 증감이 반복되는 특징을 보였으며 중동에 대한 수출도 2006년에 비해 10%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난 10여 년간 수출대상국이었던 호주와 중국 등은 한국의 FTA 기체결국이며, 이들과는 다양한 방식의 역외가공지역 규정을 공유하고 있기는 하나, FTA 체결 시점이 최근임을 고려할 경우, FTA 체결이 개성공단의 수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지난 10여 년간 주요 수출 대상국이었던 유럽의 경우, 유럽과의 역외가공 규정은 위원회 운영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규정 활용이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실제 수출에 활용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더욱이 현재까지 발효된 FTA 중 비교적 초기 협정에 해당하는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등은 개성공단 제품 수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²⁵⁾ 따라서 개성공단에 입주한 수출기업 중 역외가공 규정을 활용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 FTA의 역외가공 규정의 활용률은 굉장히 저조하다고 볼 수 있다.

역외가공규정이 발효되고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 규정의 활용률이 낮은 까닭은 크게 원산지 기준이 명시된 경우와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도입한 경우에 따라 나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FTA 협정상의 관세혜택품목과 개성공단의 주요 생산 품목 간의 불일치를, 후자의 경우에는 역외가공 규정의 불안정성을 가장 큰 이유로 들 수 있다.

기본적으로 각 국가와의 FTA에 있어서 주요 수출 품목 업종에 대한 역외가공이 인정될 경우, 역외가공 규정 활용은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개성공단에서 저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하고, 이를 한국산으로 수출이

25) 호주(2014년 발효), 중국(2015년 발효), 유럽(2011년 발효), 싱가포르(2005년 발효), EFTA(2006년 발효), 아세안(2007년 발효)

가능하더라도 주요 수출 품목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역외가공 규정을 활용하여 개성공단에서 생산 활동을 할 필요성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각 FTA에서 주요 수출품목과 역외가공 인정 업종 및 실제 개성공단에서 활발히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업종 간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역외가공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FTA를 대상으로 FTA 혜택 업종, 역외가공 인정 업종, 개성공단 주요 업종을 비교했을 때, 역외가공 인정 업종의 대부분이 개성공단의 주요 업종과 불일치하다. 다시 말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의 생산 업체²⁶⁾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규정 활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역외가공 규정의 불안정성은 역외가공 활용률은 낮추는 데에 가장 큰 유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이 체결한 FTA 중 칠레와의 FTA를 제외하고는 모든 협정에 역외가공 규정이 도입되어 있는데, 각 FTA의 역외가공 규정에는 앞서 말했듯, 원산지 기준이 명시된 경우와 그렇지 않고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산지 기준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전자는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및 페루 등의 국가가 속해있으며, 이들은 FTA 협정문 또는 부속서를 통해 구체적인 원산지 기준을 직접 명시하고 있다. 반면 후자에 속한 국가들에는 EU, 미국, 터키, 호주 및 캐나다 등이 있다. 이들 국가 중 한-EU FTA의 경우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별도의 부속서를 통해 역외가공 관련 제반사항을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형태로 규정을 도입했다. 한반도 역외가공 위원회를 도입하여 운영되고 있는 역외가공 규정의 경우, 매년 관련 규정을 논의하도록 되어있는데, 북한의 경우 UN의 경제제재 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기에 북핵문제의 진행 상황에 따라 북한 전역에 대한 제재의 강도가 변화되며, 이로 인해 북한 영토 내에 존재하는 개성공단에 대한 역외가공 규정 활용 정도가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한미 FTA 역외가공 규정에서는 역외가공지역 상품의 원산지 상품 인정을 위한 충족 조건으로 ①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 ② 역외가공지역 지정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③ 역외가공지역 내 일반적인

26) 예를 들어, 플라스틱 제품, 원자로·보일러 부분품, 광학기기 등

환경 기준, 근로 기준·관행, 임금, 경영·관리 관행 등이 지정되어 있는 바²⁷⁾, 한반도 역외가공 위원회의 결정은 이러한 외교적 환경에 따른 변동성이 매우 크며, 이는 개성공단 입주 업체가 역외가공 규정을 능동적으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될 수 있다.

Ⅲ. 개성공단 역외가공 활용 저조 사례

1. 개성공단 생산 품목과 한국의 FTA 주요 수출품목간 불일치 사례

(1) 한-인도 CEPA 사례

1) 한-인도 CEPA 현황

한국은 신흥 거대시장의 선점 가능성, 남아시아 국가 진출의 교두보 확보, 수출 및 투자 증대 효과 회복의 차원에서 인도와의 FTA 체결을 진행해왔다.²⁸⁾ 2004년 인도와 4차례의 공동연구 진행 후, 2006년부터 양자간 FTA 협상 추진, 12차례 협상 끝에 2010년 1월 1일 한-인도 FTA가 발효되었다. 협정 발효 후 2018년 현재 6월 20일 한-인도 CEPA 제 6차 개선 협상이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었다.²⁹⁾

인도의 경우 약 13억 3천만 명이라는 세계 2위의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³⁰⁾ 2018년 명목 GDP 2조 8,482억(\$), PPP(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 9조 4,590억(\$)³¹⁾로 세계 3위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의 인구와 경제력은 대한민국 무역에 있어 매우 큰 시장의 역할을 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더불어 <표 4>에서 나타나듯 매년 6%가 넘는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 것은 향후 인도 내부 시장의 확대와 그

27) 정인교 외.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ROO) 연구 및 실증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5, p.82.

28) 성한경, 이순철. “한-인도 CEPA 활용률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인도연구, 19.2 (2014.11): 1-40.

29)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in/1/2/> 한-인도 CEPA 일지

30) Wordbank, 세계개발지표통계, 인구.

31) International Monetary Fund

확대에 따른 대한민국의 무역 확대의 높은 가능성 또한 예상할 수 있다.

<표 4> 2017~2018년도 분기별 인도 경제지표

분기 지표	단위	2018Q2	2018Q1	2017Q4	2017Q3	2017Q2
GDP증가율	%, 전년비	8.20	7.74	6.97	6.32	5.59
연간 지표	단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실질 GDP 증가율	%	6.74	7.11	8.15	7.41	6.39
명목GDP (달러)	백만달러	2,597,491	2,274,230	2,102,391	2,039,127	1,856,722
실질GDP(달러)	백만달러	2,629,542	2,466,177	2,302,414	2,128,821	1,981,953
1인당 GDP	달러(USD)	1,939.61	1,717.47	1,606.04	1,576.00	1,452.20

출처: KOTRA 국가별 경제지표 <http://kotra.einfomax.co.kr/>

<표 5> 한국-인도 수출입 실적(2007~2017)

단위: 천 불(USD 1,000)

기간	국가명	수출건수	수출금액	수입건수	수입금액	무역수지
2005	인도	78,393	4,597,837	32,572	2,112,076	2,485,761
2006	인도	84,606	5,532,797	36,281	3,640,789	1,892,008
2007	인도	92,465	6,600,039	37,395	4,624,421	1,975,618
2008	인도	111,591	8,977,063	43,184	6,581,241	2,395,822
2009	인도	134,077	8,013,290	45,654	4,141,622	3,871,669
2010	인도	159,786	11,434,596	54,773	5,674,456	5,760,140
2011	인도	161,816	12,654,078	57,730	7,893,573	4,760,505
2012	인도	158,150	11,922,037	61,500	6,920,826	5,001,210
2013	인도	173,590	11,375,792	57,615	6,180,172	5,195,620
2014	인도	186,337	12,782,490	76,900	5,274,668	7,507,822
2015	인도	196,926	12,029,587	85,253	4,240,565	7,789,021
2016	인도	202,990	11,596,286	87,498	4,189,284	7,407,002
2017	인도	210,528	15,055,543	94,620	4,947,847	10,107,696

출처: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https://unipass.customs.go.kr>

2017년 기준 인도는 한국의 7위 수출 대상국이며 2005년 60억불 수준에 머물렀던 수출액은 2010년 CEPA 발효 등에 힘입어 2011년 205.4억 달러로 3배가 넘는 증가를 보였다. 또한 세계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아 잠

시 감소세를 보였지만 소폭의 수출입 금액, 무역수지의 증가를 보이다 2017년 최대 규모인 200억불을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다.

2) 한-인도 개성공단 역외가공 규정 및 허용 품목

인도와의 CEPA 협정에서의 역외가공 규정은 제 3.14조 및 부속서 3-나 영역원칙의 예외에서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부록 3-나-1에 역외가공 허용 상품을 명시하고 있다. ³²⁾ 특정상품은 당사국 영역 밖의 지역에서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원산지재료에 대해 해당 생산 공정 및 작업이 이루어져 다시 재수입된 경우라고 1. 비원산지 투입량의 총 가치가 원산지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신청된 최종 상품의 FOB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2. 당사국으로부터 반출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재반입 된 재료나 상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된 재료의 총 가치의 60% 이상이면 품목별 기준에 관계없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게 된다.³³⁾ 또한 한-인도 CEPA에서의 역외가공 특별 절차로는 1. 역외가공이 적용된 상품의 원산지 증명서는 세관에서 발급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원산지 증명서에 그 상품은 역외가공이 적용됨을 표시할 것 3. 수출당사국은 수입당사국의 관세 당국의 원산지 검증에 지원할 것이 명시되어있다.

특례규정에 대한 이행 및 운영 검토에 따라 2년에 한번 또는 적절한 시점에 공동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며, 협정 발효 5년 뒤, 각 당사국은 제3.14조 적용 결과로 자국의 이해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고 결정하는 경우, 검토에 기초하고 그 재량에 따라 이 부속서의 적용을 철회할 권리를 가진다.³⁴⁾ 라는 철회권 조항이 명시되어있다.

부록 3-나-1에서 명시되어 있는 역외가공 허용 상품을 살펴보면 제 20류: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제43류: 모피와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제48류: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 지 또는 판지의 제품,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제58류 특수질물, 티후트한 섬

32) 한-인도 CEPA 협정문

33) 이영달, 이신규 (2015). 개성공단 생산품의 FTA 활용 방안 연구. 관세학회지, 16(2), 119-143.

34) 한-인도 CEPA 협정문, 부속서 3-나 영역원칙의 예외

유질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포,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외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사용하던 방직용 섬유 제품 및 넘마로 총 8개 류의 108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표 6> 한-인도CEPA 역외가공 허용 품목>

부록 3-나-1

영역원칙의 예외의 적용대상이 되는 품목표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200892	
제43류	모피와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430400	
제48류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 지 또는 판지의 제품
480439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550962, 550969	
제58류	특수직물, 터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포
581099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0120, 610130, 610190, 610210, 610220, 610230, 610290, 610322, 610323, 610329, 610331, 610332, 610333, 610339, 610341, 610342, 610343, 610349, 610413, 610419, 610422, 610423, 610429, 610431, 610439, 610441, 610449, 610451, 610459, 610461, 610469, 610590, 610712, 610719, 610721, 610722, 610729, 610791, 610811, 610829, 610832, 611019, 611211, 611212, 611219, 611220, 611231, 611239, 611241, 611249, 611420, 611490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620111, 620112, 620113, 620119, 620192, 620219, 620291, 620292, 620299, 620312, 620322, 620323, 620329, 620339, 620349, 620412, 620419, 620421, 620422, 620423, 620429, 620441, 620444, 620590, 620610, 620620, 620721, 620722, 620791, 620799, 620811, 620819, 620821, 620822, 620829, 620891, 620899, 620920, 620930, 620990, 621040, 621120, 621132, 621139, 621141, 621142, 621230, 621390, 621420,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외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사용하던 방직용 섬유 제품 및 넘마
630130	

출처: 한-인도 CEPA 협정문 부록 3-나-1.

<표 7> 한-인도 주요 품목별 수출입 동향 (억불, %)

순위	품목	수출			
		2016		2017.1-11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자동차부품	9.53	-22.3	8.73	0.8
2	합성수지	9.01	-5.3	10.09	20.2
3	무선교환기 및 중계기	6.46	-5.4	10.42	131.0
4	열연강판	4.69	-18.6	5.57	284.
5	윤활유	4.39	-4.0	5.06	23.4
6	무선통신기기부품	3.97	-45.3	3.37	-52
7	기차석유화학제품	3.76	11.9	4.8	26.7
8	아연괴 및 스크랩	3.53	122.7	3.27	0.9
9	집적회로반도체	3.44	28.6	5.64	74.9
10	아연도강판	2.94	23.6	3.45	28.9

출처: 한국무역협회

개성공단의 주요 업종은 섬유 58%, 기계금속 19%, 전기전자 11%, 화학 7%³⁵⁾로 섬유>기계금속>전기전자>화학 순의 생산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표 6> 한-인도 CEPA에서 명시되어있는 개성공단 역외가공 허용 품목을 살펴보면 매우 한정된 품목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 뿐 아니라 기계금속, 전기전자, 화학의 경우 해당 품목은 역외가공 허용품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7> 한-인도 주요 품목별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1위 자동차부품, 2위 합성수지, 3위 무선교환기 및 중계기 등으로 개성공단의 주요 생산품은 물론 역외가공 인정 품목들 또한 인도의 주요 수출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개성공단 생산품목과 역외가공 인정 품목간의 불일치, 역외가공 인정 물품과 한-인도 주요 수출품간의 불일치를 알 수 있다.

35)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https://www.kidmac.or.kr>, 입주기업가동현황

(2) 한-ASEAN FTA 사례

1) 한-ASEAN FTA 현황

ASEAN은(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의 약자로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총 10개국이 회원국으로 되어있는 경제권으로 인구 약 6억 3천 9백만 명, GDP 2조 5,495억불, 총교역량 2조 3,811억불 (수출: 1조 1,718억불/수입: 1조 1,093억불)³⁶⁾의 동남아시아 거대 지역공동체이다. 한-아세안 FTA협정은 2007년 6월 1일 발효 된 대한민국이 거대 경제권과 맺은 최초의 FTA협정이다. 한-아세안 FTA협정은 일본보다 아세안 시장접근에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중-아세안 FTA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FTA이며, 아세안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선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타결의 의의를 갖는다.³⁷⁾

<표 8> 한-ASEAN 수출입실적(2005~2017)

단위 : 천 불(USD 1,000)

기간	국가명	수출건수	수출금액	수입건수	수입금액	무역수지
2005	ASEAN	688,286	27,432,172	444,445	53,821,683	1,368,380
2006	ASEAN	716,158	32,066,273	467,698	44,319,133	2,323,466
2007	ASEAN	760,871	38,748,818	491,878	45,030,695	5,639,181
2008	ASEAN	797,646	49,282,849	502,008	53,417,787	8,365,382
2009	ASEAN	835,585	40,979,192	525,787	53,339,069	6,925,889
2010	ASEAN	961,366	53,195,307	598,748	51,977,288	9,096,393
2011	ASEAN	1,001,449	71,801,446	599,940	53,120,667	18,680,780
2012	ASEAN	1,065,464	79,145,169	610,716	44,098,915	27,167,880
2013	ASEAN	1,159,385	81,996,804	667,137	34,053,303	28,657,735
2014	ASEAN	1,229,091	84,577,327	723,992	40,917,467	31,159,539
2015	ASEAN	1,307,426	74,824,364	778,974	33,109,638	29,793,669
2016	ASEAN	1,411,63	74,517,823	854,471	29,742,807	30,198,690
2017	ASEAN	1,490,26	95,248,229	936,385	26,063,792	41,426,546

출처: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https://unipass.customs.go.kr>

36) ASEAN 사무국, IMF, UNFPA

37) FTAKOREA, 한-아세안 협정의 의의

<표 8>에서의 한-아세안 FTA 수출입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한-아세안 FTA 체결 전의 대한민국의 대아세안 수출금액은 320억불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 한-아세안 FTA 체결 이후에는 큰 폭으로 수출 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718억불로 급증하여 체결 전 2006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 아세안 수출은 FTA 발효 후 연평균 7.5%증가, 수출 비중 또한 07년(10.4%) 이후 지속 증가하여, 16년 15%수준으로 아세안은 한국의 제2의 수출지역임을 알 수 있다. 38)

2) 한-ASEAN FTA 개성공단 역외가공 규정 및 허용 품목

아세안과의 FTA 협정에서의 역외가공 규정은 부속서 3 - 원산지규정 제6조 및 양해각서에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부속서 3 제6조 특정상품의 취급에서는 제2조,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특정상품은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의 영역 밖의 지역에서, (즉, 공업지구)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재료에 대하여 그 생산공정 및 작업이 이루어져 다시 재수입된 경우라도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³⁹⁾라는 역외가공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과의 협정에서 역외가공 품목은 각 국가별로 HS 6단위 100품목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한-아세안 FTA의 역외가공 규정은 한-인도 CEPA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상품은 당사국 영역 밖의 지역에서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원산지재료에 대해 해당 생산공정 및 작업이 이루어져 다시 재수입된 경우라고 1. 비원산지 투입량의 총 가치가 원산지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신청된 최종 상품의 FOB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2. 당사국으로부터 반출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재반입된 재료나 상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된 재료의 총 가치의 60%이상이면 품목별 기준에 관계없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게 된다.⁴⁰⁾ 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절차 또한 CEPA 협정과 동일한

38) 산업통상자원부, 한·ASEAN FTA 발효('07.6.1) 10주년 성과

39) 한-ASEAN FTA 협정문

40) 이영달, 이신규 (2015). 개성공단 생산품의 FTA 활용 방안 연구. 관세학회지, 16(2), 2015. 119-143.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허용품목의 경우 국가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의류, 반도체, 디바이스, 기계류 등이 포함되어있다. 특히 수출입 규모가 큰 베트남의 경우를 살펴보면 <표 10>에서 알 수 있듯 섬유와 관련된 부분을 역외가공으로 인정하는 부분에서는 개성공단의 생산품들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아세안의 경우 개성공단의 생산품 수출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지만 <표 9> 2017년 베트남 상위 5개 품목의 수출품목을 살펴보면 전기기기, 원자로·보일러·기계류 등, 플라스틱, 광물성연료와 같이 개성공단의 생산품목과는 불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상위 품목 HS코드 85,84,90,39,27 모두 베트남이 개성공단 허용 품목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임을 알 수 있다.

<표 9> 2017 베트남 품목별 수출실적 통계

단위:천 불(USD 1,000)

기간	국가명	품목명	HS코드	수출금액
2017	베트남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85	22,197,425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그 부분품	84	5,671,689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그 부분품	90	4,422,296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	2,792,788
		광물성 연료·광물유 . . .	27	2,032,308

출처: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https://unipass.customs.go.kr>

<표 10> 베트남 개성공단 관련 대상품목 목록

베트남

연번	HS 2002		HS 2007	
	AHTN 코드	품명	exAHTN 코드	품명
1	292390	- 기타	2923.90	- 기타
2	420212	--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의 것	4202.12	-- 외부표면이 플라스틱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의 것
3	420219	-- 기타	4202.19	-- 기타
4	420291	-- 외부표면이 가죽 콤포지션레더 또는 페이턴트레더제의 것	4202.91	-- 외부표면이 가죽·콤포지션레더 또는 페이턴트레더제의 것
5	420292	-- 외부표면이 플라스틱슈트 또는 방직용 섬유제의 것	4202.92	-- 외부표면이 플라스틱슈트 또는 방직용 섬유제의 것
6	420299	-- 기타	4202.99	-- 기타
7	420321	-- 운동용으로 특수디자인 한 것	4203.21	-- 운동용으로 특수디자인 한 것
8	61071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6107.1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9	610799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6107.9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0	61089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6108.9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1	611720	- 넥타이류	ex6117.80	- 기타 부속품
12	620321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ex6203.2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620510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ex6205.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4	621120	- 스키슈트	6211.20	- 스키슈트
15	621141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6211.41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16	621142	-- 면제의 것	6211.42	-- 면제의 것
17	621210	- 브래지어	6212.10	- 브래지어
18	621220	- 거들 및 팬티거들	6212.20	- 거들 및 팬티거들
19	621290	- 기타	6212.90	- 기타
20	621310	- 기타	ex6213.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1	621320	- 면제의 것	6213.20	- 면제의 것
22	6213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ex6213.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3	621410	-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6214.10	- 견 또는 견 웨이스트의 것
24	621420	- 양모제 및 섬유모제의 것	6214.20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5	621430	- 합성섬유제의 것	6214.30	- 합성섬유제의 것
26	6214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6214.9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7	630251	-- 면제의 것	6302.51	-- 면제의 것
28	630253	-- 인조섬유제의 것	6302.53	-- 인조섬유제의 것
29	630291	-- 면제의 것	6302.91	-- 면제의 것

출처: 한-ASEAN FTA 협정문, 개성공단 관련 대상품목 목록

2.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논의사례

(1) 한-EU FTA 사례

1) 한-EU FTA 현황

2010년 10월 6일 한-EU FTA 정식 서명이 진행되고 2011년 7월 1일 한-EU FTA의 잠정 발효가 합의되었다. 또한 2015년 12월 13일 한-EU FTA가 전체발효 되었다. 한-EU FTA 타결은 FTA 협정을 통한 28개국의 회원국들과의 시장 진출 및 투자 확대에 기여, 무역 활성화를 통한 무역규모 증가, 외국인 투자 촉진 그리고 양측간 경제시스템 투명성, 신뢰성, 개방성을 제고한다는 타결 의의가 있다.⁴¹⁾

EU는 세계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공동체이다. 또한 2017년 기준 우리나라와 EU간의 교역규모는 1,113억달러로 중국, 미국에 이어 제3위 교역상대이다. ⁴²⁾

2) 한-EU FTA 개성공단 역외가공 규정 및 현황

한-EU FTA 역외가공 규정은 제12조 제3항 및 부속서 4에 명시되어 있다. 부속서는 <표 11>에 나타나있듯 3항의 조항으로 1항에서는 남북간 경제협력의 중요성 인정과 한반도 역외가공 위원회 설치 근거,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의 역할이 명시되어있다. 2항에서는 위원회 구성원은 양 당사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는 규정, 위원회 회합 및 협정체결 후 회합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 3항에서는 위원회의 역외가공지역 지정가능 구역 결정, 역외가공지역의 수립 기준 충족여부, 역외가공지역의 원산지 최종상품에 추가될 수 있는 총 투입가치의 최대한도 설정이 명시되어있다.

41) FTAKOREA, 한·EU FTA 의의, <http://www.fta.go.kr>

42) 관세청 수출입통계

<표 11> 부속서 4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p>1항. 대한민국의 헌법상 위임 및 안보 이익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증진을 위한 양 사자의 약속,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한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가 제15.2(전문위원회) 제1항에 따라 설치된다. 위원회는 한반도에서의 상황이 역외가공지역들의 설립 및 개발을 통한 추가적 경제개발에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한다.</p>
<p>2항.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이 협정 발효 1주년이 되는 일자에 회합하며, 그 후 매년 최소 1회 또는 상호 합의하는 대로 어느 때나 회합한다.</p>
<p>3항. 위원회는 역외가공지역들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들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역외가공지역이 위원회가 수립한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또한 역외가공지역의 지리적 구역 내에서 원산지 최종상품에 추가될 수 있는 총 투입가치의 최대 한도를 설정한다.</p>

<출처: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국문본),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역외가공 인정 문제에 대한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의 추후 논의의 규정은 한-EU FTA 뿐만 아니라 한-미 FTA, 한-캐나다 FTA, 한-호주 FTA, 한-터키 FTA에서도 동일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 FTA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같이 3가지 선결조건을 규정한 것과 다르게 한-EU FTA는 이러한 전제조건이 없었다는 것이 특징이다.⁴³⁾

한EU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는 2012년, 2013년, 2014년까지 3차례 위원회를 개최하여 한EU FTA 부속서 4에 규정된 협의의제인 지역지정, 허용기준 수립 등에 대한 논의를 개시 및 진행하였으며, 한미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는 2013년에 한 차례 개최되어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지정 관련 양측의 기본 입장을 교환하였으며 이후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발표와 함께 그 논의 역시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 규정을 국가들과의 협정에서 개성공단의 원산지

43) 왕성남, 각국의 FTA 역외가공지역 비교연구 : 개성공단 사례를 중심으로. (2017)

지위 확보는 개성공단 향후 수출 판로를 분석할 때 필수적으로 획득되어야 한다. 만일 한국산 제품으로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다면, 한국 시장으로만 판매가 가능한 제한적 형태로 남게 될 것이며 이는 즉 생산 비용 절감 차원의 하청 기지 역할만을 수행하는 지역이 되어, 여전히 존재할 정치적 변수에 좌우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한계를 갖는 것이다.⁴⁴⁾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위원회 활용을 활용하여 주요 품목들을 역외가공 허용품목으로 인정받게 하는 것은 향후 개성공단 재개 및 확대 시 개성공단을 수출 가능 경제지역으로 활용하는 부분에서나 개성공단 이외에도 남북간의 새로운 경제지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EU 뿐만 아니라 한-미 FTA, 한-캐나다 FTA, 한-호주 FTA, 한-터키 FTA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원산지 지위 확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주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IV. 한국의 FTA 역외가공 규정 활용 방안

본문에서 나타나듯 개성공단에서의 생산품을 FTA 역외가공 규정을 이용하여 수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한계점이 있다. 2018년 현재 개성공단은 폐쇄되어있지만 추후 개성공단의 재개 및 확대시 개성공단의 생산 규모 확대, 상품의 다양화, 전문 산업 도입 등의 긍정적인 전망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개성공단 역외가공 활용의 한계점 및 극복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정치적 안정

개성공단의 존립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정치적 불안정성이다. 2003년 6월 착공된 개성공단 사업은 초기 남북경협외의 상징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5.24조치로 인한 위기, 2013년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추후 재가동이 되었지만

44) 김현정, 박선화. 한·EU FTA에서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의 역할. 국제정치연구, 13(2), 2010. 103-133. P. 130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로 인해 개성공단의 폐쇄가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개성공단은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생산의 불안정성을 꾸준히 가지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위기나 폐쇄의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고도산업체의 개성공단 입주에도 많은 한계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개성공단에서의 정치적 위험은 북한의 도발과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에서 기인하며 정치적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다. 따라서 개성공단이 추후 뛰어난 수출역량을 갖춘 경제지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정치적 안정이 확실하게 보장 되어야 할 것이다.

(2)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의 신속하고 정확한 협의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 추후 협의 규정은 개성공단 역외가공 활용에 있어 불안정성을 갖게 한다. 현재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규정은 한-EU FTA, 한-미 FTA, 한-캐나다 FTA, 한-호주 FTA, 한-터키 FTA와 같은 많은 국가와의 FTA 협정에서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의 규정의 경우 추후 협의를 통한 역외가공 허용 논의라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재개가 확정될 시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의 신속한 협의 및 운영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특히, 개성공단 물품의 주요 수출지역이었던 EU 및 호주와의 FTA의 경우 역외가공허용 대상품목과 기준을 빠른 시일내에 확정할 필요가 있다.⁴⁵⁾ 한-EU FTA의 경우 개성공단 생산품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섬유와 관련하여 민간품목(한 5개, EU 6개)의 항목을 양허유예로 두고 나머지 섬유 전품목의 양허수준을 즉시 철폐하기로 협의하였다.⁴⁶⁾ 표<12>에서 나타나듯 EU의 섬유관련 양허관세표는 12%라는 관세율을 보이고 있으며 표에 나타나지 않은 대부분의 섬유관련 품목들도 대부분 12% 정도의 높은 관세율을 보이고 있다. 이전 개성공단의 주요 생산품이 섬유인 것을 고려한다면 EU와의 역외가공 협의에서 개성공단의 섬유를 역외가공 허용품목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수출에 있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45) 이영달, 이신규 개성공단 생산품의 FTA 활용 방안 연구. 관세학회지, 16(2), (2015). 119-143.

46) 한-EU FTA 협정문, 관세양허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3가지 선결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정치적 요건이 존재하지만 다른 위원회 방식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상대국 승인이 있다면 즉시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⁴⁷⁾ 따라서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의 신속하고 생산품의 넓은 허용이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3) 개성공단 수출품목의 다양화 및 허용품목 불일치 문제 해결

이전 개성공단 생산품의 역외가공 인정 현황을 살펴보면 본문에서 분석한 인도, 아세안의 사례와 같이 개성공단 생산품의 주가 되는 섬유, 기계금속, 화학 관련 제품과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과의 불일치성 문제를 알 수 있다. 표13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의 FTA 주요 수출 품목은 전 철도용이나 궤도용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 원자로 보일러, 전자기기와 그 부분품, 광물성 연료, 플라스틱과 그 제품 등과 같이 개성공단의 생산품목과의 불일치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후 개성공단 확대시 기존의 산업 확대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의 선정과정에 있어 주요 수출품목에 해당하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을 입주기업으로 선정하여 개성공단 생산품의 다양화 및 전문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

47) 이영달, 이신규 (2015). 위의 논문 P.136

<표 12> EU 섬유관련 양허관세표

CN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진입가격
6006 31 10	---네트 커튼 직물을 포함한 커튼용의 것	8	0	
6006 31 90	---기타	8	0	
6006 32	---염색한 것			
6006 32 10	---네트 커튼 직물을 포함한 커튼용의 것	8	0	
6006 32 90	---기타	8	0	
6006 33	---서로 다른 색사의 것			
6006 33 10	---네트 커튼 직물을 포함한 커튼용의 것	8	0	
6006 33 90	---기타	8	0	
6006 34	---날염한 것			
6006 34 10	---네트 커튼직물을 포함한 커튼용의 것	8	0	
6006 34 90	---기타	8	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6006 41 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8	0	
6006 42 00	--염색한 것	8	0	
6006 43 00	--서로 다른 색사의 것	8	0	
6006 44 00	--날염한 것	8	0	
6006 90 00	-기타	8	0	
61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아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01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룩·아노락(스키자켓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아스 편물 및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제6103호의 것을 제외한다)			
6101 20	-면제의 것			
6101 20 10	--오버코트, 카코트, 케이프, 클룩 및 이와 유사한 물품	12	0	
6101 20 90	--스키 자켓을 포함한 아노락, 윈드 치터, 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물품	12	0	
6101 30	-인조섬유제의 것			
6101 30 10	--오버코트, 카코트, 케이프, 클룩 및 이와 유사한 물품	12	0	
6101 30 90	--스키 자켓을 포함한 아노락, 윈드 치터, 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물품	12	0	
6101 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6101 90 20	--오버코트, 카코트, 케이프, 클룩 및 이와 유사한 물품	12	0	
6101 90 80	--스키 자켓을 포함한 아노락, 윈드 치터, 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물품	12	0	

출처: EU 관세양허표(국문)

<표 13> 2017년 한국 FTA 품목별 무역통계

단위 : 천 불(USD 1,000),톤(TON)

순위	품목명	HS 코드	수출중량	수출금액	수입중량	수입금액	무역수지
1	전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85	1,720,630.5	142,709,862	1,303,997.5	69,032,813	73,677,049
2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84	3,968,508.4	58,727,989	1,863,833.5	47,677,655	11,050,334
3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87	5,067,096.5	46,312,300	820,805.3	13,179,433	33,132,868
4	광물성 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27	62,440,134.3	32,306,801	158,838,746.3	30,543,845	1,762,956
5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 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0	429,026.5	28,545,386	197,096.3	16,335,235	12,210,151
6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	12,916,937.0	27,230,807	2,196,423.0	7,164,395	20,066,413

출처: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https://unipass.customs.go.kr>

더불어 아세안과 협의된 100개 품목 중 라오스 26개, 미얀마 33개, 인도와 합의된 108개 품목 중 36개, 페루와 합의된 100개 품목 중 31개만 개성공단에서 생산⁴⁸⁾된다는 역외가공 허용품목과 실제 생산품간의 품목 불일치 문제 또한 FTA 국가들과의 개성공단 생산품 목록 재협상을 통해 불일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48) 김민서, 개성공단 생산제품 ‘한국산’ 인정 난제로, 세계일보, 2013.10.15

(4) 정부 관련 기관의 노력 및 지원 확대

마지막 방안으로는 정부 관련기관의 노력 및 지원확대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 등이 FTA 활용을 통한 실질적인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⁴⁹⁾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지원되고 있는 정책 자금지원, 세제, 공과금지원과 같은 자금 지원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노력만으로는 복잡한 절차를 갖고 있는 역외가공 규정을 이용하여 생산품을 수출하는 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들의 역외가공규정 활용 방법 및 활용품목에 대한 안내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개성공단의 입주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관세청 등 정부기관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등이 합동으로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설명회 혹은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FTA 적용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먼저 알려 주어야 할 것이다.⁵⁰⁾

V. 결론

FTA 협정은 WTO(World Trade Organization)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혜국 대우(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 MFN) 조항의 예외를 인정받는다. 이는 FTA 체결 당사국 간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협정이므로 역외가공 규정과 같이 FTA 체결 당사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이러한 조항⁵¹⁾들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외가공은 국토면적이 매우 협소하여 첫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생산시설이 한 국가 내에 존재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최종 제품의 생산에 이르기까지 원재료 및 반제품이 지역적으로 인접한

49) 이영달, 이신규 (2015). 위의 논문 P.135

50) 이영달, 이신규 (2015). 위의 논문 P.135

51) WTO 하 MFN조항과 FTA

국가들 사이에서 자유로이 넘나들 수 있다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여러 국가들의 FTA 협상에 도입되어 왔다. 한국의 경우, 2006년 싱가포르와의 FTA에서 처음 역외가공 규정을 도입한 이후 모든 FTA 역외가공 규정을 도입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인도 CEPA 협정, 한-아세안 FTA 협정, 한-EU FTA 협정 분석을 통해 ① 개성공단 생산 품목과 FTA 협정 국가로의 관세혜택업종의 주요 수출품목 간의 불일치와 ②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의 불안정한 논의에 의한 역외가공 규정의 불안정성을 가장 큰 요인으로 도출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인은 2018년 초부터 한반도에 불어오는 평화의 기조를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음이 기대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본 연구는 기존 FTA 역외가공 규정 활용률의 저조 사태를 바탕으로 개성공단 생산품의 수출 극대화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정치적 안정이다. 현재 개성공단은 중단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 이는 남북 관계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에 의해 그 존립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올 해 2018년에만 해도 3차례 진행되었던 남북 정상회담과 1차례 진행되었고 제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 등과 함께 남북 종전선언이 머지않아 이루어 질 것이 예상되며, 특히 제 3차 정상회담에서의 ‘9월 평양공동선언’ 제2조 제2항에 따라 개성공단의 재개는 확인되었다. 또한 북한이 보여주는 비핵화 의지는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를 취하시키고 대북제재로 인해 통제되었던 북한의 수출제지를 해지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충족시켜줄 것이며, 이는 다시 말해 개성공단 생산품의 제3국으로의 수출 규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의 신속하고 정확한 협의를 통해 FTA 협정 국가들과 추후 논의에서 개성공단 생산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미 역외가공 규정에서 개성공단 원산지를 인정한 국가들과의 재협상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국, EU, 호주 등 주요 거대 시장들과의 역외가공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고 위원회 설치를 통해 매년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 개성공단 재개 시 위원회 논의 역시 다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이 때 역외가공 허용 대상품목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성공단 수출품목의 다양화와 역외가공 허용 품목 불일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 관련 기관의 노력 및 지원 확대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재개 시 그 부지를 2천만 평까지 확장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 새로 진출할 기업들이 필요하는데, 이때 정부는 다양한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입주하도록 그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확대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게 지원되고 있는 정책 자금지원, 세제, 공과금지원과 같은 자금 지원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들의 역외가공규정 활용 방법 및 활용품목에 대한 안내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해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메리트를 주어,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선정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이 기업의 생산품목이 FTA 협정 국가들의 주요 수출 품목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 제언을 통해 개성공단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FTA 체결 국가들과의 협정에서 역외가공규정을 잘 활용한다면 개성공단 수출 규모를 극대화하고 더불어 개성공단이 단순한 남북 관계에 있어 단순히 정치적 의미를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의의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단행본〉

조정란, “FTA 원산지론”, 법문사, 2016.

〈국내학술지〉

박지연, 이효영. "한국 자유무역협정(FTA)의 역외가공 관련 규정과 활용에 관한 연구." 아태연구, 22.3 (2015.9): 47-78.

류건우, 유인혜. "남북경제협력방안으로서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략적 활용 방안." 관세학회지, 16.2 (2015.5): 145-162.

손광주, 신중호, 노진국. "개성공단 10년 평가와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 모색." 정책연구, (2013.8): 1-47.

성한경, 이순철. "한-인도 CEPA 활용률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인도연구, 19.2 (2014.11): 1-40.

이영달, 이신규. "개성공단 생산품의 FTA 활용 방안 연구." 관세학회지, 16.2 (2015.5): 119-143.

김현정, 박선화. "한·EU FTA에서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의 역할." 국제정치연구, 13.2 (2010.12): 103-133.

〈학위논문 (국내 및 동양,서양)〉

권민경, 「개성공단산 상품의 원산지결정에 대한 연구 : FTA상의 조문비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왕성남, “각국의 FTA 역외가공지역 비교연구: 개성공단 사례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신문기사〉

김민서, 개성공단 생산제품 ‘한국산’ 인정 난제로, 세계일보, 2013.10.15

〈인터넷 자료〉

FTA 강국, KOREA 홈페이지 [<http://www.fta.go.kr>]

관세청 홈페이지(수출입무역통계)

[<https://unipass.customs.go.kr:38030/ets/index.do>]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ww.imf.org]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https://www.kidmac.or.kr/kor/contents.do?menuNo=100158>]

〈기타〉

방호경, “FTA 원산지규정의 주요특징과 협상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2004(12), 2004

한홍렬, “원산지규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1992(3) ,
1992

송송이, “FTA 원산지규정의 역외가공조항”, 무역연구소 연구보고서, 2005.

서대훈, “개성공단 운영현황 및 입주기업 경영성과 분석”,
산업은행경제연구소, 2014.

정인교·조정란, 방호경, 김석오,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ROO) 연구 및
실증분석”,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5.

한-ASEAN FTA 협정문

한-EU FTA 협정문

EU 관세양허표

입 선

북한 민생 에너지 자립을 위한 바이오 에너지 활용 방안

승실대 정치외교학과 강다혜

《 목 차 》

【요약문】

【본 문】

- I. 서론
- II.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 III. 사례 분석
- IV. 북한의 바이오 에너지 시설 타당성 검토
- V. 정책적 제안
- VI. 결론

【참고문헌】

【요약문】

북한 민생 에너지 자립을 위한 바이오 에너지 활용 방안

2018년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한과 북한은 평화와 서로의 번영을 위한 지속적인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남북경협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 지역의 낙후된 에너지 인프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된다. 북한의 기존 에너지 체계는 수주화중과 주탄중유 정책과 같이 수력 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노후화된 설비와 재난으로 인한 설비 붕괴와 구 소련 붕괴 이후 사회주의국가들의 지원이 끊기는 등 북한의 전력수급은 매우 어려워졌다. 중소형발전소를 짓고 신재생에너지원 개발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북한 정부의 노력이 있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이렇게 북한의 에너지난 극복과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협력을 통한 에너지개발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인 방안으로 북한 민생의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바이오에너지를 통해 에너지난을 해소할 대책을 모색했다.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연구는 태양 에너지, 풍력 에너지에 국한된 협력 방안과 구체적 사업이 주되었다.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2008년 한반도 신재생에너지 개발 심포지엄에서 멈춰있다. 북한지역의 바이오에너지 도입에 대한 선행연구는 북한의 에너지개발을 국가적, 거시적 차원에서 방향을 마련했고,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기구 중심의 지원 및 개발이었고, 대북제재로 인한 우려되는 바이오가스 플랜트의 설치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분조관리제하의 포전담당책임제’ 등과 같은 북한 주민에게 자율성을 주고, 의욕이 생겨 생산량을 키우려는 북한의 방향을 생각해 보았을 때, 바이오에너지 사업의 주체를 북한 농촌 주민으로 두었고, 바이오가스 플랜트의 북한 농촌 및 도서지역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독일 운데 마을의 열병합발전 성공사례, 한국 흥천군 소매곡리 마을의 고질화공정 성공사례를 분석했고, 흥성의 바이오가스-디젤 혼소발전 사례, 그리고 LNG-디젤 혼소 발전의 백령도 모델을 소개하며

기술개발 이후 활용가능성을 언급했다. 공통적으로 대표적인 성공요인은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주도적인 참여와 제도적 요인이었다. 기술적 측면에서 각각의 기술을 도입하는 데에 맞는 환경이었던 이유도 있다. 또한, 바이오가스-디젤 혼소발전에 대해서 북한 내부에 발전기를 설치할 때, 바이오가스를 천연가스와 매우 밀접하게 공정할 수 있는 기술 수준과 북한의 탄소하나화학공업을 통해 디젤유를 내부에서 직접 공급이 가능할 때, 에너지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나아가, 백령도에서 추진 중인 LNG-디젤 혼소발전을 한반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서해안 북한 지역의 도서지역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사업의 성공요인인 제도적 요인을 따지자면, 북한의 ‘에너지관리법’과 ‘중소형발전소법’을 분석했을 때 전력의 관리는 국가에 강한 통제권이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중소기업발전소법 제43조에 따르면, 중소기업발전소 사업에 대해서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포전담당책임제’의 최근 북한의 방향성과 함께 법적으로 북한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책임질 수 있다. 여기에 남은 전력이나 가스를 국가전력·가스계통으로 넣을 때 판매해 주민들의 수익을 보장해줄 때 더 더욱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협동농장은 분조체계를 통해 조직화되어있기에 사업에 대한 추진력이 보장된다. 기술적 조건을 검토했을 때 최종적으로 북한의 농촌지역에 알맞은 모델은 고질화를 통한 바이오가스 및 퇴액비 생산이었다. 도시가스 관망은 북한의 에너지 인프라를 재구축하면서 설치될 것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관망 설비가 갖춰질 것이다. 농촌지역에서 나오는 가축분뇨로 나오는 유기성 폐기물로 바이오매스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도심의 폐기물도 농촌에 유입되기 때문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중앙집중형 시설이 농촌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폐기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남은 찌꺼기는 발효해서 퇴액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농촌의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개성시 관문군 월정농장을 뽑았다. ①남한과 가까운 위치, ②개성공단이 재개한다면, 설비를 제작해서 바로 설치할 수 있는 점, ③돼지농장이라, 메탄가스생산에 유리한 돈분이 풍부한 점, ④중소형 규모의 농장이라 설비가

적게 드는 점, ⑤협동농장으로 주민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 점, ⑥신경제 지도 구상의 환서해 벨트에 따라 남북경협을 위해 개성의 위치가 중요한 점, ⑦남북러 천연가스관망이 북한의 동쪽에 설계돼 서쪽의 가스 부족이 우려되는 점에서 개성 농장으로 뽑았다.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1년만의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남북관계에서 화해와 평화의 기류가 본격적으로 흐르기 시작하고있다.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서 양 정상은 남북관계 개선과 공동번영과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 등을 약속했다. 또한, 8.13남북 고위급회담 판문점 선언 이행 논의로 철도·도로 연결, 적십자·군사당국자·체육회담 일정 조율,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문제, 6.15 남북공동행사, 남북 산림 협력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남북 협력이 한창 달아오르고 활발하게 논의가 될 때 더 본격적이고 구체적으로 협력을 해야 한다. 특히 에너지 체계 구축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에 대한 근거는 첫째, 에너지 사용은 인권의 문제이므로 북한 지역의 주민들이 인간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에너지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표1> 연도별 1차 에너지 총공급량 및 1인당 공급량(2010-2016)¹⁾

연도	남한		북한	
	총공급량 (천TOE)	1인당공급량 (TOE)	총공급량 (천TOE)	1인당공급량 (TOE)
2010	263,805	5.32	15,662	0.65
2011	276,636	5.54	12,598	0.52
2012	278,698	5.55	12,284	0.50
2013	280,290	5.56	10,630	0.43
2014	282,938	5.58	11,050	0.45
2015	287,479	5.64	8,700	0.36
2016	294,232	5.74	9,910	0.40

1) 통계청, 2017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p.166

표1을 보면 남한에 비해 북한의 1인당 전력 공급량이 현저히 낮고 시간이 지날수록 1인당 공급량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남북격차를 줄임으로써 통일비용을 아낄 수 있고, 기술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표1을 보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남북간 전력공급의 격차가 커지고 있어 미리 격차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 셋째, 남북경제협력의 시작이 에너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제 개발 성공여부는 교통과 에너지 인프라의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남북경협을 위해서 이는 필수적이다.²⁾

북한은 기존의 에너지체계에서 수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 위주의 발전 구조를 갖고 있다. 그 이유는 산악지형이 많고 수자원이 많은 점에서 수력발전이 용이하며, 북한내부에 석탄이 분포한 점에서 석탄화력발전이 유용해서 자력갱생구조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력발전의 경우 설비의 노후화와 홍수로 토사가 유실돼 하천이나 댐으로 유입돼 수자원을 감소시키고 고장을 야기해 수력 발전을 감소시켰다.³⁾ 문제 해결을 위해 1990년 이후 6,800여 개의 중소형 발전소를 건설했으나, 강수량 부족과 낙후된 디젤로 전력난 해소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했다.⁴⁾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구 소련 붕괴로 원유를 싼 값에 들이기 어려워져 석유의 공급이 줄어들었고, 그로 인한 전력난으로 석탄채굴과 수송이 불가능해졌고 홍수로 광산에 물이 차는 문제 때문에 석탄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석탄생산량이 급감했다. 석탄을 생산해도 외화를 얻기 위해 질 좋은 무연탄은 대중수출로 팔고, 나머지 저열량 무연탄은 내수 전력생산용으로 이용해 전력생산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⁵⁾ 이러한 북한의 에너지난을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천현빈, [주간한국]‘남북경협’적합 사업은...‘넘어야 할 산’ 첩첩, 2018-10-04.

(<http://daily.hankooki.com/lpage/politics/201810/dh20181004212402137430.htm>)

3) 배성인, 북한의 에너지난 극복을 위한 남북 협력 가능성 모색, 2010-06-22,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 제1호, p.64.

4)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북한이해 p.125.

5) 김경술, 북한 에너지 통계,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p.2.

2. 연구 목적

한반도와 관련된 에너지 협력을 논할 때 주로 나온 주제는 북·중·러 천연가스관망이나, 동북아 슈퍼그리드처럼 주 행위자가 국가 단위이거나,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성격의 협력방안이었다. 이런 사안만 논의되면 직접적이며 단기적인 방안이 미비해 빠른 시일 내에 북한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공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에너지 소비 분야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급 분야에 있어서 북한 주민들의 역할을 중요시해 사회주의 기업책임제나, 포전담당책임제와 더불어 북한 내의 시장화나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

주제가 민생인 만큼, 북한의 농어촌 인구 비율이 2009년 기준으로 36.8%임을 감안하면 많은 인구가 농어촌에 거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구가 많은 농촌지역⁶⁾과 소외되기 쉬운 도서지역의 바이오에너지 방안을 서술했다.

Ⅱ.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남북 에너지협력은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구축해야 한다. 기후변화 시대에 청정에너지를 얻는 것이 요즘 떠오르는 사안이고 신재생에너지가 정치적으로 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2018년 7월 10일에 열린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환경재단’ 주최로 개최된 ‘신(新)남북시대, 지속가능한 에너지·환경 협력방안’ 세미나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위주의 남북 에너지협력 계획을 발표했다. 태양광발전 이용 시스템 보급 계획은 5시간 충전으로 5~10시간 사용이 가능한 휴대용 태양광랜턴을 무상지원해주는 방안과 남북이 공동으로 경영하고 지분을 공유한 태양광발전 세트 보급 합영사업이 있다. 특히 북한에 많이 설치된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 3개월 이내에 사용

6) 김에스라, 북한의 농업 개발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원 학위논문, 2013, p.42

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 국산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⁷⁾ 남북 신재생에너지교류협력센터 사업으로 추진해 태양광발전 보급 교육 훈련 프로그램과 태양광발전 보급 시범사업을 하는 방안이 있다.

풍력발전 이용 시스템 보급 협력방안을 살펴보자면, 남북 신재생에너지 교류협력센터 사업으로 풍력발전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안이 있다. 풍력업계에서는 남북 합의로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⁸⁾

수력발전소의 현대화 협력방안에 대해서, 국산수차를 활용한 북한 수력 발전소 현대화 시범사업과 교육훈련, 시범사업을 협력하는 방안도 있다. 메탄가스 부문도 마찬가지로 교육훈련 및 메탄가스 이용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을 언급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교류를 위해 남북 신재생에너지교류협력센터를 개성공단이나 DMZ에 설립하고, 휴전선 인근 북측 마을에 시범사업을 전개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경술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했다.⁹⁾

태양광 산업에 한화큐셀, LS산전 등 기업들이 대북사업에서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 태양열 사업에서는 대성 파인텍이 진출을 살피고 있다고 한다.¹⁰⁾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대북사업 전문가인 송금호 대표를 초청해 관련 세미나를 열고 남북 태양광 협력방안을 논의했다.¹¹⁾ 남북 풍력 산

7) 노승길, [평양 남북정상회담] 남북 경험 필수 요건 '에너지'...협력 물꼬 틀까, 아주경제, 2018-09-19.
(<http://www.ajunews.com/view/20180919141410935>)

8) 이현정, [평양 정상회담] 신재생업계 "남북 에너지 교류 협력 절실하다"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86871>)

9) 김경술, 북한의 에너지 현황과 지속가능한 남북 에너지개발 협력방안, 신남북시대 지속가능한 에너지 환경 협력 방안 세미나 자료집, 2018-07-10.

10) 오희나, [특징주][대성파인텍, 북한 신재생에너지 협력 법안 발의..태양광사업 부각 '강세'], 이데일리, 2018-09-1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4198322>)

11) 송명규, 태양광산업協, 남북 태양광 협력 방안 논의, 투데이에너지, 2018-07-26.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05183>)

업에 관해서, 송영길 국회의원과 남북풍력협력사업단, 한국풍력산업협회 등에서 ‘남북 풍력에너지 협력을 위한 전략 세미나’를 열었고,¹²⁾ 남북강원도협력협회는 강원연구원, 강원대학교 공대, (사)남북풍력협력사업단과 공동으로 ‘에너지·자원 분야 심포지엄’을 개최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¹³⁾ 이렇게 기존 남북 에너지 협력 연구의 흐름은 태양에너지와 풍력발전이 대부분이었지만, 북한의 풍속은 연평균 2~3m/s 정도라서 약한 편에 속하고 전반적인 일조량과 복사량이 많진 않아 태양열 발전 계획에 치명적인 부분으로 적용될 수 있다.¹⁴⁾ 따라서 주로 논의가 된 태양 에너지와 풍력에너지 이외의 보조발전시설도 요구된다.¹⁵⁾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언급은 태양 에너지와 풍력에너지원에 비해 적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구체적인 논의도 2008년 1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던 ‘한반도 신재생에너지 개발’ 심포지엄에서 멈춰져있다. 축산분뇨를 활용해 에너지와 비료를 생산하고 남한의 환경문제와 북한의 에너지를 해결해 일석이조의 이익을 창출하자는 취지에서 열린 심포지엄이었다.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서 남는 92만 5천 톤의 축산분뇨를 에너지 생산용으로 활용하면 환경오염문제와 에너지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기후변화 문제 해결이 전세계적 차원에서 중요하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¹⁶⁾ 하지만, 그 이후로 크게 진전한 게 없었다. 따라서, 위 논문에서는 ‘한반도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뒤를 이어 북한 내에서 바이오에너지 생산체계를 도입할 방안을 다루고자 한다.¹⁷⁾

12) 최덕환, 10년 중단된 남북 공동 풍력사업 재개되나, 이투뉴스, 2018-07-17.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925>)

13) 조명규, 남북교류 협력의제 발굴 위한 에너지·자원분야 심포지엄 열려, 뉴시스, 2018-07-1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711_0000360428&cID=10805&pID=10800)

14) 이한희, 바이오가스와 남북한 新에너지협력, 삼성경제연구소, 2007-08-27, p.35.

15) 이한희, 바이오가스와 남북한 新에너지협력, 삼성경제연구소, 2007-08-27, p.42.

16) 강창구, 한반도 신재생에너지 개발 심포지엄 열려, 연합뉴스, 2008-01-1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1896099>)

17) 2014년 6월 25일에 평화통일 국제학술 심포지엄에서 남북간 바이오에너지 방안이 언급되었으나, 산입바이오매스 분야를 다뤘던 것이라 위 논문의 핵심주제인 축산분뇨

2008년 한반도 신재생에너지 개발 심포지엄에 참여했던 삼성경제연구소에서 2007년에 ‘바이오가스와 남북한 신(新)에너지협력’을 주제로 선행 연구를 진행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제기구의 도움으로 북한 내에 바이오에너지 시설을 세우는 계획이 들어가 있다. 국제법에 적법하게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알맞은 방안으로 국제기구가 주축이 된 프로젝트를 주장했다.¹⁸⁾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중요시한 이유는 국제기구의 금융지원으로 남한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국제기구의 요령을 활용해 지속가능하게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데에 있다.¹⁹⁾ 위 연구는 GEF(지구환경기구)를 통한 금융지원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GEF의 실행프로그램 중 ‘신재생에너지 도입 증진’을 토대로 기금을 받을 수 있고 UNDP나 UNEP를 주체로 프로젝트를 착수할 수 있다. 이미 해당 기구의 기금을 받아 UNDP의 ‘두만강 유역 환경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가 있어 실현 가능성을 증명했다.²⁰⁾ 또한, 세계은행의 국가지원전략(CAS)에 적합하다. 투자 대출, 개발 정책 대출과 보조금 형태로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 CAS에 근거해서 시작했던 중국, 태국 그리고 베트남의 프로젝트를 들어서 설명했다.²¹⁾

2015년의 선행연구로는 ‘대북 바이오가스플랜트 지원의 제재 가능성에 대한 기술적 평가’가 있다. 위 연구에서는 바이오에너지가 북한의 에너지난을 해결하는데 핵심적인 신재생에너지로 뽑고 있지만, 대북제재 금수품목의 유입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바이오가스플랜트 지원의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한다.²²⁾ 이에 따라 제재품목여부를 보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해결책을 요약하자면, 바이오가스 플랜트의 핵심설비인 혐기성발효조가 전략물자 해당가능성이 매우 높은 품목에 속하기 쉽다. 심지어, 통신장

바이오매스와 다른 성격을 띄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7&aid=0000515450>)

18) 이한희, 바이오가스와 남북한 新에너지협력, 삼성경제연구소, 2007-08-27, p.27.

19) 이한희, 바이오가스와 남북한 新에너지협력, 삼성경제연구소, 2007-08-27, p.7(요약문)

20) 이한희, 바이오가스와 남북한 新에너지협력, 삼성경제연구소, 2007-08-27, p.4-5

21) 이한희, 바이오가스와 남북한 新에너지협력, 삼성경제연구소, 2007-08-27, p.55-56.

22) 정용진·권용재, 대북 바이오가스 플랜트 지원의 제재 가능성에 대한 기술적 평가, 2015, p.193

비나 원심탄수 설비같은 다른 설비와 다르게 설계단계에서 대체할 설비가 없어서 문제이다. 또한, 바이오가스 기술의 이전을 함께 지원해야 할 때, 고질화공법을 군사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어서 사업추진 전부터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으로 바이오가스 플랜트 지원이 예외적으로 가능하고, 지원물품 이용 중의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하고 국제기구가 주체적으로 물품공급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²³⁾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기존의 남북에너지협력의 흐름은 태양광, 풍력 에너지 위주이고, 바이오에너지 도입 선행연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제기구 지원을 통한 중요성을 언급하며 국제기구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의 거시적 측면과 더불어 미시적인 측면이 같이 이뤄져야 효과적인 에너지협력을 거둘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하위단위에서의 바이오에너지 이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북한이 개발한 과학기술인 ‘탄소하나화학공업’과 바이오에너지의 협력 발전도 모색했다.

Ⅲ. 사례 분석

1. 독일 윤데 마을: 열병합발전

1) 배경

독일 니더작센주의 괴팅엔 대학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학제간 연구센터 (이하 IZNE)’에서 바이오매스를 통한 열과 전기의 자급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구상하다가 바이오에너지 마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주 정부의 승인을 받아 실행에 옮겨졌고 시범사업을 할 마을을 탐색하다가 윤데마을이 선정되었다.

23) 정용진·권용재, 대북 바이오가스 플랜트 지원의 제재 가능성에 대한 기술적 평가, 2015, p.197-198.

윤데마을을 선정한 이유는 ①바이오에너지 작물과 우드 칩 등 풍부한 바이오매스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②비교적으로 난방 설비를 경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점, ③마을 공동체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점²⁴⁾, ④도시와 농촌의 교류가 가능했다는 점, ⑤주정부의 적극적인 바이오 에너지 확산 정책이 있었다는 점이다.²⁵⁾

수익이 창출되기 시작한 2007년 기준으로 약 780여 명(170여 가구)의 주민들이 윤데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도시민의 유입 늘어 도시와 농촌이 같이 존재하는 식으로 발전했다.²⁶⁾ 1300ha의 농지, 800ha의 산림을 보유하고 있어 에너지 작물과 산림자원이 풍부하고, 6개 축산농가에서 400여 마리의 돼지와 소를 키워²⁷⁾ 축산분뇨도 많이 생긴다. 바이오매스용 농작물은 1년에 11,000 ton 정도 생산하고, 축산분뇨의 양은 1년에 9000m³, 우드칩은 1년에 300ton 정도 생산한다.²⁸⁾

2) 과정

윤데 마을의 바이오에너지 사업의 주체는 크게 ①괴팅엔 대학교의 IZNE와 정치, 농업, 사회, 경제 등의 전문가 집단²⁹⁾과 ②마을주민들로 이뤄진 협동조합과 ③중간지원 역할로서의 연방식품 농림소비자보호부, 에너지작물협회 등이 있다.³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의 주체는 마을의 협동조합이었다. 주민참

24) 박진희, 지역의 에너지 자립 어떻게 가능한가, 환경과 생명, 2009, p.165

25) 이영신, 소규모농촌 폐자원 재활용 제고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원 학위논문, 2013, p.5

26) 황은진, 지역 내 에너지자립도 제고를 위한 녹색마을 모델 개발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 학위논문, 2011 p.33.

27) 박진희, 지역의 에너지 자립 어떻게 가능한가, 환경과 생명, 2009, p.165.

28) VolkerRuwisch, BenediktSauer, "Bioenergy VillageJühnde : Experiencein rural self-sufficiency", 2007.9

29) 생물자원의 생산과 그 자립의 에너지화 그리고 에너지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같이 운영하는 사례가 없다는 우려가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했다. (신동호·김조년, 독일 윤데마을의 바이오 에너지 생산체계에 대한 경이론적 접근, 지역사회연구 제23권 제2호, 2015, p.229)

30) 최인수, [해의 사례 - 독일 에너지 자립 '윤데마을'과 영국 전환마을 '토티네스']주민 스스로 마을의 가치를 찾고 부여하다, 주민자치 37호, 2014 p.44.

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으로 윤데 마을 주민과의 공동 프로젝트 실행으로 주제별 논의, 워크숍 등 마을 주민의 참여율을 높였다. 이외에도 열발전소에서 시설망 관리와 전체 관리는 지역 협동조합에서 운영한다.³¹⁾ 이후 주민의 70%가 ‘바이오에너지 마을’ 협동조합에 가입한 채 시작하게 되었다. 바이오매스로서 사용되는 농산물은 마을 주민들과의 계약제배로 조달하고, 축산 폐기물도 마을의 축산농가에서 공급받는다.³²⁾ 조합원들의 출자로 바이오에너지 설비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나머지 비용은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지원과 은행 융자로 충당했다.³³⁾ 이를 보아, 주민들이 친환경 에너지 마을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독일 윤데마을은 농산물에 가축의 분뇨를 섞어 숙성하는 과정에서 메탄 가스를 생산하고 그 가스를 연소시켜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목재 칩과 마을의 숲의 잔가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목재를 연소시켜 온수를 만들고 이를 개별 가정에 공급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메탄가스를 통한 열병합발전이 가능한 이유는 온실효과가 큰 기체이기 때문에 연소과정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동시에 생긴 열을 통해 난방과 온수를 제공할 수 있어서 마을에 커다란 이익을 준다.³⁴⁾

윤데의 친환경 에너지 생산체제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첫째, 메탄가스를 연소시켜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인데, 내부에 ①바이오매스 작물을 발효시키는 저장고, ②바이오매스인 축산분뇨와 작물을 섞어 발효시키는 탱크, ③생산된 가스를 연소시켜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기 등이 있다³⁵⁾.

둘째, 목재 부스러기를 연소시켜 온수를 만드는 장치이다. ①마을 산림에서 얻은 목재를 칩으로 만들고 건조하는 창고, ②목재칩을 연소시켜 온

31) 김연중·권대훈·한혜성, 농촌지역의 청정에너지 생산·이용 시스템 구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p.51.

32) 신동호·김조년, 독일 윤데마을의 바이오 에너지 생산체제에 대한 경로이론적 접근, 지역사회연구 제23권 제2호, 2015, p.230

33) 박진희, 지역의 에너지 자립 어떻게 가능한가, 환경과 생명, 2009, p.11.

34) 조홍구, 지방자치단체 녹색성장 추진체계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원 학위논문, 2011, p.25.

35) 신동호·김조년, 독일 윤데마을의 바이오 에너지 생산체제에 대한 경로이론적 접근, 지역사회연구 제23권 제2호, 2015, p.230-231.

수를 만드는 발열장치, ③온수를 각 가정으로 분배하는 배관시설이 있다.³⁶⁾ 윤데마을의 한계점은 가정으로 수송하는 데 필요한 배관이 보온이 되는 특수한 관이어야 한다. 그래서 윤데마을은 온수가 가정까지 급수되는 동안 열이 식지 않게 하는 특수 배관을 제작했고 약 5.5km의 배관망을 구축했다. 가정에서는 이 온수를 생활용수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난방을 위해 쓰고 있다. 따라서 식은 물을 다시 가열장치로 되돌아가서 온도를 높인다. 온수가 발열장치로부터 출발할 때는 약 95°C까지 올라가지만 약 80°C로 식혀진다(진상현 2007: 211; Karpenstein-Machan and Schmuck, 2007: 152).

바이오가스는 9,000m³의 소와 돼지의 액상 분뇨와 바이오매스 곡식 저장고와 풀에서 약 15,000톤 가스를 생산한다. 분뇨만 이용하면 메탄가스가 원활하게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옥수수 등의 바이오매스 작물을 간작, 이모작 방식으로 수확하고 분뇨와 섞어서 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여름에는 물에 젖은 우드칩을 건조하는데 써서 우드칩의 열량을 높이고 있다.³⁷⁾

3) 결과

2006년에 난방열과 전기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바이오에너지 마을로 전환했다.³⁸⁾ 윤데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자연에서 얻은 생물자원을 통해 일상생활에 유용한 열과 전기로 마을단위로 사용해 자급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윤데마을이 목재를 연소시켜 생산하는 온수는 그 마을이 필요로 하는 난방용 에너지로 충분하였고, 농산물 등 생물자원으로 생산하는 전기는 그 마을이 필요로 하는 양의 두배가 되었다. 그리고 발전기 가동 과정에서 생기는 열로 온수를 만드는데 쓰였다.³⁹⁾

36) 신동호·김조년, 독일 윤데마을의 바이오 에너지 생산체제에 대한 경로이론적 접근, 지역사회연구 제23권 제2호, 2015, p.229-230.

37) 김연중·권대흠·한혜성, 농촌지역의 청정에너지 생산·이용 시스템 구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p.51-52.

38) 박진희, 지역의 에너지 자립 어떻게 가능한가, 환경과 생명, 2009, p.11.

39) 신동호·김조년, 독일 윤데마을의 바이오 에너지 생산체제에 대한 경로이론적 접근, 지역사회연구 제23권 제2호, 2015, p.231-233.

2009년 기준으로 73%의 주민이 열병합발전을 통한 난방 시스템으로 열 공급을 받고 열병합발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전기매입법에 의해 판매해 마을의 수입원이 창출되었다. 가구마다 500~750유로의 난방비를 절감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했다고 한다.⁴⁰⁾

2011년에 작성된 논문자료에 따르면, 바이오 열병합 발전을 통해서 1년에 4~500만 KW를 생산해 지역의 전력 수요 200만 KW를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 남는 전력은 1KWh당18센트의 높은 값으로 전기공급망에 판매해 농가의 수익으로 경제성을 창출하고 있다.⁴¹⁾ 2014년 7월 기준으로 바이오에너지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약 700Kwh이고, 목재칩을 이용한 발열기는 약 550Kwh가 생산된다. 이렇게 생산한 전기는 모두 독일 전력 회사에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했다. 이 전기는 모두 독일 전력 회사에 판매되고 마을의 각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는 전력회사로부터 공급받는다. 수입의 75%는 전기 판매 대금이고, 25%는 온수를 가정에 공급해 얻는 수익이다. 또한, 견학하는 방문객이 늘어서 관광수익도 늘었다.⁴²⁾ 환경적인 측면에서 열병합발전시설에서 1년에 3,300ton의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고 있고, 이는 400,000l의 기름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양과 동일한 만큼 환경친화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⁴³⁾ 이와 같이 에너지 자립마을을 완성해 에너지판매와 관광수익, 마을 순환경제 활성화 등 경제성과 이산화탄소 배출감소, 고용창출, 마을 카페 설치, 마을문화 재정립 등 사회정책적 효과를 통해 공동체의 화합증진 등 많은 성과를 얻었다.⁴⁴⁾

윤데마을의 성공요인은 첫째, 마을주민들을 포함한 다양한 참여자들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운영하게 한 것과 각 주체마다의 돈독한 신뢰관계, 둘

40) 박진희, 지역의 에너지 자립 어떻게 가능한가, 환경과 생명, 2009, p.11.

41) 조홍구, 지방자치단체 녹색성장 추진체계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원 학위논문, 2011, p.25.

42) 신동호·김조년, 독일 윤데마을의 바이오 에너지 생산체제에 대한 경로이론적 접근, 지역사회연구 제23권 제2호, 2015, p.14-15.

43) 김연중·권대흠·한혜성, 농촌지역의 청정에너지 생산·이용 시스템 구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p.53.

44) 최인수, [해의 사례 - 독일 에너지 자립 '윤데마을'과 영국 전환마을 '토티네스']주민 스스로 마을의 가치를 찾고 부여하다, 주민자치 37호, 2014 p.44.

째, 마을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행사가 많아 사업을 지속시킬 수 있었던 것⁴⁵⁾, 셋째, 바이오에너지 투자에 대한 지원과 협동조합의 투자를 유도한 중앙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다.⁴⁶⁾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전을 할 경우에 각각의 지역 전력회사들이 2024년까지 의무적으로 전기를 매입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고 차액보존제도를 시행하는 유인책이 있었다.⁴⁷⁾ 넷째, 2004년 고유가로 인해 난방비 상승을 우려한 주민들이 바이오매스 열에너지원의 경제적 중요성을 환기시켜 참여를 유도한 배경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⁴⁸⁾.

독일 율데마을의 바이오에너지마을화로 인해서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되었다. 첫째, 조합원이 195명으로 늘고 관광사업도 체계화되었다. 둘째, 풍력 발전과 태양에너지 발전, 전기 자동차 사업등으로 사업영역이 확장되었다. 이렇게 마을수요의 2배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 남는 전기로 전기자동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2010년부터 협동조합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해 바이오에너지 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웃 마을인 바리슨과도 협력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다. 독일 율데마을의 모델은 독일⁴⁹⁾뿐만 아니라 UN을 통해 타 국가에도 확산되고 있다.⁵⁰⁾

2. 흥천 소매곡리 마을: 고질화를 통한 도시가스 및 퇴액비 생산

1) 배경

청와대와 정부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정책들을 생각했고 환경

45) 김연중·권대흠·한혜성, 농촌지역의 청정에너지 생산·이용 시스템 구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p.53.

46) 이영신, 소규모농촌 폐자원 재활용 제고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원 학위논문, 2013, p.6.

47) 조홍구, 지방자치단체 녹색성장 추진체계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원 학위논문, 2011, p.24.

48) 박진희, 지역의 에너지 자립 어떻게 가능한가, 환경과 생명, 2009, p.12.

49) 최인수, [해의 사례 - 독일 에너지 자립 '율데마을'과 영국 전환마을 '토티네스']주민 스스로 마을의 가치를 찾고 부여하다, 주민자치 37호, 2014 p.44.

50) 신동호·김조년, 독일 율데마을의 바이오 에너지 생산체제에 대한 경로이론적 접근, 지역사회연구 제23권 제2호, 2015, p.222.

보호, 에너지생산, 그리고 농촌경제를 살리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을 2014년에 시작했다. 사업계획을 모집했고, 현장심사를 통해 강원도 홍천, 충청북도 진천, 광주 광역시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정했다.

정부는 그동안의 혐오·기피 시설 설치 정책에 님비(NIMBY)현상과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농촌문제와 환경보호,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잡기 위해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쓰레기 매립지 등 환경기피시설에 환경친화적 기술을 도입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농가 주민의 혜택으로 사업을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의 직접 지원은 최소화하고 읍자사업 활용, 주민투자를 유도, 추가 지원이 필요할 때 기존 정부 지원사업을 사용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또한, 2015년에 국제법상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불법으로 돼 폐기물처리를 육지에 해야 하는 시점이었다. 그래서 친환경에너지타운의 필요성은 점점 증가했다(이 부분은 견학내용).

추가적으로, 녹색성장마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①바이오매스 공급의 한계로 규모의 경제 달성하지 못하고 실질적 주민 수익창출을 생각하지 못한 것, ②정부 중점적으로 사업이 진행돼 주민들의 수혜가 부족했고, 주민에게 직접 도달하는 수익창출 시스템이 부족해 주체인식형성을 못했고, ③시설 관리 및 운영 교육에 대한 지원이 미비했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녹색성장위원회, 2014).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기존의 정책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안을 결정했다. ①주민주도형 수익모델: 주민공동소득 창출과 협동조합 등 주민준적 참여수익모델 확산, ②체계적 정부지원: 환경·에너지·농촌 등 거시적 지원방안 마련과 주관부처 지정 및 지원부처와의 협업체계 구축, ③전문기관 참여: 한국환경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등 해당분야의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친환경에너지 타운 지원 단체 조성⁵¹⁾

홍천 소매곡리 마을은 1990년대 말에 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처리 시설이 밀집해 심각한 악취냄새와 상하수도과 도시가스의 미비 등으로 큰

51) 장영배·이정필·조보영,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개입 방안, 2014, p.30-33

불편을 겪고 있었으나 별다른 보상이 없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가축분뇨를 바이오매스로 쓰면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마을에 공급하고 퇴액비 판매로 주민 수익을 창출하는 시범마을로 선정했다.⁵²⁾

하지만, 추가적으로 환경시설이 생긴다는 말에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다. 하지만, 독일의 친환경에너지마을인 운데마을을 방문하는 등 주민설득을 벌였고, 마을 이장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설득을 했고, 강원도시가스에서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로 공급하는 계획을 설명해 결국 80%이상의 동의를 확보했다.⁵³⁾

홍천 소매곡리 마을은 57가구, 127명이 거주하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며, 가축분뇨 하루 80톤, 음식물폐기물 하루 20톤이 이곳으로 공급된다. 가축분뇨와 음식물 폐기물은 바이오매스로 이용된다.

2) 과정

환경부, 홍천군, SK E&S,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주민이 각각 기술, 의지, 정책과 예산을 모아 폐기물을 자원으로 사용해 에너지를 창출했다.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면서 수익을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농촌경제를 살린다는 장기적 비전을 갖고 있다. 환경부는 정책의 전체적인 부분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실행할 정책과 예산을 준비했다. 홍천군은 사업시행을 주관 및 행정지원을 통해 마을 주민과 협력했다. SK E&S는 자회사인 강원도시가스와 함께 에너지 기업의 기술력을 적용해 사업운영에 필요한 기술력과 초기 설비를 지원했다.⁵⁴⁾ 주민들을 대표하는 마을이장과 마을조합 이사들이 친환경에너지타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⁵⁵⁾

홍천 소매곡리마을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설비는 바이오에너지 관련 설비외에도 태양광, 소수력 발전, 그린빌리지도 있지만 위 논문에서 다루는

52) 장영배·이정필·조보영,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개입 방안, 2014, p.38.

53) 장영배·이정필·조보영,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개입 방안, 2014, p.41.

54) 윤영두,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과 전망', 전기저널, 2015, p.40

55) 장영배·이정필·조보영,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개입 방안, 2014, p.40.

바이오에너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춰 다른 시설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다.

홍천 소매곡리 마을에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설비가 신규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환경기초시설이 있었다. 가축분뇨 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이다. 분뇨처리 시설과 분뇨 수거차량 진입으로 인한 극심한 악취와 생활의 불편함이 누적되어왔다. 하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장의 배구수역에서는 가정, 건물에서 나오는 분뇨가 하수도로 바로 배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뇨를 지하침투 방식, 분뇨정화조, 오수정화 시설 유입처리 등의 시설로 개별처리되고 있다. 수거식 변소에서 수거된 분뇨는 해양에 투기되거나 분뇨 처리장에 이송돼 혐기성소화, 활성오니처리, 감압증발, 액상부식법 등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고 한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이 시작되면서 준공된 시설은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과 퇴액비 자원화시설이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서 혐기성소화지에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섞어서 30일 동안 미생물 반응과 함께 해서 가스가 발생한다. 발생하면 저장조에서 3시간정도 완축한다. 가스의 65%는 메탄가스이고 나머지는 이산화탄소, 황하질소 등 다양한 가스가 혼재되어있다. 정제설비를 거쳐 필요한 메탄가스만 생산된다. 하루에 고순도 정제가스가 약 1,900Nm³ 생산되고 이는 6천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량이다. 생산되는 도시가스의 7%는 마을에서 사용하고 93%는 강원도시가스로 판매한다. 마을 주민들이 50% 보조받아서 이용하고 있다.

퇴액비자원화시설은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에서 남은 찌꺼기를 퇴비시설로 옮겨서 톱밥과 섞어서 퇴비를 만드는 시설이다. 소나무톱밥을 15일 동안 섞고 15일 숙성하면 퇴비가 만들어진다. 다양한 용량대로 팔고 다른 퇴비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다. 품질도 좋아서 봄이 되면 없어서 못 팔 정도이다.⁵⁶⁾

도시가스를 각 가정에 공급하는 방식은 안정적 에너지공급을 위해서 지역 내 도시가스공급기관(강원도시가스)에 생산가스 판매 후 인근지역으로 재공급하는 방식이다.

56)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견학 프로그램

기술적 측면에서, 유기성폐기물을 혐기성 소화시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것은 악취문제에 대한 효과적 방안, 효율적인 이산화탄소 감축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응, 재생가능 에너지의 생산, 혐기성소화 이후 부산물의 자원활용 등의 장점을 갖고 있고, 이렇게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는 고질화 공정을 통해 약 60~70%의 메탄과 30~40%의 이산화탄소로 이뤄져 있고, 불순물을 제거해 고순도 메탄을 생산한다. 이렇게 열병합발전, 자동차 연료, 도시가스 관망 주입 등 천연가스 및 화석연료를 대신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다.⁵⁷⁾

특히 홍천 시범사업에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로 사용하기 위하여 멤브레인 고질화기술을 적용했다. 멤브레인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고질화기술의 장점은 기존의 고질화공법에 비하여 메탄 회수율이 높고 전력을 적게 이용하고 플랜트 확장 및 유지보수의 간편함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멤브레인 후단에서 배출되는 고농도의 CO₂(>98%)를 회수 및 액화 저장해 수요처에 공급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고 유기성폐자원의 육상처리가 가능해지고 온실가스 감축 이행과 원유 수입대체를 통해 다각적으로 이득이다.⁵⁸⁾

홍천군청 환경위생과로부터 받은 홍천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 개요자료에 따르면,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 소요된 예산은 182억원이고, 국비로 146억원, 지방비로 36억원을 충당했다. 고품질 퇴·액비 자원화시설에 소요된 예산은 67억원이고 국비로 43억원, 지방비로 24억원을 충당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에 2.8억원이 들었고 국비로 1.4억원, 지방비로 1.4억원을 충당했다.

57) 안윤엽·박재규·이진욱·허남효, 바이오가스의 고질화 및 멤브레인 적용기술,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3, p.25.

58) 허남효·안윤엽·하홍원, 바이오가스 멤브레인 고질화설비의 친환경 에너지타운 적용 사례,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5, p.156.

3) 결과

바이오가스는 고순도로 정제해 강원도시가스로 제공되고 신설되는 배관망을 통해 소매곡리 마을 주민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LPG를 대체했다. 바이오가스시설은 흥천군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도시가스를 공급받는다. 퇴액비의 일부는 마을에서 무상으로 자체 소비하고 대부분은 판매해 주민수익금이 된다. 이 사업은 흥천군청에서 위임받아 운영한다. 기타 신재생에너지발전으로 얻은 돈은 원리금과 관리비용을 제외하고 마을주민들의 참여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받는다. 태양광 발전사업에는 마을주민들의 직접참여가 열여있으나, 위 사업의 핵심요소인 바이오가스생산은 흥천군청과 강원도시가스에 의존하고 있다. 강원도시가에 판매한 가스판매대금은 흥천군청이 시설운영비로 활용한다.⁵⁹⁾

바이오가스 생산량(연간 653천m³) 중 23천m³은 지역주민에게 공급하고 나머지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자가사용 및 도시가스 공급사에 판매한다. 또한, 주민대상 도시가스 공급에 따라 기존 LPG 사용량을 대체함으로써 연간 약 43백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한다.

고품질 퇴비생산량은 하루에 20톤, 1년에 2640톤이다. 고품질 액비생산량은 1년에 9900톤이다. 고품질 퇴액비를 생산한 후 일부 친환경에너지타운 내 개별민가가 자체활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판매해 판매수익을 확보한다.



<그림 1> 퇴액비 판매 수익⁶⁰⁾

59) 장영배·이정필·조보영,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개입 방안, 2014, p.38-39.

60) 흥천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계획서

홍천 소매곡리 마을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은 국내 최초로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로 정제해 공급하는 사례이다.⁶¹⁾ 정부는 홍천의 성공적인 사례를 토대로 다른 농촌지역에도 친환경에너지타운을 확산시키고 있다. 2017년까지 친환경 에너지타운의 준공하는 게 목표인 도시는 아산, 청주, 영천, 경주, 양산이고 2018년까지 준공 목표인 도시는 제주, 인제, 음성이다.(센터 전화)

3. 한국 홍성 및 백령도: 바이오가스-디젤유 혼소 발전

1) 백령도의 LNG-디젤 혼소발전

홍성사례를 소개하기 앞서서, LNG-디젤 혼소 발전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백령도에서는 천연가스-디젤 혼합연소엔진 도입 계획이 있었다. 백령도를 포함한 도서지역의 경우 전력송전을 위한 해저케이블이 없고, 디젤엔진을 토대로 하는 내연기관을 통해 독립발전을 하거나 태양광, 풍력 발전을 통해 전기가 각 가정에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디젤만을 발전용 연료로 사용하면 발전단가가 높아 경제성이 떨어져 전력생산 비용을 낮추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킬 방안이 시급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천연가스 디젤 혼합연소 엔진개발이 나왔다. 천연가스를 이용한 저탄소 발전은 셰일가스 개발 및 중소규모 가스전 개발 등으로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가스엔진 및 가스터빈을 이용한 발전기술은 숙련도와 시장성이 둘 다 높다. 또한, 바이오가스를 천연가스와 혼합해 사용이 가능해 신재생연료와 화석연료 조합을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연료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섬 지역 천연가스-디젤 혼소 분산형 발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해 2013년도 에너지 기술개발사업으로 2013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4년간 용진군 백령도에 도서용 LNG운송, 저장기술 및 발전용 LNG공급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했고 정부

61) 윤영두,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과 전망', 전기저널, 2015, p.40

과제로 200억원을 투자했다. 구체적으로 천연가스 디젤 혼합연소 엔진개발로 환경친화적이고 연료비에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MW급 천연가스 디젤 혼합연소 분산형 발전시스템 개발과 여기에 천연가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중·소규모 LNG 저장시스템 구축 및 운송방법이 개발될 예정이다.⁶²⁾ 2016년 8월 24일에 덴마크 MAN Diesel & Turbo사와 LNG-디젤 혼소발전기 핵심설계기술 자료의 공유와 기술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연구를 착수한 상황이다.

가스공사는 2016년까지 백령도를 대상으로 3MW 실증사업(연간 LNG 330만m³ 공급)을 마치고 2016년 이후부터는 백령도(15MW)를 포함해 인근 대청도, 소청도(6.2MW)에 총 21.2MW(연간 LNG 2,300만m³ 공급)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서해권 3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를 기반으로 울릉도(18.5MW) 등 국내 주요 15개 도서지역에 70MW(연간 LNG 1억m³)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사업기반으로 해외 도서발전 사업에도 진출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인도네시아 동부 33개 도서(808MW)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를 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의 국토가 대부분 도서(섬)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⁶³⁾

하지만, 이런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백령도의 주민들이 정치상 분쟁지역인 서해5도에 LNG탱크 설치가 주민의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던 바가 있었다.⁶⁴⁾ 2018년 현재, 한전 백령지사에게 전화해서 현황을 확인해본 바, 아직 사업을 실행하지 못한 상황이며, 시설들을 공사하고 있다. 계획보다 늦어진 이유는 지가와 관련해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 흥성의 바이오가스-디젤 혼소발전

최근에는 바이오가스를 천연가스의 대체가스로 쓰는 사업에 대한 관심

62) 오영삼, [특별기고]천연가스-디젤 발전시스템 개발 전망, 가스신문, 2013-08-14.
(<http://m.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063>)

63) 이종수, 도서 LNG-디젤 혼소 발전시스템 개발 착수, 투테이에너지, 2013-10-02.

64) 김주엽, 백령도주민 "LNG위성기지 공사 반대", 경인일보, 2016-09-01.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60831010010040>

이 모아지고 있다. 천연가스에서 바이오가스의 활용은 천연가스 대비 저가 에너지원을 보장할 수 있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의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⁶⁵⁾ 또한, 도서지역의 경우 LNG를 섬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경제적인 비용이 우려되었지만, LNG를 섬 지역 내의 농촌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로 대체하면 운송의 비경제적인 면을 극복할 수 있다.

충청남도 홍성군에 20KW급 바이오가스와 디젤 혼소형 발전기의 연료 공급시스템 개발 및 축산 상용화 시스템 기술개발이 이뤄졌다. 위 발전소에 바이오매스로 쓰이는 축산분뇨 발생은 하루에 8~10톤이다. 돼지 2000마리에서 나오는 양의 분뇨이다.⁶⁶⁾ 민간시설로 운전 중이고 시설용량은 15톤/일이다. 2003년에 설치했고 전기와 열을 생산한다.⁶⁷⁾ 연구의 목적은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연구는 국내에서 충분히 이뤄져왔으나, 주요 설비는 선진국에서 수입해왔기 때문에 비싼 값에 수입하기에 어렵고, 국내 여건에 적합한 발전소를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국내 상황에 맞는 발전기를 개발하고자 연구를 진행했다.

바이오가스와 디젤 혼소형 엔진발전시스템에 의해 전력 20kw/h를 생산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바이오가스가 발생하는 구조로 설계해야 하는게 관건이다. 특히 바이오가스와 디젤의 혼소비율은 8:2이다.⁶⁸⁾

혼소 엔진발전기는 발화안정성에서 비교적 우수하고 점화플러그와 와이어 교환도 불필요하고 가스와 디젤 혼합 연료를 사용하기 위한 디젤엔진의 개조도 쉽다. 바이오가스 공급이 어려울 때 디젤만으로 운전이 가능하고 기존 디젤과 같은 높은 열효율과 출력이 유지가능하고 유지보수가 간단한 장점이 있다.⁶⁹⁾

65) 조지혜, 폐자원 및 바이오에너지의 용도별 적정 배분방안(1)-바이오가스를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 p.44.

66) 디에이치엠(주)·홍성군농업기술센터, 20kW급 바이오가스와 디젤 혼소형 발전기의 연료 공급시스템 개발 및 축산 상용화, 2008, p.121

67) 이준표·박순철, 바이오가스 현황과 과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10, p.36

68) 디에이치엠(주)·홍성군농업기술센터, 20kW급 바이오가스와 디젤 혼소형 발전기의 연료 공급시스템 개발 및 축산 상용화, 2008, p.40

69) 디에이치엠(주)·홍성군농업기술센터, 20kW급 바이오가스와 디젤 혼소형 발전기의 연료

가축분뇨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발전에 사용한 양은 1년에 56,160s m³이다.(2008년 기준) 연간전기 생산량은 1년에 112.32MV이고 자체사용량도 이와 동등하다. 또한 바이오가스 플랜트 공정개선 및 추가 연구개발로 2008년 가동율이 65%정도 된다. 하지만, 운영상의 애로사항으로 2008년동안 6개월동안 운영을 했다. 구체적인 문제점은 가축분뇨를 숙성시키려면 혐기소화기간이 40일내외로 길다는 점이고, 농가에 운영관리기술자가 부재해 농가의 폐수 정화처리가 어려운 점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혐기성소화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중온방식에서 고온방식으로 체계를 변경하고 있고, 농축증발 폐수처리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한다.⁷⁰⁾

위 사례는 LNG-디젤 혼소발전에서 바이오가스를 정제한 메탄가스를 대신해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LNG는 천연가스를 정제해서 얻은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를 냉각시켜 액화한 것이다.⁷¹⁾ 바이오가스를 정제한 메탄가스 또한 결과적으로 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메탄가스의 액화로 LNG처럼 운송을 동등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바이오가스는 독성을 포함하고 있어서 엔진의 부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천연가스에 비해서 발열량이 소화공정 여건에 따라 변화가 많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수입 설비를 사용해도 효과는 미약했다. 따라서 아직 국내에서 연구를 계속 해 봐야 하는 사안임을 알 수 있다.⁷²⁾

공급시스템 개발 및 축산 상용화, 2008, p.53

70) 홍성 운용농장 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현황

71)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72) 디에이치엠(주)·홍성군농업기술센터, 20kW급 바이오가스와 디젤 혼소형 발전기의 연료 공급시스템 개발 및 축산 상용화, 2008, p.139

IV. 북한의 바이오가스 플랜트 도입 가능성 검토

1. 북한 바이오 에너지 현황

1) 바이오 가스 생산

북한은 메탄가스를 생산해서 이용하는 것은 인민경제가 빨리 발전하고 열과 동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더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⁷³⁾ 메탄가스의 발효원료로는 가축분뇨, 낱알짚, 풀, 도시오수, 식료공장의 버림물을 언급했고 공업지대와 농촌마을 등 어디든 발효설비를 잘 갖추면 많은 메탄가스를 생산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김정일 전국방위위원장이 남산협동농장을 방문해 메탄가스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정용 메탄가스 생산 탱크 설계를 마친 상태이고, 메탄가스 시범화 마을을 전국에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농촌에서 주로 나무를 태워 에너지를 충족했기 때문에 메탄가스를 나무를 대체해 산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도라고 밝혔다.⁷⁴⁾ 이처럼 바이오가스의 이용가치를 높게 파악하고 있고 이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왔음을 알 수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메탄가스의 생산방법을 액상식, 고상식, 반고상식으로 구분했으며, 탄소와 질소의 비율과 온도조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또한 메탄가스의 생산방법은 액상식, 고상식, 반고상식이 있다고 했다. 액상식은 가축분뇨를 액체로 발효시켜 메탄가스를 생산하는 방법이고 분뇨를 일정한 양씩 매일 넣는 연속식 발효방법이다. 고상식은 한번에 원료를 가득 채우고, 가스 생산이 중단될 때 다시 원료를 교체하는 주기식 발효방법이다. 반고상식은 고상과 액상을 결합해서 생산하는 방식이다.

발효탱크의 크기에 맞게 원료를 보충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와 실정에

73) '메탄가스와 그 리용', 조선녀성, 1998년 제1호(루계제494호), p.38, 1998-02-01.

74)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농촌에서 왜 메탄가스화를 발전시켜야 하는가', 천리마, 2012제7호(루계제638호), p.106, 2012-07-05.

맞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은 발효온도에 따라 가스의 생산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겨울에도 가스를 생산하기 위해 저온발효법 연구했다. 다른 방안으로 겨울철에 메탄가스를 생산할 수 있게 발효탱크의 구조를 비닐을 쌓는 등으로 보온식으로 하고, 탱크 윗부분은 태양열 온실형태로 만들게 하고 발효탱크를 땅 속에 묻고 지하수가 있는 곳에 설치해선 안 되고 벼, 겨, 재, 거품수지 등으로 보온을 잘하고, 이러한 보온재들은 습기를 받지 않게 비닐에 싸서 보관하게 하고 메탄가스에 수분이 있어서 굴곡이 있는 관 부위에 물이 고여 열 수 있으므로 가스관을 경사지게 만들어서 설치하기를 인민들에게 잡지를 통해 알렸다.⁷⁵⁾ 그리고 발효탱크 기본 뚜껑에 물을 넣는 방식으로 가스의 누출을 막는다.

발효탱크 안에 가축분뇨를 저음기로 저어 온도가 24℃ 아래일 때 북데기, 풀을 잘게 썰어 혼합하고 비닐을 씌워 발효시킨다. 이렇게 메탄가스 생산까지 20~30일 걸린다.⁷⁶⁾ 이렇게 하루 생산하는 메탄 가스량은 1.2~1.5m³ 정도 된다고 한다.⁷⁷⁾

2)바이오가스-디젤 혼소 발전기 개발

북한은 또한 메탄가스-디젤 혼합발전기에도 관심이 크다. ‘천리마 1996년 제10호’에 메탄가스발전기술을 소개했는데 다른 국가의 바이오가스 발전사례를 분석했는데, 메탄가스만을 사용한 발전기의 출력은 약 3~5KW이고, 메탄가스와 디젤유를 혼용하는 발전기의 출력은 수십~수백 KW라고 했다. 이렇게 디젤기관을 개조한 발전기는 디젤유를 60~90% 절약한다고 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디젤기관을 혼합연료발전기로 개조하는 방식에 ① 디젤기관에 직통식 연료혼합기를 달아주어 디젤유와 메탄가스가 잘 혼합되게 하고 저압분사노즐을 통해 연소실로 분사하는 방식, ②흡입구에 메

75) 본사기자, ‘(문답)은을 내는 농촌살림집들에서의 메탄가스화’, 천리마, 2005년 제5호 (루계제522호), p.86, 2005-05-04.

76) ‘메탄가스생산을 잘하자면’, 천리마, 2007년 제10호(루계제581호), p.63, 2007-10-10.

77) 차계숙, ‘(문답)실리가 있는 가정용 메탄가스 생산’, 천리마 2002년 제10호(루계제 521호), p.79-81, 2002-10-01.

탄가스 자동공급조절기를 달아 발전기의 부타변화에 따라 메탄가스 공급량을 조절하는 방식, ③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름 분사량이 적은 분사노즐로 바꿔 발전기의 기본연료로 메탄가스를 쓰고 디젤유는 메탄가스를 기폭시키는 보조연료로 쓰는 방안을 소개했다. 메탄가스발전기술의 장점은 ①설비가 간단해 비용이 적게 들고 관리가 쉽다는 점, ②농업 말고도 탄광, 광산에서도 쓸 수 있는 점, ③폐기물을 이용해 전력, 비료와 먹이를 생산할 수 있는 점을 들었다.⁷⁸⁾ 기술적으로 발전하는 방식과 그에 대한 장점을 파악하고 있을 정도로 메탄가스-디젤 혼합발전에 깊은 관심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공통 사항

1)북한 국가 정책

북한의 전력관련 법제는 ‘전력법’을 기초로 ‘에너지관리법’, ‘중소형발전소법’ 등의 법령이 있다. ‘에너지관리법’의 제2,3조에서 에너지공급 및 관리의 주체를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력의 생산, 관리, 운영에 있어서 국가가 강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중소형발전소 법’ 제43조에 따르면, 중소형발전소 사업에 대한 지도 통제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해준다. 이런 특징은 북한 경제에 요즘 두드러지는 시장 영역의 확대 측면에서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생산력 증대를 위한 유인책의 확산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제35조에 따르면, 남은 전력은 다른 지역의 단체, 기관, 기업소에 공급하거나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전력계통에 넣을 수 있게 할 수 있다.(p.155)

이와 관련해서 사회주의기업책임제와 엮어서 법적으로 주민들의 자율적인 운영을 확립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이 2014년에 5.30조치를 통해 도입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정의는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이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하여 실제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78) ‘메탄가스발전기술’, 천리마, 1996년 제10호(루계제499호), p.90, 1996-10-01.

기업활동을 창발적으로 하여 당과 국가 앞에 지닌 임무를 수행하며 근로자들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는 기업관리방법”⁷⁹⁾이다. 이는 인민에게 자율적 경영지표를 확산하고 시장을 활용한 기업 자체의 계획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분권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⁸⁰⁾ 최근에는 협동농장에서 포전담당책임제⁸¹⁾가 확산되면서 개개인의 농민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농민의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추정된다.

사례분석에서 윤데와 흥천의 성공요인은 주민의 역할이 중요했고, 주민 수익모델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남은 도시가스량과 전력량을 각 시별 도시가스와 전력회사에 판매함으로써 추가수익을 거뒀다. 참여한 주민들에게 수익이 주어져,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달하는데 중요한 유인책이 되었다.

독일의 재생에너지법(EEG)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전력회사에서 구입하도록 규정했고, 그 차액은 정부에서 지원해 최저가격을 보장했다.⁸²⁾ 열병합발전 이후 남은 전력은 독일의 재생에너지 지원법(EEG)에 따라 18센트/KWh의 비싼 값으로 전기공급망에 판매했다.⁸³⁾ 이렇게 윤데마을의 수익의 75%는 전기 판매 대금일 정도로 마을의 경제적 자립에도 도움을 주었다. 더 나아가 협종조합에서 회사를 설립해 바이오에너지 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09~2030)을 세워 신재생에너지 상용화를 추진하고자 했고, 구체적인 보급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를 도입했다. 에너지 공급량의 비율을 신재생에너지의 의무비율을 정했고, 기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2012년부터

79) 안윤석, 북한‘5.30조치’, 김정은 제1비서의 경제관련 담화 김정은 5.30담화와 내각 상무조, 노컷뉴스, 2015-01-06.

80)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북한이해, p.114

81)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북한이해, p.14.

82) 도인환, 농촌형 저탄소 녹색마을의 사례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토, 서울산업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2010, p.18

83) 조홍구, 지방자치단체 녹색성장 추진체계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원 학위논문, 2011, p.14-15.

RPS로 전환했다.

홍천마을 또한 윤데마을처럼 남은 가스를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 사용하거나, 도시가스 공급사에 판매하고 찌꺼기를 발효해 생산한 퇴액비를 통해 판매수익을 얻고 있다.

<표2>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강원도시가스 판매단가 및 수익⁸⁴⁾

구분	가스판매량 (천m ³ /년)	판매단가(원/m ³)	수익(백만원/년)	비고
바이오가스	630	479	301	

주민수익형 모델로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해 지속가능한 사업을 진행한 독일의 윤데마을처럼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력단가를 비싸게 하는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유도하는 북한의 정책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처럼 주민들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남은 전력을 국가전력계통에 넣어 ‘중앙전력공업 지도기관’같이 남한의 전력거래소 역할을 하는 기관에 판매해 수익으로 돌려받아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2) 국제관계 (대북제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총 9번이고, 가장 최근에 채택한 결의는 2017년 9월 12일 2375호이다. 대북제재의 상황에서 바이오에너지 이용에 대한 대북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언급했듯이, 가장 핵심적인 설비인 혐기성소화조가 금수품목의 단계가 높은 물품으로 확인되었고, 고질화 공법같은 기술도 대북제재 기준에 걸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북의 화해 및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개성공단이 다시 재개돼 북한 내 개성공단에서 직접 물품 제작 및 조달을 할 수 있고, 비핵화의 정도가 진행돼 대북제재의 정도가 약해진다면, 국제기구의 자금조달과 모니터링 속에서 남북협력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84)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계획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은 2013년 3월 31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을 통해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정했다. 하지만, 대북제재를 강하게 해 오히려 경제적 침체를 야기시켜 모순적인 병진노선으로 평가된다.⁸⁵⁾ 또한, 북한은 제7기 3차 당 전원회의를 통해 경제-핵 병진노선을 마감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총력 집중노선을 채택하면서 개혁·개방과 인민생활의 향상에 매진하려고 하고 있다.⁸⁶⁾

3) 지역 수준에서 북한 주민의 수용 가능성

독일윤데마을의 기계장치의 설치와 관리는 독일의 유명 중장비 회사인 HAASE 에너지기술회사가 맡았다.⁸⁷⁾ 괴팅엔대학교의 INZE 연구집단은 초기계획을 세우고 추진과정을 돕고 자문자 역할을 했을 뿐 사업확정 후부터 사업 주체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이었고⁸⁸⁾, 주제별 프로젝트와 워크숍 등을 통해 사업진행계획을 결정하듯이 주민참여가 중요했다.⁸⁹⁾ 흥천 또한 SK E&S와 강원도시가스와 함께 사업에 필요한 기술력과 초기 설비를 지원했다.⁹⁰⁾ 하지만 사업방향을 세울 때부터 주민주도적 참여수익 모델을 생각했고⁹¹⁾, 흥천군은 행정을 지원해 마을 주민과 협력을 도모했고, 실제로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친환경에너지 타운 내에 일자리창출을 했다.

북한의 협동농장은 국가적인 식량생산 증진에 도움을 주었지만, 농업고유의 분산성과 낮은 생산력으로 인해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

85)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북한이해, p.115.

86) 이창희, ‘북한 시장화와 사회주의책임관리제’,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세미나 자료’, 송실평화통일연구원·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2018-06-05, p.35.

87) 신동호·김조년, 독일 윤데마을의 바이오 에너지 생산체제에 대한 경로이론적 접근, 지역사회연구 제23권 제2호, 2015, p.230

88) 신동호·김조년, 독일 윤데마을의 바이오 에너지 생산체제에 대한 경로이론적 접근, 지역사회연구 제23권 제2호, 2015, p.231-232.

89) 박진희, 지역의 에너지 자립 어떻게 가능한가, 환경과 생명, 2009, p.11.

90) 윤영두, ‘흥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과 전망’, 전기저널, 2015, p.40

91) 장영배·이정필·조보영,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개입 방안, 2014, p.30-33

결하기 위해 분조관리제가 도입되었다. 분조관리제는 “작업반의 하부단위인 분조에 일정면적의 토지와 노동력, 역축과 생산도구를 고정하고 수확과 노력 투하에 대한 계획을 쥐 생산을 책임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수행 정도에 따라 확정 지분하는 협동농장의 생산조직 형태이다.” 분조관리제의 도입으로 생산조직, 분배조직, 노동조직의 기능을 함께 갖는 하나의 집단농장의 소경영단체가 되었다.⁹²⁾ 김정은 정권은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에서 ‘분조관리제하의 포전담당책임제’ 방향성을 통해 물질적 인센티브를 통해 농민에게 자율성과 의욕을 쥐 생산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⁹³⁾ 북한의 농업은 이미 분조체계를 통해 조직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농촌 주민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사업에 대한 교육을 하면 주민주도의 사업이 실현가능하다. 특히 김경술 선임연구위원이 북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협력방안을 설명할 때 교육훈련프로그램이 있어야 함을 명시했듯이, 주민주도 사업을 위해서 주민들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은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⁹⁴⁾

3. 사례별 기술적 조건 검토

바이오에너지의 활용에 있어서 효율성과 수익은 바이오가스 생산지, 주변 입지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입지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은 특수적으로 가스관이나 배관이 매우 미비한 전력 인프라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염두했다. 소규모 마을에서의 바이오에너지 중심 마이크로 그리드를 조성하려면 바이오가스 플랜트와 각 가정마다 이어진 소규모 연결망을 구축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인프라 구축비용과 기간을 따져봤을 때 배보다 배꼽인 격이 될 수 있지만, 인권 차원에서 하루 빨리 효율적으로 민생의 에너지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안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역마다 인프라가 구축되어있으면 나중에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구

92) 정정현, 북한의 협동농장 생산체제에 있어 분조관리제의 변화와 농업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2018, p.63-64

93)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북한이해, p.137

94) 김경술, 북한의 에너지 현황과 지속가능한 남북 에너지개발 협력방안, 신남북시대 지속가능한 에너지 환경 협력 방안 세미나 자료집, 2018-07-10.

축할 국내 전체적인 전력망에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뒤서 오히려 에너지 공급체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1) 열병합발전(CHP: Combined heat and power) 조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활용조건은 ①주변에 열에너지 수요처가 존재하고, 공급과 판매가 가능한 경우, ②처리 규모가 크지 않는 중소형 바이오가스 플랜트인 경우, ③주변에 다른 중소형 바이오가스 플랜트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④주변에 도시가스 배관망이 없는 시골 및 도서 지역의 경우, ⑤개별농장에 설치된 지역 분산형 시설인 경우이다.⁹⁵⁾

표를 보면, 북한 농촌은 열병합 조건이 대부분 충족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농가에 열에너지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고, 지역 분산형 발전소가 북한 전력 산업에 맞기 때문에, 중소형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설치하는 게 맞다. 무엇보다, 북한은 인프라를 새로 구축해야 할 정도로⁹⁶⁾ 인프라가 취약해 도시가스 배관망이 부족한 점을 잘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농촌은 도시처럼 배관설치가 용이한 아파트 형식의 주택구조가 아니라 분산되어있는 주택 구조이기 때문에 난방용 온수가 이동하는 중에 열손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데마을의 경우 열손실이 20%를 넘었기 때문에 특수배관을 개발해 설치해서 효율성을 증진시켰지만, 윤데의 특수 배관 제작기술을 북한으로 수입하는 것은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준다고 예측된다. 열손실이 더욱 큰 겨울철에 윤데마을은 우드칩을 연소시켜 열을 더 발생해 보충했지만, 북한의 경우 산림의 황폐화로 우드칩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다른 조건은 부합하지만, 결국 열손실이 커 실효성이 작다고 판단돼 북한 농촌지역에 도입되기에 결정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95) 조지혜, 폐자원 및 바이오에너지의 용도별 적정 배분방안(1)-바이오가스를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 p.136

96) 김경술 외, 북한 에너지·자원·교통 분야의 주요 개발 과제, 국토연구원, 2013.

<표3> 열병합발전 조건

열병합 조건	①열에너지 수요 존재, 공급 가능성	②중소형 바이오가스 플랜트	③주변에 다른 중소형 바이오가스 플랜트가 없을 경우	④도시가스 배관망이 없는 지역	⑤지역분산형 시설
윤데마을	○	○	○	△	○
북한농촌	X	○	○	○	◎

2) 고질화(Upgrading) 조건

바이오가스 고질화 활용조건은 ①주변에 도시가스 관망 등 설비가 잘 되어있는 경우, ②처리 규모가 비교적 큰 바이오가스 플랜트인 경우 ③주변에 다른 중소형 바이오가스 플랜트가 있을 경우, ④주변에 다량의 유기성 폐기물의 확보 및 운송이 용이한 경우, ⑤주변 지역의 유기성 폐기물을 수거해 처리하는 중앙 집중형 시설인 경우이다.⁹⁷⁾ 흥천 소매곡리 마을이 성공하게 된 기술적 요인은 진보한 멤브레인 공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흥천 군청 환경위생과 전화)

표를 보면 고질화 조건과 북한의 대규모 농장지역은 부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은 열악한 인프라로 추정해보았을 때 도시가스관망이 잘 정비되어있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인권차원에서 설치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가축분뇨의 양이 많은 대규모 농장에선 가축분뇨 처리량이 많은 만큼 큰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써야 한다. 북한은 폐기물 처리장이 적고, 폐기물들이 농촌지역으로 반입되는 경우가 많다.⁹⁸⁾ 따라서, 폐기물 확보가 가능하고, 이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을 도입한다면 고질화가 가능할 수 있다. 또한, 고질화를 통해 도시가스와 더불어 농촌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퇴액비까지 생산할 수 있다. 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된 도시 인근 대규모 농촌지역에 유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고질화는 북한 대규모 농장에 설치하는 게 적합할 것이라고 추정된

97) 조지혜, 폐자원 및 바이오에너지의 용도별 적정 배분방안(1)-바이오가스를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 p.136

98) 박순애, 북한의 환경문제와 폐기물 정책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1권 제4호, p.288

다. 이와 더불어, 흥천이 사용한 멤브레인 공법은 96~99% 이상의 메탄 회수율을 얻을 수 있고 다른 공법과 비교해서 전력비, 초기 투자비, 유지비, 시설비와 운영비가 저렴한 편이고 설비가 소규모이고 운전방식이 단순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크게 관심받고 있는 공법이다.⁹⁹⁾ 북한의 농촌도 흥천의 기술을 이용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표4>고질화 조건

고질화 조건	①도시가스 관망 설비	②큰 바이오가스 플랜트	③주변에 다른 중소형 바이오가스 플랜트가 있을 경우	④유기성 폐기물 확보, 운송이 용이	⑤폐기물을 처리하는 중앙집중형 시설
흥천마을	○	△	-	○	◎
북한농촌	X→○	△	-	△	△→○

3) 바이오가스-디젤 혼소 발전 조건

흥성의 혼소발전 연구의 보완점과 백령도 혼소발전 모델을 통해서 바이오가스-디젤의 조건을 ①바이오가스를 천연가스와 유사하게 만들어야 하고 ②디젤유 공급이 안정적이어야 하고 ③정치적으로 안정된 지역으로 정했다. 백령도의 LNG 위성기지를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안에 세우는 데에서 주민들이 위협을 느꼈듯이, 군사적으로 안전한 곳에 세워야 한다. 또한, ④해상 교통 인프라가 좋아야 한다. 바이오가스의 경우,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통해서 바로 연결해서 쓰면 되지만, 디젤 공급을 용이하게 한 교통 인프라도 중요하다. 특히 도서지역에 적용하려면 해운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돼있어야 하는데, 항만 하역시설에 전력부족과 잦은 고장으로 효율성이 저하되어있는 상태라 한계가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¹⁰⁰⁾ 표를 보면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방안이지만, 남한과 북한이 종전하고 화해를 하면서 한반도가 정치적으로 안정된 지역이 되고, 운송 인프라가 양호해지

99) 조지혜, 폐자원 및 바이오에너지의 용도별 적정 배분방안(1)-바이오가스를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 p.29, 134.

100) 김경술 외, 북한 에너지·자원·교통 분야의 주요 개발 과제, 국토연구원, 2013, p.169.

고, 바이오가스를 천연가스와 유사하게 공정하는 것을 남북공동과제로 상정해 협력 연구를 통해 기술개발을 한다면, 효율적인 전력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표5>바이오가스-디젤 혼소 발전

바이오가스-디젤 혼소 발전 조건	①바이오가스를 천연가스와 유사하게 공정	②안정적인 디젤유 공급	③정치적으로 안정된 지역	④운송 인프라 양호
백령도	LNG사용	○	X	△
홍성	△	○	○	○
북한 농촌 특징(도서지역)	X	X → ○	X → ○	X → ○

안정적인 디젤유공급은 북한의 ‘탄소하나화학공업’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 탄소하나화학공업은 대북제재로 원유수입이 어려워진 상황에 북한에 풍부하게 매장된 석탄을 갖고 화학제품을 만드는 기술이다. 현재 북한의 탄소하나화학공법의 개발수준은 석탄을 가스화해 합성가스로부터 직접 휘발유와 디젤유를 합성하고 있다고 했다.¹⁰¹⁾ 북한당국이 탄소하나화학공업을 더 발전시켜 디젤유 생산을 원활히 할 수 있으면, 북한의 도서 지역이나, 소외된 지역까지 전력난이 극복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한반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서해안지역의 안보가 보장돼 원활한 도서 지역간 발전이 될 것이고, 국내 서해5도 뿐만 아니라 서해에 위치한 북한의 도서지역에 협력할 가능성이 생겨 한반도의 화약고에서 평화수역으로 변화할 수 있다.

101) 김영철, ‘탄소하나화학공업을 창설하는 것은 화학공업의 주체화실현의 중심고리’, 경제연구 2018년 제2호(루계제179호), p.16-17, 2018-04-30.

V. 정책적 제안

앞서 북한 도입을 위한 분석 끝에 흥천모델인 고질화를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이 북한 농촌지역에 실용적이라고 분석했다. 시범사업의 위치로 ‘개성시 관문군 월정농장’을 뽑았다. 그 이유는 첫째, 남한과 가까운 위치이기 때문이다. 김경술 선임연구위원이 남북 신재생에너지교류협력센터를 개성공단이나 DMZ에 설립하고, 휴전선 인근 북측 마을에 시범사업을 전개한 방안을 발표했듯이¹⁰²⁾ 신재생에너지 교류 및 협력이 유리할 것이다. 둘째, 남북경협이 5.24조치를 넘어서 재개하게 된다면, 개성공단에서 혐기성소화조를 비롯한 설비를 생산하고 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돼지농장이기 때문이다. 돼지분뇨는 소분뇨에 비해서 메탄가스 생산량이 더 많고¹⁰³⁾, 남한에서도 주로 돼지분뇨를 통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고¹⁰⁴⁾, 북한의 경우 바이오에너지 이용 현황자료를 보면 돼지를 많이 이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랜 노하우가 축적된 만큼 실패할 가능성이 적은 돼지분뇨를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이 필요하다. 넷째, 중소형 규모인 농장이라 고질화 플랜트에 안 맞을 수 있지만, 시범사업인데 오히려 설비를 크게 짓는 것보다 중소형에 맞는 설비를 만드는 게 안전하다. 흥천 친환경에너지 타운에서 썼던 공법인 멤브레인공법은 소규모의 설비만 필요하기 때문에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¹⁰⁵⁾ 다섯째, 협동농장의 분조형태인 농장이기 때문에 주민의 역할이 증대될 수 있다.¹⁰⁶⁾ 여섯째, 신경제지도 구상의 환서해 벨트의 취지에 따라 남북경협 재개로써 개성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와 더불어 남북러 천연가스관 노선

102) 김경술, 북한의 에너지 현황과 지속가능한 남북 에너지개발 협력방안, 신남북시대 지속가능한 에너지 환경 협력 방안 세미나 자료집, 2018-07-10.

103) 조지혜, 폐자원 및 바이오에너지의 용도별 적정 배분방안(1)-바이오가스를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 p. 95 표 3-17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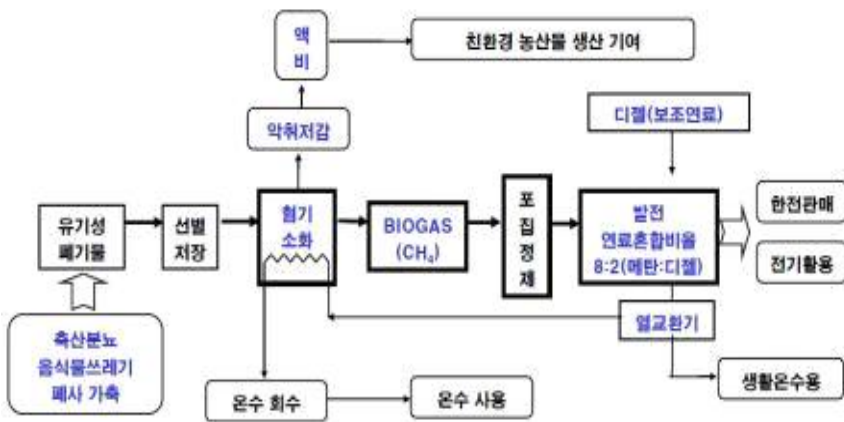
104) 조지혜, 폐자원 및 바이오에너지의 용도별 적정 배분방안(1)-바이오가스를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 p.79.

105) 조지혜, 폐자원 및 바이오에너지의 용도별 적정 배분방안(1)-바이오가스를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 p.119.

106) 이한희, 바이오가스와 남북한 新에너지협력, 삼성경제연구소, 2007-08-27, p.22.

도는 북한의 동쪽에 설계되어있기 때문에¹⁰⁷⁾ 북한의 서쪽 지역의 가스사용에 있어서 소외될 것이 우려돼 서쪽에 위치한 개성으로 정했다.

시범 초기단계에서 마을 수요를 충족할 수준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도시가스로 난방, 숙련도가 높아져 생산량이 많아지고 바이오가스를 천연가스 수준으로 정제, 고질화과정을 잘 거친다면, 그림3처럼 바이오가스 생산과 더불어 바이오가스-디젤 혼소 발전을 통해 전력공급의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에너지 원료의 남은 찌꺼기로 농촌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료를 만들 수 있고 퇴액비를 다른 지역에 판매나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이다. 바이오가스 플랜트 뿐만 아니라 다른 신재생에너지원도 도입해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전력안정성을 보장하는 것도 방안이다. 기술 관리처럼 전문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분야는 기술전문가에게 맡기고 전체적인 사업 관리 및 운영은 농촌 주민들에게 책임을 쥐 사업의 결과로 나오는 물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림 2> 디에이치엠(주)의 개발 대상기술(제품) 체계¹⁰⁸⁾

107) 김경술 외, 북한 에너지·자원·교통 분야의 주요 개발 과제, 국토연구원, 2013, p.136.

108) 탁봉열, 20kW급 BIOGAS와 디젤 혼소형 발전기의 연료공급 시스템 개발 및 축산 상용화 시스템 기술 개발, 2015-10

VI. 결론

북한의 에너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방식으로 가야 한다. 첫째, 북한 지역의 에너지 자립성을 위해서이다. 북한은 현재 노후화된 설비와 자연재해로 인해 송배전망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한 국가적인 송배전망을 구축하는 동안, 단기적으로 에너지를 제 때 사용할 수 있기 위해 소형발전소를 분산화해 전력을 보내는 과정을 최대한 줄여 지역에서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구조로 가야한다.¹⁰⁹⁾ 또한, 이 방식은 북한의 자력갱생 취지와도 알맞다. 둘째, 기후 변화시대에 친환경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후화된 설비를 다시 구축하는 시점에서 친환경적인 시스템으로 다시 시작하는 게 환경과 에너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셋째, 국제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낮다. 원자력 발전을 예로 들자면, 북미 비핵화 논의같은 정치적 입장 차이와 과거 제네바 합의의 실패로 원자력 에너지 협력이 불투명해졌고, 대북제재로 북한 내부에 에너지생산 원유가 유입되기 어려운 실정하기 때문에 화력 발전에 도움을 주기에다 어렵다. 넷째, 북한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1993년에 신재생에너지를 국가행동계획의 주된 전략으로 정하고 ‘신재생에너지개발센터’를 설립했다. 2001년에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국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해 풍력,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등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다. 1993년부터 법률·제도적 도구를 마련했고 1998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¹¹⁰⁾ 특히 남한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서도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협력분야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로 올 것이다. 다섯째, 에너지 발전을 석탄화력과 수력에만 집중하지 말고 다양

109) 노승길, [평양 남북정상회담]남북 경험 필수 요건 ‘에너지 협력 물꼬 틀까’, 2018-09-19.

(<https://www.ajunews.com/view/20180919141410935>)

110) 김경술 외, 북한 에너지·자원·교통 분야의 주요 개발 과제, 국토연구원, 2013, p.42-43

한 에너지 공급원을 선정해 에너지 안보를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에 부합하는 신재생에너지는 바이오에너지이다. 바이오가스 플랜트는 분산형 전력망인 북한의 전력 산업에 적절하다. 그리고 축산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 같은 폐기물을 처리문제를 해결해 위생문제 발생을 저지하고 발효과정을 통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다. 또한, 남은 찌꺼기를 통해 퇴액비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식량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¹¹¹⁾ 바이오가스의 이용은 다양하다. 고질화과정을 통해서 도시가스로 이용가능하고, 열병합발전과 디젤유와 섞어서 발전하는 방식으로 전력생산도 가능하다. 또한, 온실가스를 줄이는 취지에서 시작한 CDM사업을 남북공동으로 실현하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¹¹²⁾

기존에 국제사회가 실행했던 대북지원사업의 대부분은 사업기간 내에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북한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되돌아왔다. 그 원인은 개발협력 주체의 문제에 있다. 지원자와 수혜자의 역할을 정확히 구분해 일방적인 사업으로 북한의 참여를 제한해 스스로의 상황에 대해서 타개할 책임감과 의욕을 살리지 않은 게 문제였다.¹¹³⁾ 이처럼 기존연구의 방향성은 거시적이고, 국제기구 주도적인 방안을 대부분이었고, 하위단위와 남북한의 주체적인 신재생에너지 방안 연구가 많이 미진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이 같이 이뤄져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에 초점 맞추기 보다는 북한 주민들의 자율성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분조관리제하의 포전담당책임제’에 주목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 바이오 에너지 이용 현황의 성공사례와 조건을 분석하고 북한 에너지 소외지역 도입 가능성에 대한 검토했다. 또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환서해 경험벨트와 관련해서 북한 지역에 도입할 시범사업 지역과 방안을 선정했다.

111) 정용진·권용재, 대북 바이오가스 플랜트 지원의 제재 가능성에 대한 기술적 평가, 2015, p.193.

112) 이한희, 바이오가스와 남북한 新에너지협력, 삼성경제연구소, 2007-08-27, p.6(요약)

113) 김에스라, 북한의 농업 개발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p.58.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정보의 제한으로 경제성을 구체적으로 따지지 못했다.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해서 바이오에너지 설비와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다음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사항이다.

북한 내의 에너지 인프라 구축은 북한 민생의 인권보장과 남북 경제협력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다. 동시에, 전 세계의 심각한 환경오염과 그로 인한 기후변화로, 각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방안을 세우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 또한, 전 세계적인 사안에 동참해 폐기물 처리 문제와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동참해야 한다.

【참고문헌】

〈국내 학술지〉

- 배성인, 북한의 에너지난 극복을 위한 남북 협력 가능성 모색, 2010-06-22, 북한연구학파보 제14권 제1호.
- 김경술, 북한 에너지 통계,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 김경술, 북한의 에너지 현황과 지속가능한 남북 에너지개발 협력방안, 신남북시대 지속가능한 에너지 환경 협력 방안 세미나 자료집, 2018-07-10.
- 신동호·김조년, 독일 윌테마일의 바이오 에너지 생산체제에 대한 경로이론적 접근, 지역사회연구 제23권 제2호, 2015.
- 이한희, 바이오가스와 남북한 新에너지협력, 삼성경제연구소, 2007-08-27,
- 정용진·권용재, 대북 바이오가스 플랜트 지원의 제재 가능성에 대한 기술적 평가, 2015,
- 박진희, 지역의 에너지 자립 어떻게 가능한가, 환경과 생명, 2009,
- 장영배·이정필·조보영,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개입 방안, 2014,

〈학위논문 (국내 및 동양, 서양)〉

- 김에스라, 북한의 농업 개발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원 학위논문, 2013, p.42
- 이영신, 소규모농촌 폐자원 재활용 제고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원 학위논문, 2013,
- 조홍구, 지방자치단체 녹색성장 추진체계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원 학위논문, 2011

〈신문 기사〉

- 천현빈, [주간한국]‘남북경협’적합 사업은...‘넘어야 할 산’ 첩첩, 2018-10-04.
(<http://daily.hankooki.com/lpage/politics/201810/dh20181004212402137430.htm>)
- 노승길, [평양 남북정상회담] 남북 경협 필수 요건 '에너지'...협력 물꼬 틀까, 아주경제, 2018-09-19.
(<http://www.ajunews.com/view/20180919141410935>)

- 이현정, [평양 정상회담] 신재생업계 "남북 에너지 교류 협력 절실하다"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86871>)
- 오희나, [특징주][대성파인텍, 북한 신재생에너지 협력 법안 발의..태양광사업 부각 '강제'], 이데일리, 2018-09-1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4198322>)
- 송명규, 태양광산업協, 남북 태양광 협력 방안 논의, 투데이에너지, 2018-07-26.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05183>)
- 최덕환, 10년 중단된 남북 공동 풍력사업 재개되나, 이투뉴스, 2018-07-17.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925>)
- 조명규, 남북교류 협력의제 발굴 위한 에너지·자원분야 심포지엄 열려. 뉴시스, 2018-07-1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711_0000360428&cID=10805&pID=10800)
- 오영삼, [특별기고]천연가스·디젤 발전시스템 개발 전망, 가스신문, 2013-08-14.
(<http://m.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063>)
- 김주엽, 백령도주민 "LNG위성기지 공사 반대", 경인일보, 2016-09-01.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60831010010040>
- 이종수, 도서 LNG-디젤 혼소 발전시스템 개발 착수, 투데이에너지, 2013-10-02.

입 선

우리 같이 ‘팀플’ 할까요?

- 북한 이탈 대학생의 자기 표출과 말투가 남한 출신 대학생의
협력 의도에 미치는 영향 -

고려대 대학원 미디어학과 육성빈

고려대 미디어학부 한준형

《 목 차 》

【요약문】

【본 문】

- I. 서론
- II. 문헌 검토
- III.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 V. 결론

【참고문헌】

【요약문】

우리 같이 '팀플' 할까요?

- 북한 이탈 대학생의 자기 표출과 말투가 남한 출신 대학생의
협력 의도에 미치는 영향 -

이 연구는 북한 이탈 주민이 자신의 적극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이민자로서 남한 사회 내에서 높은 고등 교육에 대한 수요를 가지고 있음에도 대학 사회 내의 편견과 차별 문제로 인해 학업 중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북한 이탈 대학생이 대학 사회에 적응하는데 남한 출신 대학생의 인식이 크게 작용함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주제를 북한 이탈 대학생에 대한 남한 출신 대학생들의 인식으로 선정하였다. 남한 출신 대학생들의 인식은 가상의 북한 이탈주민과의 협력 상황에서 이들과의 협력 의도를 살펴봄으로써 측정했다. 협력 상황은 대학 내의 여러 상황 중 조별 과제로 설정하였다. 조별 활동 내에서 구성원들이 동등한 위치를 보장 받고 상호 협력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한다는 점은 접촉 가설에 따라 효과적으로 외집단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 조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조별 과제에 대한 남한 출신 대학생의 협력 의도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 계획 행동 이론을 설명적 틀로 선정하였다. 더 나아가 북한 이탈 주민과 남한 사회가 상호적인 문화 변화를 겪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남한 출신 대학생의 문화 변용 태도와 조별 과제 협력 의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조별 과제를 통한 북한 이탈 대학생과의 협력에 대한 남한 출신 대학생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국내 거주하는 남한 대학생 12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참여자는 조별과제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수업에서 가상의 학생과 인사를 나누는 시나리오를 읽었다. 그 후 학생의 자기소개와 협력 제안이 담긴 음성 자극에 노출됐다. 남한 출신의 대학생의 협력 의도에 영향을 주는 핵심 변인으로 자발적인 자기 표출 (본인이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것을 직접 밝히는 것)과

말투에서 들어나는 비자발적인 신분 노출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변인이 남한 출신 대학생의 협력 의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음성 자극은 ① 강한 북한 말투로 북한에서 왔다고 밝힌 경우, ② 강한 북한 말투로 출신지역을 밝히지 않은 경우, ③ 약한 북한 말투로 북한에서 왔다고 밝힌 경우, ④ 약한 북한 말투로 출신지역을 밝히지 않은 경우로 나뉘었다.

위계적 다중 회귀 모형을 활용한 통계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남한 출신 대학생들의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협력 행위에 대한 태도, 협력을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증가할수록 협력할 의도가 높게 나왔다. 반면, 우리 사회의 다수가 가상의 학생 같은 사람과 협력한 경험이 많다고 생각할수록, 개인주의적 문화 변용 태도가 강할수록 협력 의도는 낮게 나왔다. 또한, 북한 말투가 약한 사람보다 북한 말투가 강한 사람이 협력을 요청할 경우, 응답자가 협력에 응할 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왔다고 직접 밝힌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응답자의 협력 의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연구는 북한 이탈주민들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과 언어적 정체성을 변화시키지 않고도 남한 주민들과의 협력 상황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이 직, 간접적으로 밝혀지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진 북한 이탈 대학생들의 인식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비수용적 문화변용 태도가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다는 점, 수용적 문화 변용 태도가 협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은 남한 출신 대학생들의 협력 증대가 북한 이탈 주민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한 바람직한 결과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 이탈 대학생의 대학 사회 적응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후속 연구는 북한 이탈 대학생과 남한 출신 대학생의 실제 협력 이후 전자에 대한 후자의 편견 감소와 실제 협력이 향후 협력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추천한다. 북한 이탈 대학생과 이들에 대한 남한 출신 대학생의 협력을 이해하는 것은 이후 통일이 되어 남북한 대학생의 교류가 증가한다면 이를 이해하는 중요한 초석으로 작용할 것이다.

I. 서론

사람들은 누구나 보다 나은 삶의 조건을 바라기 마련이다. 북한 주민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을 것이다. 더 나은 삶의 기회는 근래 북한 이탈을 촉진하는 주요한 동기로 올라서고 있다. 2017년 조사¹⁾에 의하면, 가장 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체제의 감시와 통제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서 북한 이탈을 결심했다고 응답했다 (23.6%). 이는 식량부족 (23.3%)으로 인한 북한 이탈보다 더 높은 수치였다. 가족의 더 나은 생활 (12.4%)이나 더 큰 경제적 이익 (10.2%)을 위해 북한을 이탈했다는 응답도 변화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궁핍이나 정치적인 숙청을 피해서 단행한 기존의 생존형 탈출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 이탈을 피난보다는 이주의 성격으로, 북한 이탈 주민을 쫓겨난 난민보다는 적극적으로 삶을 개척하려는 이민자로 재해석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시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²⁾.

북한 이탈 주민의 고등 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일견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남한 사회에서 더 나은 삶의 조건을 갖추고 사회·경제적인 토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고등 교육을 통한 개인의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 이탈 주민의 40% 이상은 고등 교육 학령기에 해당하는 20대와 30대이다. 각 대학은 북한 이탈 학생을 위한 특별 전형을 마련하고 있으며, 정부와 민간 재단은 다양한 장학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비록 대학 당국의 보고에 의존하여 정확한 통계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북한 이탈 대학생의 꾸준한 양적 성장³⁾은 이러한 대내외적 조건과 지원에 힘입은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고등 교육 수요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고

1) 남북하나재단 (2018a)

2) 권수현 (2011)

3) 백영옥, 유조안 (2011)

서에 의하면, 북한 이탈 청소년의 80% 이상이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희망한다⁴⁾. 동시에 90%에 가까운 북한 이탈 주민이 자녀가 대학 이상의 고등 교육을 받기를 바라고 있다⁵⁾.

그러나 정작 대학에 진학한 북한 이탈 대학생들은 새로운 난관에 직면한다. 학업, 정신 건강, 그리고 사회적 교류의 어려움은 남한 대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기도 한다⁶⁾. 특히 정신 건강과 관련한 영역에서, 여러 북한 이탈 대학생들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호소했다. 이러한 두려움은 북한과 북한 사람에 대한 주변의 편견을 북한 이탈 대학생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인식하는지, 또, 이러한 인식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입증한다.

대학 내의 편견과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북한 이탈 대학생에 대한 남한 출신 대학생의 인식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남한 출신 대학생들의 인식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편견과 차별에 대한 문제가 궁극적으로 소수와 다수의 상호협력적인 태도와 실천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북한 이탈 대학생에 대한 남한 출신 대학생의 인식 연구는 북한 이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만큼이나 유의미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더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북한 이탈 대학생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행위(출신지, 말투)가 남한 출신 대학생들의 조별 과제 활동 협력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물론, 편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소수자가 정체성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것은 부정적인 반응을 마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드러내기에는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변의 인식을 개선하는 의지적인 과정으로서의 순기능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이탈 대학생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행위를 자아를 확장하는 순환적인 과정으로서의 ‘커밍아웃’으로 정의

4) 남북하나재단 (2017)

5) 남북하나재단 (2018b)

6) 유시은, 배형준, 조명숙, 김경희, 최영실 (2013)

하기도 한다⁷⁾.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사회적 소수자로서 북한 이탈 대학생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확장하고자 하는 사전 단계로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화두를 던진다. 오늘날 남한 출신 대학생들은 북한 이탈 대학생들의 의지적인 자기 표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에 답하고자 이 연구는 조별 과제 활동 상황에서의 남한 출신 대학생의 협력 의도를 분석했다. 다른 여러 상황을 종합해서 다루기보다 대학교실에서의 조별 과제 활동에 연구의 초점을 둔 이유는 접촉 가설에 따라, 조별 과제 활동이 편견을 완화할 수 있는 상황적 요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⁸⁾. 또한, 북한 이탈 대학생에 대한 태도를 남한 출신 대학생에게 직접적으로 묻기보다 실제 조별 과제 활동 협력 행위에 대한 의도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대상에 대한 태도와 행위에 대한 태도가 서로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선택이었다⁹⁾.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혹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남한 출신 대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더러 있으나, 북한 이탈 대학생과 남한 출신 대학생의 관계와 인식을 연구의 중심으로 둔 경우는 쉬이 찾아보기 어려웠다. 북한 이탈 주민의 인식, 사회 적응, 지원 제도와 관련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많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이탈 주민과 관련한 연구가 점차 분화되고 있고, 북한 이탈 대학생이 경쟁력을 갖춘 전문 지식인으로서 남한사회에서 지니는 의의와 앞으로 통일을 예비하는 과정에서 기대할 수 있는 상징적·실질적 함의를 고려할 때, 북한 이탈 대학생의 적응과 성취, 이에 대한 남한 출신 대학생의 수용과 태도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 관심을 얻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7) 조소연 (2013)

8) Allport (1954)

9) Wilson & Dunn (1986)

II. 문헌 검토

1. 북한 이탈 대학생 연구

1998년 이전 900여 명에 불과했던 북한 이탈 주민 입국 기록은, 이후 2001년까지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추가되며 본격적인 북한 이탈 현상을 알렸다. 정치적 지형에 따른 연도별 증감이 있었으나, 총 입국 인원은 꾸준히 늘어, 2016년에는 처음으로 그 수가 3만 명을 넘겼다. 남한 내 북한 이탈 주민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연구자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져,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¹⁰⁾¹¹⁾. 대표적으로, 정책적인 대안을 위해 사회적 약자로서 북한 이탈 주민이 겪는 남한 사회 적응의 어려움을 밝히는 연구가 이뤄졌다. 금명자⁹⁾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심리학회지에 게재된 북한 관련 논문을 전수 조사하였는데, 그 중 다수(70%)가 북한 이탈 주민의 적응 실태, 북한 이탈 주민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북한 이탈 주민의 적응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개발 연구 등 적응 관련 연구라는 점을 발견했다.

중고등학교 학령기 북한 이탈 청소년에 비해, 북한 이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양적으로 적다. 많은 북한 이탈 대학생을 한 번에 만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대개 연구자가 소수의 북한 이탈 대학생을 만나 질적 연구 방법을 토대로 이들에 대한 깊이 있는 서술 (thick description)을 이끌어내는 연구 경향을 보인다. 대표적으로는 대학 입학 동기와 대학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현실적 어려움¹²⁾, 특정 학과에 진학한 북한 이탈 대학생의 경험¹³⁾, 대학에서 자기 드러내기 경험¹⁴⁾, 북한 이탈 대학생이 대학 과정을 중단하는 현상에 대한 예측 요인 탐색¹⁵⁾ 연

10) 금명자 (2015)

11) 최대석, 박영자 (2011)

12) 조영아, 전우택 (2004)

13) 박은영, 이은자 (2013)

14) 조소연 (2013)

15) 김인숙, 유시은 (2015)

구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사회 적응과 자기 발전 과정에서의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며, 문제의식을 확인하고 대안을 탐색하는데 중점을 둔다.

반면, 북한 혹은 북한 이탈과 관련한 남한 대학생 인식 연구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범주를 보여준다. 예컨대, 북한 및 통일 의식¹⁶⁾¹⁷⁾, 통일 교육¹⁸⁾, 북한 이탈 주민 정책에 대한 인식¹⁹⁾,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태도²⁰⁾²¹⁾ 등의 주제가 남한 출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됐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북한 이탈 주민 전반에 대한 남한 출신 대학생들의 인식을 확인하는 데에 그친다. 정작 북한 이탈 대학생이 대학 사회에 적응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남한 출신 대학생이 북한 이탈 대학생에게 갖는 세분화된 인식이나 관련한 행위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새로운 환경에 유입된 소수와 이를 수용하는 다수의 인식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북한 이탈 대학생에 대한 남한 출신 대학생의 인식과 행동 연구는 적응의 어려움을 확인하는 연구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2. 조별 과제와 협력

조별 과제는 최근 대학 수업에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학습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조별 과제는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고, 협동하여 과제를 해결하고, 결과물을 보고하며, 이를 평가받는 형식으로 운용된다. 조별 과제는 학생들이 수업의 적극적인 참여자이자 협업의 기여자가 될 것을 전제하며, 학생 개개인이 해당 과목과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²²⁾. 왜냐하면, 다른 팀원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더 넓은 지식과 다양한 학습 방식을 접하고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 협

16) 배한동 (2001)

17) 안득기 (2007)

18) 한관수, 류태웅 (2016)

19) 윤인진, 김상학 (2003)

20) 김상학 (2004)

21) 김금미 (2011)

22) Boyer, Weiner, & Diamond (1985)

력해서 공부하는 방식이 개별적인 학습이나 경쟁적인 학습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는 조별 과제의 효과를 뒷받침한다²³⁾. 또한, 조별과제를 통해 소통능력, 대인관계 능력, 창의성, 집단 효능감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²⁴⁾.

물론, 조별 과제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 대표적으로 정형화된 조별 과제에 대한 매너리즘²⁵⁾, 다른 조원의 노력에 편승하는 소위 무임승차²⁶⁾ 등이 있다. 특히, 성공적인 조별 과제에 필수적인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 제약이 따르는 경우,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학생들에게 팀 프로젝트는 매우 큰 스트레스가 되기도 한다. 특히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있는 외국인 유학생²⁷⁾이나, 북한 이탈 대학생²⁸⁾은 조별 활동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 연구는 조별 과제 활동이 구성원 사이의 편견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내적 조건을 상당히 갖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질적인 집단 사이의 만남이 집단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다는 접촉 가설(contact hypothesis)에 의하면, ① 동등한 위치(equal status), ② 협력적 상호의존성(cooperative interdependence), ③ 동일한 목표(common goal), ④ 사회적 규범의 지지(the context of supportive norms), 그리고 ⑤ 사적인 상호작용(personal interaction)을 바탕으로 협력이 이루어질수록 집단 사이의 편견은 효과적으로 감소한다²⁹⁾. 다시 말해, 서로 다른 집단에 속한 개인이 서로 조우하는 경우, 서로 사회경제적 지위나 상황이 비슷할수록, 서로 협력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일수록, 같은 목표를 공유할수록, 만남을 장려하는 권위나 관습, 법률 등의 사회적인 지지가 형성될수록, 그 만남이 비형식적이고 사적일수록 집단 사이의 편견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23) Johnson, Johnson, & Smith (1998)

24) 정명화, 신경숙 (2004), 정한호 (2011)

25) 한희정, 이의용 (2015)

26) 박종혁 (2013)

27) 주휘정 (2010)

28) 차지영, 이경은, 권유림, 정향진 (2016)

29) Allport (1954), Dovidio, Gaertner, & Kawakami (2003)

조별 활동은 ① 비교적 동등한 위치에 있는 학생들이 ② 서로 협력하여 ③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조별 활동의 전체 과정은 ④ 교수자의 도움과 안내, 지원을 수반하며, ⑤ 교실 밖의 비공식적인 접촉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조별 과제는 이질적인 학생 간 편견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가 될 수 있다.

편견에 대한 조별 과제의 바람직한 효용성을 토대로 이 연구는 북한 이탈 대학생과의 조별 과제에 대한 남한 출신 대학생들의 협력 의도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직접적인 협력 행동 대신 행동 의도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대학 사회에서 북한 이탈 대학생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들과의 실제 협력 경험을 가진 남한 출신 대학생이 매우 적기 때문이며, 동시에 행동 의도는 행동의 선행변인으로서 충분한 예측력을 갖기 때문이다³⁰⁾.

3. 자기 표출과 전형성

관계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자기 표출(self-disclosure)은 자아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이탈 대학생 연구 맥락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자기 표출은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것이다³¹⁾. 이에 이 연구는 자기 표출을 자신의 출신 지역(북한)을 자발적으로 드러내는 의지적인 행동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은 북한 이탈 청소년들에게 염려와 스트레스의 대상이 된다. 이는 대학생의 학업 중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³²⁾.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에서는 자신의 출신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발견할 수 있다³³⁾. 이렇게 출신을 감추고자 하는 경향성은 다수의 문헌

30) Sheeran (2002)

31) 조소연 (2013)

32) 유시은, 배형준, 조명숙, 김경희, 최영실 (2013)

33) 남북하나재단 (2017)

에서 공통적으로 보고된다.

이러한 현상은 오롯이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결과일 수 있다.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자기 표출을 거부하는 것은 그것이 사회적으로 만연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편견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거나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³⁴⁾. 노골적인 무시나 물리적 폭력, 이에 대한 불안감,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 느끼는 남한 출신 주민들의 사회적 거리감 등이 상징적으로 보여 주듯이³⁵⁾, 북한 이탈 주민을 향한 불리한 사회적 인식은 북한 이탈 청소년이 자기 생존 전략으로써 적극적인 자기 표출을 되도록 삼가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자기 표출은 단순한 공개 이상의 의미가 있다. 조소연은 북한 이탈 청소년과 대학생이 적극적으로 출신을 밝히는 행위가 자신을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차별 받는 사회적 소수자의 ‘커밍아웃’에 견주었다³⁶⁾. 이에 따르면, 북한 이탈 청소년의 의지적인 커밍아웃은 사회적인 억압 구조로부터 해방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려는 목적성을 지닌 행위가 된다.

한편, 비자발적인 신분 노출은 전형성(typicality)이 드러날 때에도 발생할 수 있다. 전형성은 고정관념의 산물으로써, 일반적으로 한 개인을 특정 집단의 일원으로 구분 짓고 추정하게 하는 특정한 외양, 발화 방식, 또는 행동양식 등을 말한다. 다시 말해, 북한 이탈 대학생이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북한 이탈 주민의 속성을 보일 때, 남한 출신 대학생은 굳이 밝히지 않더라도 북한 이탈 대학생이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미리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이탈 대학생이 보이는 대표적인 전형성으로는 말투가 있다. 특정 외양이나 행동 양식만으로 남북한의 차이를 지각하기는 어려운 반면, 말투는 보다 특징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드러내기 때문이다³⁷⁾.

34) 조소연 (2016)

35) 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2011), 이향규, 이강주, 김윤영, 한만길, 김성식 (2011), 홍봉선, 아영아 (2011)

36) 조소연 (2013)

37) Choo (2006)

발화자의 말투가 발화자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메타 분석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는 표준 말투로 말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비표준 말투를 구사한 사람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으며³⁸⁾, 보다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다. 높은 자문화중심주의를 보이는 사람들은 비표준 말투를 구사하는 사람을 덜 믿을만하고 덜 매력적이라고 응답하기도 했다³⁹⁾.

이렇게 말투로 드러나는 북한 이탈 주민의 구분 가능성은 남한 사회에서의 정착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차 줄어들어 가는 경향을 보인다.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서울식 표준 발음과 말투를 구사해야 한다는 인식에 의한 학습 때문이다⁴⁰⁾. 이렇게 가시적인 전형성이 줄어들면, 출신이 노출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이 연구는 자기 표출과 전형성이 각각 남한 출신 대학생의 조별과제 활동 협력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만약 북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밝힌 경우에 편견과 차별이 발생한다면, 남한 출신 대학생의 협력 의도가 달라지리라고 추론할 수 있다. 한편, 전형성으로서의 이질적인 말투가 두드러지게 드러날수록, 북한 출신이라는 인식이 동일하게 협력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 가설 1: 북한 이탈 대학생의 자기 표출은 남한 출신 대학생의 협력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가설 2: 북한 이탈 대학생의 말투는 남한 출신 대학생의 협력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8) Fuertes, Gottdiener, Martin, Gilbert, & Giles (2012)

39) Neuliep & Speten-Hansen (2013)

40) 조완철, 조위수 (2018)

4. 계획 행동 이론 (theory of planned behavior)

북한 이탈 대학생과의 협력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협력 상황에서 이러한 태도가 반드시 실질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대상에 대한 태도, 대상과 협력하는 행위에 대한 태도, 대상과 실제로 협력하는 행위는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남한 출신 대학생이 북한 이탈 대학생과의 협력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더라도, 실제로 조별 활동의 협력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태도를 갖지 않을 수 있다.

행동에 대한 태도와 실제 행동에 대하여 유용한 설명적 틀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합리적 행위 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⁴¹⁾과 계획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⁴²⁾이 있다. 우선 합리적 행위 이론은 행위를 직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 행동 의도 (behavioral intention)이며, 합리적인 개인의 행동 의도는 태도(attitude toward behavior)와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다. 한편, 합리적 행위 이론에서 확장된 계획 행동 이론은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지각된 행동 통제 능력(perceived behavioral control)을 더할 것을 요청했다. 여기에서 태도는 특정 행동 결과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말하며, 주관적 규범은 특정 행동에 대한 주변의 사회적 압력, 그리고 지각된 행동 통제 능력은 특정 행동을 실제로 이행하는 것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말한다.

계획 행동 이론을 활용한 대표적인 예로 김금미의 연구가 있다⁴³⁾. 이 연구는 남한 출신 대학생을 중심으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수용적 행동을 예측하는 요인을 검증하고자 했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더불어 계획 행동 이론의 예측 변인을 더한 결과, 수용적 행동을 매우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이 연구는 주관적 규범이 수용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 문화권의 속성

41) Ajzen & Fishbein (1980)

42) Ajzen (1988)

43) 김금미 (2011)

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했다.

만약, 이 연구에서 제시한 대로 주관적 규범이 한국 문화의 속성을 반영된 것이라면, 주관적 규범의 내용을 더 세분화하여 북한 이탈 주민 관련 연구에 적용함으로써 더 입체적이고 정교한 분석을 시도해 볼 수 있다⁴⁷⁾. Park 과 Smith는 규범의 속성과 수준에 따라 규범을 네 가지로 4가지 경우로 나누었다⁴⁴⁾. 이에 따르면 규범은 특정 행위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명적 규범이나 그 행위가 얼마나 인정받고 권장되는지에 대한 지시적 규범으로 나눌 수 있다. 동시에 이 두 규범은 각각 그 수준에 따라 개인적인 수준과 사회적인 수준의 규범으로 나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북한 이탈 대학생과의 조별 활동 협력을 예측하는 요인으로서 협력에 대한 태도, 협력에 대한 지각된 행동 통제, 그리고 개인적 설명 규범, 개인적 지시 규범, 사회적 설명 규범, 사회적 지시 규범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 가설 3: 남한 출신 대학생의 (a) 협력에 대한 태도, (b) 협력에 대한 지각된 행동 통제, (c) 개인적 설명 규범, (d) 개인적 지시 규범, (e) 사회적 설명 규범, (f) 사회적 지시 규범은 협력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문화 변용

북한 이탈 대학생과의 협력 의도에 영향을 미칠 만한 또 다른 요인으로서는 남한 출신 대학생들의 이주민 수용 태도가 있다. 물론, 북한 이탈 주민은 역사를 공유하는 민족 공동체로서 손쉽게 이주민의 범주로 치환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분단 역사 이후, 서로 다른 국가 체제를 영위해오면서 서로 다른 문화 격차가 발생했다는 점과, 북한 이탈주민과 남한 사회가 상호적인 문화 변화를 겪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 변용의 접근을 시도해 볼 수 있다⁴⁵⁾.

44) Park & Smith (2007)

45) 윤인진 (2012)

문화 변용이란 두 민족 문화 간의 지속적인 접촉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쌍방향적 변화 과정을 말한다⁴⁶⁾. 문화 변용은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만날 때, 소수의 이주민뿐만 아니라 이주민을 맞이하는 다수의 문화 역시 이주민의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해 변화의 과정을 시 이주민뿐만 아니라 이주민 수용 집단의 문화 역시 이주민의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해 변화된다는 점을 암시한다⁴⁷⁾.

상호 문화 변용 모델(interactive acculturation model, IAM)은 이러한 문화 변용의 상호 변화적인 특성을 잘 반영한다⁴⁸⁾. 이 모델은 이주민의 문화 변용 지향성과 이주민을 수용하는 집단의 문화 변용 지향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두 집단의 문화 변용의 조합으로서의 문화 간 상호 관련성을 분석한다. 특히 이주민 수용 국가의 문화 변용 지향성 척도 (host country acculturation scale, HCAS)는 이주민을 수용하는 집단으로서 남한 출신 대학생들의 태도를 확인하는 데 유용한 설명적 틀을 제공한다.

HCAS는 두 가지 차원의 질문에 따라 수용 국가의 이주민 수용 태도를 분류한다. 첫 번째 차원은 수용 국가(남한)의 응답자가 이주민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는지의 여부이며, 두 번째 차원은 이주민이 이주 국가(남한)의 문화 수용하는 것을 허용하는지의 여부이다. 이 두 가지 차원의 응답에 따라 6가지 태도(통합주의, 동화주의, 분리주의, 배타주의, 개인주의, 변화주의)가 만들어진다.

우선, 통합주의(integrationism)는 두 가지 차원의 질문 모두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할 경우로, 수용 국가가 이주민의 문화를 수용하고 존중하며 이주민이 수용 국가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에도 찬성하는 태도이다. 이 수용 태도는 다문화주의와 긴밀한 관련이 있으며 이주민의 문화와 수용 국가의 문화 모두를 동등하게 존중하는 태도이다. 동화주의(assimilationism)는 첫 번째 차원의 질문에 대해서만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태도로서, 이주민들이 수용 국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를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6) Graves (1967)

47) Berry (1997)

48) Bourhis, Moise, Perreault, & Senecal (1997)

분리주의(segregationism)는 두 번째 차원의 질문에 대해서만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태도로서, 이주민들이 자신의 문화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이주 국가의 문화를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태도이다. 이는 다른 문화를 가진 이주민들을 이주 국가의 문화로부터 '분리'하는 태도이다. 배타주의(exclusionism)는 두 가지 차원의 질문 모두에 부정하는 입장으로서, 이주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부정하면서 이주 국가의 문화 역시도 수용하지 못하게 하는 태도이다. 배타주의는 이주민이 자신의 고유문화를 유지할 자유를 부정하며 문화적, 사회적으로 이주 국가에 절대 통합될 수 없음을 주장한다. 개인주의(individualism)은 이주민의 문화 유지 및 수용의 권리가 전적으로 개인(이주민)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태도이다. 개인주의는 개인을 소속 국가의 문화적 맥락과 분리하여 정의하고, 이주민을 수용함에 있어서 이주민의 문화 유지나 이주 국가의 문화 수용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을 주장한다. 변화 통합주의(integrationism - transformation)는 통합주의보다 더 적극적인 이주민 수용 태도로서, 이주민들의 문화에 수용 국가가 적응하기 위해 그들의 문화 일부를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⁴⁹⁾.

이에 이 연구는 남한 출신 대학생 개개인의 이주민 수용 태도에 따라 협력 의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추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했다.

연구 문제 1: 남한 출신 대학생의 수용 국가의 여섯 가지 문화 변용 태도 중 어떤 것이 협력 의도에 영향을 미칠까?

49) Trifiletti, Dazzi, Hichy, & Capozza (2007)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남한 출신 대학생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 회사를 통해 실험 설문을 실시했다. 국내 거주 남한 대학생 125명(남자 57명, 여자 61명)의 응답을 얻었다. 응답자들의 평균 나이는 22.28세 (SD = 2.21)였다. 그 중 14명은 북한 이탈 주민과 협력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그 중 6명은 대외활동을 하면서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예컨대 한 학생은 ‘2015 미래 통일 아카데미’에 참여해서 북한 이탈 대학생과 한 조로 활동해 본 적이 있다고 했다. 네 명의 학생은 학교 수업 시간에 북한 이탈 대학생과 한 조로 같이 조별 과제를 진행해 본 경험이 있다고 했다. 아르바이트 동료로 만나본 응답자가 있었고(1명), 북한 이탈 주민을 돕는 봉사 활동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는 응답자가 있었다(1명). 북한 이탈 주민을 만난 상황이나 맥락을 제공하지 않은 응답자가 두 명 있었다. 북한 이탈 주민과 협력해 본 경험이 있는 14명의 응답과 협력 경험이 없는 나머지 참여자의 응답은 통계적으로 볼 때, 서로 차이가 없었다. 이에 협력 경험의 유무와 상관없이 분석을 실시했다. 불성실하게 응답한 7명은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2. 연구 절차

이 연구는 2(자기 표출: 북한에서 왔다고 밝힌 경우 vs. 밝히지 않은 경우) x 2(전형성: 북한 말투가 강한 경우 vs. 약한 경우) 요인 설계를 이용했다. 북한 이탈 대학생의 도움을 받아 총 4가지 경우의 음성 파일을 제작했다. 4가지 경우는 각각 ① 강한 북한 말투로 북한에서 왔다고 밝힌 경우, ② 강한 북한 말투로 출신지역을 밝히지 않은 경우, ③ 약한 북한 말투로 북한에서 왔다고 밝힌 경우, ④ 약한 북한 말투로 출신지역을 밝히지 않은 경우였다. 강한 북한 말투의 경우 최대한 북한에서 실제 사용하는 말투에 가깝게, 약한 북한 말투의 경우 최대한 서울 말투에 가깝게 억양을

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번의 사전 훈련과 한 차례의 녹음 연습을 거쳐 최종적으로 “북한 남부 말투”와 “서울 말투”의 녹음 파일을 제작했다. 제작에 도움을 준 북한 이탈 대학생에게는 소정의 금액을 사례했다.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기관을 통해서 실험 설문을 실시했다. 본격적인 설문에 앞서 모든 설문 참여자는 홀로 강의를 수강하는 A가 조별과제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수업에서 가상의 학생 ‘성희’와 인사를 나누는 시나리오를 읽었다. 시나리오를 읽은 후, 설문 참여자는 성희의 자기소개와 협력 제안이 담긴 음성 자극에 노출됐다. 모든 설문 참여자는 자신이 A의 상황이라는 전제 하에, 성희와 한 팀으로 협력할 의도 및 기타 문항에 대해 응답했다.

3. 측정도구

1) 독립변인의 조작 검증

북한 이탈 주민임을 알린 경우와 알리지 않은 경우, 실험설문 참가자들이 자기 표출 정도의 차이를 잘 인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예 혹은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문항과 자기 표출 정도를 측정하는 5점 리커트 척도의 3 문항을 사용했다(예시: 성희는 뜻밖의 이야기를 해줬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

또한 북한 말투가 강한 경우와 약한 경우, 실험설문 참가자들이 전형성의 차이를 잘 인지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희의 말투는 전형적인 서울 사람의 말투이다,’ ‘성희는 독특한 말투가 있다,’ ‘성희는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말투로 말했다’는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 측정하였다⁵⁰⁾. <표 1>은 자기 표출 정도와 말투에 관련된 문항의 신뢰도 결과를 보여준다.

2) 계획된 행동이론

계획된 행동 이론의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문항을 사용

50) Ensari & Miller (2002)

했다. 성희와의 협력 의도 (행동의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5점 척도의 4 문항을 사용하였다(예시: 나는 성희 같은 사람과 협력할 마음이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 성희와 협력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4 문항의 의미차별 척도를 사용하였다(예시: 성희 같은 사람과 협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1) - 바람직하지 않다 (5)). 성희와 협력에 대한 응답자들의 지각된 행동통제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5점 리커트 척도의 4 문항을 사용했다(예시: 성희 같은 사람과 협력할 자신이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

성희 같은 사람과 협력하는 것에 대한 지각된 규범을 보다 자세히 측정하기 위해서 규범을 다음과 같은 4개의 세분화된 요인으로 나눴다.⁵¹⁾ 개인적 설명 규범은 응답자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성희 같은 사람과 협력을 해본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문항이다(예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대부분은 성희 같은 사람과 협력한 경험이 있다). 개인적 지시 규범은 응답자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성희 같은 사람과 협력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묻는 문항이다(예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대부분은 내가 성희 같은 사람과 협력하는 것에 찬성할 것이다). 개인적 규범과 사회적 규범의 차이는 규범의 범위에 있다. 개인적 규범의 범위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며 사회적 규범의 범위는 우리 사회 다수이다. 계획된 행동 이론의 문항의 신뢰도는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문화 변용

수용 국가의 6가지 문화 변용(동화주의, 분리주의, 배타주의, 개인주의, 통합주의, 변화-통합주의)을 측정하기 위해서 각 방법을 대표하는 1개의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⁵²⁾. 각 문항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동화주의: 북한 이탈주민은 남한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의 문화를 포기해야 한다.

51) Park & Smith (2007)

52) Trifiletti, Dazzi, Hichy, & Capozza (2007)

- ② 분리주의: 북한 이탈주민은 남한의 문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그들의 문화를 유지할 수 있다.
- ③ 배타주의: 남한은 북한 이탈주민과 그들의 문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 ④ 개인주의: 각 개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문화를 받아들일 자유가 있기 때문에 북한 이탈주민이 그들의 문화를 유지하거나 남한의 문화를 받아들이는지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 ⑤ 통합주의: 북한 이탈주민은 북한 고유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남한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 ⑥ 변화-통합주의: 남한은 북한 이탈주민 통합을 위해 남한 문화의 일부를 바꾸어야 한다.

4) 통제변인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응답자의 개인적인 성향이 협력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응답자가 단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협력 의도가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응답자가 배타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낮은 협력 의도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높고 낮은 협력 의도가 이 연구가 예측한 대로 자기 표출 여부나 말투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동일한 우호성을 전제하고 협력 의도를 비교할 수 있는 통계적인 처리가 필요하다. 통제는 이렇게 특정 조건을 같게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협력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외집단 우호성을 통제 변인으로 측정했다.

외집단 우호적 태도는 외집단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인식하는지 혹은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지를 측정한다⁵³⁾. 외집단 우호적 태도는 애착

53) Alfieri & Marta (2011)

(affection), 편안함(comfort), 동질감(kinship), 관심도(engagement), 열정(enthusiasm)으로 분류된다. 이 중 열정에 대한 문항은 북한 이탈 대학생과 남한 출신 대학생의 맥락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측정에서 배제했다. 각 차원의 대표적 예시 문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애착: 나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 ② 편안함: 나는 북한 이탈 주민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편안하다.
- ③ 동질감: 나는 북한 이탈 주민에게 친근감을 느낀다.
- ④ 관심도: 나는 북한 이탈 주민의 시각을 이해하는데 매우 관심이 있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했다(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 각 차원의 신뢰도와 사용된 문항 수는 <표 1>에 제시했다.

<표 1> 변인의 신뢰도 및 평균

	측정 문항 개수	신뢰도(Cronbach's α)	평균 (M)	표준편차 (SD)
독립 변인 및 계획된 행동이론				
자기 표출	3	.75	3.20	0.90
전형성 (말투)	3	.75	3.25	0.66
행동의도	4	.97	3.79	0.93
태도	4	.88	3.57	0.92
지각된 행동통제력	4	.87	3.35	0.85
개인적 설명 규범	3	.94	2.53	1.00
개인적 지시 규범	3	.92	3.60	0.80
사회적 설명 규범	3	.95	2.45	0.97
사회적 지시 규범	3	.93	3.07	0.83
문화 변용				
동화주의	1	해당 없음	2.92	1.06
분리주의	1	해당 없음	3.54	1.01
배타주의	1	해당 없음	2.15	1.00
개인주의	1	해당 없음	3.03	1.11
통합주의	1	해당 없음	3.19	1.01
변화 통합주의	1	해당 없음	2.35	0.93
외집단 우호성				
애착	4	.90	3.26	0.72
편안함	3	.78	2.86	0.76
동질감	3	.94	2.50	0.81
관심도	4	.91	3.01	0.93

4. 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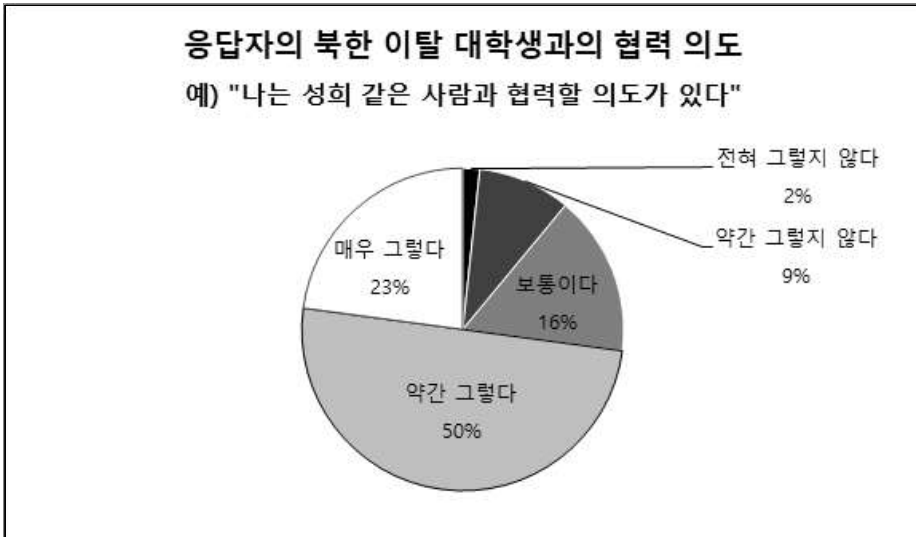
어떤 변수가 협력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위계적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 회귀 분석은 통계적으로 변인 사이의 관계를 규명한다. 위계적 다중 회귀 분석 방법을 통해 각 단계별로 새롭게 투입되는 변수가 모형의 적합성을 얼마나 증가시키는지 분석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외집단 우호성을 통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가장 첫 모델에 입력했다. 다음으로 조작된 독립변인과 계획된 행동이론의 변인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첫 번째 모델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두 번째 모델을 구성하는 변인이 얼마나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 변용 관련 변인을 추가하여 최종적인 다중 회귀 모형을 구축했다.

IV.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위계적 다중 회귀 분석에 앞서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는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속변수인 행동 의도 (협력 의도)는 3.79의 평균값을 보였다. 한 문항을 예시로 들어 설명을 하자면 일반적으로 응답자는 '성회 같은 사람과 같은 조로 협력할 의향이 있다'는 질문에 약간 그렇다(4점)에 가깝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다. 응답자 118명 중 86명(73%)은 보통(3) 이상의 협력 의도를 보여준다(<그래프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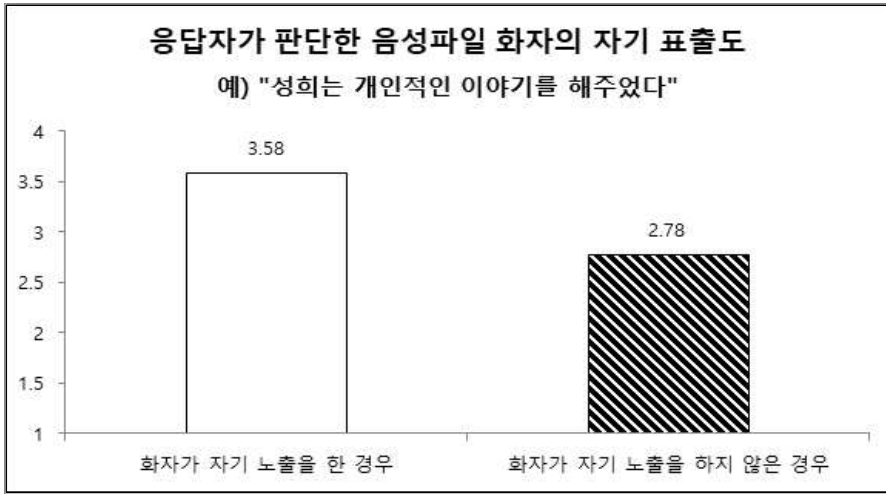


<그래프 1> 북한 이탈 주민과의 협력 의도

2. 조작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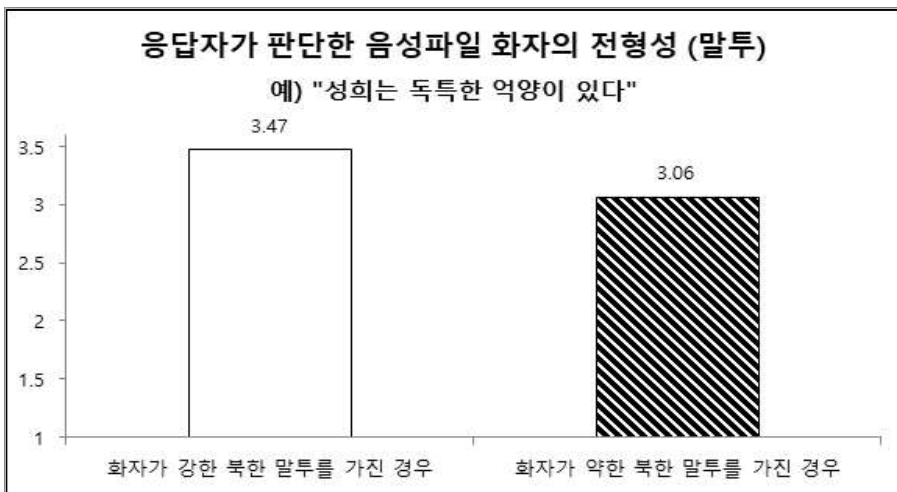
자기 표출은 적절하게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가 북한에서 왔다고 밝혔는지를 묻는 질문의 응답은 카이-제곱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chi^2(1) = 118.00, p < .001$). 연구자의 의도대로 성희가 북한에서 왔다고 밝힌 음성파일을 들은 경우 응답자 (62명) 모두 성희가 북한에서 왔다고 밝혔다고 응답했다. 반대로 성희가 북한에서 왔다고 밝히지 않은 음성파일을 들은 경우, 응답자 (56명) 모두 성희가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자기 표출도의 조작 점검을 추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리커트 척도의 문항에 대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성희의 출신을 밝히지 않은 경우보다 ($M = 2.78, SD = 0.91$) 출신을 밝힌 음성 파일을 들은 경우 ($M = 3.58, SD = 0.70$), 성희의 자기 표출도가 더 높다고 했다 ($t(103.37) = 5.29, p < .001$) (<그래프 2> 참조).



<그래프 2> 음성파일 화자의 자기 표출도

전형성 (말투) 조작 점검 문항에 대하여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실험 자극이 잘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t(116) = 3.53, p < .001$). 강한 말투의 북한 말투를 들은 응답자는 ($M = 3.47, SD = 0.55$) 약한 말투의 북한 말투를 들은 응답자($M = 3.06, SD = 0.69$)보다 말투가 더 익숙하지 않고 더 서울말 같지 않다고 했다(<그래프 3> 참조).



<그래프 3> 음성파일 화자의 전형성 (말투)

3. 위계적 다중 회귀 분석

<표 2>는 위계적 다중 회귀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외집단 우호성을 통계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첫 번째 모델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외집단 우호성의 설명력은 협력의도 변량의 37%를 차지하였다($F(4, 113) = 18.43, p < .001, adj.R^2 = .37$). 외집단 우호성의 요소 중 애착($\beta = .34$)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는 애착을 측정하는 척도의 수치가 평균적으로 1점 증가 하면 협력 의도는 0.34점씩 증가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협력 의도가 높다는 것이다.

두 번째 모델은 조작된 독립변인과 계획된 행동 이론으로 구성했다. 여기에 추가된 변인은 첫 번째 모델의 설명력을 배제하고도 행동 의도의 변량의 35%를 설명했다 ($F_{\text{change}}(8, 105) = 18.47, p < .001, R^2_{\text{change}} = .35$). 이 중 태도 ($\beta = .36$), 지각된 행동 통제력 ($\beta = .52$), 사회적 서술적 규범 ($\beta = -.19$), 전형성 ($\beta = .11$)이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성희 같은 사람과 협력하는 행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협력을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으면 믿을수록 협력할 의도가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 사회의 다수가 성희와 같은 사람과 협력한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협력 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성희의 말투가 북한 말투에 가까울수록 응답자들은 협력할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가설 2, 가설 3(a), 가설 3(b), 가설 3(e)의 예측이 지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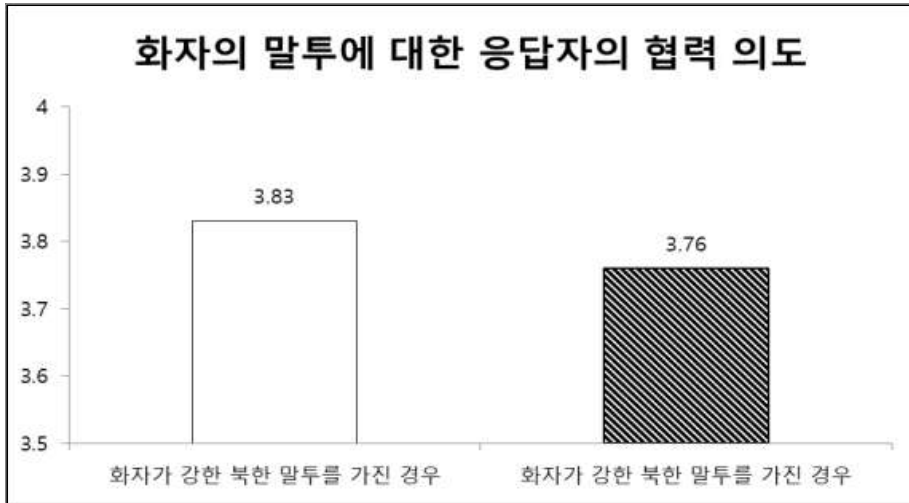
세 번째 모델은 문화 변용과 관련된 변인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모델과 두 번째 모델의 설명력을 제했을 때, 세 번째 모델에 추가된 변인은 협력 의도 변량의 3%를 설명했다($F_{\text{change}}(6, 99) = 2.27, p = .04, R^2_{\text{change}} = .03$). 여섯 가지 문화 변용 변인 중, 개인주의 ($\beta = -.14$)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따라서 연구 문제 1에 대하여 개인주의적인 문화 변용에 동의하는 사람일수록, 협력 의도가 낮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 결과

	<i>B</i>	<i>SE</i>	β	<i>t</i>	<i>r_{sp}</i>
제 1 위계					
애착	0.44	0.15	.34	3.05**	.22
편안함	0.25	0.13	.20	1.85	.14
동질감	-0.07	0.13	-.06	-0.50	-.04
관심도	0.22	0.12	.22	1.90	.14
$F(4, 113) = 18.43, p < .001, adj.R^2 = .37$					
제 2 위계					
태도	0.47	0.10	.36	4.67***	.42
지각된 행동 통제력	0.57	0.10	.52	5.55***	.48
개인적 설명 규범	0.13	0.07	.14	1.79	.17
개인적 지시 규범	-0.10	0.09	-.08	-1.08	-.11
사회적 설명 규범	-0.18	0.07	-.19	-2.42*	-.23
사회적 지시 규범	0.06	0.09	.05	0.52	.06
자기 표출	-0.05	0.09	-.03	0.61	-.05
전형성 (말투)	0.21	0.10	.11	2.14*	.11
$F_{change}(8, 105) = 18.47, p < .001, R^2_{change} = .35$					
제 3 위계					
동화주의	-0.04	0.06	-.04	-0.66	-.03
분리주의	0.06	0.05	.06	1.14	.05
배타주의	0.09	0.06	.09	1.34	.06
개인주의	-0.12	0.05	-.14	-2.59*	-.12
통합주의	0.06	0.05	.06	1.09	.05
변화 통합주의	-0.08	0.05	-.08	-1.56	-.07
$F_{change}(6, 99) = 2.27, p = .04, R^2_{change} = .03$					

* $p < .05$, ** $p < .01$, *** $p < .001$

모든 변인을 포함한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F(18,99) = 19.38, p < .001, adj.R^2 = .74$). 측정된 변인으로 만들어진 모형의 설명력은 협력 의도의 총 변량의 74%를 차지한다. 결론적으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애착, 협력에 대한 태도, 협력에 대한 지각된 행동 통제력이 높을수록 협력 의도는 증가한다. 반면, 사회적 서술적 규범과 개인주의 문화 변용 태도가 높을수록 협력 의도는 감소한다. 또한, 북한 말투가 약한 사람보다 북한 말투가 강한 사람이 협력을 요청할 경우, 응답자가 협력에 응할 의도가 더 높다(〈그래프 4〉 참조).



<그래프 4> 화자의 말투에 대한 응답자의 협력 의도

V. 결론

북한 이탈 대학생은 이 시대의 새로운 현상이다. 이들은 생존을 위한 불가항력적인 탈출이 아닌, 적극적으로 삶의 개선을 추구하는 이주로서의 북한 이탈 패러다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북한 이탈 대학생은 다문화적 다양성을 높이고 다가올 통일 한국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적 인력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그러나 북한 이탈 대학생의 적응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이들이 학업뿐 아니라 신분 노출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정체성이 알려질까 노심초사하며 감추는 현상의 근저에는 뿌리 깊게 내재된 편견과 차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러한 압박은 학업을 중단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실상 편견과 차별은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사회의 소수자로서 대면하는 현실이다.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공식적인 명칭은 이들이 처음부터 자

유 대한민국의 시민 정체성과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담보하는 의지를 피력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강조는 오늘날 북한 이탈 주민이 사회적 소수자로서 편견과 선입견, 차별과 대상화를 일상적으로 마주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예컨대, 낙인 효과, 삼등국민, 거류민, 비국민, 탈남입북 등 자조적인 표현들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인식하는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배타적인 시선을 노골적으로 보여준다⁵⁴⁾.

대학 내 편견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출발하여, 이 연구는 북한 이탈 대학생과의 조별 과제 활동 협력에 대한 남한 출신 대학생의 인식을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선행 연구에서 다룬 소수의 시각을 다수의 인식과 행동 범주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까닭에 남한 출신 대학생의 인식을 연구의 중심으로 삼았다. 실험 설문의 소재이자 상황적 맥락으로는 조별 과제를 선택했다. 조별 과제는 실제 대학 교실에서 매우 활발하게 다뤄지는 학습 방식으로서 학생들에게 친숙한 상황일 뿐 아니라, 편견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만남(contact)의 속성을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설문에 응한 남한 출신 대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북한 이탈 대학생에 대한 태도나 인식을 묻는 대신 협력 의도와 그 예측 요인을 측정했다. 직접적으로 소수자에 대한 태도나 인식을 물어볼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설문 응답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상에 대한 인식과 그 대상과 관련된 행동에 대한 인식은 서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수반했다. 북한 이탈 대학생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행위는 남한 출신 대학생들과의 협력 의도가 어떻게 달라지게 하는가? 말투로 드러나는 북한 출신 대학생의 정형성은 협력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계획 행동이론과 세분화된 규범 인식은 북한 이탈 대학생과의 협력 의도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가? 남한 출신 대학생의 문화 변용에 대한 태도는 북한 이탈 대학생과의 협력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54) 주승현 (2015, 8, 20)

이 연구의 중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북한 이탈 대학생에 대한 남한 출신 대학생의 협력 의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분석했는데, 협력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남한 출신 대학생의 성향과 북한 이탈 대학생의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남한 출신 대학생의 성향 중에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전반적인 애착, 이들과의 협력 행위에 대한 태도, 지각된 행동 통제력이 협력에 대한 의도를 높이는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했다. 즉,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협력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의 통제권이 본인에게 있다고 느낄수록 협력 의도가 높았다. 이는 계획된 행동 이론으로부터 도출한 가설과 일치했다. 또한 북한 이탈 주민의 문화에 대해 개인주의적 문화변용 태도를 가질수록, 협력에 대한 사회적 설명 규범이 높다고 느낄수록 협력 의도는 낮아졌다. 다시 말해, 북한 이탈 주민이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 변화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할수록, 우리 사회 대다수가 북한 이탈 주민과 협력한 경험이 많다고 생각할수록 남한 출신 대학생들의 협력 의도는 낮아졌다.

북한 이탈 대학생의 특징 중에는 그들의 말투가 남한 학생들의 협력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북한 말투가 강할 때 남한 학생의 협력 의도가 더 높아졌다. 이는 남한 출신 대학생이 북한 이탈 대학생을 협력이 필요한 외부 집단으로 인식하는데 말투가 인지적 단서(cue)로 작용했음을 반증한다. 반면, 북한 이탈 대학생이 본인의 신분을 밝히는 것은 남한 학생들의 협력 의도와 무관했다. 이는 직접 본인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남한 출신 대학생들에게 특별히 부정적인 편견을 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종합적으로, 이런 결과는 북한 이탈 대학생의 말투가 협력 의도를 낮추며 신분을 밝히는 것이 협력 의도를 높일 것이라는 연구의 가정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자신의 정체성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북한 이탈 대학생들에게 그들의 인식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북한 이탈주민의 자기 정체성의 표출은 남한 대학생들의 협력 의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더 나아가,

북한 이탈 대학생의 말투는 남한 대학생들의 협력 의도를 저해시키는 요인이 아닌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런 점들은 북한 이탈 대학생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과 언어적 정체성을 변화시키지 않고도 남한 출신 대학생들과의 협력 상황으로 진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에서 가정한 협력 상황(조별 과제)이 외집단에 대한 편견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접촉의 전제조건들을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한 대학생들의 협력 의도 증진은 향후 북한 이탈 대학생에 대한 편견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연구의 결과가 모든 방면에서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남한 대학생들의 문화 변용 태도는 분리주의 ($M = 3.54$)와 통합주의($M = 3.19$)로 크게 양분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분리주의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이 점은 남한 대학생들이 북한 이탈 주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완전히 인정하기보다는 남한의 문화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분리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더 나아가 북한 이탈주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는 개인주의적 문화변용 태도가 오히려 협력 의도를 감소시키는 분석 결과는 남한 대학생들의 협력 태도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주의적 태도와 반대되는, 비 수용적인 문화 변용 태도(배타주의, 동화주의, 분리주의)의 증가가 오히려 협력 의도의 증가와 방향성을 같이 한다는 점을 토대로 볼 때, 남한 대학생들의 협력 증대가 북한 이탈 주민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한 바람직한 결과가 아닐 수 있음을 반증한다.

우리 사회의 다수가 북한 이탈 주민과 협력하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남한 대학생들의 협력 의도가 낮게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 모델 또한 남한 대학생들이 북한 이탈 주민과 협력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불투명함을 시사한다.

이런 세 가지 측면에 근거할 때, 북한이탈대학생의 북한 말투가 강할수록 역설적으로 더 그들과 협력하고자 하는 남한 대학생들의 태도는 북한 이탈주민을 동등한 협력의 구성원이 아닌 도움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한편, 협력 의도가 적절한 예측 변인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실제 협력으로 이어진다고는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어느 정도 한계를 지닌다. 예를 들어, 협력 의도가 높더라도 실제 북한 이탈 주민과 같은 조원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실제 협력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른 조원들의 의견 및 조별 과제의 주제와 같은 개인의 협력 의도 외의 다른 변인 역시 실질적인 협력 유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의 협력을 조별 과제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다른 상호작용적 상황에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남한 대학생들이 북한 이탈주민과의 이상적인 협력 상황(조별과제)으로 진입함에 있어서 북한 이탈 대학생의 자기 표출과 말투 차이의 영향을 주요한 한 축으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만, 이 연구의 상황이 가상적으로 주어졌으며, 한 차례의 검증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두 집단 간의 실질적인 협력 상황 내 북한 이탈주민의 자기 표출과 말투 차이의 여부가 협력 이후 남한 대학생들의 편견 감소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단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조별 과제 협력의 결과에 따른 향후 협력 의도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Wang, Arndt, Singh, Biernat, Liu는 회사 직원의 말투에 따른 소비자의 만족도의 차이는 제공된 서비스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⁵⁵⁾. 즉, 서비스의 결과가 긍정적이었다면, 직원의 말투에 상관없이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지만, 반대로 서비스의 결과가 부정적이었다면, 비표준적인 말투를 사용한 직원과 이야기를 했을 때 소비자의 만족도는 더 많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남한 출신 대학생과 북한 이탈 대학생의 협력 역시 그 결과물에 따라 협력의 만족성과 향후 협력 의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연구에 반영함으로써, 잠재적인 교란(confounding) 인자의 효과를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55) Wang, Arndt, Singh, Biernat, & Liu (2013)

【참고문헌】

〈국내 학술지〉

- 권수현 (2011).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남한 국민의 태도. <한국정치연구>, 20권 2호, 130-153.
- 김명자 (2015). 한국심리학회지 북한 및 북한 이탈주민 관련 연구동향: 한국심리학회지 게재논문 분석(2000~2013).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권 2호, 541-563.
- 김금미 (2011). 대학생의 탈북자에 대한 수용적 행동의도와 행동을 설명하는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권 3호, 1-16.
- 김상학 (2004).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5권, 169-206.
- 김인숙·유시은 (2015). 탈북대학생 학업중단 요인과 지원방안: 위험요인이 노가 보호요인의 탐색. <다문화와 평화>, 9권 3호, 122-142.
- 김혜숙·김도영·신희천·이주연 (2011). 다문화 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집단 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권 2호, 51-89.
- 남북하나재단 (2017) <2016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 남북하나재단 (2018a). <2017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 남북하나재단 (2018b). <2017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 박은영·이은자 (2013). 북한이탈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경험.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9권 3호, 351-361.
- 박종혁 (2013). 팀 프로젝트 무임승차 방지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18권 2호, 141-147.
- 배한동 (2001). 한국 대학생의 통일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2권 2호, 303-349.
- 백영옥 · 유조안 (2011). <북한이탈주민의 대학생활: 진학 및 적응을 중심으로>.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안득기 (2007). 북한 및 통일 의식 분석-대학생들의 인식을 중심으로.<북한연구학회보>, 11권 1호, 1-28.

- 유시은·배형준·조명숙·김경희·최영실 (2013). <탈북 대학생 중도탈락 원인 및 대안>.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윤인진 (2012). 북한이주민의 문화변용과 사회적응. <한국학연구>, 41권, 37-61.
- 윤인진·김상학 (2003).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에 대한 인식과 태도-장애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학생 의식조사. <경제와 사회>, 58권, 222-248.
- 이향규·이장주·김윤영·한만길·김성식 (2011) 탈북 청소년의 교육 중단연구(II).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정명화·신경숙 (2004). 프로젝트 수업이 대학생의 창의적 사고, 창의적 성향 및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교육심리연구>, 18권 3호, 287-301.
- 정한호 (2011). 대학에서 수행되는 팀 학습 활동의 환경, 역동성, 지식공유, 성과에 대한 질적 고찰. <교육문제연구>, 40권, 81-114.
- 조소연 (2013). 커밍아웃: 탈북 대학생의 자기 드러내기 경험. <교육인류학연구>, 16권 2호, 12-42.
- 조소연 (2016). <탈북 청소년 커밍아웃 체험에 관한 해석학적 근거이론 연구: “나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영아·전우택 (2004) 북한 출신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권, 167-186.
- 조완철·조위수 (2018)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적응을 위한 발음·억양 교육 실천사례 특성 분석. <현대북한연구>, 21권 1호, 208-241.
- 주승현 (2015, 8, 20). “너 왜 왔어?” “나 돌아갈래” ‘분단의 사생아’ 끌어안으라. <신동아>, 314-321면. URL: <http://shindonga.donga.com/Print?cid=114179>
- 주휘정 (2010).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대학 학습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교육문제연구>, 36권, 135-159.
- 차지영·이경은·권유림·정향진 (2016) 새터민 대학생의 한국 간호학 교육적응 경험. <질적 연구>, 17권 1호, 22-38.
- 최대석·박영자 (2015). 북한이탈주민 정책연구의 동향과 과제. <국제정치논총>, 51권 1호, 187-215.

- 한관수·류태웅 (2016). 대학생 통일의식 고취를 위한 통일교육 방안. <한국 동북아논총>, 78권, 145-164.
- 한희정·이의용 (2015). 대학생의 조별과제 경험. <사회과학연구>, 31권 4호, 121-149.
- 홍봉선·아영아 (2011) 청소년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7권 3호

〈해외 학술지〉

- Ajzen, I. (1988). *Attitudes, personality and behavior*. Milton Keynes, UK: Open University Press.
- Ajzen, I., & Fishbein, M. (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u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Alfieri, S., & Marta, E. (2011). Positive attitudes toward the outgroup: adaptation and validation of the Allophilia scale. *Testing, Psychometrics, Methodology in Applied Psychology*, 18, 99-116. doi: 10.4473/TPM.18.2.3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MA: Addison-Wesley.
- Ball, P. (1983). Stereotypes of Anglo-Saxon and non-Anglo-Saxon accents: Some exploratory Australian Studies with the matched guise technique. *Language Science*, 5, 163- 183. doi:10.1016/S0388-0001(83)80021-7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 5-34. doi:10.1111/j.1464-0597.1997.tb01087.x
- Bourhis, R. Y., & Giles, H. (1976). The language of cooperation in Wales: A field study. *Language Sciences*, 42, 13-16. Retrieved from https://s3.amazonaws.com/academia.edu.documents/42067181/The_Language_of_Cooperation_in_Wales_A_F20160204-4581-68z156.pdf?AWSAccessKeyId=AKIAIWOWYYGZ2Y53UL3A&Expires=1539028364&Signature=Vv%2FARKugFoh4V0Jgwrpv%2FgVSAa4%3D&response-content-disposition=inline%3B%20filename%3DThe_language_of_cooperation_in_Wales_A_f.pdf
- Bourhis, R. Y., Moise, L. C., Perreault, S., & Senecal, S. (1997). Towards an interactive acculturation model: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International*

- journal of psychology*, 32, 369-386. doi:10.1080/002075997400629
- Boyer, E. G., Weiner, J. L., & Diamond, M. P. (1984). Why groups?. *Organizational Behavior Teaching Review*, 9(4), 3-7.
- Choo, H. Y. (2006). Gendered modernity and ethnicized citizenship: North Korean settlers in contemporary South Korea. *Gender & Society*, 20, 576-604. doi:10.1177/0891243206291418
- Dovidio, J. F., Gaertner, S. L., & Kawakami, K. (2003). Intergroup contact: The past, present, and the future.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6, 5-21. doi:10.1177/1368430203006001009
- Ensari, N., & Miller, N. (2002). The out-group must not be so bad after all: the effects of disclosure, typicality, and salience on intergroup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313-329. Retrieved from <http://journals.sagepub.com/doi/pdf/10.1177/1368430203006001009>
- Fuertes, J. N., Gottdiener, W. H., Martin, H., Gilbert, T. C., & Giles, H. (2012). A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f speakers' accents on interpersonal evalu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2, 120-133. doi:10.1002/ejsp.862
- Graves, T. (1967). Psychological acculturation in a tri-ethnic community. *South-western Journal of Anthropology*, 23, 337-350. Retrieved from <https://www.journals.uchicago.edu/doi/abs/10.1086/soutjanth.23.4.3629450?journalCode=soutjanth>
- Johnson, D. W., Johnson, R. T., & Smith, K. A. (1998). *Active learning: Cooperation in the college classroom*. MN: Interaction Book Company. doi:10.5926/arepj1962.47.0_29
- Lambert, W. E. (1967). A social psychology of bilingualism. *Journal of Social Issues*, 23, 91-109. doi:10.1111/j.1540-4560.1967.tb00578.x
- Neuliep, J. W., Speten-Hansen, K. M. (2013). The influence of ethnocentrism on social perceptions of nonnative accents. *Language & Communication*, 33, 167-176. doi:10.1016/j.langcom.2013.05.001
- Park, H.S., & Smith, S. W. (2007). Distinctiveness and influence of subjective norms, personal descriptive and injunctive norms, and societal descriptive and injunctive norms on behavioral intent: A case

- of two behaviors critical to organ donat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3*, 194-218. doi:10.1111/j.1468-2958.2007.00296.x
- Sheeran, P. (2002). Intention—behavior relations: A conceptual and empirical review.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12*, 1-36. doi:10.1080/14792772143000003
- Trifiletti, E., Dazzi, C., Hichy, Z., & Capozza, D. (2007). A validation of HCAS: The host community acculturation scale. *Testing, Psychometric, Methodology in Applied Psychology*, *14*, 135-149. Retrieved from <http://www.tpm.org/wp-content/uploads/2014/11/14.3.2.pdf>
- Wang, Z., Arndt, A. D., Singh, S. N., Biernat, M., & Liu, F. (2013). “You Lost Me at Hello”: How and when accent-based biases are expressed and suppressed.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Marketing*, *30*, 185-196. doi:10.1016/j.ijresmar.2012.09.004
- Wilson, T. D., & Dunn, D. S. (1986). Effects of introspection on attitude-behavior consistency: Analyzing reasons versus focusing on feeling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2*(3), 249-263. doi:10.1016/0022-1031(86)90028-4